

연구보고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조흥식(서울대학교·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첫째,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현황은 어떠하며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 셋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넷째, 우리나라 아동·가족 유형별 욕구는 어떠한가?
- 다섯째, 우리나라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은 어떠한가?
- 여섯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각종 국가통계자료, 논문, 신문기사, 학술보고서 등을 통해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가족 유형을 분류하였음.
- 둘째,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선진 외국(미국, 일본, 독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제안점을 도출하였음.

- 셋째, 연구의 방향 수립, 아동·가족 유형화, 아동·가족 욕구 사정, 아동·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범위 규정 등에 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 넷째, 아동·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차로 기존의 욕구조사결과를 재분석하였음. 전국의 18세미만 아동 혹은 그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욕구조사 결과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기존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동·가족 욕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재분석하여 가능한 최근의 아동·가족의 욕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음. 기존의 연구로 충분한 욕구조사가 불가능한 영역, 특히 국가차원의 욕구조사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욕구 및 경험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있어 “맞춤형”이란 “아동·가족이 그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차별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혹은 민간의 체계적 사례관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가적 도움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이 스스로의 선호와 필요, 특성,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계획·선택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요약컨대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의 구조 및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별 과업, 가족의 자원, 가족의 강·약점, 가족의 심리적,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욕구와 필요, 주거와 여가, 건강과 위생 등 삶의 질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필요

들을 지원하며, 지원이 정상적으로 미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때 야기될 수 있는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예방적, 치료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음.

- 둘째, 우리나라의 아동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의 0-19세¹⁾ 아동의 수는 2005년 현재 총 12,086,651명이며 이 중 6,334,225명(52.41%)이 남자, 5,752,426명(47.59%)이 여자임. 전체인구는 47,041,434명이며 전체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69%(남자 26.99%, 24.40%)으로 1/4정도를 차지함. 2005년 총 가구 수는 약 15,887,000가구임. 이들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세대 가족 16.2%, 2세대 가족 55.4%, 3세대가족 6.9%, 4세대이상 0.1%, 1인가구 20.0%를 차지함. 비혈연가구는 1.4%이며 비정형가구(한부모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는 30.4%를 차지함. 1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가족 14.2 %, 기타 2.0 %이다. 2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미혼자녀 42.2 %, 한부모가구(편부가구) 1.8 %, 한부모가구(편모가구) 6.8 %, 부부+양친 0.1 %, 부부+편부모 0.8 %,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0.5 %, 조부모+손자녀 0.4 %, 기타 2.8 %임. 3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자녀+양친 0.9 %, 부부+자녀+편부모 3.6 %, 기타2.4%임.
- 셋째, 우리나라 아동·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을 정리하면 (가) 구조적·사회·인구학적 변화(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빈곤가족의 증대), (나) 다양한 가족의 증가(이혼·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구,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다) 가족 기능의 변화(여성취업 증가와 돌봄 기능의 약화,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가계부담의 증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넷째, 아동·주양육자 욕구조사결과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81.3%)이었으며 다음으로 친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18세까지이나 5세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통계자료의 특성상 부득이 만 19세까지 연령을 제시하게 되었다.

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회 제공(79%),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7.8%),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77.7%),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6.3%),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75.8%),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72.7%),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70.6%) 등이었음. 분야별로는 체육분야(2.98점)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분야(2.94점), 문화분야(2.70점), 고용분야(2.68점), 주거분야(2.59점), 보건분야(2.58점), 교육분야(2.53점), 기타분야(2.44점), 복지분야(2.06점) 순이었음.

- 다섯째, 아동의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개선, 치과치료,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거주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 여섯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문화관련 기관소개,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족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일곱째, 올해 들어 주양육자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보건소(29.1%)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0.3%), 청소년수련관(18.3%), 청소년수련원(17.7%), 유스호스텔(15.7%), 청소년야영장(13.9%), 여성회관(11.4%), 고용지원센터(10.8%), 종합사회복지관(10.0%) 순이었음.
- 여덟째, 주양육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살펴본 결과 방과후학교(31.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28.4%), 유스호스텔(20.0%), 지역사회보건소(19.8%), 청소년야영장(19.4%), 청소년수련관(17.4%)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 아홉째, 주양육자는 자신과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위해 아동심리상담 서비스(52.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0.1%),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49.8%), 아동건강검진 서비스(46.8%),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2.1%),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39.8%), 가족휴가제공서비스(39.8%), 진로상담서비스(39.5%),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서비스(36.4%), 지역사회 체육공간 서비스(36.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5.0%),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서비스(30.9%), 가족관계증진서비스(30.8%),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30.7%),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30.5%), 아동조기발달검사(30.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열번째,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및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아동·가족관련기관이 현재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업무를 위해 가장 많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41.3%)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40.5%)으로 대상 기관의 40%이상이 연계, 협력하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종합사회복지과(34.7%),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33.9%), 아동보호전문기관(29.8%), 건강가정지원센터(28.9%), 청소년문화의 집(2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4.8%), 청소년수련관(24.0%), 정신보건센터(24.0%), 청소년자원봉사센터(24.0%), 청소년성문화센터(23.1%), 성폭력상담소(23.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22.8%), 청소년문화존(19.8%), 고용지원센터(17.4%),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15.7%) 순이었음.

- 열한번째,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없는 경우가 27.9%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5.4%, 주민생활통합지원서비스(OK 주민서비스) 19.7%, 기타 14.8%, 위민넷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2.5% 순이었음.

- 열두번째,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관련 국가 행정부처(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7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54.8%, 교육과학기술부 21.0%, 기타 12.1%, 고용노동부 8.1%, 행정안전부 7.3%, 문화체육관광부 4.0%, 법무부 3.2% 순이었음.
- 열세번째,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18.0%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중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9.5%를 차지하였음. ‘지역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원한다’는 경우는 7.4%이고 ‘지역사회에 모든 일반가정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경우는 3.3%인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제언

- 제언을 서비스 내용적 측면, 전달체계적 측면, 법·제도·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 내용적 측면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행 등 가족 공동 활동의 적극적 확대
 -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
 - 통학 및 이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전거, 도보 교통관련 체계 개선
 - 다양한 지역사회 체육시설, 공간 건립 희망
 - 지역사회 중요 시설로서 아파트단지 재정비

-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의 전국적 시행
- 학부모 교육을 통한 아동, 아동지원서비스 관심 제고

● 전달체계적 측면

- 유사 서비스의 단계적 통합 및 주무부처 선정
- 아동·가족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정책의 사각 지대에 대한 고려의 확대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홍보방안 모색
- 전달체계상의 3 가지 부족요소의 해소
- 농어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 지원 아동·가족 서비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누출 엄금
-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실무자 협의체 구성

● 법·제도·정책적 측면

- 기관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아동·가족 지원체계 평가기준의 장기화, 다원화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세부적 내용에 관한 국가 차원의 배려
- 국가차원의 연간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매뉴얼 개발, 보급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재조정
- 아동·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 단계적 확대 및 선택모듈의 다양화·선택성 확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관련 자료 고찰	6
2)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고찰	7
3) 아동·주양육자 욕구조사	8
4)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태파악	8
5)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방안 모색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 자문	10
3) 양적 연구: 아동·가족 욕구조사 분석	10
4) 전문가 설문조사	11
5)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12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
II.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분석	15
1.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념	17
1) 지역사회	17
2) 아동·가족	24
3) 맞춤형 지원서비스	28
2. 우리나라 아동·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55
1) 아동 현황 및 전망	55
2) 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61
3.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77
1)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77

2)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80
III.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89
1. 일본	9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방향	9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93
3)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가족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104
4)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 :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10
2. 독일	1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11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16
3)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127
4) 독일사례의 시사점	135
3. 미국	14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14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41
3) 지역기반 중심 개별 성공사례 소개	168
4) 한국의 아동가족맞춤형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	174
IV. 아동·가족 유형별 욕구	179
1. 기존 욕구조사 결과 소개	181
1) 지역사회욕구조사	181
2)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욕구조사	181
2. 아동·가족 욕구조사 결과	194
1) 조사개요	194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7
3) 아동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198
4)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228
3. 주양육자의 지원서비스 욕구조사	23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5
2)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239
3)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251

4)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	265
5)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275
6)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278
7)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	304
8) 지역사회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 할 점	305
9)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주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	308

V. 우리나라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분석

1. 조사개요	313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6
3.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및 사업 실태	318
1) 현재 기관이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	318
2)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321
3)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 행정부처	322
4)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3
5)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	324
6) 아동·가족(주양육자) 지원서비스 실시여부	327
4. 기관종사자의 욕구 및 개선을 위한 바람	331
1)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기관별)	331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기관별)	347
3)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기관별)	361
4)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 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기관별)	373
5)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 을 위한 의견(기관공통)	387

VI. 결론 및 제언	397
1. 결론	399
2. 제언	405
1) 서비스 내용적 측면	405
2) 전달체계적 측면	408
3) 법·제도·정책적 측면	414
참고문헌	421
부 록	429

표 목차

<표 II-1> 지역사회의 종류(Rubin & Rubin, 1986)	22
<표 II-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세부내용	26
<표 II-3>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과 단점	32
<표 II-4>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34
<표 II-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맞춤형” 정책 특성 /설명	39
<표 II-6> 법률상의 지원서비스 개념	42
<표 II-7> 아동발달영역별 주요 특성과 필요서비스 분류	51
<표 II-8>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유형	54
<표 II-9>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55
<표 II-10>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읍, 면, 동부 ..	56
<표 II-11>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시도별	57
<표 II-12> 초등학교 재학 아동수(2009)	58
<표 II-13> 초등학교 지역규모별 현황(2009)	58
<표 II-14>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2010-2050)	60
<표 II-15> 한국가족의 가족유형별 현황 및 변화양상 (1975-2005)	63
<표 II-16>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65
<표 II-17>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	67
<표 II-18> 도시근로자 빈곤율 변화 추이(시장소득 기준) ...	68
<표 II-19>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69
<표 II-20> 부부의 혼인형태별 구성비	70
<표 II-21>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족 현황	70
<표 II-22> 전체가구 중 조손가구 비(도시/농촌 비교) 및 조손가구수	71
<표 II-23> 국제결혼 추이	72
<표 II-24> 입양가족 현황	73

<표 II-25> 가족의 기능과 한국가족의 기능변화 양상	76
<표 II-26>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78
<표 III-1> 아동·가정관계지출액(2010년도 예산을 기초하여 추산)	96
<표 III-2>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강습회 모델 사업 추진 지자체 현황실시지역(2010년도)	105
<표 III-3>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106
<표 III-4>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대중인식 강화활동 및 프로그램	151
<표 III-5> 관련 웹사이트	154
<표 III-6>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위한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실행	157
<표 IV-1> 아동·가족 욕구조사 대상자	196
<표 IV-2> 설문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197
<표 IV-3> 아동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200
<표 IV-4> 아동의 분야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208
<표 IV-5>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	209
<표 IV-6>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아동) ..	215
<표 IV-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6
<표 IV-8> 주양육자의 가정에 해당하는 사항(다중응답)	238
<표 IV-9>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다중응답) ·	240
<표 IV-10>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수응답) -지역별 비교	242
<표 IV-11>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수응답) -가족유형별 비교	246
<표 IV-12>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252
<표 IV-13>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응답) -지역별 비교	255
<표 IV-14>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응답) -가족유형 비교	260
<표 IV-15>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기관 (복수응답)	266

<표 IV-16>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비교	268
<표 IV-17>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가족유형	271
<표 IV-18>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	276
<표 IV-19>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280
<표 IV-20>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지역별 비교	287
<표 IV-21>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가족유형 비교 ...	296
<표 IV-22>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	304
<표 V-1> 전문가 조사 상세설문표집(안)	315
<표 V-2> 기관의 일반적 특성	316
<표 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7
<표 V-4> 업무를 위한 연계, 협력 기관(복수 응답)	319
<표 V-5>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321
<표 V-6>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행정부처	322
<표 V-7> 아동과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3
<표 V-8>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 ...	325
<표 V-9> 아동·가족(주양육자) 지원서비스	328

그림 목차

[그림 Ⅱ-1]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82
[그림 Ⅱ-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도	84
[그림 Ⅲ-1] 신제도 설계의 이미지	95
[그림 Ⅲ-2] 어린이 연령진행별 보육지원	107
[그림 Ⅲ-3] 지역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모델 사업 ..	110
[그림 Ⅲ-4] 주 청소년청(Landesjugendamt) 조직도	11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아동·가족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저연령기의 빈곤층 아동의 교육·학습 지원에 치중하거나 여성의 취업을 증진하기 위한 양육지원에 한정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또한 아동과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체계로 보기보다는 별도의 서비스 대상으로 파악하고 별도의 부처에서 별도의 정책 체계하에 지원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과 가족 업무는 정권 변동이나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정책방향²⁾ 또한 일관성을 띄지 못한 측면이 있다(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 그 예로 2008년 새로운 정부출범과 더불어 아동·청소년·가족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보육업무·가족업무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한지 채 2년이 되지도 않아 2010년 1월 1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메디컬투데이, 2010. 1. 7일자)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2) 현행 가족정책의 비전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의 추진이다. 이는 취약계층 가족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돌봄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가족-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동정책, 노인정책, 장애인 정책, 여성정책 등 개별 복지정책과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서비스 전달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 하겠다(김승권, 2009).

러한 정책·행정체계의 변화양상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는 아동·가족이 별도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통합된 행정체계와 통합된 이해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0년 3월부터 출범하는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그 가족을 상호연관 되고 관련된 체계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행정적 변화와 정책기조만으로 다양한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책적, 행정적 변화와 노력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가지는 아동·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요한 중간적 체계인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현재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서 18세 미만 아동³⁾과 그 가족을 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설로는 학교, 교육청, 시청,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

3)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한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9세미만의 자는 아동에, 9세이상 18세미만 이하에 있는 자는 아동과 청소년에 모두 해당되며, 18세 이상의 자는 청소년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동과 그 가족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18세미만의 자와 그 가족으로 적용할 경우 한정된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한정된 연구규모로 인해 일정 연령에 포함되는 일정특성의 아동·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되어 그 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다양한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자칫 다양한 생애주기의 사람을 모두 포함시키는데 급급하여 희석될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축소시켜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조금이나마 통제하고 해당 연령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진은 한국사회에서 학령기 이전 연령에 대한 지원을 주로 육아정책, 초등학교 연령에 대한 지원을 주로 아동정책, 중·고등학교 연령이상에 대한 지원을 주로 청소년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연구대상 아동을 초등학교 학령에 있는 만 7세-12세 아동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아동·가족에 대한 본 연구의 내용은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프로그램, 지원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다.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 기관 및 사업들간에는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서비스의 중복 혹은 공백이 나타날 뿐 아니라 빈곤아동·가족 혹은 가출·장애아동 등 특정한 서비스 대상만을 서비스 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시급한 아동·가족의 욕구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사후대처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 및 위험 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혹은 사전지원활동 성격의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시급한 아동·가족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흔히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제시되는 빈곤아동·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모든 유형의 모든 아동·가족이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동·가족 문제는 빈곤과 장애 등 몇 가지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가족 문제는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대부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서구의 경우, 아동의 어려움은 곧 그 가족구성원의 어려움 혹은 역기능적 가족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러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아동이 있는 가족의 위험을 제거하고 그들의 욕구를 사정(assessment)하여 각 가족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결과

학업중단과 가족해체는 물론 아동의 가출·비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현황은 어떠하며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맞춤형) 지원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넷째, 우리나라 아동·가족의 욕구는 어떠한가?

다섯째, 우리나라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은 어떠한가?

여섯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2. 연구내용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관련 자료 고찰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제시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확립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공공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는 물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련 자료를 고찰하였다. 첫째, 국내·외 학술문헌 등을 통해서는 (ㄱ)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념과 현황에 관련된 이론적 사항을 파악하고 (ㄴ) 아동·가족을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c)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행정관련 각종 자료를 통해서 (㉠)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공공지원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 아동·가족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별 세부사업내용을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으로 별도 발간하여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공공지원사업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⁴⁾.

2)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고찰

외국의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도출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인터넷 검색 및 문헌자료 검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대상 국가는 3개국으로 독일, 미국, 일본이 포함되며 각각의 국가별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다)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사례, (라)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 해당국가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4) 최근 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를 부처, 사업별로 보다 상세히 알고 싶은 경우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의 별도보고서인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이하 편람)을 참조하기 바란다. 편람은 아동·가족은 물론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부처 담당자에게 중앙행정부처 전반의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된 기준 자료는 각 중앙행정부처 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 안내, 관련법, 사업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 등이다.

3) 아동·주양육자 욕구조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관련 자료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서비스 이용실태, 아동·가족 유형별 복지욕구 및 욕구 우선순위,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결과 도출된 욕구조사 항목⁵⁾은 가능한 배제하여 불필요한 연구결과가 중첩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족구성원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의 편의와 현실적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모든 가족구성원이 다 포함되기보다는 아동과 부모를 주된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고 부모가 양육자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된 양육자(조부모)의 욕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태파악

선행연구고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주된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파악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로 선정된 대상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회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wee 클래스,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각 기관유형별로 기관을 무작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 공문 혹은 유선으로 협조요청 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전문가 조사의 경우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서비스 지원현황, 주된 이용층,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운 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 등이다.

5) 즉, 욕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에 나타난 기존의 아동·가족 욕구조사결과를 우선 살펴보았다.

5)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방안 모색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관련 자료 고찰,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고찰, 아동·가족 욕구조사 결과 분석,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태파악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협의회 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자료 고찰

각종 국가통계자료, 논문, 신문기사, 학술보고서 등을 통해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가족 유형을 분류하였다.

(2) 외국의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자료 고찰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선진 외국(미국, 일본, 독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방향 수립, 아동·가족 유형화, 아동·가족 욕구 사정, 아동·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범위 규정 등에 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은 실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성 수립 및 세부연구내용 확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2차 전문가 자문은 아동·가족 유형 분류 및 아동·가족 욕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세부내용 확정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3차 전문가 자문은 지역사회기관 역할 규정 및 한국형 아동·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안) 도출을 위해 실시되었다. 자문진은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각 2명씩 6명 내외였다.

3) 양적 연구: 아동·가족 욕구조사 분석

아동·가족 욕구분석의 목적은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동·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차로 기존의 국가차원의 욕구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전국의 18세미만 아동 혹은 그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욕구조사 결과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존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동·가족 욕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재분석하여 가능한 최근의 아동·가족의 욕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로 충분한 욕구조사가 불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 욕구조사의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 학력이하 아동의 99%이상이 학교에 다니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용과 주양육자용으로 분리하여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담임선생님이 아동이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용을 작성해 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아동·가족육구조사 세부내용은 (㉠) 지역사회 아동가족지원기관 이용경험, (㉡) 만족도, (㉢) 서비스에 관한 욕구, (㉣)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등이다. 조사대상자수는 아동 1,000명과 그 아동의 주양육자 1,000명 총 2,000명이며 전국의 아동인구비율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별 조사인원을 할당한 후 한 학교에서 최대 4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필요 학교수를 산정한 후 조사대상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 지역)이 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성별로도 각 지역별 남녀 청소년 비율이 가능한 1:1이 되도록 표집하였다⁶⁾. 조사시기는 2010년 10월-11월이며 통계데이터는 SPSS 1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⁷⁾.

4) 전문가 설문조사

우리나라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과 현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와 (전문가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아동·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가) 기관간 연계, 협력 현황, (나)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다) 수행사업현황 파악, (라)

6) 이와 관련하여 가족유형별로 인구 할당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의도적으로 가족유형을 할당하여 확인후 조사할 경우 해당 조사자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 의도적 할당은 배제하기로 하였다. 단, 설문문항에 가족유형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제대로 무작위 확률표집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자동적으로 해당 가족유형이 인구비율에 맞게 표집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7) 조사지는 아동용과 부모(주양육자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상에게 맞게 구성하되, 전반적인 조사내용 분류는 동일하게 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과 부모는 원칙적으로 동일 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한 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동·가족 조사 중 아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부모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가족의 아동, 부모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 (마) 국가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바) 연계·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설문조사는 16개 기관 2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회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wee 클래스,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기관전수가 10개소인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제외하고 각 기관별로 16개 시도별 각 1곳씩 16곳씩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이 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5)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이 외에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워크숍에는 연구진 이외에 관련부처 공무원,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현장전문가 5명 내외, 학계 전문가 3명 내외가 참석하여 2010년 11월에 개최되었다. 결과보고서의 중요내용은 2010년 12월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발표, 홍보되었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야 변화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기존에 가족을 보던 빈곤·장애·소수 아동·가족 중심 시각에서 보편적 아동·가족 서비스 중심 시각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 아동·가족 유형화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효과적인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빈곤, 한부모, 장애아동·가족에 치중된 아동·가족서비스 영역을 아동·가족 전영역으로 확대하는 능동적, 공격적 복지프레임 구축의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연구범위를 기존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양육, 교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는 만큼 가능한 포괄적 서비스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있으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공급 예측과 이에 따른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보편적, 일반적 아동·가족에 맞추어져 있고 욕구조사 대상 또한 아동 1,000명, 주양육자 1,000명 총 2,000명에 한정되어 있어, 인구학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예: 학교중단 청소년과 그 가족, 장애아동과 그 가족, 다문화가정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욕구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교적 특수한 유형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는 추후 각 유형별 별도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아동·가족을 위한 다양한 영역들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복지에 대한 개념적 영역을 보다 광범위한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분석

1.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개념
2. 우리나라 아동·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3.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II.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분석

1.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념

1)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즉, 학자에 따라 지리적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의를 하기도 하고(Warren, 1978; Harper & Dunham, 1959) 사회적 동질성(공동체적인 유대감 및 정서를 공유하는)에 기반을 둔 기능적 측면(Bellah et al., 1985; Hiemstra, 1972)에서 파악하기도 한다(이연, 2006; 홍승아·김혜영·조순주·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 2007).

주로 지역성을 강조하는 정의의 예로 Maclver는 “지역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공동생활권(area of common life)”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개인의 집합체를 지역사회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더하여 지역의 기초로서 지역성과 지역사회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Phillips(1993)는 “지역사회는 공통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공통의 역사와 공유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고도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짓는다. Leighton(1988)은 지역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공통적인 지역성, 공통의 규범이나 연대의식, 사회적 상호작용을 꼽고 있다(Voydanoff, 2001에서 재인용).

반면 지역의 관계적인 특성을 보다 강조하는 Bellah 등(1985)은 “지역사회란 사회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이들은 함께 통의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한다. Small & Supple(2001)은 “지역사회란 집단의식에 기반한 개인들간의 사회적 관계로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체성과 소속감, 신뢰를 함께 함께 공유하는 관계다” 라고 한다. Rossi 등(2001) 역시 지역사회의 개념을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사회적 집단” 으로 정의하고 있다(Voydanoff,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에는 두 가지 모두 지역사회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Ross, 1967; Bulmer, 1987)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연, 2006에서 재인용)⁸⁾. 즉, 지역사회의 정의를 지리적 위치, 영토적 근접성이라는 지역성의 물리적 기반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관계 등의 의식적 관계적 측면까지가 포함하여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학자로서 Heller 등(1989)은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영토적·지리적 측면에서의 지역성(territorial of geographic locality)과 인적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대의 질과 같은 관계적 지역사회(relational community), 그리고 집합적 정치력(community as collective political power)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ronfenbrenner 등(1984)은 지역사회의 중심 구성요소로서 일정 지역 내의 거주,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 연관된 경제적, 사회적 체계의 집합들, 일정한 동질적 정체감과 운명공동체 의식을 들고 있다. 그는 이 중 한 개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지역사회라고 정의한다(Voydanoff, 2001에서 재인용). Voydanoff(2001)는 지역사회 미시체계의 개념적 모델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구성요소를 지역사회조직(communitary social organization),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공식적인 자원봉사와 비공식적인 도움(formal volunteering and informal helping),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communitary satisfaction)으로 들고 있다. 이성·이지웅(2002)은 “지역사회(communitary)는 대체로 공동체 유대의 의식을 가지고 상호교류하며 생활하는 인간집단으로 주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이루는 사회” 라고 정의하면서 지역성과 사회적 유대를 동시에 강조한다. Hilly(1955)와

8) 오늘날에는 지리적·공간적 지역사회보다는 사회관계적 공동체요인을 강조하기도 한다(이연, 2006).

Willis(1977)은 지역사회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사람, 장소(place) 또는 지리적 영역(territory),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의 애착심(attachment) 또는 심리적 유대감을 들고 있다⁹⁾(이성·정지웅, 2006에서 재인용).

이들은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영역을 포함하지만 지역성(local to a population)보다는 집합성(collective for a people)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개인의 생활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는 지역성을 토대로 하면서 그 안에 생활의 공동성이라는 기능적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사회적·지역적 단위로 간주되며 지리적

9) 첫째, 지역사회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소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또한 장소 또는 영토가 지역사회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영토, 토지 또는 지리적 경계를 지역사회를 정의하는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장소(place) 또는 지리적 영역(territory)이다. Wilinon(1986)은 사람들이 모호한 영토의 경계를 가진 지역생태계에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경계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근린집단의 핵심적 특성을 찾고자 하는 경우 경계의 모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 또는 근린집단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큰 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자체의 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Christenson, 1982).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이다(Kaufman, 1959; Wilkinson, 1972, 1979, 1986).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거나 또는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는 기업체, 학교, 경찰서, 소방서, 산업체, 은행, 병원, 지방정부와 같은 집합적 조직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민을 위협하는 특정의 사건이 발생할 때 생긴다. Wilkinson(1986)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행동의 잠재력은 주민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려 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넷째,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의 애착심(attachment) 또는 심리적 유대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 공공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취업 및 사회화를 위하여 특정의 지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동일시하는 곳이다. 즉,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함께 모이고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에 동일감을 느끼고,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Wilkinson, 1986; 이성·정지웅, 2002에서 재인용).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유대감(common ties)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이연, 2006). 즉,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지역성(a locality), 지역의 사회(a local society), 지역성에 기초한 집단행동의 과정이라고 지적한다¹⁰⁾. 사회학적으로 지역사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지리적·공간적 지역사회보다 사회관계적 공동체 요인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이연, 2006).

지역사회의 개념에 일부 한계점¹¹⁾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 중의 하나는 개인과 사회를 실제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접착의 장이요, 장치(mechanism)이라는 점이다.

-
- 10) 지역성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함께 추구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지역의 사회는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한 공동체(associations)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뜻한다. 지역사회의 장(community field)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주민들이 지역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통하여 상호 관련된 행동을 표출하는 과정이다.
- 11)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의 발달이 급진전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의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지역성은 오늘날 경계가 모호하고, 지역사회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와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지역의 사회(a local society)는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 다국적 조직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체,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를 벗어나 다른 사회적 단체와 연결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 밖으로의 연계는 지역 내에서 형성, 유지되어 왔던 연계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지역사회활동의 장은 앞의 두 요소보다 더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화의 물결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해왔던 역할이 상당부분 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기능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Wilkinson, 1991; 이성·정지웅, 2002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지역사회주민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요구와 지역사회주민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지역사회나 지역사회조직은 사회행동의 실제로 외부의 지역사회나 지역사회조직과 연계 및 연합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때는 지역사회주민 개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다 큰 사회적 힘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가 모여 사회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이성·정지웅, 2002)의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는 지역성을 토대로 하면서 그 안에 생활의 공동성이라는 기능적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사회적·지역적 단위로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유대감(common ties)을 바탕으로 하는 것” 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II-1> 지역사회 유형(Rubin & Rubin, 1986)

종 류	개 념
가. 전통적 지역사회(traditional community),	특정 지리적 장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성된 지역사회로서 지역사회주민들은 혈연, 지연,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종교관 등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사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가족문제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전통적 지역사회에서는 개인들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인식되 기도 한다. 도시화 이전의 농촌부락이 전형적인 예이다.
나. 결속적 지역사회(solidarity community)	전통적 지역사회와 비슷하지만 전통적 사회에 비해 한 개 인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국적, 종교, 언어, 인종 등의 공통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함께 남기를 원할 때 이루어지는데, 보 통 이웃에 거주하며 살게 되며, 그 구성원들은 스스로 그 집단 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집단에 대하여 충성심을 느낀다. 전통적 사회보다 정의적 연계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다. 근린집단(nei ghborhood)	동일 지역의 거주에 기초한 연합을 근린집단이라 한다. 종교나 인종이라는 공통적 특성에 의해 결집된 지역사회가 아니라 같 은 지역에 산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연대감에 의해 형성된 지 역사회이다. 특정 사회에서 함께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같 은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고,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고, 같 은 종교시설, 같은 복지시설 등의 공통의 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 다 보면 그들을 연계시켜 주는 공통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근린집단에 기초한 사회는 전통적 사회나 결속적 지 역사회처럼 강력한 애착심은 없지만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한 일 종의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거주지에 대하여 애착심 을 느끼지만, 보통의 경우 이사 등으로 애착심이 약해진다. 따 라서 근린집단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애착심이나 개인적 연대보 다는 공통의 문제에 기초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 유한책임 지역사회(communit y of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 사회는 근린 사회처럼 강력한 애착심이 근원 이 아니고, 단지 공통의 관심에 의해 사회의 결속이 생기 는 것을 확대시킨 개념이다. 근린 사회의 범위를 넘어, 자 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제별로 근린집단에 참여하 는 연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과 사안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실제적 협동과 상호작용을 한다.

종 류	개 념
다. 잠재적 이익집단(latent interest groups)	실재하는 지역사회가 아닌 잠재적 이익집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계나 상호관계의 실재성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잠재적 이익집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는 아니다. 공통의 지리적 영역 없이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집단이지만, 이들 주민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문제나 이익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잠재적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나 여권신장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성운동 이외의 공통점은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바. 네트워크(net works)	구체적 주제에 기초하여 공통의 이익을 나누고 나누어진 이익에 기초하여 서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친구, 친척, 정부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같은 질병,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가족의 존재 등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찾아서 형성할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형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형성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사.사회적 계급(social class),	유사한 태도, 소득, 직업의 종류, 사회적 지위 및 권력수준 등에 기초하여 연결된 공동체이다. 이론적으로 공통의 문제가 조직화의 기초가 되지만, 계층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면 주제의 광범위성을 제외하고는 잠재적 이익집단과 유사하다.
아. 이해 지역사회(community of interest)	특정의 이해에 기초하여 가장 견고하게 통합된 지역사회이다. 공통의 문제인식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확립된다. 이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조직화의 산물이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Rubin & Rubin(1986)은 그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지리적 성격에 따라 크게 전통적 지역사회(traditional community), 결속적 지역사회(solidarity community), 근린집단

(neighborhood), 유한책임 지역사회(community of limited liability), 잠재적 이익집단(latent interest groups), 네트워크(networks), 사회적 계급(social class), 이해 지역사회(community of interest)의 여덟 가지로 나누고 있다(이성·정지웅, 2002에서 재인용). 세부개념은 위 표에 나타나 있다.

2) 아동·가족

아동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학술적 논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학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이라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에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어 9세이상 18세미만의 자는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령의 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서비스는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과 그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지원·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중학교 학령기 이상의 자를 주 정책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 즉, 법적 정의와 별도로 아동복지·지원·서비스와 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간에 이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행정편의적으로 이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으냐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욕구 및 필요, 발달적 특성이 다름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령기 연령의 아동과 그 이후 학력이 연령 아동을 동일한 잣대에서 접근하는 것은 연구대상의 특성을 흐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욕구와 청소년의 욕구는 아동복지의 초점이 양육지원에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복지의 초점이 역량개발, 보호 등에 맞춰져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에 적절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교 학령기인 만 7세-12세로 한정하고자 한다.

가족의 법적 개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 나타나 있다. 가족의 개념은 흔히 가정의 개념과 혼용되어 쓰여 지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은 제1항에서 “가족” 제2항에서 “가정”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국회법률지식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2010. 8. 19 검색).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의 제도적 개념으로 가정은 양육, 부양 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생활의 장으로서의 개념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법률상에 “가족”이라는 명칭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주로 거시적, 제도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법들에 활용되는 반면 법률상에 “가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법들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 주로 가정내 생활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들에 활용되는 점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세부내용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 법률」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일부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19] [여성가족부령 제 1호, 2010. 3.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u>탄력적 근무제도</u>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u>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u>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u>부양가족 지원제도</u> :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u>근로자 지원제도</u>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u>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u> 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1. <u>가족관계 증진제도</u>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u>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u>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u>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u>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http://www.law.go.kr>, 2010. 8. 31 검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과 아동을 가진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동·가족 보다는 법적 용어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가정”을 포함하는 아동·가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동과 그 주 양육자의 지원을 위한 공적체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임을 고려할 때 거시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용어인 가족을 사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부분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함을 고려해 볼 때도 가족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의 취지는 동법 제2조(정의)에 잘 드러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와 같다.

가족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에 대한 고전적 개념은 미국 인류학자 Murdock에 의해 정의 내려졌다. 그는 가족은 “주거를 공유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지워지는 집단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집단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를 갖는 최소한 2인 남녀를 포함한 성인들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Murdock은 가족을 혼인에 의하여 성립한 부부와 혈연 및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김두헌(1948, 1969)은 가족을 ‘친애의 정으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의 집단으로서, 한집에 거주하며 의식 기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그도 가족의 혈연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효재(1968, 1993)는 가족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이라고 하여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혈연과 입양은 중시하고 있다(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유영주(1993)는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

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 집단'이라고 정의하여 혈연과 동거 등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이상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볼 때 가족이란 혼인, 혈연 및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이며 공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정서적 및 정신적 유대와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숙, 2006). 그러나 최근에는 협의의 가족의 개념보다는 혼인, 혈연, 입양 외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기타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영위하는 집단까지도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Miller(1994)는 가족이란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Coontz(1997) 또한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여 혈연이나 입장을 통한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 정서적지지 기능을 하는 집단이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2005에서 재인용).

3) 맞춤형 지원서비스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념은 아직 학술자료나 법률자료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선행자료들에서는 “맞춤형”의 개념을 다양한 용어와 연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 또한 가족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가 선행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즉, “맞춤형 지원서비스”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선행연구나 법 적용어가 언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맞춤형”이라는 용어와 “지원서비스”라는 용어를 별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사한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용어를 검토

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춤형”의 정의와 “지원서비스”의 정의를 별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연결하여 개념정의하고자 한다.

(1) 맞춤형

우선 “맞춤형”의 용어를 학술자료나 법률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적 개념이나 각 부처의 업무보고 등에서 “맞춤형”이라는 용어는 서비스대상자의 욕구나 환경에 기반한 수요자 적합(fit)한 서비스나 정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5의 “맞춤형 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9조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제2조(정의)와 제2장의 “맞춤형 복지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인재정책실) 업무분장상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8조(직무)에서 “맞춤형 농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서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분장 중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건강정책국) 업무분장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에서의 “맞춤형산업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맞춤형 교육비용”,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의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경영기획실) 노사협력팀장 업무분장상의 “맞춤형 복지에 관한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기록정보서비스부) 업무분장상의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국회법률지식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2010. 9. 15 검색)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법률 속에서 “맞춤형”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률 내용 속에 “맞춤형”의 정의를 명시한 경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제2조(정의) 1에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한 것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②에서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를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고 명시한 것 이외에는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위의 정의 또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과 산업용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맞춤형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본 연구의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념으로 확대, 일반화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술연구에서 “맞춤형”이라는 용어는 위에 살펴본 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법률상에 드러난 정의들에 비해 비교적 자세한 개념정의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학술연구자료에서 조차 “맞춤형”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원성환(2010)과 박소담(2009)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제2조(정의) 1에 언급된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맞춤형”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며 조순금(2010), 최종숙(2010)과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건강정책국)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맞춤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이봉주·곽금주·박현선·양수·김남희·서정민·김연우·한지선(2009)은 유망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예시로 아동을 위한 “맞춤형 발달진단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¹²⁾. “맞춤형 발달진단서비스”를 제외하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살펴

12) 이 외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연구(서영주·장서영·이보민, 2009; 이택면, 2009),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김영주, 2009), 21세기를 위한 제안으로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는 연구(윤석용, 2009), 초등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연구(홍선주·김태은·황은영, 2009),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연구(보건복지

보는 “맞춤형”에 관한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무원, 직장인 혹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규정하려는 본 연구의 정의로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나 각 개념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들이 아동·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설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법적 제도별 “맞춤형”의 의미와 유형, 특성이 어느 정도 아동·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특성으로 대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는 부분적이거나 맞춤형의 의미와 특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부분에서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복리후생제도)를 살펴본 후, 두 번째 부분에서 부분적이거나 법, 국가차원의 정책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에서 맞춤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복리후생제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공무원 특히 군인의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원성환(2010)의 연구에서 저자는 국가조직 혹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정부 혹은 기업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정하면 종업원들은 본인의 선호도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를 띠고 있던 데 반해 맞춤형(혹은 선택적) 복지제도는 정부 혹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종업원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복리후생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수요자의 선택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Cafeteria Benefit Plan’, ‘Tailored Benefit Plan’,

가족부·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영양관리대책 개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맞춤형” 개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활용되어 지고 있다.

'Flexible Benefic Plan'이라고 부르기도 하며(송계전·박귀현, 1997; 원성환, 2010에서 재인용)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적인 복지제도라는 점, 수요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복지제도라는 점, 참여적 복지제도로 수요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의 설계와 집행단계에서도 전체 구성원 혹은 수요자의 대표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복지후생제도와 차이점을 갖는다고 말한다(박소담, 2010).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은 종업원 개개인의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customization)과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선택(choice)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Tropman, 2001; 원성환, 2010에서 재인용). 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³⁾.

<표 II-3>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과 단점¹⁴⁾

장점 ¹⁵⁾	단점 ¹⁶⁾
1. 수요자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가장 잘 맞는 복지제도를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수요자의 특성과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 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지에 대한 욕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3. 수요자와 그들의 가족이 자신들의 복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설계능력을 배양시킴으로서 수요자의 자율과 책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1. 전문가가 아닌 수요자들 스스로에게 복지제도 선택에 대한 판단을 맡김으로서 수요자가 정작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요자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에는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관리운영상의 비용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나 필요하거나 관련 담당부처 등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

- 13)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국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 논의될 수 있는 논란을 예상케 한다.
- 14) 보편적 “맞춤형” 복지로의 개념 적용을 위해 원저의 “근로자” 용어를 보편적 용어인 “수요자”로 “복지후생”을 “복지”로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 15)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모두 언급한 학자로는 Milkovich와 Newman(2002), McCaffery(1992)가 있으며 장점만을 언급한 학자로는

4. 한정된 재화에 한해 원하는 복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추가적인 비용 추가 부담 없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5. 수요자의 필요는 충족하면서도 총 복지비용의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복지비용의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제도와 옵션의 설계에 따라 수요자들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복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비용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6.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나 수요자 대표를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및 사후 평가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에는 반드시 전산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며 인적자원 정보시스템(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HRIS)의 도입이 전제조건이 된다. 3. 수요자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할 복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체제하에서보다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단계의 예상보다 실제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¹⁷⁾

* 출처: “원성환(2010). 맞춤형 복지제도가 군인의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재구성

- Barringer와 Milkovich(1998) 등이 있다(원성환, 2010에서 재인용)
- 16)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서조차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는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가 운영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기업의 52%는 여전히 전통적인 top-down 방식의 복리후생제도를 고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Scott, 1993; 원성환, 2010에서 재인용).
- 17) 미국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Caffery(1992)가 지적하는 기업이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를 거부하는 논리(원성환, 2010에서 재인용) 중 아동·가족맞춤형 서비스에도 적용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들은 대부분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둘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특정항목에 집중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 셋째, 관리상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넷째, 수요자를 이해시키고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까지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다섯째, 소비자들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단순히 약간 나아진 복지제도 정도로밖에는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세금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표 II-4>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분류기준	유 형	
가. 선택의 폭에 따른 분류 ¹⁸⁾	①전체선택(full flex)	모든 복지프로그램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
	②중간선택(medium flex)	일부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일부는 선택의 대상이 된다.
	③최소선택(mini flex)	극히 일부의 프로그램만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
나. 수요자의 기여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 ¹⁹⁾	① 수요자 기여포함(혹은 급여차감플랜, salary reduction plan)	보통 자신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거나 혹은 사전에 정한 보험료를 급여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수요자 기여 불포함(plans no employee contributions)	수여자의 기여를 포함하지 않고 오직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지 항목 가운데에서만 선택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 복지항목 설계의 유형에 의한 분류 ²⁰⁾	① 모듈선택형(Modular plan or Prepackaged Flex)	모듈선택형은 수요자가 다양한 복지제도의 조합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모듈 혹은 패키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각각 그 수준에 차이를 두고 골고루 섞어서 여러 모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²¹⁾
	② 선택항목추가형(Core plus option of Core Carve-out plan)	선택항목 추가형은 모든 수요자에게 최소한의 복지항목(core 항목)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수요자들 개인에게 부여된 일정점수(credit) 한도 내에서 공통항목의 수레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핵심항목 외에 별도의 항목(option)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²²⁾
	③ 혼합선택형(Mix and Match)	수요자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지제도 내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복지제도를 자신의 니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²³⁾
	④ 유연소비계정형(Flexible spending account)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한 복지지원금액과 개별수요자가 각출한 금액을 수요자 개인의 복지계좌에 예치하고 수요자들은 이 계좌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복지항목의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²⁴⁾

* 출처: “원성환(2010). 맞춤형 복지제도가 군인의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군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과 “김원식·권병구 편(2003),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이해: 21세기 근로복지의 방향. 서울: 도서출판 흥” 을 재구성

18) 일반적으로 전체 선택의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경우 중간선택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간 선택과 최소 선택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원성환, 2010).

19) 미국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들의 세전 급여에서 차감하여 적격 맞춤형(선택적) 복지를 구입하는 경우 그 급여분은 자신들의 급여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의 급여에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구입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 20)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항목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는 달라진다.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계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급자들은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설계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택항목 추가형을 기본틀로 하고 혼합선택형과 유연소비계정형을 가미한 형태의 설계가 가장 일반적이다.
- 21) 모듈선택형은 설계를 통해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므로 수요자가 쉽게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계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반면, 일단 설계를 하고 나면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에 사전에 모든 것을 정해 놓기 때문에 경직성을 띠며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데 제약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모듈선택형은 수요자들이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제도를 설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초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요자들의 구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유사한 복지욕구를 가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용이할 경우 바람직한 제도이다(원성환, 2010).
- 22) 핵심항목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복지거나 법으로 정해져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정복지가 포함되며 모든 수요자가 핵심항목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선택항목추가형은 모든 수요자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무적인 가입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수요자의 서로 다른 개별욕구도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핵심항목을 제외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시 특정항목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관리의 부담이 늘어난다. 선택항목추가형은 수요자들이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선택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김소담, 2009; 원성환, 2010).
- 23) 예를 들면 한 복지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선택을 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점수(credit)로 다른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하거나 혹은 현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급여차감플랜과 함께 활용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할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 삭감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혼합 선택형은 복지항목 뿐만 아니라 수준까지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서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자율성이 높은 만큼 특정 복지항목에 집중되는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날 위험도 있다. 또한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선택항목 추가형과 마찬가지로 관리정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미국 기업들은 선택항목추가형에서 추가되는 복지후생 항목의 운영을 혼합선택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김소담, 2009; 원성환, 2010).

또한 저자는 맞춤형 근로자 복지제도의 유형을 선택의 폭, 법적 적격성 여부, 수요자의 기여 포함 여부, 복지항목 설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도 적용가능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분류는 부분적으로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저자는 복지의 공급자가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의 절약과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Lawler, 1981; 원성환, 2010에서 재인용)을 지적한다. 저서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사회, 국가적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기업과 국가의 특성과 정책추진목표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성이나 정책효과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적인 맞춤형 제도는 주로 공무원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나 노인 등을 위한 제도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일반 아동·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활용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정된 재원하에서 다양한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24) 미국의 경우 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을 통해 유연소비계정형을 활용하는 것은 의료비와 탁아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개별 수요자가 자신의 세전소득에서 각출한 예산을 활용한다. 또한 한번 복지계좌에 예치한 예산을 1년 단위로 다 소비해야 한다. 만약 소비하지 않으면 다음해도 이월되지 않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Use it or lose it 원칙). 따라서 개별수요자가 복지계좌에 자신의 세전소득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의 예상 지출액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복지계좌에 예치하는 세전소득은 소득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조세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연소비계정형을 많이 활용하며 미국은 남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유연소비계정형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금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김소담, 2009; 원성환, 2010).

위해 아동·가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가족의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점수나 비용, 혹은 바우처 등을 지급하고 이를 수요자가 스스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하도록 하되 국가는 가능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제도의 초기단계이니 만큼 맞춤형 복지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확대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복지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는 각 가족유형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에 기반하여 유형별 모듈을 3-4씩 개발하여 유형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택의 자율성과 범위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이때 수요자가 전문성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전문가군을 지역 할당하여 자문이나 컨설팅 등을 진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동·가정의 경우보다 비교적 위기상황이나 취약상황인 아동·가족들의 경우 이러한 컨설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장의 3절 우리나라의 사업현황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혹은 복지에서 “맞춤형”에 대한 의미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정책에서 “맞춤형”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듯 하다. 특정 검색엔진에서 “맞춤형 복지” 혹은 “맞춤형 지원”으로 무작위 검색해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지원” 혹은 “맞춤형 복지”로 정책소식지를 발간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가 대략 50여건을 넘어섰으며 2010년 5월 17일에는 ‘수요자 중심·맞춤형 복지행정’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설명이 청와대 정책소식

(<http://photoessay.president.go.kr/gallery/view.asp?seq=121771&path=100517100133>, 2010.

9. 30 검색)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기업이나 국가차원의 맞춤형(선택형) 복지제도(복합후생제도)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맞춤형”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정책 자료에서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맞춤형”의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맞춤형”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각 기사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맞춤형” 정책 특성/설명

자료명(기사제목) (배포기준일자)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정책 특성/설명
청와대 정책소식: 수요자 중심·맞춤형 복지행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0.5.17)	청와대	○ 수요자 중심 ○ 복합적인 욕구해결
아산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2010.9.1)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자 중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337억원 투입 (2010.3.4)	경기도 평택시	○ 가구원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08년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강원도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천안시 “맞춤형 복지시스템 펼친다.”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 (2009.7.20)	충청남도 천안시	○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위기가정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호응’(2010.6.14)	전라북도 임실군	○ 대상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남구,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거점센터 구축(2010. 2. 17)	광주광역시 남구	○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김천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2010. 8.16)	경상북도 김천시	○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2009.8.4)	서울특별시	○ 장애특성과 ○ 본인의 선택을 반영하는
대전시, 다양한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2010.9.28)	대전광역시	○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위한 ‘맞춤형 복지’ 이런 지자체 없나요?(2010.4.20)	보건복지부	○ 저마다의 처지에 맞는 복지 제공
충남도,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5개년 계획 발표(2009. 2. 24)	충청남도	○ 다양성과 차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 출처: Google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 “맞춤형 복지” 혹은 “맞춤형 지원” 으로 검색하여 나타난 결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에서 살펴본 “맞춤형”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의 관점, 기업 및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한 관점, 현재 실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맞춤형” 지원 혹은 복지제도가 가지는 관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있어 “맞춤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있어 “맞춤형”이란 "아동·가족이 그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차별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혹은 민간의 체계적 사례관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가적 도움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이 스스로의 선호와 필요, 특성,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계획·선택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지원서비스

다음에서는 지원서비스의 개념을 법률상의 개념과 학술적 개념으로 나누어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관련개념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²⁵⁾. 우선 법률적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원서비스의 개념

법률상에 “지원서비스”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를 아동·가족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전직지원서비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항 2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2010. 9. 30 검색). 그러나 “맞춤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원서비스의 개념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한 유형분류나 설명, 유사

25)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하는 봉사활동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도 토지·자본·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나 정부 등이 재(財)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을 가리킨다(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18446>, 2010. 9. 30 검색).

개념들에 대한 유형분류나 설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서비스의 개념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에서 살펴보고 있는 지원서비스 관련개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②에서는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그 밖에 전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을 “전직 지원서비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로 규정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서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로 규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서는 d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6> 법률상의 지원서비스 개념

법률명	명칭	개념/유형/관련사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전직지원서비스	②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2010. 9. 30 검색

이 외에도 지원서비스의 유사개념으로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법률에서 살펴보고 있는 지원 혹은 서비스에 관한 유사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의2와 4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를 가정봉사서비스(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3에서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을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등으로 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2에서는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2010. 9. 30 검색).

다음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학술·정책자료들이 정의하는 지원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정책자료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유표근, 2008)와 “가족지원서비스”(김길자, 2008; 이문택, 2008; 이혜운, 2008; 정경아, 2007; 최선경, 2006; 황상남, 2009)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주거지원서비스”(남은석·

최은희·조경은, 2010),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강우진, 2009)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비교적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가족지원이란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개인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돕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족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들을 고려하여 가족 스스로 그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가족 스스로가 문제해결에 중추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정경아, 2007). 이러한 가족지원의 근거는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family as a whole)”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가족복지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가족성원의 문제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성원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사정하며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상남, 2009). 가족지원은 아동이나 특정 성인과 같은 특정한 개별가족 성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²⁶⁾(김성천, 2009).

Zigler와 Berman(1983) 등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을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을 강화하게 하

26) 지역사회에서 가족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오혜령·백은령(2007)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외부의 지원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으며 아동은 특히 부모(보호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동의 복지는 가족보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둘째, 복지국가가 축소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가족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기존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을 가족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정책이 선호되고 있다. 셋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별적 접근보다 가족단위를 이용한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가족개입을 선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한국에는 가족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는 것이다. 즉, 가족들이 그들 및 그들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능력강화(Empowerment)란 가족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점점 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Dunst(1990)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 및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별 가족 구성원과 가족 전체의 성장과 발달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족들에 대한 자원과 자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결국 가족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족과 그 구성원들이 보다 유능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황상남, 2009에서 재인용). 미국에서 사용되는 가족지원서비스는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s that assist and support parents in their role as caregiver)”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아동에 대한 조기 발달 및 건강검진, 부모교육, 가정방문, 가족지원 센터 운영,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단기휴가서비스(respite)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7; 이혜윤, 2008에서 재인용).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2007)은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나 국가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보는 생태체계론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가족원의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족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의 문제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경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또한 가족 전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넓게는 국가의 정책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가족지원은 아동 및 그 가족의 요구를 진단하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및 서비스를 확인한 후, 그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을 얻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자녀의 발달을 촉진

하고자 하는 것이다. Knoll 등(1990)에 의하면 전문가와 가족들은 “가족 지원이 가족 및 아동들로 하여금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가족지원 체계와 전문가는 가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원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선택하도록 더 많이 격려하고 가족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면 할수록 그들은 가족의 능력을 더 많이 강화한다는 것이다(정경아, 2007에서 재인용).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의 아동가족국은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로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지원서비스는 부모의 강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달적 지연, 가족해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움으로서 부모의 역량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증진시킨다. 가족지원의 원칙은 관련전문가(staff)와 가족간의 파트너십 강화, 지원의 원천으로서의 가족(families as sources of support),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의 존중(appreciation of cultural, raci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지역사회강화전략으로서의 가족지원(family support as a strategy for community building),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전반에 걸친 통합적 가족지원가치 등이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childwelfare.gov/supporting/support_services/introduction.cfm, 2010. 9. 30 검색).

요약컨대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의 구조 및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별 과업, 가족의 자원, 가족의 강·약점, 가족의 심리적,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욕구와 필요, 주거와 여가, 건강과 위생 등 삶의 질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필요들을 지원하며, 지원이 정상적으로 미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때 야기될 수 있는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예방적, 치료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또한 위 가족지원서비

스의 맥락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아동·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유사용어를 포괄한 통합적 개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하겠다.

② 지원서비스의 내용

다음으로 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유형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법률상에 규정된 아동 혹은 가족 지원 혹은 서비스 내용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지원서비스” 관련 정의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의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 등을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의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산전·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하는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 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각종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 생활지도원 배치,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 「장애인복지법」 제 55조의 중증장애인과 임신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차) 「장애인복지법」 제57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상태 등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학술, 정책자료에서 살펴본 지원서비스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상남(2009)²⁷⁾은 가족지원서비스의 예로 경제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가족관계지원서비스를 들고 있다. 이문택(2008)은 아동가족지원서비스의 예로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재택 및 순회프로그램), 지역·사회지원서비스(사회보험, 공공부조, 주·단기보호서비스, 취업알선 정보), 가족관계지원서비스(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 생계지원서비스(생계비

27) 황상남(2009)와 이문택(2008) 등의 연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반적인 아동·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겠다.

지원, 아동수당지원, 세금 및 생활요금 감면), 의료지원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이해운(2008)은 가족지원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인 가족상담사업(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전후상담, 재혼가족상담, 기타 가족관련상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자녀관계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 사소통증진교육, 기타 가족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가족봉사단 활동, 가족사랑 캠페인, 자조모임지원, 가정의달행사, 기타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족아동야육지원사업, 맞벌이가정 방과후돌봄사업),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소식지개발 및배포, 가족 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가족지원서비스로 보았다. 한편 최선경(2006)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29개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적응장비서비스(Adaptive equipment services), 옹호서비스(Advocacy service), 건축·집개조(Architect/Home modification), 행동관리(Behavior management), 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 현금보조/재정적 지원(Cash subsidy/Financial assistant),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Community outreach services), 데이케어서비스(Developmental day care services), 진단과평가서비스(Diagnostic and evaluation services), 일반교육과 특수교육(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후견인/미래 설계(Guardianship/Future planning), 생활지원 및 훈련서비스(Habitual services/Training), 보건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가정건강지원/보철장치제공(Home health Aids/Prosthetic Devices), 가족건강서비스(Home health services), 가사도우미/수발자/케어서비스(Homemaker/Attendant/Personal Care Services), 개인·가족상담(Individual/Family Counseling), 정보와 연계서비스(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가정안에서의 휴식/수발자 서비스(In-home respite/sitter services), 가정밖에서의 휴식 서비스(Out-out-home respite services), 부모·가족·형제지지 그룹, 부모·가족훈련(Parent/Family Training), 부모간의 지원(Parent-to-parent support), 여가활동(Recreational Activities), 고용지원서비스

(Supported employment services), 생활지원서비스(Supported living services),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s), 처치/치료서비스(Treatment/Therapeutic Services), 직업/훈련서비스(Vocational/Habitual services) 등이다.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의 아동가족국은 가족지원서비스의 유형을 또래지원 및 상담(Peer support and counseling), 초기발달검사(early developmental screening),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초기아동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 아동양육(childcare) 그리고 휴식보호(respite care), 가정방문(home visits), 가족지원센터(family resource centers), 학교연계서비스(school-linked services), 여가(recreation), 직업·기술교육 혹은 훈련(job or skills education or training)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자원의뢰 혹은 연계(Referral & linkage to resources), 아웃리치(Outreach) 등을 들고 있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 일반인구(general population)는 물론 혹은 인종/문화적 소수민족, 청소년 부모, 아동을 대신양육하고 있는 친족부모, 신체·정신적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가족 혹은 약물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등과 같은 표적인구(target particular)들을 포괄한다. 이들은 가족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은 포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가족지원서비스와 별개로 가족유지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s) 들고 있다²⁸⁾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childwelfare.gov/supporting/support_services/introduction.cfm. 2010. 9. 30 검색).

28) 가족유지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는 단기간(short-term)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family-based) 서비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동안 양육과 가족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고자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1970년대부터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가정밖보호(out-of-home care)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대한 반발로 발달되게 되었다. 가족유지서비스는 아동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인식과 아동을 가족에서 선별리 분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가족유지서비스는 부모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많은 아동들이 가정내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호되고 양육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ttp://www.childwelfare.gov/supporting/support_services/introduction.cfm. 2010. 9. 30 검색).

이봉주 · 광금주 · 박현선 · 양수 · 김남희 · 서정민 · 김연우 · 한지선 (2009)는 아동발달영역별 주요 특성에 따라 필요서비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II-7> 아동발달영역별 주요 특성과 필요서비스 분류

발달영역분류		발달단계별 필요 서비스 내용 분류		
대분류	중분류	취학전	학령기(초등)	청소년기(중고등)
아동발달 (development)	인지 · 언어	사물에 대한 호기심,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의 형성, 학습에 대한 흥미(→기초학습능력), 기본인지 기술 발달 스크리닝	기초학습능력의 습득,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학습 책략 발달 지원	자기주도적 심화학습 능력, 복합적인 개념과 과업수행을 위한 언어능력, 공감, 성취에 대한 기대감 형성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건강한 출생, 균형잡힌 영양, 최적의 신체발달조건, 적절한 활동능력 스크리닝	균형잡힌 영양, 최적의 신체발달조건, 적절한 활동능력 발달 지원	균형잡힌 영양, 규칙적인 운동, 건강증진과 보호, 신체적 성적 성숙에 따른 바른 성지식 습득 지원
		영유아 신체적 발달검사, 장애 조기진단 및 치료(반응성 애착장애, 자폐증 등), 학대·방임 발견 및 예방	ADHD, 학습장애,品行장애, 우울, 불안 등 학령기 아동의 행동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 학대·방임 발견 및 예방	品行장애, 왕따, 폭력, 자살, 흡연, 음주, 약물남용, 게임중독 진단 및 치료,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예방
	정서 · 행동, 사회성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안정감 형성, 긍정적인 정서 발달 스크리닝,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협동(또래관계),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자율성과 주도성) 지원	긍정적 자아인식, 자존감, 자기효능감, 낙관성 및 행복감 발달 지원, 안정적인 또래관계, 학교적응, 규칙과 질서 준수, 부모 및 성인과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지원 등	자아정체감, 자기통제능력, 안정성, 독립심, 공감능력 형성 지원, 건강한 친구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관계, 성정체감, 긍정적인 세계관 형성 지원
	진로 성숙	해당사항 없음	진로인식(삶의 문제와 방식에 대한 인식 증진)	진로탐색(객관적인 자기이해와 직업탐색)
아동보호 (protection)	돌봄과 보호	취학전 돌봄서비스 일시 돌봄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자료출처: 이봉주 · 광금주 · 박현선 · 양수 · 김남희 · 서정민 · 김연우 · 한지선(2009).
유망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 시장조사 중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영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유사개념으로 2006년부터 공공서비스 체계가 전환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라는 협의의 복지를 넘어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영역의 범위를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의 8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유표근, 2008) 남은석·최은희·조경은(2010)은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서비스²⁹⁾의 영역으로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related support service)³⁰⁾를 지적하고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긴급연락명(community alarm) 서비스 등),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 설정·유지에 관련된 지원, 주택의 개량 및 수선 관련 상담, 가사 및 생활기술 습득, 가계관리 및 공공부조 등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기타 서비스와 관련항 상담·대변·접근 및 연락방법, 정서적 지지와 상담, 사회활

29) 이들은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human service),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등 여러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며,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 협의로는 ‘사회적 돌봄’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을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돌봄(care), 즉 기초 의식주 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아동·청소년, 가족, 보육, 장애인, 부랑인·노숙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남은석·최은희·조경은, 2010에서 재인용).

30)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주거서비스)를 가구자 적절히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라고 정의되기도 하며(남은석·최은희·조경은, 2010), 영국의 사례를 들어 ‘자신에게 적절한 주택을 확보 또는 유지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로 정의(ODPM, 2004)로 정의되기도 한다. 여기서 ‘독립적인 생활’은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구가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정착 또는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남은석·최은희·조경은, 2010에서 재인용).

동에 참여하기, 건강 및 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긴급연락망 설치 등), 대인돌봄서비스(일어나기·잠자리들기·목욕 등 돕기, 식사제공·청소·세탁·쇼핑·집안일 지원 등), 의료돌봄서비스(약물처방·상처치료 등 외과적 처방,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치료케어 등)이 있다(Benett, 2005; 남은석·최은희·조경은, 2010에서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법적, 학술적, 정책적 아동·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개념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위 예시 중 가장 포괄적 내용을 내포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8대 영역(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별로 가능한 아동·가족지원서비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³¹⁾.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 영역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31) 이 분류는 본 연구의 대상인 만 7세-12세의 아동과 그 가족 중 주로 주양육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를 주로 포함하였다.

<표 II-8>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유형32)

구 분	내 용
가. 복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생활 및 신상에 대한 상담, 노인·보호자교육, 편의 제공),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간병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재활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가정방문·봉사서비스 ³³⁾ , 주간·단기보호서비스 ³⁴⁾),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가족내·외 가족휴가(respite) 서비스,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언어통역서비스, 다국어 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지원관련기관·단체서비스 연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적응교육서비스, 또래지원 및 심리상담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장애인)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각종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설비 제공,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통학차량 지원·통학비지원·통학보조인력의 지원), 각종정보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경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사회보험, 공공부조, 주·단기보호서비스), 가족관계지원서비스(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 생계지원서비스(생계비지원, 아동수당지원, 세금 및 생활요금 감면), 가족상담서비스(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전후상담, 재혼가족상담, 기타 가족관련 상담), 가족돌봄지원사업(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맞벌이가정 방과후돌봄사업),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현금보조/재정적 지원서비스, 데이케어서비스, 가사도우미/수발자/케어서비스, 부모·가족·형제지지그룹, 부모간(parent-to-parent) 지원, 아동양육지원, 가정방문(home visit), 대인돌봄서비스(일어나기·잠자리 들기·목욕 등 돕기, 식사제공·청소·세탁·쇼핑·집안일 지원 등),
나. 보건	초기발달검사(early developmental screening), 아동조기발달 및 건강검진 서비스,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장애인)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장애인)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호·의료 서비스·재활훈련, 의료지원서비스, 행동관리, 진단과 평가 서비스, 보건의 신체health care) 서비스, 가족건강/보철장치제공서비스, 처치/치료서비스, 신체(균형 잡힌 영양, 최적의 신체발달조건, 적절한 활동능력 발달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ADHD, 학습장애, 품행장애, 우울, 불안 등 학령기 아동의 행동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 학대·방임 발견 및 예방), 정신·행동, 사회성(긍정적 자아인식, 자존감, 자기효능감, 낙관성 및 행복감 발달지원, 안정적인 또래관계, 학교적응, 규칙과 질서 준수, 부모 및 성인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지원 등), 의료돌봄서비스(약물처방·상처치료 등 외과적 처방,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치료케어)
다. 주거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긴급연락망(communitary alarm) 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설정, 유지에 관련된 지원, 주택의 개량 및 수선 관련 상담),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폐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장애인)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생활지도원 배치, 건축·집개조
라. 고용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교육훈련), 고용지원서비스(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협·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알선), 진로상담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진로인식(삶의 문제와 방식에 대한 인식 증진)
마. 문화	여가활동지원서비스(특별한 예시 없음)
바. 관광	여가활동지원서비스(특별한 예시 없음)
사. 체육	여가활동지원서비스(특별한 예시 없음)
아.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재택 및 순회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자녀관계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기타 가족교육), 일반교육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부모·가족훈련, 직업·기술교육 혹은 훈련, 아동인지·언어교육(기초학습능력의 습득,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학습책임발달지원),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가계관리 및 공공부조 등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대변·접근 및 연락방법 등)
자. 기타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 캠페인),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소식지개발 및 배포,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학교연계서비스(school-linked services),

32) 이 표는 가능한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예시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기존 문헌의 용어나 분류체계를 가능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나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류는 연구자가 임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배분하였다.

33)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4)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우리나라 아동·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1) 아동 현황 및 전망

(1) 아동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0-19세³⁵⁾ 아동의 수는 2005년 현재 총 12,086,651명이며 이 중 6,334,225명(52.41%)이 남자, 5,752,426명(47.59%)이 여자이다. 전체인구는 47,041,434명이며 전체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69%(남자 26.99%, 24.40%)으로 1/4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II-9>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연령분류	2005		
	인구	남자	여자
0 - 4세	2,382,350	1,237,301	1,145,049
5 - 9세	3,168,887	1,654,228	1,514,659
10 - 14세	3,434,891	1,816,318	1,618,573
15 - 19세	3,100,523	1,626,378	1,474,145
계	12,086,651	6,334,225	5,752,426
전체인구	47,041,434	23,465,650	23,575,784
전체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25.69)	(26.99)	(24.40)

*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0. 9. 30 검색을 재구성

35)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18세까지이나 5세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통계 자료의 특성상 부득이 만 19세까지 연령을 제시하게 되었다.

0세-19세 아동인구현황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16.28%였으며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83.72%였다. 연령분류별 아동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0-4세 17.39%, 5-9세 17.18%, 10-14세 15.62%, 15-19세 15.20%)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10>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읍, 면, 동부

연령분류	2005		
	읍·면(%)	동부(%)	계(%)
0 - 4세	414,343 (17.39)	1,968,007 (82.61)	2,382,350 (100.0)
5 - 9세	544,450 (17.18)	2,624,437 (82.82)	3,168,887 (100.0)
10 - 14세	536,621 (15.62)	2,898,270 (84.38)	3,434,891 (100.0)
15 - 19세	471,309 (15.20)	2,629,214 (84.80)	3,100,523 (100.0)
소계	1,966,723 (16.28)	10,119,928 (83.72)	12,086,651 (100.0)

*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0. 9. 30 검색을 재구성

0세-19세 아동인구현황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 아동인구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8.49%, 부산광역시 6.81%, 대구광역시 5.30%, 인천광역시 5.66%, 광주광역시 3.38%, 대전광역시 3.29%, 울산광역시 2.51%, 경기도 23.91%, 강원도 2.99%, 충청북도 3.12%, 충청남도 3.94%, 전라북도 3.80%, 전라남도 3.70%, 경상북도 5.22%, 경상남도 6.64%, 제주도 1.24%를 차지한다.

<표 II-11> 우리나라 아동인구현황(0세-19세): 시도별

구분	2005					
	0-4세	5-9세	10-14세	15-19세	계	(%)
서울특별시	440,520	551,159	627,617	615,513	2,234,809	(18.49)
부산광역시	141,264	199,783	240,806	240,572	822,425	(6.81)
대구광역시	116,387	163,193	187,170	174,165	640,915	(5.30)
인천광역시	129,517	177,485	203,195	174,442	684,639	(5.66)
광주광역시	78,692	108,321	116,583	104,286	407,882	(3.38)
대전광역시	76,959	102,624	111,929	106,739	398,251	(3.29)
울산광역시	57,342	82,410	91,570	72,131	303,453	(2.51)
경기도	611,236	792,872	820,902	665,385	2,890,395	(23.91)
강원도	71,549	95,730	99,769	94,643	361,691	(2.99)
충청북도	73,416	99,429	106,124	98,694	377,663	(3.12)
충청남도	95,725	125,012	127,595	127,612	475,944	(3.94)
전라북도	87,770	121,655	129,117	120,556	459,098	(3.80)
전라남도	86,827	123,901	128,072	107,959	446,759	(3.70)
경상북도	121,880	164,844	172,429	171,437	630,590	(5.22)
경상남도	161,250	218,525	229,682	193,380	802,837	(6.64)
제주도	32,016	41,944	42,331	33,009	149,300	(1.24)
계	2,382,350	3,168,887	3,434,891	3,100,523	12,086,651	(100.0)

*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0. 9. 30 검색을 재구성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재학³⁶⁾ 아동수를 16개시도별 및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6개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초등학교 재학 아동수 3,474,395명 중 서울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수는 전체의 17.23%, 부산 6.07%, 대구 5.12%, 인천 5.56%, 광주 3.50%, 대전 3.30%, 울산 2.52%, 경기 25.33%, 강원 3.04%, 충북 3.19%, 충남 4.14%, 전북 3.90%, 전남 3.81%, 경북 5.05%, 경남 6.91%, 제주 1.33%를 차지한다.

3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http://edpolicy.kedi.re.kr>, 2010. 9. 30 검색)에 따르면 연도별 초등학교 취학률은 1990년 100.5%, 1995년 98.2%, 2000년 97.2%, 2001년 97.5%, 2002년 97.5%, 2003년 98.5%, 2004년 98%, 2005년 98.8%, 2006년 98.8%, 2007년 99.3%, 2008년 99%, 2009년 97.9%이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로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지만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대부분 조기유학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0)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 재학아동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II-12> 초등학교 재학 아동수(2009)

구분	학생수		
	계	(%)	여자
총 계	3,474,395	(100.0)	1,659,970
서울	598,514	(17.23)	287,562
부산	210,826	(6.07)	99,679
대구	178,029	(5.12)	83,075
인천	193,210	(5.56)	92,674
광주	121,590	(3.50)	58,227
대전	114,621	(3.30)	54,674
울산	87,693	(2.52)	41,141
경기	880,141	(25.33)	423,438
강원	105,480	(3.04)	50,479
충북	110,757	(3.19)	52,979
충남	143,961	(4.14)	68,984
전북	135,336	(3.90)	64,998
전남	132,503	(3.81)	63,509
경북	175,577	(5.05)	82,885
경남	240,129	(6.91)	113,769
제주	46,028	(1.33)	21,897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2009 교육통계연보.
초등학교 개황. 2010. 9. 30 검색

다음으로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및 초등학생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초등학생수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42.13%이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41.44%, 읍·면·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16.43%이다.

<표 II-13> 초등학교 지역규모별 현황(2009)

(단위 : 교, 개, 명(%))

구분	지역	학교수		학생수	(%)
2009	대도시	1,613	(5)	1,463,848	(42.13)
	중소도시	1,643	(7)	1,439,829	(41.44)
	읍지역	614	(25)	305,190	(8.78)
	면지역	1,587	(81)	218,144	(6.29)
	도서벽지	372	(256)	47,384	(1.36)
계		5,829	374	3,474,395	(100)

* 주 : (□)는 분교수이며, 전체에 미포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http://edpolicy.kedi.re.kr/EdInfo/Edpolicy/EdpStatLst.php?LstCary=B00806&ContCate=B008060201&Classify=Stat>. 2010. 9. 30 검색을 재구성

(2) 아동인구전망

다음으로 아동인구에 대한 전망을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1,309,174명, 2020년에는 8,558,147명, 2030년에는 7,514,020명, 2040년에는 6,558,390명, 2050년에는 5,321,535으로 추산되어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³⁷⁾. 전체 인구에서 0-19세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 23.14%, 2020년에 17.35%, 2030년에 15.45%, 2040년에 14.15%, 2050년에 12.57%로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³⁸⁾.

37)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인 0세부터 18세까지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10년에 10,655,337명, 2020년에 7,990,710명, 2030년에 7,104,232명, 2040년에 6,202,182명, 2050년에 4,992,440명으로 추산된다.

38)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인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인구를 기준으로 전체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1.80%, 2020년 16.20%, 2030년 14.61%, 2040년 13.38%, 2050년 11.79%이다.

<표 II-14>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2010-2050)

연령별(전국)	2010	2020	2030	2040	2050
	추계인구				
계	48,874,539	49,325,689	48,634,571	46,343,017	42,342,769
0 - 4세	2,201,465	1,919,300	1,815,629	1,398,120	1,159,021
0세	438,169	380,694	354,977	267,479	227,902
1세	439,839	379,968	359,553	271,988	228,924
2세	442,457	381,540	364,270	278,480	231,240
3세	443,947	385,768	367,567	285,960	233,977
4세	437,053	391,330	369,262	294,213	236,978
5 - 9세	2,517,298	2,050,833	1,836,282	1,606,387	1,238,746
5세	447,025	397,615	369,478	303,066	240,210
6세	473,567	403,915	368,435	312,238	243,642
7세	487,457	410,418	366,769	321,605	247,435
8세	524,339	416,675	364,716	330,599	251,509
9세	584,910	422,210	366,884	338,879	255,950
10 - 14세	3,188,145	2,148,028	1,873,425	1,772,722	1,365,314
10세	614,613	426,785	370,962	346,003	260,780
11세	612,031	430,021	371,626	351,750	266,134
12세	631,223	432,301	372,928	356,140	272,313
13세	655,380	433,263	376,631	358,957	279,309
14세	674,898	425,658	381,278	359,872	286,778
15 - 19세	3,402,266	2,439,986	1,988,684	1,781,161	1,558,454
15세	687,177	434,308	386,456	359,204	294,689
16세	691,595	458,480	391,208	356,941	302,548
17세	690,506	471,479	397,134	354,996	311,340
18세	679,151	508,282	404,098	353,812	320,782
19세	653,837	567,437	409,788	356,208	329,095
계(0-19세)	11,309,174	8,558,147	7,514,020	6,558,390	5,321,535
계(0-18세)	10,655,337	7,990,710	7,104,232	6,202,182	4,992,440
전체인구에서 0-19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23.14	17.35	15.45	14.15	12.57
전체인구에서 0-18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21.80	16.20	14.61	13.38	11.79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0. 9. 30 검색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자료로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2) 가족 유형별 현황 및 전망

(1) 가족 유형별 현황

가족을 유형화하는 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왔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 문화, 인구학적 상황(장애아동가족, 다문화가족, 빈곤가족 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르러 맞벌이 가족, 단독가족, 기러기가족, 무자녀가족, 주말부부(통근)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동거가족, 실험 또는 계약결혼,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국제결혼 이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개별적 상황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가족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혼재되어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공통된 분류체계를 찾기도 여의치 않다. 연구자는 가족에 대한 유형분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연구목적과 가장 부합한 것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아동·가족유형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이 유형에 따라 어떠한 욕구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비교적 논란이 적고 명료하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유형을 가장 대표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의 분류에 따라 가족의 유형을 가족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족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위에서 살펴본 16개 시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초등학생수를 안배하여 무작위 추출한다면 자연히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빈곤아동·가족, 다문화가정아동·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비록 빈도는 적지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하였다³⁹⁾. 이혼가정이나 다

39) 이를 위해 설문지 문항 내에 가족의 사회, 문화적, 개별적 특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문화가정아동·가족 등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설문에 응하는 가족들이 일련의 유사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일반가정과의 묵시적 괴리감이나 학교 내에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아동만을 별도로 구별하여 설문을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이나 사회적 낙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도 이러한 구조적 유형을 채택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단, 모든 초등학교 재학 아동·가족을 무작위로 조사할 경우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포함 될 수 있는 빈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은 가족의 사회문화적 유형별 분류에 따라 각 아동·가족을 접근한 다양한 주제별 연구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가족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비교인 만큼 가능한 다양한 가족유형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가능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작위추출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가족의 가족유형별 현황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5> 한국가족의 가족유형별 현황 및 변화양상(1975-2005)
(단위: %)

가족구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세대	부부가족		4.8	6.3	7.1	8.3	10.8	12.3	14.2
	기타		1.9	2.3	2.5	2.4	1.8	1.9	2.0
2세대	부부+미혼자녀		51.7	53.0	52.8	51.9	50.4	48.2	42.2
	한부모가 구	편부가구	11.2	9.3	8.9	7.8	1.3	1.5	1.8
		편모가구					6.1	6.3	6.8
	부부+양친		0.1	0.2	0.2	0.2	0.2	0.2	0.1
	부부+편부모		0.4	0.4	0.5	0.6	0.7	0.8	0.8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1	2.3	2.3	1.7	1.0	0.6	0.5
	기타	조부모+손자녀	3.4	3.2	2.3	4.0	0.3	0.3	0.4
		기타	—	—	—	—	3.3	2.8	2.8
3세대	부부+자녀+양친		1.9	1.9	1.9	1.7	1.3	1.1	0.9
	부부+자녀+편부모		8.5	7.9	7.2	6.7	5.5	4.5	3.6
	기타		8.8	6.7	5.3	3.8	3.0	2.6	2.4
4세대이상			0.9	0.5	0.4	0.3	0.2	0.2	0.1
1인가구			4.2	4.8	6.9	9.0	12.7	15.5	20.0
비혈연가구			—	1.5	1.7	1.5	1.4	1.1	1.4
비정형가구비율*			18.8	18.8	19.7	22.5	21.4	24.7	30.4
평균가구원수(명)			5.0	4.5	4.1	3.7	3.3	3.1	2.9
여자가구주비율			—	—	15.7	15.7	16.6	18.5	—

*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최희경 외(2005: 248)의 표
를 보완한 김혜영(2008)과 김미숙(2007)을 재구성

* 주: 비정형가구 비율=한부모가구+조부모와손자녀가구+1인가구+비혈연가구

2005년 총 가구수는 약 15,887,000가구(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이다. 이들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가족 16.2%, 2세대 가족 55.4%, 3세대가족 6.9%, 4세대이상 0.1%, 1인가구 20.0%를 차지한다. 비혈연가구는 1.4%이며 비정형가구(한부모가구, 조부

모와 손자녀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는 30.4%를 차지한다. 1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가족 14.2 %, 기타 2.0 %이다. 2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미혼자녀 42.2 %, 한부모가구(편부가구) 1.8 %, 한부모가구(편모가구) 6.8 %, 부부+양친 0.1 %, 부부+편부모 0.8 %,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0.5 %, 조부모+손자녀 0.4 %, 기타 2.8 %이다. 3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자녀+양친 0.9 %, 부부+자녀+편부모 3.6 %, 기타 2.4 %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대이상 0.1 %, 1인가구 20.0 %이다.

(2)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양상, 전망

다양한 선행연구(김미숙, 2006; 김승권, 2009; 김혜영, 2008; 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조적·사회·인구학적 변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가족은 항상 변하여 왔다(양옥경, 2000).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의 사고와 유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Carter와 McGoldrick(1999)는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체가 되어서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가와 관련된 질적인 차원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가족의 구조란 세대 가족구성원수나 가족성원간의 관계, 즉 결합형태(세대별 관계, 유형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미숙, 2006). 최근 30년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가족형태의 변화

우선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30년 동안 소인수화 경향이 크게 나타나 1975년 5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05년 현재 3명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 가구당 자녀수 감소, 직계가족의 감소, 청장년층의 만혼 및 비혼 증가 등의 영향을 해석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농과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1995년을 기점으로 가구당 가구원수가 도시보다 더 적어지게 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구학적 현상으로서 1인가구는 지난 30년동안 약 5배로 증가하여 이제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할 정도이다. 젊은 성인들이 직장,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시 지역에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미혼인 상태로 오랫동안 1인가구 형태를 취하거나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내에서도 부부가족은 지난 30년동안 약 2.8배가 증가한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부부와 양친과 자녀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역시 2005년에는 1975년에 비해 반 이하로 감소하였다(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표 II-16>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연도	일반가구 (천가구)	1인 가구	핵가족			직계가족		평균 가구원수
			부부	부부와미 혼자녀	한부 (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75	6,648	4.2	5.0	55.6	10.1	0.5	10.9	5.0
1980	7,969	4.8	6.5	57.4	10.1	0.6	10.6	4.5
1985	9,571	6.9	7.8	57.8	9.7	0.8	9.9	4.1
1990	11,355	9.0	9.3	58.0	8.7	0.9	9.3	3.8
1995	12,958	12.7	12.6	58.6	8.6	1.1	8.0	3.3
2000	14,312	15.5	12.3	48.2	7.9	1.0	5.7	3.1
2005	15,887	20.0	14.2	42.2	8.6	1.0	4.5	2.9

- * 출처: 1.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최희경의 표를 재구성한김혜영(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55-94.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최희경 · 이인숙,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5, 248를 재구

- 성한 김미숙(2006). 한국가족 어디까지 왔나?: 가족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보건복지포럼, 2006. 5월호, 5-19.
3. 통계청(2006). 200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를 재구성한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 “을 재구성

나.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 합계출산율은 1975년 약 3.5이었던 것이 1980년대 들어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떨어져 2005년에는 1.08에 이를 정도로 하락하게 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2007년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2008년 1.19로 다시 떨어진 상태이다. 출산율저하는 청장년층의 만혼경향과 비혼자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최근 총 혼인건수가 많이 줄어 조혼인율은 6-7%대에 머물고 있고 평균 초혼연령도 1975년과 비교해볼 때 2007년 남자는 4.3세, 여자는 6.3세가 높아져 남성의 초혼연령은 31세, 여성은 28세를 넘어섰다. 결혼시기가 지연되고 결국 독신으로 남게 되거나, 결혼 후에도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저출산은 그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7.2%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농촌은 당시 이미 노인인구 14%이상의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표 II-17>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

(단위: %)

연도	저출산					고령화		
	총혼인건수	조혼인율	평균초혼연령		합계 출산율 ²	노인인구비율		
			남	여		전체	도시	농촌
1975	283,226	8.0	26.8	22.8	3.47	3.5	1.6	4.6
1980	403,031	10.6	26.4 ¹	23.2 ¹	2.83	3.8	2.6	5.6
1985	384,686	9.4	27.0	24.1	1.67	4.3	3.0	6.8
1990	399,312	9.3	27.8	24.8	1.59	5.1	3.6	9.0
1995	398,484	8.7	28.4	25.4	1.65	5.9	4.3	11.8
2000	332,090	7.0	29.3	26.5	1.47	7.2	5.5	14.7
2005	314,304	6.5	30.9	27.7	1.08	9.3	7.2	18.6
2007	343,559	7.0	31.1	28.1	1.26	9.9	6.0	27.8

*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¹ : 1981년 남녀의 초혼연령임.

² : 15-49세 여자 1명당 평균 출생아수임.

다. 빈곤가족의 증대

최근 한국가족의 절대적 빈곤율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지만 IMF경제 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더군다나 상대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아동빈곤율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은 1.5배, 조손가구의 아동빈곤율은 5배가 높다는 지적이 있고, 자살의 원인이 빈곤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빈곤가족의 증가는 자살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은 1996년 7위에서 2006년 5위로 상승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1996년 14.1에서 2006년 23.0으로 나타났다(김승권, 2009).

<표 II-18> 도시근로자 빈곤율 변화 추이(시장소득 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절대 빈곤율	4.59	4.05	7.79	8.55	6.90	5.82	4.70	5.90	5.91	6.78	6.17
상대 빈곤율	9.40	8.67	10.84	10.78	10.19	10.32	10.06	11.29	12.33	12.41	12.25

* 출처: 김승권(2009). 통합·예방·맞춤형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5-17.

* 주: 절대빈곤율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함.

② 다양한 가족의 증가

앞에서 제시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단위의 조사결과로서 그 가족의 혼인관계, 혈연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한국가족은 지난 30년동안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분화되었는데 특히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이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졌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족이 증가했다. 전산업사회에서 빈곤,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가족해체의 주원인이었다고 한다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이혼, 재혼, 비혼, 국제결혼 등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함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특정한 유형의 가족이 문제가족인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문제가족이 될 수 있으며 문제에 처한 가족 역시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면 문제단계를 극복하여 기능적인 가족으로 변화할 수 있다(Chilman et al., 1988; 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금은 전형적인 가족유형(The family)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들(families)을 인정하고 각 형태의 가족이 그 가족형태 안에서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록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보다 더 튼튼히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증가한 몇 가지 대표적인 가족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이혼·재혼가족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허용적인 방향을 변화되면서 이혼율이 상승하였다. 1970년에 11,600건에 불과하던 이혼건수가 2003년에 정점에 달해 166,000여건에 이르렀다가 그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여 90년대 이후 전체 이혼건수의 70%이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이었고, 2002년 이후 60%대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에는 54%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십만명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여 지난 30년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누적 아동수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혼증가와 더불어 재혼건수도 2005년 46,351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24%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혼하는 부부들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 초혼여성과 재혼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남과 결혼하는 재혼녀 비율과 부부모두 재혼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

<표 II-19>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연도	1970	1980	1990	1998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이혼건수 (천건)	11.6	23.7	45.7	116.3	119.5	166.6	138.9	128.0	124.1	116.5
조이혼율 (건/인구 천명당)	0.4	0.6	1.1	2.5	2.5	3.4	2.9	2/6	2.5	2.4

* 출처: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나. 한부모 가족

과거에는 사별이 최근에는 이혼과 사별이 한부모 가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한부모 가구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모자가족이 약 80%, 부자가족이 약 20%를 차지하는데 최근 부자가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자가구의 경우 사별로 인한 모자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부자가구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부자가구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2005년에는 부자가구의 약 50%가 이혼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 이혼의 증가로 더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아동양육과 경제활동 부담이 한부모에게 집중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

<표 II-20> 부부의 혼인형태별 구성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남(초)+여(초)	92.6	92.2	90.6	89.5	89.7	81.9	73.8	77.2	77.3	76.1
남(재)+여(초)	3.6	3.5	3.7	3.5	2.8	3.4	4.2	4.2	4.3	4.6
남(초)+여(재)	0.8	1.2	1.7	2.5	2.6	4.9	6.4	5.5	5.7	6.3
남(재)+여(재)	3.0	3.1	4.0	4.5	4.9	9.6	14.7	12.5	12.2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한경혜·이정화·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 남(초): 남자초혼, 남(재): 남자재혼, 여(초): 여자초혼, 여(재): 여자재혼

<표 II-21>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1,000 가구, %)

연도	한부모 가구수 (A)	혼인상태별 모자가구(%)					모자 가구 비율 (B/A)	혼인상태별 부자가구(%)					부자가 구비율 (B/A)
		유 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유 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1995	960	21.0	58.2	9.3	11.5	100	82.0	29.5	39.3	29.5	1.7	100	18.0
2000	1,124	21.6	48.4	16.9	13.1	100	80.4	26.3	29.1	42.3	2.3	100	19.6
2005	1,370	24.4	39.4	23.9	12.3	100	79.1	22.3	25.8	48.8	3.1	100	20.9

* 출처: 통계청, 한경혜·이정화·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다. 조손가구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58,000가구로 전체 세대의 약 0.4%에 불과하지만 1995년 이후 10년 사이에 65.1%, 약 23,000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가구증가율 22.6%와 비교해볼 때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이어져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손가구 증가는 일차적으로 가족안정성 약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족안정성의 약화는 사회적인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이 깊다. 1997년말 IMF이후 진행된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근로빈곤의 증가 등이 저학력 저임금의 임시직 남성 노동자들의 빈곤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었고 실업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졌고 조손가족 증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손가구 비율은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나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중 조손가구 비율은 농촌이 도시의 2배이상으로 나타난다.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일부 도시 성인자녀들이 자녀양육책임을 농촌의 노부모에게 전가하고 한국적 부계혈연중심의 가족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농촌의 노부모들은 손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다. 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부모는 위기시 가족의 유대감을 대신해주고 여러 부정적인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가족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손가족이 핵가족 해체 후 대안적 가족형태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된다(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표 II-22> 전체가구 중 조손가구 비(도시/농촌 비교) 및 조손가구수

구분	조손가구 비(도시/농촌)			구분	조손가구 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전국	0.3	0.3	0.4	전국 (천명)	35,19	45,22	58,10
동부	0.2	0.2	0.3				
읍면부	0.6	0.6	0.7				

* 출처: 여성가족부(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라. 국제결혼(다문화가족)

국제결혼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에는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990년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교했을 때 8배, 10년전인 1997년과 비교했을 때 3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1995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인 남성의 결혼도 증가하였다⁴⁰⁾.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결혼 증가는 국제결혼 2세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다(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표 II-23> 국제결혼 추이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0	399,312	4,710	1.2	4,091	4,091	619	0.2
1991	416,872	5,012	1.2	4,439	4,439	663	0.2
1992	419,774	5,534	1.3	3,477	3,477	2,057	0.5
1993	402,593	6,545	1.6	3,436	3,436	3,109	0.8
1994	393,121	6,616	1.7	3,544	3,544	3,072	0.8
1995	398,484	13,494	3.4	3,129	3,129	10,365	2.6
1996	434,911	15,946	3.7	3,229	3,229	12,647	2.9
1997	388,591	12,448	3.2	9,266	9,266	3,182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7,304	5,015	1.5
2005	316,375	43,121	13.6	31,180	31,180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30,208	9,482	2.8
2007	345,592	38,491	11.2	29,140	29,140	9,351	2.7

*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40) 2007년 8월,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에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56%, 결혼이민자 14%, 외국인 유학생이 7%를 차지하였다(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마. 입양가족

1998년이전까지는 전체 입양아동 중 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아동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을 크게 앞섰지만 2000년대 진입을 전후해서 국외입양이 60% 아래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지르게 되었다. 입양의 동기도 ‘대를 잇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가정이 쓸쓸해서’ 혹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입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비공개 입양이 주를 이루었으나 공개입양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공개입양도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표 II-24> 입양가족 현황

구분	입양아동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1998이전	227,983	68,939	159,044
1999	4,135	1,726	2,409
2000	4,046	1,686	2,360
2001	4,206	1,770	2,436
2002	4,059	1,694	2,365
2003	3,851	1,564	2,287
2004	3,899	1,641	2,258
2005	3,562	1,461	2,101
2006	3,231	1,332	1,899
2007	2,652	1,388	1,264

* 출처: 통계청,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2), 1-14.에서 재인용

바. 그 외 다양한 가족들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을 바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여성의 역할변화,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 피임법의 발전 등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자발적 무자녀 가족을 증가시키고 있

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물학적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의 유전자를 선택해서 출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다수의 동거가족도 동성애 가족도 존재한다(한경혜·이정화·진미정, 2009). 본 연구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자세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

③ 가족 기능의 변화

다음에서는 한국가족의 기능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의 유지 및 존속,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 달성된다.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족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가족의 구조변화에 따라서 한국 가족의 기능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한국 가족의 주된 기능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취업 증가와 돌봄 기능의 약화

여성취업의 증가에 의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고학력화,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가구경제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많은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에 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즉, 1985년 41.9%였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06년 50.3%로 증가하였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전체가족의 약 1/3이 맞벌이 가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농경사회를 벗어나면서 가장 먼저 약화되었고 최근에는 가족원의 정서적·신체적 부양기능과 자녀양육기능도 약화되어 돌봄서비스의 사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가족기능으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가족의 여가

및 휴식기능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기능보다도 약화됨으로서 가족의 본질적 기능 및 역할이 와해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들 모든 기능은 해체가족에서 매우 약한 양상을 보여준다. 게다가 가족생활의 어려움 극복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맞물려 가족원에 대한 돌봄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 2009).

나.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가계부담의 증가

전국출산력 및 가족복지실태조사의 “자녀양육책임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어도 대학 졸업시까지의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고, 취업 또는 혼인하여 분가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경우도 38.9%나 되었다. 평균 혼인연령을 생각한다면 한국부모는 짧게는 약 25년, 길게는 약 30년 동안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갖는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미만 아동(18세이상 대학생 포함)의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2006년 91만 2천원으로 2003년의 74만 8천원에 비하여 1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불과 3년 만에 18.0%의 자녀양육비 증가를 보였다. 이를 가구단위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58만 5천원으로 2003년의 135만 8천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46.8%, 2006년 46.4%이었고 가구 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57.4%, 2006년 56.0%였다(김승권, 2009).

위와 같은 일련의 가족 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김미숙(2006)은 한국가족의 기능변화 양상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II-25> 가족의 기능과 한국가족의 기능변화 양상

가족의 기능	개인에 기여한 점	사회에 기여한 점	가족에 영향을 준 결과	한국가족 기능변화 양상
재생산과 가족집단 형성	· 소속감 제공 · 정체성 제공(개인적, 사회적) · 삶의 의미와 방향 제공	· 성적 통제 · 사회구성원 재생산(종족 보존)	· 긍정적 측면 - 가족에의 헌신 및 유지 - 계획된 출산 · 부정적 측면 - 동거, 이혼, 혼외출산, 혼전출산, 무자녀부부	· 약화 - 예: 동거, 이혼, 혼외출산, 혼전출산, 무자녀부부
경제적 지지	· 의식주 등 기본자원 제공	· 건강한 사회구성원 지원	· 긍정적 측면 - 적절한 의식주 제공 · 부정적 측면 - 아동유기 및 방임	· 약화 및 대체 - 예: 상업화, 단독가구
양육, 교육 및 사회화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 도움 · 사회적 가치와 규범 주입	· 생산적 사회구성원 역할 교육 · 성인이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 · 반사회적 행동 통제 및 위험으로부터 사회보호	· 긍정적 측면: - 가족간의 사랑 및 상호지원 - 부부간의 헌신 및 만족 - 자녀와의 유착 · 부정적 측면 - 가정폭력, 자녀학대	· 약화 및 대체 - 예: 학교, 보육시설
노약자 보호	· 노약자 보호 및 지원	·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	· 긍정적 측면 - 자녀보호 · 부정적 측면 - 노인학대 - 장애가족 시설보호	· 약화 및 대체 - 예: 노약자 보호시설, 부양 의식 약화

* 출처: Patterson, J. M(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353; 김두섭 · 송유진 · 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3.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람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간략히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유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⁴¹⁾).

1)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2010년 현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중앙행정부처별 지원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기존의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서비스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구축되어 실행되지만 사실상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아동·가족에게 전달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아동·가족지원서비스를 연구자와 일부 전문가가 그들의 시각에 기준하여 지역사회 아동·가족지원서비스로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경우 아동·가족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서비스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가능한 아동·가족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아동과 그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지원프로그램, 사업을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서비스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 II-26>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중앙행정기관명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여성가족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RED ZONE) 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청소년선도(보호)시설,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 사업, 청소년증 사업.

중앙행정기관명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 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 우수학교,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및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체계, '그린스쿨'.
문화체육관광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문화·체육·관광 바우처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지원.
국토해양부	보증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희망 근로 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 집수리 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계 지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시스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청소년 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운영 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명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제 2 하나원 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 정보시스템 구축.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고용노동부	직업전문학교, 구인·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 운영, 사회적 기업.
농림수산식품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 지원 확대, 나눔 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
기타 중앙행정기관	희망키움통장제(기획재정부),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2010년 현재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체계 중 아동·가족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체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 주민서비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민넷,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등이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 주민서비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 외부의 공공·민간기관 전산망을 연결하여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지역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자격조회·신청에서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대국민 포털(oklife.go.kr)을 구축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3단계 5개년 사업('07년~'11년)계획으로 2010년 2월 현재 2단계 1차('08.12~'09.6) 구축사업과 2단계 2차('09.9~'12) 구축사업까지 완료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단계 1차('10.4~'12) 구축사업이 발주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제공에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종래에는 주민이 일일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여 필요한 주민생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였으나, 이제는 온라인(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행정지원업무시스템이 정착되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내용을 알아보면 사용자에 따라 일반 주민이 주된 사용자인 주민서비스 대국민 포털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서비스 업무담당자를 주된 사용자로 하는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양 시스템의 정보교환 및 외부시스템 간 송수신 역할을 수행하는 연계허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1]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 출처: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2010. 9. 30. 검색

대국민 포털의 주요 기능은 주민서비스의 종합적인 안내, 주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능,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는 기능 이외에도 주민이 대국민 포털로 신청한 내역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조회하는 기능,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등이 구축되어 있다. 행정지원시스템은 주민서비스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포털로 신청한 내역은 행정지원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기관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외에도 기관으로 직접 방문한 주민과의 상담내용, 제공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 및 신청기능을 보면 현재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관광·체육·문화 등 주민생활 8대 분야의 중앙서비스 281종과 232개 시·군·구의 지역자원 서비스 35만여 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중 3만여 건은 해당 기관의 방문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핵심 국정과제(5-2-1)로 구축한 주민생활 관련 8대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의 대국민 인터넷 접점역할기능을 기반으로, 시급성과 효과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 간(중앙-지자체-공공-민간) 정보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에서 결과까지 원스톱 완결형 처리방식을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 이외의 민간영역의 지역자원 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생활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주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및 서비스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기술 적용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보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서비스의 이용률, 주민 편익 및 지방행정업무 효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YS-Net 사업은 2008년 전국 16개 시도 및 65개 시·군·구의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81,002명의 위기 청소년⁴²⁾에게 434,281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 하였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 1388청소년지원단⁴³⁾ (구'1388서포터즈')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CYS-Net의 추진방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발굴·협력 체계를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계적 발굴 시스템⁴⁴⁾을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0년 166개소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

42) 위기청소년(Youth at Risk) : 학교·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약 93만 명으로 추정된다.(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 사업안내, 2010)

43)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 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4) 장기결석·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교육청)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중단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법 개정 시 장기결석·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제공하는 근거 마련 추진한다.

예정이며, (186개소(11년)→224개소(12년)→248개소(13년) 운영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시군구 센터 장 평균 3.7명 수준인 인력을 2013년까지 평균 6명으로 증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의무적 연계·협력체계를 마련⁴⁵⁾(총리훈령)하고 위기청소년 학습·자립 중심기관으로의 개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명칭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4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의무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공공기관(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한다.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기존 시·군·구별 새울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하여 구축하며, 2010년 1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한다. 또한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복지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행정내부망이므로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외부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내부 정보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09. 6. 9)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 상담, 연계하고, 사업별로 소득·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자료 전산연계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전국어디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면 관리망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복지대상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측면에서는 복지대상자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1인 1계좌제, 급여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담당자의 횡령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점 등을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2010. 1. 4일자).

(4) 위민넷

여성을 위한 공익포털사이트로서, 여성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준비에서 취업성공까지 필요한 커리어 관련 정보 수집 등 정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간 연대를 강화하고, 사이버를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009년에는 자기소개서 코칭, 이미지 메이킹 코칭, 취업·창업 가이드, 민간 채용정보, 생생 직업인 인터뷰, 포털 사이트 '커리어'와 연계한 채용정보 등을 통해 여성취업을 지원하였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이버 강의실,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실시간 상담실, 키워 여성정책 정보, 특집기사/캠페인 등 공익 콘텐츠, 문학집배원, 오디오북 등 다양한 인터넷 여성포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0년도에는 여성의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클리닉, 취업창업가이드, 채용정보 등 커리어 콘텐츠의 품질 제고하고, 여성 취업·창업 교육 및 상담의 온라인화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공익포털사이트로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이버 강의실의 직업·직무관련 강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허브로서의 위민넷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1년 이후에는 공익포털사이트로서의 여성정보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메카로써의 여성정책 정보망 구축을 구축하고, 여성가족부 공익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사이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강화 및 콘텐츠 운영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세상과 소통하는 위민넷을 운영할 것이다(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2010).

(5)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취업지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일자리 추진에 적합한 취업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사내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취업기관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Ⅲ.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정책

1. 일본
2. 독일
3. 미국

Ⅲ.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정책

1. 일본⁴⁶⁾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방향

내각부 공생사회정책총괄관이 주관이 되어 ‘어린이·육아 신시스템 검토회의(子ども・子育て新システム検討会議)’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 제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 회의의 취지는 ‘미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 대책(2009年12月8日閣議決定)’에 기초한 유치원과 보육일체화(幼保一体化)를 포함한 새로운 차세대육성지원을 위한 포괄적·일원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의장으로서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국가전략담당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저출산대책)이 맡게 되고 구성원은 총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그 외 필요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회의 하부 조직으로 ‘작업그룹’을 설치하고, 이 작업그룹의 구성원은 회의의 구성원의 부성의 부대신 또는 정무관 및 필요에 의해 의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방향과 저출산 사회대책회의, 행정쇄신회의 및 성장전략정책정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은 어린이, 보육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⁷⁾

첫째, 모든 어린이의 양질의 생육 환경 보장과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46) 이 장의 집필자는 대구한의대학교 황성하 교수이다.

47) <http://www8.cao.go.jp/shoushi/10motto/08kosodate/pdf/houkou.pdf>

둘째, 출산·육아(보육)·취직이라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회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알찬 생활이 가능한 사회
넷째, 새로운 고용 창출과 여성의 취업 촉진으로 활력 있는 사회
이러한 목적 하에 추진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육아를 사회전체가 지원, ② 이용자 (어린이와 육아 가정)본위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어린이·육아 가정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③ 지역주권을 전제로 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 실현, ④ 정부의 추진 체제의 일원화 등이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조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는데 ‘새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실현하게 된다. ① 정부의 추진 체제·재원의 일원화, ② 사회전체(국·지방·사업주·개인)에 의한 비용부담, ③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중시, ④ 유치원·어린이집의 일체화, ⑤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 ⑥ 워크·라이프·밸런스의 실현 등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幼保) 일체화에 의한 유아교육·보육의 일체적 제공이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 요령과 어린이집 보육 지침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과의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한 새로운 지침(어린이 지침(가칭))을 창설하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를 없애고 (보육에 장애가 되는 요건의 철폐 등), 새로운 지침에 기초를 두어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제공하는 ‘어린이원(こども園(가칭))’으로 일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유아교육·보육을 일체화한 ‘유보일체급부(가칭)’을 창설하는 것이다.

둘째, 일과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하는 것이다. 임신~육아 휴업~보육~방과 후 대책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육아 휴업의 급부와 보육을 일원화하여 제도로 보장하고, 육아 휴업 후의 원활한 보육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근무형태,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

를 독립적인 급부 유형으로서 창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의 벽(장해)’에 대응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취학 후의 방과 후 대책에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대책의 근본적 확충, 초등학교 이후도 방과 후 대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급부 메뉴 즉, 가정적 보육, 소규모 서비스, 단시간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른 아침·야간 등 보육 서비스, 사업소 내 보육 서비스 등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대기 아동의 해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집중적 정비나 다양한 제공 주체의 참여 등이 필요하게 된다.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다양한 급부 메뉴를 집중적으로 정비(어린이·육아 비전의 목표달성)하여야 한다. 비정규노동자, 자영업자, 구직자에게도 양립 지원으로서의 급부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급부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① 부모의 취직 상황에 응한 공적보육 서비스의 보장과, ② 시정촌의 관여 아래 이용자와 사업자의 공적보육 계약과, ③ 일정의 이용자 부담 아래,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고, ④ 필요한 급부의 보장 책무나 이용자의 지원 등, 시정촌의 책무를 명확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이콜 피팅(equal footing)에 의한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① 급부 유형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기준을 적합하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정 제도의 도입과, ② 시설 정비비용 (초기 투자비용)의 방향, 운영비의 용도범위, 배당, 회계 기준에 관한 일정한 규범화가 필요하다. 시설형 보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의 NPO 등에 의한 가정적 보육, 소규모 서비스 등의 대처지원의 확충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하에, 주요제도의 개혁과 창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5가지의 시점에서 바라본 제도적 개혁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주요 제도의 개혁과 프로그램

아동 육아를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일원적인 제도의 구축

· 사업마다 제도설계나 재원구성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아동·육아지원 대책을, 새로운 제도(시스템) 하에 재편성 → 이에 의해, 제도·재원·급부의 일원화를 실현하고, 사회전체가 아동·육아를 지원하는 체제를 실현

첫째,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의 포괄적, 일원적 제공이다. 여기에는 현금 급부·현물급부의 시정촌 재량에 의한 일체적 제공이 있겠다. 또한 유보(幼保)일체화의 실현(유보일체급부(가칭)의 창설)과, 기초급부와 양립 지원·유아교육급부의 2계층의 급부 설계에 의해 부모의 취직 상황에 따른 다양한 급부를 보장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초급부(가칭)로서 아동 수당, 일시 위탁이나 지역육아 지원 등, 모든 어린이의 보육환경을 지원하는 급부(1단계)이다. 또한 양립 지원·유아교육급부(가칭)는 유보일체급부(가칭)나 육아 휴업 급부 등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과, 유아교육을 보장하는 급부(2단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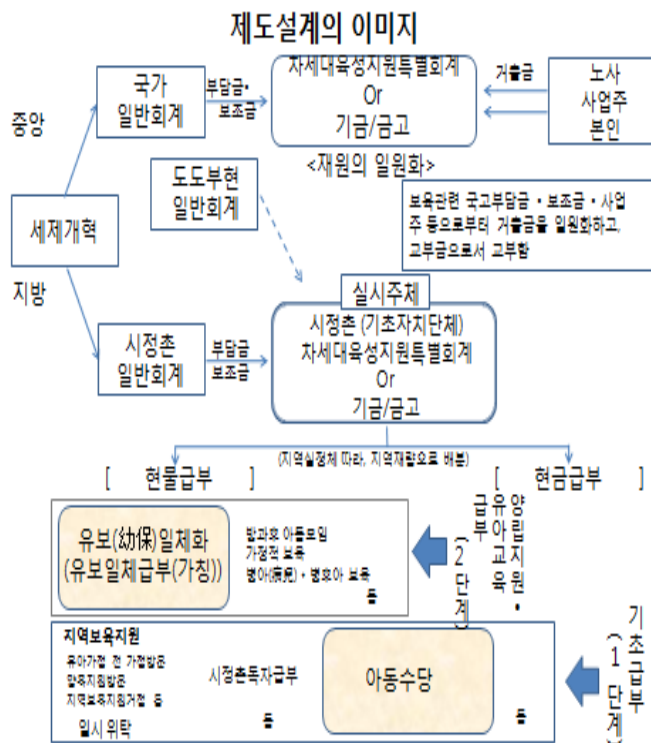
둘째,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자유로운 급부 설계이다. 이것에는 아동의 육아지원에 관한 권한과 재원은 원칙적으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있다는 것과, 새시스템 하에서 현금급부·현물급부의 편성(배분)이나 급부 메뉴의 설정(선택)등 시정촌이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급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아동·육아 기금(가칭)/특별 회계 창설에 의한 부담금·보조금의 포괄적인 교부이다. 시정촌이 자유도를 가지고 필요한 급부가 가능하도록, 새시스템에 관한 모든 아동 육아 관련 국고보조 부담금, 노사 거출 등에 의한 재원을 아동·육아 기금(가칭)/특별 회계로 단일화하고, 거기에서 시정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재원에 맞추어, 시정촌이 지역 실정에 적절하게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급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전체(국가·지방·사업주·개인)에 의한 비용부담이다. 사회 전체가 지원한다는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사업주·개인이 각각 비용을 부담한다.

다섯째, 새시스템 실시 체제의 일원화이다. 아동가정성(가칭)의 창설이다.

이를 위해 2011년 통상 국회에 법안을 제출, 2013년도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구재원을 확보하면서 2013년도의 본격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성장 전략책정 회의 등과의 연계과 지역주권전략회의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소 등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림 III-1] 신제도 설계의 이미지

* 자료 : <http://www8.cao.go.jp/shoushi/10motto/08kosodate/pdf/houkou.pdf>

또한 이러한 계획 하에 2010년 예산을 기초로 한 아동·가정관계 지출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현물급부는 1단계와 2단계를 합하여 21,100억원, 현금급부는 39,800억원이다. 1단계 현물급부는 지역육아지원거점에 700억엔을, 일시 위탁에 700억엔, 사회적 양호에 1,700억엔 등 모두 5,000억엔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현금급부로는 아동수당(아동수당 2월분 포함) 24,200억엔 등 합계 35,500억엔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양립지원과 유아교육급부 등을 위해 현물급부에 인가보육소등 10,700억엔, 방과 후 아동클럽 700억엔, 병아·병후아보육, 휴일·연장 등 1,000억엔, 취학전교육 3,600억엔 등 합계 16,100억엔, 현금급부에 육아휴업급부로 3,600억엔 등 합계 4,300억엔을 책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1,2단계를 모두 합해서 현물급부는 21,100억엔을, 현금급부는 39,800억엔을 책정하고 있다.

<표 III-1> 아동·가정관계지출액(2010년도 예산을 기초하여 추산)

구분	현물급부	현금급부
양립 지원· 유아 교육 급부 등(2 단계)	· 인가보육소 등 10,700억엔 · 방과후 아동클럽 700억엔 · 병아·병후아보육, 휴일, 연장 등 1,000억엔 · 취학전교육 3,600억엔 등 계 16,100억엔	· 육아휴업급부 3,600억엔 등 계 4,300억엔
기초 적 급부 등 (1단 계)	· 지역육아지원거점 700억엔의 내수 · 일시위탁 700억엔 내수 · 사회적 양호 1,700억엔 등 계 5,000억엔	· 아동수당(아동수당2월분포함) 24,200억엔 등 계 35,500억엔
합계	21,100억엔	39,800억엔

* 자료: <http://www8.cao.go.jp/shoushi/10motto/08kosodate/pdf/houkou.pdf>

다음은 이러한 지출부분과 함께 아동·육아 신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성장 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자(아동) 중심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필요한 아동에 예외 없는 보육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기분에 근거한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잠재적인 수요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둘째, 시정촌 책무 하에 이용자와 사업자의 공적 보육을 계약하는 것인데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 가능하도록 함이 중요하다. 셋째, 이용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보장인데 이용자에 대해서 일정 이용자부담하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넷째, 시정촌 책무의 명확화이다. 예외 없는 공적 보육 서비스 보장책무, 질적으로 향상된 공적 보육 서비스의 제공책무, 적절한 서비스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지원, 보육서비스 비용의 지불이 의무화 되어 있다.

다음은 다양한 이용자 욕구·잠재수용에 대응한 서비스량의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메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가정적 보육, 소규모 서비스, 단시간이용자 대상으로 한 서비스, 조조·야간 등 보육서비스, 사업소 내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유형을 창설하며, 각 유형별로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이퀄 피팅(equal footing)에 의한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객관적 기준에 의한 지정제 도입과 시설정비비(초기투자비)의 방향, 운영비 용처 범위, 배당, 회계기준에 대해 일정의 규범화와 NPO 등에 의한 가정적 보육, 소규모 서비스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방과 후 아동클럽의 양적 확충과 이용시간을 연장한다. 넷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이러한 체계 구축과 전략은 고용 확대,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확충, 소득 증대, 장래 경제사회를 젊어지고 나갈 세대의 증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2) 관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① 모자보건수첩(모자보건법)

임신 중 임신부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의 유아기 시대부터 초등학교 취학할 때까지의 건강 기록이 되는 것이다. 모자수첩에는 예방접종이나 병력을 기록하는 페이지도 있다.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지참해서 기록해야 하며, 어린이가 걸린 병도 기록해 두며, 처음 병원 수진 시, 유치원이나 학교의 입원·입학 수속 시에 도움이 된다.

② 산전·산후 건강관리(남녀고용기회균등법)

성 차별이 없고, 알찬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채용이라고 하는 직업생활에 있어서 남녀 균등한 기회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남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③ 산전산후의 건강관리 중 모성건강관리지도사항연락카드 활용

모자건강(母健)연락카드는 주치의 등이 실시한 지도사항 내용을 일일 가지고 있는 임신부가 사업주에게 명확히 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카드이다. 임신 중 및 출산 후의 건강진단 결과, 통근 완화나 휴식에 관한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등 주치의에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모건연락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서 발행하게 한다.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건연락카드를 제출해서 조치를 의뢰하게 된다.

48) 육아에 이용 가능한 제도들 사례는 <http://www8.cao.go.jp/shoushi/08ouen/ouen0032.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산전산후휴가(산휴)(노동기준법)

첫째, 6주간(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14주일)이내에 출산 예정의 여성이 휴업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취업시켜서는 안된다. 또, 임신 중의 여성이 청구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이한 작업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산후 8주일을 경과하지 않는 여성을 취업시켜서는 안된다. 단, 산후 6주일을 경과한 여성이 청구했을 경우에는, 의사가 지장 없다고 인정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⑤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한 아동마다 35만엔이 출산육아일시금으로서 지급된다. 정상인 출산 시에는 병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이나 출산을 위한 비용은 자비가 든다. 이상출산 시에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므로 요양 급부를 받을 수 있다. 다생아를 출산했을 시에는 태아 수에 맞게 지급되므로 쌍생아의 경우는 출산 육아 일시금은 2인분이 된다.

⑥ 건강보험피보험자가족 출산육아일시금

피부양자가 출산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족출산육아일시금으로서 35만엔이 지급된다(피보험자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의 출산, 피보험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의 출산에 대해서는 가족출산 육아일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⑦ 출산수당금(건강보험법)

피보험자가 출산 때문에 회사를 쉬고,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출산수당금이 지급된다.

⑧ 아동수당(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은, 12세 도달 후 최초 3월31일까지의 아동(초등학교수료 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단 전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당에 대해서는 전전 해)의 소득이 일정 액수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⑨ 육아휴업(육휴)(육아개호휴업법)

육아휴업제도(법 제5조~제9조)에 명시된 대로 노동자는 자청에 의해 아동이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업을 할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기간고용자도 대상이 됨). 육아휴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원칙으로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남녀노동자이다. 매일 고용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 개정에 의해 휴업 취득에 의해 고용의 계속이 예상되는 일정한 범위의 기간고용자는 육아휴업을 얻을 수 있다.

⑩ 사회보험료 면제(건강보험법(후생연금보험법))

육아·간병휴업법에 의한 육아휴업제도는 아동이 18개월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육아·간병휴업법에서는 사업주는 3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업제도에 준하는 조치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연금제도에 있어서도, 차세대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아동이 3살이 되기까지의 육아 휴업 혹은 육아 휴업 제도에 준하는 조치에 근거하는 휴업 기간 동안, 후생연금보험료(사업주부담 분 및 본인부담 분)이 면제되어, 연금액수의 계산 시, 육아휴업취득 직전의 표준보수에서 보험료납부가 행하여진 것으로서 취급된다.

⑪ 육아시간(노동기준법)

생후 만 1년에 달하지 않은 아동을 육아하는 여성에게서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휴게 시간의 이외에 1일 2회 각각 적어도 30분의 아동을 기르기 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⑫ 단축근무(육아개호휴업법)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법 제23조,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사업주는 3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거나 요개호(要介護)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업주는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가족을 간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육아·간병 휴업 제도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에 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⑬ 시간외노동의 면제(육아개호휴업법)

시간외노동의 제한 제도(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나 가족 간병을 하는 노동자가 청구했을 경우에는, 1개월 24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을 시켜서는 안된다.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거나 요개호(要介護)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간호하는 노동자(일일 고용자는 제외)이다. 단, 근속 1년 미만의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 청구는 1회에 대해서,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그 시작일 및 종료일을 밝혀서 제한 시작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청구한다.

⑭ 간호휴가(육아개호휴업법)

아동의 간호휴가제도(법 제16조의 2, 제16조의 3)에 명시된 대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는 자청에 의해, 1년에 5일까지, 병이나·상처를 입은 아동의 간호를 위해서 휴가를 득할 수 있다. 제안은 구두를 통해서도 인정을 받는다. 사업주는 업무 등을 이유로 아동의 간호휴가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단, 근속 6개월 미만의 노동자 및 주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정의 체결에 의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의 노동자(예를 들면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노동자 등)를 대상 외로 할 수 없다.

⑮ 아동부양수당(아동부양수당법)

이혼에 의한 모자세대 등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아동(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20세 미만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해서, 해당 아동에 대해서 아동부양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부양 수당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수급 자격과 지급되는 수당 액에 대해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⑯ 아동육성수당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당 아동에 대해서 아동부양 수당을 지급한다.

⑰ 모자가정자립지원금부금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취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취업 경험이 부족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자가정자립지원금부금사업’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시·복지사무소 설치 정촌에서 실시하고 있다(제도 미실시 지역은 수급할 수 없다.).

⑱ 위탁부모(里親)제도

위탁부모제도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감호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양육을 도도부현(都道府縣)(지정 도시·아동상담소 설치 시를 포함)이 위탁부모에게 위탁하는 제도이다. 위탁부모희망자는 신청서를 아동상담소를 경유해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사는 아동상담소가 한 조사를 기초로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적부를 결정하게 된다.

⑲ 소아만성특정질환의료비조성(아동복지법)

아동의 만성질환 가운데, 소아 암 등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는 그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 부담도 고액이 되기 때문에 그 치료의 확립과 보급을 꾀하고 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자기부담 분을 보조하는 것이다. 대상연령은 18세미만의 아동(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는 20세까지)이다.

⑳ 장애아복지수당

중증장애아에 대하여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인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도장애아의 복지 향상을 도모

한다. 지급 대상은 정신 또는 신체에 중도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특별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이상인 자이다.

㉔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지급 대상은 20세미만으로 정신 또는 신체에 중간정도 이상의 장애를 소유한 아동을 가정에서 감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이다.

3)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가족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1)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일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은 내각부(内閣府) 중심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09년)법’에서는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관련 분야의 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곤경에 처한 아동이나 젊은 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

내각부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지원 체제의 정비, 즉 소위 네트워크의 구축과 네트워크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으로서 유스어드바이저(adviser)의⁴⁹⁾ 양성 강습회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9) 유스어드바이저(adviser)는, 청소년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을 필요로 하는 타 지원 기관 등에 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폭넓은 연령대의 상담에 대응 가능한 상담원이다.

<표 III- 2>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강습회 모델 사업 추진 지자체
현황실시지역(2010년도)

실시지역	
千葉県	
北海道	札幌市
千葉県	千葉市
東京都	立川市
神奈川県	横浜市
新潟県	三条市
愛知県	豊橋市
愛知県	春日井市
三重県	亀山市
京都府	京都市
	宇治市
兵庫県	丹波市
山口県	萩市
徳島県	上板町
福岡県	北九州市
沖縄県	那覇市

* 자료 : <http://www8.cao.go.jp/youth/model/index.html>로부터 인용

이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및 강습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앙기획위원회 : 전문가 및 각 실시 지역의 중핵기관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향후 대처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 ② 지방기획위원회 : 각 실시 지역의 전문가 및 연계된 각 유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며, 유관기관에 있어서의 대처나 연계에 관한 과제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 ③ 유스어드바이저 정례회의 : 각 실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담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 상담원 및 상담기관의 대처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 ④ 유스어드바이저 양성강습회 : 각 실시 지역에서 ‘유스어드바이저 양성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소년보호센터 등의 상담기관에서 활동할 유스어드바이저를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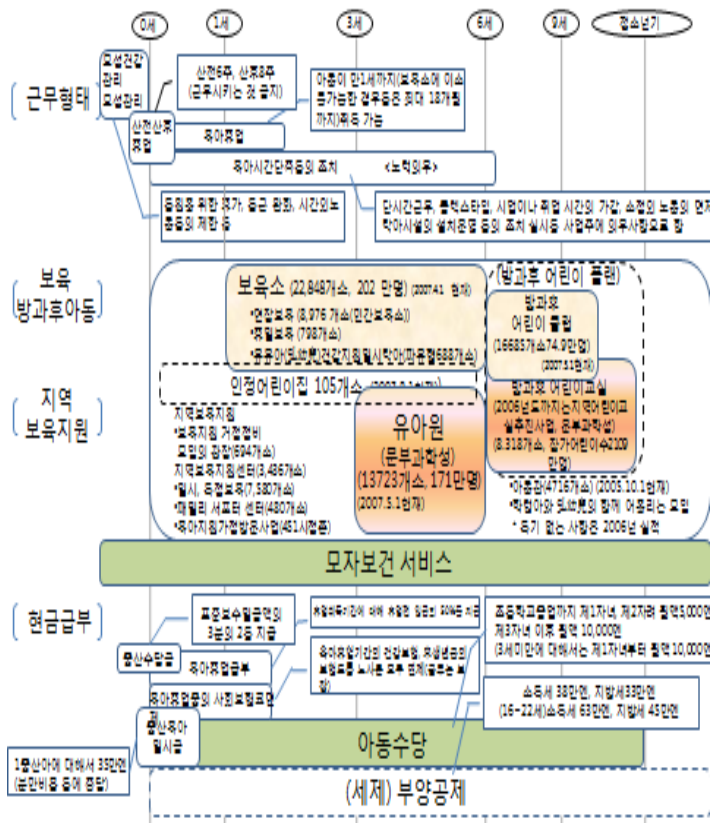
<표 III-3> 유스어드바이저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제1부 유스어드바이저연수, 양성프로그램	1. 유스어드바이저란	
	2. 유스어드바이저연수, 양성프로그램에 대하여	
제2부 유스어드바이저연수교재	제1장 제도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제1절 유스어드바이저란 무엇인가
		제2절 자립이 곤란한 청소년실태 및 지원서비스의 과제
		제3절 청소년 지원 기관들의 연대 지원체제의 중요성
		제4절 유스어드바이저 역할과 양성
		제5절 해외 청소년 자립지원 사례
		제6절 사회적 배제에의 대처 : 해외 경험의 시사
		제7절 본서의 구성
	제2장 지원대상자의 이해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상황
		제2절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문제
	제3장 다양한 사회자원-관련분야 제도의 개요, 관계법규등	제1절 관계분야의 제도의 개요, 관계법규등
		제2절 네트워킹
	제4장 지원 실시	제1절 상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심득 등
		제2절 인테이크(intake)과 상황과악
		제3절 지원계획 작성을 위한 평가
		제4절 그룹워크
		제5절 생활지원
		제6절 취직(취학)지원
		제7절 가족지원
		제8절 폴로업(follow-up)
		제9절 개인정보의 취급
		제10절 아웃리치(방문지원) 방법
		제11절 비행등 폭넓은 분야의 아웃리치(방문지원)의 수법
		제12절 아웃리치(방문지원) 현장 실천 사례

제3부 지역 의 유스어드 바이저 연수 실시	1. 대상자별로 특별히 필요한 연수내용
	2. 지역의 유스어드바이저 연수실시계획(안)
	3. 참고자료(지도요령 및 지도안)

* 자료 : http://www8.cao.go.jp/youth/kenkyu/h19-2/html/ua_mkj.html

이외에도 아동 연령별로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음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III-2] 어린이 연령진행별 보육지원

* <http://www8.cao.go.jp/shoushi/08ouen/ouen0031.html>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근무형태별, 보육·방과 후 아동, 지역보육지원, 현금급부 등 지원체계별과 연령대별 지원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무형태도 여성의 건강관리와 산전 및 산후 적절한 건강관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어린이 플랜을 만들어 문부과학성이 주관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지원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현금급부를 지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출산수당, 육아 지원, 아동수당, 세제공제 등은 공적 부조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 청소년(若者)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모델 사업

① 사업의 목적

최근 일본의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의 충실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각부(府)의 ‘청소년의 포괄적인 자립 지원 방책에 관한 검토회’ (2004년 9월~17년6월 개최)에 있어서, 지역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고문(유스 어드바이저(adviser))을 양성하는 것이 제언되고 있다. 이 제언에 의해 내각부(府)에서는 2007년도에 유스어드바이저(adviser)의 연수·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연수에 있어서 사용하는 교재를 작성하였다.

이 모델 사업은 체제정비와 유스어드바이저(adviser)(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원)육성이라고 하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모델 사업은 2008년도에 소년보호센터(소년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을 소유하는 기관을 포함)를 중심으로 한 모델 사업실시 예정지역(9지역)을 연수·양성 프로그램에 기초한 유스어드바이저(adviser) 양성 강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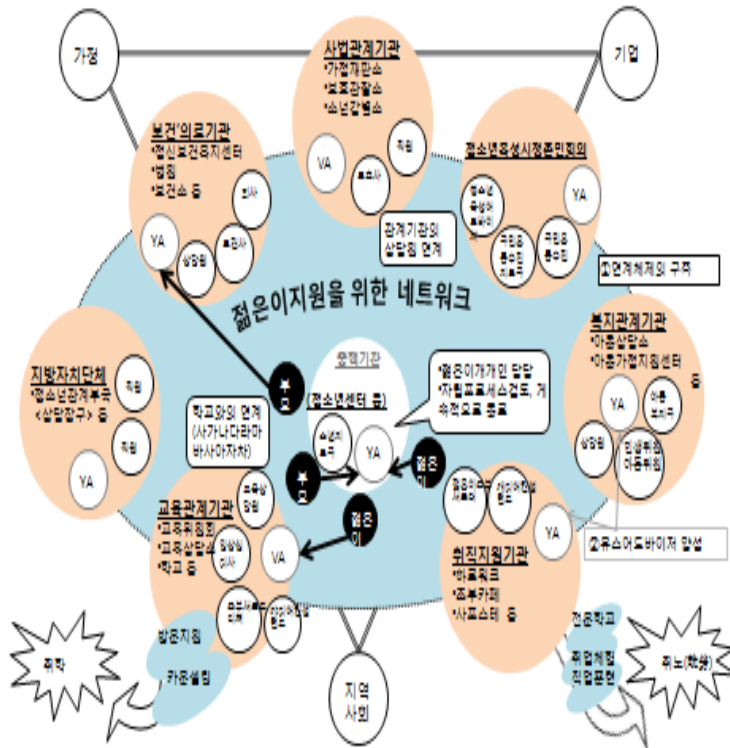
실시와 동시에, 동(同)센터를 중핵기관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을 개별적·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효과적인 자립 지원의 방향성 검토와 성과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 지원 체제를 충실하게 지원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② 사업의 대상과 역할

이 사업의 대상자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동(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등교거부, 비행 등 곤란에 처한 청소년이다. 그리고 이 시책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문제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및 지원과, 취학이나 취직, 그 전 단계로의 사회참가 등 사회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본연의 역할은 첫째, 체제정비로서 소년보호센터 등을 지역의 중핵기관으로 하여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을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개별적·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기획위원회, 지방기획위원회, 유스어드바이저 정례회의 등이 있다.

둘째, 유스어드바이저(adviser)의 양성을 좀더 거시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사업 간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수·양성 프로그램에 기초를 두고, 원칙적으로 청소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등에서 현재 상담·지원을 맡고 있는 사람(유스어드바이저)을 양성하기 위한 강습회를 실시한다. 여기서 모델 사업이 추구하는 네트워크는 다음 그림과 같다.

지역의 젊은이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모델 사업



[그림 III- 3] 지역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모델 사업

* 자료 : http://www8.cao.go.jp/youth/model/h20/houkoku/html/1_1.html

4)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 :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제도의 체계적 확립

첫째,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이나 청소년, 가족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자체가 국가 단위에서 거시적 차원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역마다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과정까지도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장단점이 있다.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조기에 제도의 확대 및 정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획일적이며 단편적인 지원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40개가 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서 복지전달체계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재원 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관계기관으로서 민생위원회나 아동위원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정과, 기업,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트라이앵글의 체제구축 모델은 현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불러오기에 적절한 체제 구축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독립된 객체에 대한 지원, 즉 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등 각 지원 객체별 지원방법이나 체계가 독립적으로 창설되어 있고, 이를 다시 지원방법이나 지원객체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 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 지원 모델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법

첫째,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체계뿐만 아니라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근거로 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의 의무까지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물론,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체계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1가지 지원하고 있는 방법들은 지원 대상도 다양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를 찾아 채워주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저출산 시대에 이를 해소하고 출산을 제고를 위한 지원이나 출산 후 직장 복귀와 가사의 양립을 지원하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자칫 복지서비스의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즉, 간접적 지원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직접 급부가 아닌 각종 세제 공제 등 간접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은 직접급부를 통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차원의 복지재정 확충과 이에 대한 사회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 단위의 복지재정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복지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독일⁵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독일은 중앙의 연방(Bund)과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16개 자치 주(州) 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이다.⁵¹⁾ 독일 헌법에는 이들에게도 자치(自治)를 보장하고 자신들의 책임아래 교통, 도로,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도시설계 등에 공동체 법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아동 및 가족정책의 행정체계와 실천 현장도 이러한 독일의 행정체계에 따라 중앙의 연방정부는 정책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재정의 운용

50) 이 장의 집필자는 평택대학교 이민희 교수이다.

51) 1990년 통일 후 구(舊) 동독의 5개 주가 합해져서 16개주로 확대되었다.

등에 관한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지방정부로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전하고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정책의 기초로 하면서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 전국의 16개 주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Kommune)에는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Landkreis)와 그 아래 가장 작은 자치단체의 단위로서 우리나라의 시 단위에 있는 자치구나 군 단위의 읍·면·동과 같은 기초자치단체(Gemeinde)들로 구성되어 있다.

(1)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이해하는 데에는 먼저 독일의 아동정책이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196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아동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정책을 아동정책 안에서 수행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독일은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한 이래 아동정책을 청소년법령 안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 위에서 무엇보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50년 처음 수립되었던 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⁵²⁾은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이 계획은 활동 초기에는 주로 전쟁고아 아동이나 망명자 중의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적(救濟的) 성격을 가졌으나 국가가 안정되면서 점차 아동의 보육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독일은 통독 전에는 아동정책을 「연방 여성·청소년부」에서 수행해오다가 통일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현재는 1990년 이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내의 청소년정책 내에서 수행하고 있다.

52) Bundesjugendplan(BJP)은 이후 통일 후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KJP: 연방아동·청소년계획)으로 바뀌었다.

독일의 아동정책은 1992년 독일이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국이 된 후 관련법령도 「청소년복지법」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 6년간 혼자 있는 아동이 16%에서 20%로 상승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0~2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는 킨더크리페(Kinderkrippe)와 킨더슈투베(Kinderstube), 3~6세의 아동을 돌보는 킨더가르텐(Kindergargten),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킨더호르테(Kinderhorte), 연령구분이 없는 그룹 탁아시설, 그리고 보모로부터 가정에서 돌보아지는 형태로 위탁 보호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4조에 따라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누구나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킨더가르텐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또, 2005년부터는 같은 조항 제2호에 “3세 미만의 아동과 초등학생들도 방과 후 탁아시설에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아동의 탁아시설 확대 관련법⁵³⁾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2006년 3월 독일에는 약 59,829명의 아동들이 탁아되었고 30,427명의 인력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같은 해 말 방과 후 초등학생들은 킨더호르테에 356,144명이 위탁되었다.

위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의 아동정책 및 가족정책 관련 복지서비스의 핵심은 보육이다. 즉, 독일의 아동정책은 보육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일찍 맞게 된 독일은 보육정책이 향후 독일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인력 수급 등 국가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아동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서 보육을 가장 큰 아동정책의 이슈이자, 가족정책의 중요 정책과제로 형성하고 있다. 특히, 통일 후 독일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가족정책과 연계된 보육정책이다. 독일은 가족과 연계된 아동의 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탁아시설과 예산의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통일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아동의 보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⁵⁴⁾

53) TAG : Tagesbetreuungsausbaugesetz

(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의 행정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독일의 연방(Bund)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같이 많은 부처를 동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공화국인 독일은 일찍부터 중앙에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전국의 16개 주에서 자치적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에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⁵⁵⁾」에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안에서 아동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법제도를 입안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수행하는 「청소년청(Jugendamt)」을 두어 가족정책과 연계된 아동관련 복지서비스를 각 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청」은 독일의 모든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의 실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중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청소년청」의 설립을 「사회법」(SGB)⁵⁶⁾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설치되어 있고, 독일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실행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청」은 독일의 행정체계에 따라 대도시에는 구(區)마다 「구 청소년청」(Bezirks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市)에는 「시 청소년청」(Stadtjugendamt), 우리나라의 읍, 면에 해당되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 청소년청」(Kreisjugendamt)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따라서 각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 관련 업무의 기획, 시

54) 이러한 독일의 정책방향은 통일 후 개정된 법명이 그 동안 1922년의 「제국청소년법」과 1960년 제정된 「청소년복지법」에 ‘아동’의 명칭이 없었다가 1990년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동’이 명명된 것은 현재 독일에서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기본계획과 같이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청소년계획’도 ‘아동·청소년계획’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5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56) Sozialgesetzbuch

행, 재정 등을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중앙의 연방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독일은 국가가 분권형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매우 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지도 (*social atlas*)에 따라서 정책방향에 있어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정책방향은 중앙의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육문제, 특히 0~2세까지의 보육정책에 방점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중앙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제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는 그 나라의 관련 행정체계와 법을 근간으로 수행되고 있다.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은 먼저 중앙의 연방정부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은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JHG)⁵⁷⁾」이다. 즉, 독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주요제도와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담당 부서의 행정체계의 조직을 보고, 각 조직 부서의 업무들을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본계획과 같은 「연방아동·청소년계획」과 관련 법령인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을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은 중앙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테두리에서 각기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응용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행동프로그램 아동보육(AK: Aktionsprogramm Kindertagespflege)’과 같은 제도 등을 마련하여 이른 연령부터의 가족과 직업의 연계 차원에서 조기 아동교육을 통해 국가 인력의 질적 제고와 가정주부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7)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행정체제

①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조직 및 업무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이 업무를 국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조직 구성과 담당 업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다른 연방 관계부처와 주(州),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공적지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모든 정치영역과, 무엇보다도 교육, 건강, 근로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은 기획관리실, 가족정책실, 노인정책실, 평등 및 기회 정책실, 아동·청소년 정책실, 시민봉사 정책실의 6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관련된 가족정책실과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족정책실** : 1국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과는 기획관리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역연합정책과, 법관련 가족지원과, 가족친화적 일터 및 사업문화과, 가족교육 및 상담과, 가족권리·모(母) 보호 및 회복과, 국제가족정책과이다. 가족정책실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가족생계유지대출, 출산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족에 관계되는 정책으로는 세금관계법, 전세지원금, 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가족친화적 노동시장정책, 아동위탁시설지원정책, 출산 후 육아 휴가정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가족에 관계되는 사회적 의식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분담과 책임, 폭력 없는 가정 등의 정책이 있고, 가족지원 관계기관에서는 보육지원금, 부모지원금, 생계대출금 관련 법제도적인 가족지원 이외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의 여가와 휴가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정책과 가족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제적 가족정책차원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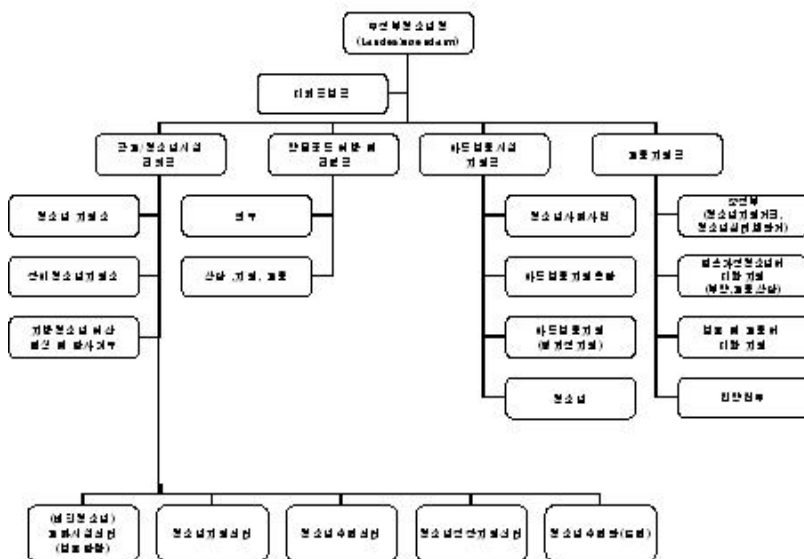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정책실** : 2국 11개과로 구성되어 제1국은 5개과로 기획균등 및 사회통합과, 청소년교육 및 아동·청소년계획과, 청소년매체과, 국제청소년교류과, EU·UN 및 청소년사회사업과, 지식·연구·통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국은 총괄업무 및 극우주의방지업무, 아동·청소년지원법 전담과, 보육 확대 및 질 관리과, 폭력예방 및 아동보호과, 청소년보호법전담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에서는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법인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등의 관련법 내용을 정책적으로 시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주 정부나 지방 간의 아동 및 청소년에 관련되는 업무인 교육, 건강 그리고 노동 시장영역 등을 연계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원단체(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의 목적, 사업내용, 방법과 업무 등에 대한 지원과 유립차원의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적 능력 함양, 문화적·사회적 능력 함양, 스포츠 능력 함양, 청소년복지사업,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동등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지원정책, 불우가정 아동 및 청소년 지원정책, 미디어교육 강화정책, 아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 아동 및 청소년의 국제교류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및 복지에 대한 국제간 연구프로그램지원, 이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 아동 및 청소년지원 관련단체 지원 등의 업무가 이 실에서 수행되고 있다.

② 지방 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 조직 및 업무

독일은 주(州) 아래의 행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도 각기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자치적인 청소년 행정체계를 소속된 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청」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1900년의 시민법에서 지방고아원후견재판소에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청」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24년부터 시행된 「제국청소년복지법」에서 정하여진 이후 1925년부터여서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사회법」(SGB) VIII권을

보면 모든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이 「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법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이 서로 파트너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행정체계를 네트워크화 하여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청소년청(Landesjugendamt) 조직도



[그림 III-4] 주 청소년청(Landesjugendamt) 조직도

위의 그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독일의 16개 주에는 「주 청소년청」 (Landesjugendamt)이 설치되어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제들을 집행하고 있다. 각 주의 「주 청소년청」은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국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정책의 실질적인 업무는 아동의 가정교육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업무가 가장 주된 역할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 청소년청」의 업무는 더 작은 단위의 기초단체의 「구 청소년청」, 「시 청소년청」, 「자치단체 청소년청」이 각각 설치되어 비슷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

①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독일의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을 잇는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근간은 무엇보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은 통독 후 시대적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부모들의 다양한 삶과 교육의 상황들을 지향하는 수행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법령으로 지금까지 독일의 모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주도하는 법령이라 할 수 있다. 1975년 제정된 독일의 「사회법」 8권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령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일부 조항은 1994년에 개정되었다.

- 가정교육의 장려(§ 16)
- 파트너십, 별거, 이혼문제의 상담(§ 17)
- 모자(母子)들과 부자(父子)들의 공동거주 형태(§ 19)
- 위기상황의 아동 상담과 후원(§ 20)
-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서 아동의 지원(§ 22 a)
- 보육지원(§ 23)
-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의 청구(§ 24)
- 경과규정과 영아지원제공의 단계적 확장(§ 24 a)
- 자발적인 아동 후원조직의 지원(§ 25)
- 지방법률의 심리 유보(§ 26)
- 장애아동의 사회교육적 가족 지원(§ 27~40)
- 아동 및 청소년의 일시보호(§ 42)
- 가정보육과 관련시설에서의 아동보호(§ 43~49)
- 법적 과정에서의 동반 지원(§ 50~51)
- 아동에의 조력, 양육, 후견(§ 52a~56)

이 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0~13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에 관한 법조항들을 따로 장으로 마련하여 아동정책과 관련된 조항들을 청소년정책 관련조항들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을 따로 두지 않고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이 연령기준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은 3세 이하의 아동 보육을 위한 「보육확대 법안」(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의 연방법을 법제화한 보육확대 법안을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여 2010년까지 23만 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서의 3세미만 아동 지원법」(Kifölg)⁵⁸⁾

2008년 12월에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된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서의 3세미만 아동 지원법」은 줄여서 「아동지원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원명에서 읽을 수 있듯이 0~2세의 연령의 아동의 보육을 탁아시설에서 양육하는 것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을 제외한 다른 장들은 기존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이나 교육, 재정, 사회보험, 조세, 입양 등과 관련된 법조항들에서 영아의 보육과 관련된 조항들의 수정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은 아동보육의 확장을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의 조항의 내용들을 간략히 축약해보면 먼저 제1조에서는 아동보육의 확대를 보장하는 연방특별자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 제104b조항에 따라 주와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들이 0~2세의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의 투자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총 21억 5,0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각 주 지방정부는 교부된 지원금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에 대한

58)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unter drei Jahr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 (Kinder- förderungsgesetz – Kifög)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러한 재정지원에 관한 양측의 주무부서인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와 「재정부」와의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인 재정지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3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아동보육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③ 「연방아동·청소년계획」

독일 중앙 연방의 청소년정책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핵심적 제도는 연방「아동·청소년계획」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50년 처음 수립되었던 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은 통일 후 1994년 이름을 「연방아동·청소년계획」으로 개칭한 이래로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중심에 있다. 독일은 이 계획에 의해 연방차원의 민간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수행능력의 기간구조를 위한 제반여건들을 마련하고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아동 및 청소년 지도자들의 평생교육 행사들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아이디어들의 개발, 모델사업들의 시행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연방아동·청소년계획」은 특히 통독 후 지난 수년간 통일 독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즉, 구(舊) 동독의 새로운 연방 주(州)들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증액되고, 구 서독의 청소년예산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계획은 그의 주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2000년에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4년 이래 이 계획의 주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및 프로그램 사례와 2000년 이후 새롭게 개정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⁵⁹⁾

59) <http://www.bmfsfj.de> 참조

< 주요 정책방향 >

- 아동 및 청소년 활동의 진작과 지원 및 새로운 지원방법 제시
- 인격체로서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장과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국가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책임 인식능력 함양
- 독일연방 전국의 수행능력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기반조건 조성 및 확립
- 남녀 아동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Gender Mainstreaming)
- 국내외(유럽) 아동 및 청소년 세대의 공동성장과 세대 간 이해와 관용을 넘어 대화 개선 및 외국시민의 통합(integration)

< 추진과제 및 프로그램 >

- 정치교육 강화 : 국내외 문화, 경제, 기술, 과학 발달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지식 중개
- 문화교육 강화 : 예술, 문화, 일상에서의 상상력 배양
- 스포츠와 놀이활동 증진 : 신체적, 정신적 신장과 다양성, 사회성, 공동체 경험의 중개
- 사회교육 : 자원 사회봉사, 자원 환경봉사,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행동들
- 청소년사회사업 : 특별지원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적, 사회진입적 지원
- 남녀 아동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 : 사회구조적 남녀 불평등 타파와 성(性)별 정체성 형성, 남녀 아동 및 청소년의 파트너십 소통관계 형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조(自助) 지원 :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개체 신장과 사회참여 기반 확대
-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 새로운 보호의 발전방안 제시와 민관 보호자들의 확대 및 특별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중점 관리
- 미디어 능력의 강화 :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무적, 창조적 능력 함양
- 청소년단체사업 활성화 지원 : 27세 이하 4,000명 이상 공인 회원단체 지원
- 아동 및 청소년 민간복지 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지도자의 재교육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의 평가와 혁신
- 국제청소년교류 사업 지원
- 사회사업 전문가의 국제적 연구 및 실습 프로그램 지원

- 이주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통합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지원
- 사회적 문제청소년의 발달과 기회 강화

(3)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① 「가정보육 프로그램」 (Das Aktionsprogramm Kindertagespflege)



현재 독일의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지원하는 제도에서 가장 특색 있는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제도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가정보육을 지원하여 아동보육을 확대하고, 독일 정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모토인 “교육을 통한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정의 안팎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은 독일에서 탁아시설을 통한 보육과 함께 매우 중요한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제도이다. 맞춤형 가정보육의 지원은 아동의 조기지원을 개선하고 가족과 직업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이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가정보육사에게 이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차 시도에서 독일 전역의 162지역에서 지역의 조정,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로서 가정보육의 지역확산을 위한 구조적 전제조건들을 형성하였다. 제2차 시도의 목표는 가정보육사의 질적 제고였다. 이에 따라 독일청소년연구소(DJI)⁶⁰⁾에서 개발한 160시간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기초수준의 자격부여가 정착되었고, 가정보육의 매력과 전문성이 상승되었다. 이어서 반드시 보육자격증을 부여하기 전에 지역 공공기관에서 적응실습이 수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의 고용정책의 목적에 따라 많은 부분의

60) Deutsches Jugendinstitut

예산이 ‘유럽사회기금’ (ESF)⁶¹⁾에서 지원되었다. 2007~2013년 까지 독일에 배당된 기금은 총 9억 3,800만 €인데 40%가 연방정부에 배당되고, 60%는 각 주의 1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07~2013년의 실제 지원기간에 수행되는 4개의 중점영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 아동보육의 확대를 포함한 가족과 직업의 합일(合一)
- 고용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
- 어린이와 특히 취약자를 위한 사업지원 제공
- 사회와 경제에서의 노인 정책

② 「전망 재취업」 (Perspektive Wiedereinstieg) 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일로 여러 해 동안 쉬고 있는 여성 모(母)들을 직업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여성 모들은 출산 후 집에서 쉬다가 직업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상담제공을 하여 취업기회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노동청과 함께 협력하여 2009년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였다. 현재 독일 전국의 20개 지역에 28개 참여 주체단체가 형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그룹은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3년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다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주부들이다. 이를 위해 2012년 2월까지 1,400만 €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61) Der Europäische Sozialfonds

③ 「사업장 아동보육 지원」 (Betrieblich unterstützte Kinderbetreuung)



이 프로그램도 ‘유럽사회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기업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일경제의 친가족성을 표방하는 표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에게 가족을 생각하는 인력정책에 참여하라는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으로 기업들이 0~2세의 영아를 가진 근무하는 직원 모(母)들을 위하여 직장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대표적인 ‘가족과 직업의 합일’을 유도하는 정부의 아동 및 가족 복지 서비스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경제기업 이외에도 재단들, 공공 및 개인 법인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청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정과 학업에서 오는 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0~2세 아이를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원하는 대학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 2년간은 사업장 마다 운영비의 최고 50% 수준에서 연간 6,000 €까지 지원되고 있다.

④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 (Lokale Bündnisse für Familie)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은 가족, 개인, 공무원, 개인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가족친화성을 위하여 함께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특히 ‘가족과 직업의 합일’과 가정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디에서나 이 모임의 중점이다. 이미 독일 전역에 500개가 넘는 연합이 결성되어 약 5,200개의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⑤ 「행동 프로그램 다세대가정」(Aktionsprogramm Mehrgenerationshäuser)

이 행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유롭게 만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세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500개의 다세대가정이 형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세대가족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담봉사와 영아보육 교육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도 다세대가정의 대부(代父)가 되어 주는 등 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전국적으로 독려되고 있다.

3)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실천적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는 아동의 보육문제와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길은 전문 탁아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가정안팎에서 교육을 받은 부모들에 의하여 위탁되어 보육되는 가정보육의 두 가지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어린 영아들을 맡아서 위탁부모가 양육하는 보육은 가정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어 ‘가족과 직업의 합일’이라는 효율적 제도로 전국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아동 및 가족이 연계된 복지서비스로서의 아동의 가정보육은 전문적인 탁아시설들과 협력이 요구된다. 이 둘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 가정보육사는 탁아시설로부터 공간과 재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병가나 휴가 시에는 시설을 통해서 대체 수행이 되도록 할 수 있다.
- 탁아시설들은 아주 어린 영아들을 가정보육사에게 맡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병가나 휴가 시 또는 부적절한 탁아시간에 가정보육사에게 보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모와 어린이는 탁아시설들을 알게 되고 가정보육 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탁아시설에서 보육이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추후 적응이 쉽게 된다.
-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호 보완과 대체의 역할과 기능이 신뢰가 있는 맞춤형 기획과 보육장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 직장보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호 협력관계는 직장동료가 걱정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호응이 높다.
- 탁아시설의 장은 가정보육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가정보육의 부모들에게 이로운 장점들을 배우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탁아시설과 가정보육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좋은 지역사회 실천사례들을 들어서 고찰해 보자.

(1) 에쉬보른(Eschborn) 사례

① 개요

- 사례 모델명 : “에쉬보른 아동보육 네트워크에서의 보육”
- 지역 : 헤센(Hessen) 주 타루누스(Taunus) 지역 에쉬보른 시
- 공동참여 주체들 : NET e.V., 타우누스 시, 근린 바트 조텐(Bad Soden) 시, 근린 슈발바흐(Schwalbach) 시, 근린 슐츠바흐(Schulzbach) 시, 헤센 주 사회부, 기업 Ernst & Young,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Procter & Gamble, Arcor, das BAFA(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경제수출 관리국)

② 사례 소개

에쉬보른 가정보육 프로젝트는 앞에서 소개한 ESF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인 “지역 아동보육 네트워크”로부터 첫 번째

대책으로 개발되었다. 네트워크는 타루누스의 지역사회 복지에 필요한 맞춤형 시도를 하고 있으며, 유연하고도 유용한 아동보육을 제공하려고 결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점은 가정보육을 위한 어머니들과 가족들의 모집과 자격획득 그리고 중개에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무료로 가정보육에 필요한 훈련과 자격획득에 관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기회를 이용한 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가정보육연방협회”의 자격부여 과정을 통하여 자격증이 부여된다. 지역의 기업들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 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격획득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보육부모네트워크협회’ NET e.V.은 부모와 보육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을 양질로 보육하는 것을 돕는 정보들을 지역사회와 지역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협회는 전문가들의 상담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 에쉬보른 시는 이 협회에 매년 20,0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자치단체는 공간을 제공하고, 협력기업들은 그들의 노우하우(Know-how)를 도입해주고 있다.

지역사회 보육협회인 NET e.V.는 이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부모와 가정보육사들에게 자신들의 보육서비스나 보육자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고, 자신들의 아동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육을 발굴하고 있다. NET e.V.의 인터넷 포털(internet portal)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이나 연령단계에 따른 보육아동, 보육가정에서의 상황 등이 정보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 협회는 보육가정이나 부모들이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훈련 이외에도 가정보육의 어머니들의 네트워크와 로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보육의 부모들은 그들의 근무시간에 놀이터를 방문하여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거나 서로 교대하거나 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포털이나 상담시간을 통하여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과 기업들은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가정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총 100명의 자격증 보육부모를 양성하는 일을 목표를 세웠다. 2005년 타루누스 지역 아동보육에는 198개의 보육자리가 목표치이다. 대략 150 자리가 이미 확보되었다. 에쉬보른에는 2010년까지 약 300개의 보육자리가 목표치로 정해졌다.

③ 프로젝트의 모델적 요소들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모델로서의 요소들을 갖추었는데 이를 아래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 공간의 맞춤형 기획과 가정보육 부모의 자격취득에의 방점

이 프로젝트는 맞춤형 지역사회 사회복지 공간을 맞춤형 기획과 보육가정 부모의 자격증 취득에서 구현해내었다. 가정보육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는 처음에 에쉬보른 시 부녀협회로부터 거의 주도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4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시도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시사해주고 있는 것은 가정보육에 있어서 만일 자치단체 당국이 사회문제들에 대한 맞춤형 해결을 찾기 원한다면 전문적으로 가깝게 협력하고 그들의 행정적 한계를 넘어선다면 신속한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구체적인 대책을 개발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지역의 가정상황을 보여주는 개념 개발과 프로젝트 개발이 수행되었다. 즉, 어떠한 가족들의 행동반경과 부모들의 일상이 그려질 수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일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자치단체의 관련경계와 독립하여 어떠한 지역장소가 중요한가? 어디에 보육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개념 형성을 기초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먼저는 무엇보다 보육을 맡을 가정을 찾아내는 것과 이들에게 전문성을 키워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기업체의 해당 구성원들과

다른 부모들에게 중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모든 마련된 대책들에는 참가자들의 욕구들에 맞추는 것이 중점이었다. 예를 들면 관심이 있고, 잠재적인 보육가정 어머니들에게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네트워크에 연계된 다섯 기초자치단체에 번갈아 가면서 무료로 자격취득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그것이다.

나. 아동보육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인터넷포탈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성공요소로는 NET e.V. 협회가 이 보육 프로젝트를 위하여 타루누스 지역 네트워크 인터넷포탈을 개발한 것이다. 포탈은 세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동보육과 관련된 모두에게 즉, 보육가정들이나 함께 참여한 그룹들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포탈은 모든 참여자들을 보다 잘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탈은 보육을 제공하는 자들이나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육회의의 장소의 기능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이외에도 포탈은 보육의 성공적인 일상에 대하여 묘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자격취득의 과정에 대한 실상까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매체인 “마가진(Magazin)”은 특히, 가정보육에 관하여 실제적인 보육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지식, 보조금교부 가능성, 계약양식 모델 등 많은 정보들이 제공된다. 전자 뉴스레터(newsletter)가 이 서비스를 보충하고 있다. “포럼(Forum)”은 지역사회의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수한 기능들을 찾거나 사적인 여가모임 등 특정한 모임들에 접속하거나 단순히 사이버 교류를 하기 위한 사이버 공간이다. 포탈은 매우 수준이 있고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되고 최근 현장에서 있는 내용들로 제공된다. 인터넷포탈의 운영을 위하여 자신들의 편집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다. 지역경제와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경제에서 중요한 목표그룹들과 가능한 협력파트너를 찾는다. 예를 들어, 여기에 참여하게 된 큰 기업들과 파트너 조직들은 Ernst & Young,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Procter & Gamble, Arcor 기업들과 경제수출 관리국 등이다. 지역 네트워크는 기업과 당국에게 ‘가족과 직업의 합일’을 지원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체의 인력부서와 함께 기업체에서의 부모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정기적으로 지역의 아동보육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찾기 위하여 도시 내에 정보장소를 설치하여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열린 정보정책이 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이다.

참여한 경제대표들은 동시에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먼저 이들은 이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한 자신들의 적합한 경영지식이나 구독 등의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네트워크 조정그룹의 일원인 한 기업대표는 경제 “대사” 역할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네트워크는 기업에게 가정보육 보모의 자격취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자기 기업의 구성원이 보모를 찾으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신에 기업체 직원들은 가정보육 보모의 자리가 공개되기 전에 먼저 보육자리를 얻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과 공공 당국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델적인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연계된 기업체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는 그들 자신의 가족계획과 더 좋은 직업적 참여와 가족적 요구들의 합일을 위한 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2) 예나(Jena) 사례

① 사례개요

- 모델명 : “아동보육과 가족서비스, 아동보육과 탁아시설의 협력”
- 지역 : 구 동독 튜링겐(Tübingen) 주의 중소도시 예나(Jena) 시
- 공동참여 주체들 : 예나 시, 청소년청의 탁아시설 및 가족과 홀교육자⁶²⁾를 위한 센터(유연한 보육을 위한 가족서비스)

② 사례 소개

구 동독지역의 중소도시인 예나 시의 아동보육에 있어서 아동지원은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학업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예나 시에는 청소년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45명의 독립된 아동보육사가 있다.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이 시의 예산에 정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육장소에 관련 용품들과 놀이 및 보육 장비들이 갖추어지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확대하며, 보육사들의 개인적인 지속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모든 아동보육사는 교육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한 자거나 연방아동보육협회에서 부여되는 “아동보육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자들이다. 보육사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회법 8권에서 요구하는 자격범주들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청소년청과 아동보육사 간이나 탁아시설의 보육사들 사이에는 다양한 믿을만한 소통구조들이 형성되어 있다.(대-소 그룹, 지역그룹, 슈퍼비전그룹, 테마맞춤형 작업그룹, 지속교육그룹 간의 정기적 만남, 가정방문, 상담 등) 아동보육서비스의 조정은 시의 청소년청에서

62) 남자나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게 되는데 교육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가 있는 탁아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나 시의 아동보육은 무엇보다 0~2세까지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가정보육에서의 자리와 다양한 위탁 탁아시설의 자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일의 사회법 8권의 제5조와 24조에서 말하고 있는 요구와 선택의 권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들을 수요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가. 탁아시설과 가정보육 간의 협력

두드러지는 사실은 탁아시설과 가정보육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연방모델 프로젝트인 “아동세계-탁아시설에서의 편견을 아는 훈련과 교육” 차원에서의 공동의 자격획득과 전문성의 수반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예나 시에서는 베를린 자유대학 소속 국제아카데미 INA gGmbH 연구소가 주체인 이 프로젝트에 14명의 가정보육사와 5개의 탁아시설에서 8명의 보육사가 참여하였다. 이로써 가정보육사들은 실천지향적인 맞춤형 지속교육을 가장 최선의 교육학적 접근에 따른 교육영역에서 받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서로 탁아시설과 가정보육 간에 풍성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 이를 넘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가치와 인정이 전문가들로부터 가정보육에 대하여 있었고, 자신감의 증대와 발전적인 전문영역에 대한 관심들이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지속에 대한 계획이 논해지고 있는 중이다.

나. 가정보육의 수급계획과 역동적인 확산

사회법 8권에 따른 청소년지원의 부분으로서의 가정보육은 예나 시의 청소년지원계획의 수요조사에 따라서 탁아시설수급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계획과정에 직접적인 대표자가 참여하도록 보장되었다. 프로

젝트는 매년 실천되었고, 가정보육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특히, 직업생활로의 복귀를 규정하는 부모보조금 제도에 따라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수요를 감안해서 현재 170개의 가정보육 숫자가 200개로 확대되는 것이 시의회에서 결정되었다.

다. 가족서비스 : 가족센터를 통한 기존 텍스트의 보충/개정

‘가족과 홀교육자를 위한 센터’의 가족서비스는 앞에서 소개한 한「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과 연계되어 있고 유연한 부분에서 도시의 이 서비스를 보충하고 있으며, 청소년청과도 매우 밀접하게 개별적인 사항들을 맡아서 함께 일하고 있다. 한편, 작은 킨더가르텐이 예비되어 있어서 시설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부모가 결근할 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동부녀”라는 시간제 아동보육사가 마련되어 있어서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담당하고 있다. 예나 시에서의 가족서비스의 수행은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권리가 없거나 매우 특수한 보육요청이 있는 가족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4) 독일사례의 시사점

(1) 행정체계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은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즉, 중앙에서는 법제도와 재정 등의 정책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방정부에서는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적 자치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를 위한 행정체계에서도 예외는 아니

다. 중앙정부의 담당부서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연방의 「아동·청소년계획」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을 근간으로 전국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행정이 총괄되고 있다. 지방정부에는 각 기초단체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청」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늘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거의 모든 행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분권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력과 조정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갈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 정책이 시행되므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 관련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관련 지역의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공과 민간 간의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으로 갈수록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기 저기 산재하여 관련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담당인력도 순환보직에 의하여 전문성이 거의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의 수행이 어렵도록 느슨하고, 엉성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행정체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독일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에쉬보른 시나 예나 시에서 본 것과 같이 중앙정부와 「청소년청」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정부와의 전달체계가 매우 효율적이고 단단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정책이 집행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 시민단체와 기업과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달체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인력수급이나 시설의 확장 등에 민

간과 기업이 함께 서로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이러한 체계를 형성하도록 정부는 적극 주도하여야 하고, 많은 시민단체와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책목표에 있어서의 시사점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일 전체의 교육의 질을 상승시키고,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정책목표이다. 또한, 고용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의 해결은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정책목표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마련된 것이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동의 가정보육 정책이다. ‘가족과 직업의 합일’이라는 뚜렷한 정책목표가 바로 양질의 조기교육을 통해 미래 국가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가정에 잠재되어 있는 부모들의 가정보육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며, 직장보육을 통해 직장에서의 노동의 효율성,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과 고용의 불안, 보육제도의 미비, 인생관의 변화 등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먼저 해결 가능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이 늦어진다면 먼저 아동과 가족이 연계된 복지서비스 정책으로서 독일의 가정보육과 직장보육의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3) 정책내용에 있어서의 시사점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의 아동 및 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내용들은 「가정보육 프로그램」, 「전망 재취업」, 「사업장 아동보육 지원」,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 「행동 프로그램 다세대가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중앙과 지방 간 행정체계, 정책목표,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들의 문화와 의식이 전제되었을 때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같은 정책내용을 수행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이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에서 정책목표의 수립과 내용의 결정을 위해 상호 양부처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가정보육이나 직장보육과 같은 제도가 수행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셋째, 가정보육이나 직장보육을 위한 필요인력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가? 넷째, 정부의 정책내용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련 시민단체나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다섯째, 이러한 정책내용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자원들이 마련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먼저 탐색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내용을 결정하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는 데에는 넓게는 환경과 여건의 의미에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말할 수 있겠으나, 현장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은 역시 인적수단과 물적수단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독일에서

는 고급 인력으로는 학력과 관계해서 우리나라의 학사나 석사 수준의 학위를 가진 사회교육(Sozialpädagoge)이나 사회복지(Sozialwesen)를 공부한 졸업자로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e)와 사회사업사(Sozialarbeiter)를 들 수 있다. 이 이외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와 직업교육 차원에서 사회사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동이나 가족의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아동의 보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탁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교육사나 사회사업사가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최근 독일의 법제도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과 직업의 합일’ 차원에서의 가정보육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보육사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이 이렇게 교육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학, 아동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등의 관련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요와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기에는 태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도 독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지원하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 비해 여성 취업률이 높지 않고, 보육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로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가정에 이러한 인력 수급과 직업기회로서의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전제조건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를 위한 물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독일은 이를 위해 EU로부터 총 9억 3,800만 €의 ‘유럽사회기금’을 끌어들었고, 「아동보육지원법」을 신설해서 총 21억 5,000만 €를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정책적 결정을 통한 강력한 지원이 없이는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실업문제, 양질의 교육문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향후 큰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

3. 미국⁶³⁾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가족 정책 방향

미국의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지 제도는 연방정부의 복지정책 아래 운영되나 각 주마다 관련법과 정책의 시행에 있어 개별적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주는 아동학대나 방치에 대한 개념, 규정, 그리고 준거가 서로 다르며, 연방정부는 각 주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에 위협이 있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산하에 청소년 및 아동 복지 정책 및 제도를 관할하고 시행하는 부서로는 크게 보건인간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그리고 사법부(U.S. Department of Justice) 등이 있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각부서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1) 아동학대 및 방치의 경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2) 비행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3)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복지 서비스와 가족 복지 서비스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는 20세기 초반, 미국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과 미국가족서비스협회(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두 국가기구가 별도로 설립되면서부터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부 운영자금을 받으면서 분리가 시작되었다. 현재, 가족복지 서비스에서 주요쟁점은 아동학대와 방치, 수양부모(foster) 양육 예방을 위한 가족보호서비스 운영으로 현재는 아동복지와 가족복지를 통합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아동복지 서비스에서는 가족치료나 입양가족 배치 등 아주 구체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든 서비스는 현재 보건인간서비스부를 통해

63) 이 장의 집필자는 美 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성진아이다. 성진아는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로 일한 바 있다.

운영되며, 연방정부 기금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특히 공공보조, 의료적 지원, 헤드스타트, 수양양육, 여성과 아동 건강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Downs, Moore & McFadden, 2009).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사법부에서 미성년 비행 및 범죄 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를 통해 미성년 범법행위, 십대임신, 약물남용 및 학대 등 학교 부적응아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정부 및 주차원의 기관이나 각 지역 공사립 복지기관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부서 중 보건인간서비스부와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들의 목적, 운영, 평가 및 개선 등을 소개한 후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별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국내의 아동가족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및 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 보건인간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보건인간서비스부(Health and Human Service, HHS) 산하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크게 아동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아동청소년가족부(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그리고 아동국(Children's Bureau)로 나뉘어져 있다. 세 부서는 상호 협력 하에 정책을 수립, 실행하므로 공동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보건인간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제도 중 가장 핵심적 정책인 1) 가족자원 및 지원서비스 정책과 2) 아동학대 및 방치 예방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① 가족자원 및 지원서비스 (Family Resource and Support Services) 정책

보건인간서비스부 산하 아동청소년가족부에서는 1996년의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 개정법'에 근거해 2003년, '지역기반 가족자원 서비스 보조금지원 정책' (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and Support Grants, CBFRS)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은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 및 방치 예방 및 가족문제 해결 위해 공/사립 기관의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하에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을 두는 정책이다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3). 본 취지하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주차원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

- 주와 지역사회의 상호 기관 파트너십 형성에 목적에 둔다.
- 부모를 완전한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상호교류적, 협력적 구조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에 둔다.
- 각 지역사회 기관들이 기금의 흐름을 조정하고, 추가적 자원을 연방 정부기금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접근을 찾는 것을 목적에 둔다.

가. 목적

공사립 네트워크 마련과 연방정부기금을 마련을 통해 아동청소년가족부에서는 책임있는 아버지 양육 (Responsive fatherhood)을 장려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장려하며, 가족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 빈곤 및 원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존하는 다양한 공/사립 복지 기관들 사이의 자원교류를 돕기 위해 지역기반, 예방중심, 가족 자원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확대를 위해 주정부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 부모에게 초기에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 특히 나이가 어린 부모와 영아나 유아를 둔 부모를 위해 부모양육 기술을 증진시키며
 - 가족 연속성 및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 부모에게 다양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도움이나 원조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기대하며
 - 장애아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며
 - 홈리스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 (나) 주정부와 지역기반 공/사립 복지시설의 파트너십 마련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예방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장려한다.
- (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가족들의 욕구나 문제들을 확인하여, 프로그램의 시작, 유지, 확대 및 재설계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 (라) 아동학대 및 방치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구에 대한 이해, 평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 프로그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기반 가족지원 서비스 보조금 지원 정책(CBFRS)은 현존하는 공사립 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보조금이 필요한 가족과 아동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핵심 기관을 선정하고 사

회복지사를 임용하여 현존하는 복지 서비스 통합과 충족되지 못한 목표와 문제들을 확인을 위하여 네트워크 마련에 초점을 둔다. CBFRS 정책은 아래의 현존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고 프로그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원활한 자원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후원한다.

(가) 장애아를 위한 임시아동보호(Temporary Child Care, Respite Care, TCR) 및 아동학대 및 방치의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한 위기아동 보육 (Crisis Nurseries, CN)

TCR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나 만성적 질병을 가진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가정 내, 혹은 가정 외 아동보호를 제공 한다 (의학적 보조는 제외). 본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나 1차 양육자는 일시적 기간 동안 아동 양육의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TCR은 일반적으로 14시간 서비스로 운영되며, 의학 서비스 이용, 상담이나 치료 보조, 아동 학대/방치예방을 위한 직원 훈련,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을 공급한다(<http://www.archrespice.org>).

CN은 가정 내에서 어떤 형태든 아동 학대나 방치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부모들에게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예방적 차원의 “time-out”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1)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2) 위험에 처한 아동의 양육자들에게 비위협적, 비처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3)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고자 현존하는 지역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http://www.archrespice.org>).

(나) 지역기반 가족자원 프로그램(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Program, CBFRP)

CBFRP는 아동학대 및 방치 위험을 예방하고자 지역가회기반 가족자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 장려 프로그램(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본 프로그램은 경제, 사회,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가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들을 위해 가능한 주/지역 아동복지 서비스를 검토, 평가하고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변화를 촉진한다.

(라) 가족지원 센터 프로그램 (Family Support Center Programs, FSCP)

FSCP는 홈리스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가족들의 자체적 생존능력을 기르고, 개인과 지역의 강점을 기를 수 있는 혁신적 접근들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마련한다. 본 프로그램의 강점은 복지 혜택을 받는 가난한 가족들이 직업을 구하게 됨으로써 ‘복지혜택 가족’의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아동보육 프로그램 (Child Care Program)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직업을 갖거나, 직업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육을 지원한다. 대리 양육자는 주나 지역에서 규정한 기본 안전, 건강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는 감염질환의 예방 및 통제, 안전한 양육환경,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 훈련 등이다.

(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의 아동의 교육에의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이전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어지던 정부 지원금이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아버지에게까지도 확대되고, 그리고,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아버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또는 지역사회를 통해 늘어나고 있다.

보건인간서비스부와 교육부는 각각 아버지의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인간서비스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s (NFI)가 있으며, NFI 는 아버지들의 아동 양육 참여를 장려하는 대중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2007년의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Be there for your kids)가 그 실례이다. 또한 보건인간서비스부에서는 지역 기관들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버지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www.fatherhood.org).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권장, 교육하는 비영리 단체의 예로는 '아버지 센터' (National Center for fathers)가 있다.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아버지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인 경우, 양아버지인 경우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센터'에서는 센터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라디오 방송, 뉴스레터, 학교 교육을 통해, 아버지들이 긍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아버지들을 아버지가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짝을 맺어주어, 그 아동들에게 양아버지가 되어주고, 긍정적인 아버지의 역할 모델을 보여주는 것을 돕는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전국에 걸쳐 많은 학교들에서 "WATCH D.O.G.S."이라는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

WATCH D.O.G.S.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또는 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들을 적어도 일년에 하루를 학교에 초청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피자 밤" 이나 "아버지와 함께 도넛을" 등과 같은 학교 행사에 아이들과 참여하거나, 학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일에 자원 하여 돕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Top Dog이라고 불리는 자원봉사 책임자가 있어서, 그 책임자가 교장과의 협력하에, 모든 스케줄을 계획하거나 아버지들이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등을 찾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동안, 여러가지 다양한 학교 업무를 돕고, 교실에서 교사의 보조 역할을 하거나, 소그룹의 아이들의 숙제나 학습을 도와주는 등 아이들의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

(<http://www.fathers.com>).

이 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상호협력 프로그램들이 있다.

② 아동학대 및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에 관한 제도 및 정책

국립아동학대부에 따르면 2008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수는 772,000명으로, 71.1%의 아동은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방치되며, 9.1%는 성적 학대를 받았으며, 9.0%의 아동이 심리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2.2%의 아동이 의학적 보호로부터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03년 아동가족안전보호법의 개정법인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 준거하여 각 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 (CPS, 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실시하였다. 본 제도의 목적은 향후 발생할 아동학대나 방치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각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이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CPS에서 실시하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8).

가. 예방 서비스(Prevention Services): 아동학대 및 방치의 위험이 있는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의 목적은 부모나 양육자들로 하여금 아동기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본 서비스의 예로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 퇴학 및 정학청소년 양육프로그램, 주택공급지원프로그램, 개별 혹은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나. 조사 후 서비스(Postinvestigation Services): 지역사회의 아동복지기관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아동보호를 위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제공된다. 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에 우선권을 두며, 일반

적으로 가족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조사 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예로는 개별 상담, 가족기반 서비스 (가족 구성원 전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가족 상담이나 가족지원 등), 가정지원서비스(가족복지, 상담, 집안일 등의 서비스 제공), 수양부모양육 서비스 (foster service)와 법서비스 등이 있다. 아동학대나 방치를 받은 아동들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부모로부터 분리/보호되며 분리된 아동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는 수양부모 혹은 타가정내 수양부모양육 서비스가 있다.

2008년까지 예방 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1,076,761명으로 이는 1000명당 43.6명의 아동이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이다. 보건인간서비스부(HHS)와 아동국의 연례보고에 따르면 본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나 방치의 재발생률 감소
- 수양부모양육이나 타가정내 양육에서의 아동학대나 방치를 감소
- 수양부모양육이나 타가정을 통한 학대아동 양육의 지속성 증가
- 아동학대 경험 후 수양부모양육이나 타가정 양육에 드는 시간 감소
- 아동학대 경험 후 수양부모양육이나 타가정 양육에서 아동입양으로의 진입에 드는 시간 감소
- 아동의 재배치 안정성 증가
- 그룹홈이나 고아원 등의 기관에 유아 배치율 감소

연방정부 산하 아동보호서비스(CPS)에서는 이미 지원을 받은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제공을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해, 각 주에게 아동복지 서비스 역량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Capacity-Building Initiatives)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서비스 취지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아동복지 자료 및 기술을 위한 국립 자료센터의 운영

아동국에서 각 주와 지역 아동복지기관 및 법원에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적 보조를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 수집된 자료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기관의 일상적 업무 속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정보사용에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차원에서 자동화된 아동 복지 정보 체제(Statewide Automated Child Welfare Information Systems)를 제공한다(<http://www.nrccwdt.org>).

나. 아동학대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지역기반 기금 지원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에 아동학대와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기반, 가족 지원 및 강화를 위해 설계된 예방 중심 프로그램 및 활동을 개발, 운영, 확대시키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지사는 반드시 보조금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금은 연방정부, 주, 그리고 사립 기금이 혼합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및 방치 예방 활동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 부모 리더쉽과 참여를 촉진 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주 내의 공립/사립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넷째, 자원봉사 가정방문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 지원 센터, 및 정학/퇴학자녀 보호 및 위기가정 보호, 부모 상호 지원, 그리고 다른 형태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증거-기반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다. 아동국 산하 국가 질 향상 센터 운영

아동국은 국가 질 향상 센터를 운영하여 공급이 우선시 되는 지역을 발견하기 위해 증거-기반 전략 및 지식을 개발한다. 기금을 받은 중심 지역에 대한 연구 및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를 한다. 증거기반 실재를 확대시키기 위한 국가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개발, 실행, 지원한다. 계획과 평가 그리고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질 향상 센터는 1년의 계획, 평가단계를 거쳐 그 후 4년간의 연구 및 시범을 거쳐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고 평가한다(<http://http://www.acf.hhs.gov/programs/cb/tta/index.htm#qips>).

라. 미동거 아버지(non-Residents Fathers) 참여 아동복지 서비스

이혼이나 미혼모 등의 편모 가정의 아동들에게 아버지가 아동들의 삶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 제도의 목적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들을 찾고, 연결하고, 아동양육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대중인식 강화활동 및 프로그램

아동학대 및 방치예방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계획자가 대중의 주의를 끌고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한다. 홍보활동은 국가, 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대중인식 강화활동 및 프로그램

구분	내 용
국가 차원	1. 미국 아동 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위험과 학대 행위에 대한 대중 인식 증가를 위한 활동
	2. 아동 위탁 기금 주에서 운영하는 아동위탁기금 본부와 지역관련부서는 협력 하에 각 주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중인식 함양을 위한 활동
	3. 흔들린 아기 증후군 연합 첫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해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 아기들이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뇌출혈, 망막출혈 등의 질환)에 대한 위험과 증상을 알리는 홍보 활동
	4. 어둠에서 빛으로 대중 인식 및 교육을 통해 아동 성학대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활동
주차원	1. 안드리아 지역 Tennessee 아동을 위한 걷기 캠페인 전 영부인 Tennessee여사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대중 인식 함양과 지역 서비스 기관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걷기 캠페인
	2. 캘리포니아 아동 학대 예방 연중행사인, “아동의 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역 차원	1. Saginaw지역 아동학대 및 방치 지방 의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월간 행사와 연간 행사를 주관
	2. Quad 지역 아동 학대 지역 의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역 활동을 홍보
	3. 북 버지니아 아동학대 Stop Now 다양한 아동학대에 관련된 과거정보와 현재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함. 아동학대예방과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지역 메시지와 소통하도록 하는 활동 마련
	4. 버지니아 사회서비스부 버지니아에서 월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하는 활동을 홍보. 긍정적 부모되기, 아동 발달이론,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양육, 학대 및 방치 예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예방/양육 소책자 제공
	5. 뉴욕 아동학대 및 방치 반대연합 아동학대 및 방치 반대 박람회, 기금마련 외 다양한 행사를 월별 제공

* 출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③ 기타 새로 개정된 국가차원 아동가족 맞춤형 공공부조정책 및 관련 웹사이트

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정책: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원조 서비스(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공공부조”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세금-지원 프로그램이다. TANF는 이러한 아동이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가장 큰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TANF는 1900년대 어머니 연금(Mother's Pensions) 프로그램에서, 1935년 부양 아동 가족지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으로 이름을 개정한 후, 다시 1988년 가족보호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TANF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었다.

본 서비스는 부모의 죽음, 가정 내에서의 부모거주의 지속적 결속, 정신적/신체적 장애, 실직 등과 같은 박탈로 인해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 가족에게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협력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본 취지는 소득이 없거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아동양육에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동이 최소 한명의 부모로부터 혹은 친척으로부터 양육될 수 있게 하거나 아동이 다른 시설에서 양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TANF의 주요특징은 (1) 거의 모든 성인 수령자들이 직업이 있어야 하며, (2) 공공부조를 받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60개월, 5년미만), (3) 주에 따라 프로그램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3년 기준, 각주에서는 평균적으로 월소득 \$703 미만일 경우 지급 가능하나, 알라바마의 경우 \$259미만일 경우, 하와이에서는 \$1,641미만일 경우 지급가능하다.

나. 직업과 가족 지원(Work and Family Supports)

생활보호대상자로 공공부조를 받던 빈곤가족이 복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소득 임금가족으로 분류되었을 때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요 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과 의료보조(Medicaid,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신체 장애인 의료 보조 제도), Food Stamp program (최저생계 가족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TANF를 받지 못하는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식품품 가게에서 일정 금액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Downs, Moore & McFadden, 2009).

다. 관련 웹사이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과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있어 많은 부분 상호연계 속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상호연계 속에 아동청소년가족 복지에 관련 정책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관련 웹사이트

Annie E. Casey Foundation	www.aecf.org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의 소외계층이나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개설되었다. 이 재단은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 인간 서비스 개혁, 지역사회 보조 등을 후원한다.
Child Trends	www.childtrends.org
	비영리, 비참여 연구 기관으로 연구, 시범, 과학-기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프로그램, 결정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www.childwelfare.gov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보건인간서비스부와 아동가족부, 아동국 관할 국가기관이다.
The 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Center on Legal and Judicial Issues	www.abanet.org/child/rciji
	학대나 방치 아동들이 법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www.nccp.org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의 경제적 보장, 건강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핵심 국가 정책기관이다.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www.nichd.nih.gov
	아동건강 인간발달 국립연구소에서는 부모의 임신에서 자녀의 성인기까지 아동, 성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사법부(U.S. Department of Justice)

미 사법부 산하의 미성년 비행 및 범죄 예방 사무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서는 아동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만 치료, 중재, 범죄 재발생 예방의 목적으로 실행해 왔으나, 최근 20년전부터 범죄 발생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이 일반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법부의 이 접근은 "범죄 예방의 공중 보건 모델"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비행 및 범죄 예방 사무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모델 프로그램 가이드 (Model Programs Guide)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프로그램 가이드에는 다양한 목적 및 수준별 - 예방 (prevention), 즉각적인 중재 (immediate sanction), 집중 중재 (intermediate sanction), 수용 중재 (residential), 귀환 (reentry) - 에 따라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권장 프로그램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평가결과도 함께 실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 가이드의 5개의 카테고리 와 서비스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예방 (Prevention) 프로그램 - 처음으로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법정에 연루된 미성년의 사후 예방이나 비행의 경험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전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
- 즉각적인 제재 및 중재 (Immediate Sanction) 프로그램 - 처음으로 비행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차원의 프로그램.
- 집중 중재 (Intermediate Sanction) 프로그램 - 반복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이 자신의 행동에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차원의 프로그램.

- 수용 중재 (Residential) 프로그램 -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이나 반복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원의 프로그램.
- 귀환 (Reentry) 프로그램 - 미성년이 형량을 선고받는 과정부터 구치소에 들어가고, 출감하며,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계속되며 미성년을 교화하고 범죄의 재발생과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

여기서는, 모델 프로그램 가이드에 소개되는 것들 중 초등학생 연령 중심의 가벼운 중재 및 예방 차원의 중심의 프로그램들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할 프로그램들은 현대의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력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을 중재하거나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성, 감정통제, 문제해결력, 건전한 판단력등을 키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향상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기게 될 정서와 행동발달의 문제를 중재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는데, 이 프로그램들도 나머지와 비슷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 건전한 판단력 형성등과 반사회적 행동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정부에서 후원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기관 및 대학에서 개발되고, 각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비영리 기관들에 의해 실행되어 지고 있다.

<표 III-6>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위한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실례

프로그램	대상	형태	실행 장소	목적	실행기간
패밀리 솔루션 (Family Solutions)	만 7 ~ 16 세 문제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	가족	지역사회 기관	치료, 중재 및 예방	10주, 매회 두시간
빅브라더 빅시스터 (Big Brother, Big Sister)	만 5~18세 문제 아동및 청소년	일대일 멘토링	지역사회, 가정, 학교	중재 및 예방	1년, 월4회, 매회 4시간
학습지도 및 사회성 기술 교육	만 9~10 세 문제 아동	일대일 지도	학교	중재 및 예방	6주, 주3회
엘의 친구들 (Al's Pals)	만 3~8세 아동과 부모	학부모 교육, 아동 교육	학교, 방과후 학교, 아동복지센 터	예방	23주, 주 2회
이혼가정 아동 중재 프로그램	만 5~13세 이혼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소그룹 수업	지역사회 기관	중재 및 예방	12~15회
칠드런 인 미들 (Children in Middle)	만 3~15 세 이혼가정의 아동과 부모	부모 교육 아동 교육	지역사회복 지기관과 가정	중재 및 예방	2~4개월
인크레더블 이어즈 (Incredible Years)	만 2~10세 아동, 부모와 교사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아동 교육	학교	예방	6회
Family Strengthening (가족강화)	만 6~12 세 아동과 부모	아동 교육, 부모 교육, 가족 단위교육	지역사회 복지기관	예방	14주, 주1회
Family and Schools Together	만 4~12세 아동과 부모	그룹 단위 가족 교육	학교	예방	8주, 주1회
프로젝트 페이스 (PACE)	만 9세 ~ 10세 아동과 부모	일대일과 그룹, 아동 교육, 부모 교육	학교, 가정, 지역사회	중재 및 예방	주 1회(학교), 정기적(가정) 주말(지역사회)

* 출처: <http://www.ojjdp.gov/mpg/prevention.aspx?continuum=prevention>

① 패밀리 솔루션 (The Family Solutions Program)

패밀리 솔루션 프로그램은 사법부가 지원하는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만 7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첫 범죄,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지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종합적, 다문화 맞춤형, 아동중심적, 가족 맞춤형, 지역사회기반형, 검증된 자료에 입각한 아동복지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며, 일반 개인이나 가족에게 행해지는 일반 치료요법과 비슷하나, 여러 가정이 그룹으로 함께 실행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정의 경험을 나누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문제에 직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며, 다른 가족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보고 들으며 도움을 얻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여러가정이 한 그룹을 이루어 진행함으로써 대체행동 방안을 함께 찾아가며 그것들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서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에서 멤버들은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는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그룹 멤버들의 행동변화에 대한 저항이 다루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가정들이 서로에게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그 경험들을 통해 어떻게 앞으로의 행동변화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체계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들은 가족내에서,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도우며 동시에 인간행동변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10주간, 매 회 두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여섯 가정내지 여덟 가정이 그룹을 이루게 되고, 적어도 한명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룹 책임자가 있어 그룹간의 상호작용을 도우며 그 상호작용을 방해하게 되는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그룹 책임자를 돕는 진행자가 보조역할을 한다. 그룹 책임자는 대학교 인문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사를

가진 사람이 하게 되며, 그룹을 형성하는 법 및 신뢰감 형성을 포함한, 다 가정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룹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10회에 걸친 이 프로그램 과정을 최소한 한번 이상 진행자로서 도와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각 수업시간에는 발달과정과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주요한 영향들을 다루며, 다양한 활동과, 역할극, 비디오 시청등을 하며, 가족간 협력, 가정과 학교 연계형성, 부모 양육법, 교육, 의사결정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갈등해결, 졸업하기 위한 과정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www.families4change.org).

② 빅 브라더 빅 시스터 (Big Brothers Big Sisters)

이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이탈의 가능성이 있는 만 5세에서 18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멘토링을 통해, 알코올 및 흡연, 폭력등을 예방하고, 이들의 대인관계 기술 향상시키며,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특징은 특정한 문제행동이나 문제를 교화시키려는 방법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아동과 어른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약 385개의 지역 연계기관을 통해 실행 되어지고 있다.

각 기관이 아동과 자원봉사 멘토를 연결시켜 주면, 멘토가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달 4회, 회당 4시간 정도를 아동 및 청소년과 보내게 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멘토와 아동은 발달수준에 적합한 활동들 - 예를 들어 걷기, 도서관 방문, 세차, 던지기 놀이, 식료품 쇼핑, TV 시청, 연극 또는 영화 관람, 학교 행사 참여, 스포츠 행사 참가, 또는 놀기나 대화-을 하게 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며, 대인관계 기술이 발달되고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Grossman & Garry, 1997).

지난 10년에 걸쳐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꼬마 동생'을 한 주에 한시간씩 만나 함께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만들기를 함께 하거나, 또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각 기관들이 프로그램의 형태를 특정필요를 위해 조정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은 자원봉사자 구인, 신분확인 및 검증을 거치는 과정, 짝지어주기, 실행관리등을 연방정부가 관할하며 진행된다.

아동과 어른의 짝맺어주기 과정은 성공적인 멘토로서의 자질을 갖춘 성인을 선택하며 아동과 공통점이 있는 성인으로 짝을 맺어주게 된다. 스태프 관리와 지원은 멘토와 멘티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ttp://www.bbbs.org>).

③ 학습지도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Academic Tutoring and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학업이 부진한 만 9 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사회성 개발을 위해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아동과 6주간에 걸쳐, 주 일회씩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상 아동이 같은 반의 학생과 함께 짝을 이루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올바른 행동 - 예를 들어 수업 참여, 협동, 커뮤니케이션 방법, 도우는 방법 등- 에 대한 역할극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한 코칭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번, 각 45분씩 대상 아동이 튜터와 함께 일대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동이 한가지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면, 이미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더 심도 있는 기술을 가르쳐 습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행동발달 테크닉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왔다.

④ 엘의 친구들 (Al' s Pals)

이 프로그램은 만 3세에서 8세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으로써, 성격이나 행동양태가 형성되는 어린 시기에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항력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교사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신나는 레슨과 인형극, 노래, 기타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해 '엘의 친구들'은 어린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 관리하며 문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가르치며, 각 개인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촉진시키며, 따돌림을 시키는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약물, 마약등의 위험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아동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사로 하여금 훈육에 쏟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협동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수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와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교사들이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개념을 아동에게 사용하고 가르치며 사회성과 정서적인 안녕의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며, 실제상황들을 제시하며 실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대도시, 소도시, 및 시골 지역 또는 인종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학교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 아동복지 센터등 모든 장소에서 어린 연령 대상아동에게 실행가능하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온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성을 개발하게 되고, 학교 활동 참여도가 향상되며, 대인관계 기술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며, 원만한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며, 문제해결력을 키우게 된다.

46회에 걸친 레슨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고, 문제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그리고 안전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각 레슨은 일주에 두번씩 23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 레슨당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 때, 두 세가지의 활동을 하게 된다. 14번째 레슨에는 부모님을 위한 활동이 있으며 부모님께 쓰는 편지가 있다. 이에 선택적인 사항으로 교사는 레슨 당일의 나중 시간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더 연장,보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이 과정을 수료한 2학년 또는 3학년의 학생들에게는 9회에 걸친 보충 및 강화 교과과정이 실행되어 진다. (http://www.wingspanworks.com/educational_programs/als_pals_index.php)

⑤ 이혼 가정 아동 중재 프로그램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이혼 가정의 아동 중재 프로그램은 만 5세에서 13세의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이다. 12회에서 15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며, 가정의 변화로 인해 아동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며, 아동의 환경 적응력을 키워주고, 아동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등 지역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효과를 인정받아왔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른 필요와 정서적 반응에 맞춘 네가지의 맞춤형 교과과정을 따르며, 여러 가정의 아동이 그룹으로 함께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의 5가지 목표는 아래와 같다(<http://www.childrensinstitute.net/programs/codip>).

- 안전하고 지지적인 그룹 분위기 조성
-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감정 인식과 표현을 돕기
- 이혼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고 오해 수정

- 효과적인 대처술과 대인관계술 향상
- 긍정적인 자아상과 가족상 형성 돕기

⑥ 칠드런 인 더 미들 (Children in the Middle)

이 프로그램은 만 3세에서 15세의 이혼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습득, 중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 가정은 가정문제 재판소가 지정하는 해당지역의 사회 복지 기관 또는 전문대에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아동은 각각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며 아동을 위한 그룹과 부모를 위한 그룹으로 따로 교육을 받게 된다. 부모를 위한 비디오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갈등의 중심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는 기술을 알려주며 아동을 위한 비디오에서는 아이들이 부모가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집중력 저하, 학업성적 저하, 학교에서의 문제행동들, 친구와의 관계회피, 정서적 분노 표출, 건강상의 문제, 부모에 대한 심한 분노 등의 문제, 약물 복용 등의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진행자에게는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룹 진행자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첫 세션은 부부가 한팀이 되어 이혼에 관련된 갈등에 있어 적절한 대처 방법과 부적절한 대처방법으로 재연한 역할극으로 된 37 짜리 비디오를 보여준다. 이 비디오 상영 중간 중간에 부모들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 질문들은 아동이 부모의 충실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질문들이다. 또한 참고도서를 활용한 활동과 역할극은 부모들이 새로이 습득한 기술을 연습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수업은 보통 90분에서 120분간 진행된다. 반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정신 보건 전문 담당자가 학교에서 하거나, 그룹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행해진다.

부모와 아동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난 후에는 교과서 활용 예시를 집이나 전문가의 사무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해보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가정 담당 상담사가 교재를 2달내지 네달에 걸쳐, 4회에서 10회에 나누어 사용하게 되며 부모에게는 "아이들은 어떡해요?" 라는 책자와 부모와 아이들이 집에서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침서가 주어진다 (<http://www.childreninthemiddle.com>).

⑦ 인크레더블 이어즈 (The Incredible Years)

이 프로그램은 만 2세에서 10세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 다각적, 발달수준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서학습 모델(Social Learning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사회적 작용과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 강화(벌)는 아동의 일탈 행동과 부모와 교사의 강압적인 행동을 부추기므로,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부모와 교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긍정적이며 적절한 문제해결과 훈육 방법을 보여준다면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되어있다.

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 1단계 기초 프로그램

1단계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문제 행동 저하시키는 양육방법을 강조한다. 아이들과 노는법, 학습지도 하는 법, 칭찬과 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한계 설정을 사용하는 법,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분노관리, 어른과의 문제해결법, 지지를 받고 도움 주는 방법을 다룬다.

■ 2단계 그룹 프로그램 (아동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이 단계에서는 예상 가능한 시간 - 즉, 숙제를 하는 시간등 -을 일정한 시각으로 정하고 아동의 학습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을 고무하는 양육방법을 강조하며, 이 단계에서는 1단계 프로그램에서 습득된 기초적인 사회적인 기술을 아동의 학습 지도에 적용시킨다.

나.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만 4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과 일하는 교사, 학교 상담사, 심리치료를 대상으로 하며, 6회에 걸친 심도있는 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친사회성 행동과 기본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실내에서의 폭력을 증감시키고, 교사와 친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교사의 수업 매니지먼트 전략강화에 중점을 둔다. 교수법은 교실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일화를 담은 비디오를 사용해 배우며 그룹 리더들은 비디오를 사용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에 대해 토론을 이끌어 나가고 교사들을 생각을 나누게 한다. 그룹 리더들은 역할극과 과제를 통해 교사들이 중요한 원리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 연습하도록 돕는다.

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과과정인 "the Dina Dinosaur Social Skills and Problem-Solving Curriculum" 은 아동이 감정을 읽어내는법, 이타심과 배려심 및 우정 키우기, 분노관리, 대인 문제 해결, 학교 규칙 지키기, 학교에서 잘 지내는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는 리더 매뉴얼과 아동과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아동도서, 집에서 하는 탐정 놀이 안내책자, 게임활동, 아홉개의 비디오 테잎으로 구성되어있다(<http://www.incredibleyears.com>)

⑧ 가족 강화 프로그램 (The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만 6세에서 12세의 자녀를 둔 위험요소나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당 1회씩 14주에 걸쳐 행해지며, 문제 부모들에게 양육 기술과 가족관계 기술을 교육하고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아동은 각각 다른 수업에 참여하며, 각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연습하게 되는 한 번의 수업에서만 함께 참여 한다. 그 후에는 프로그램 참가 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2회에 걸친 강화 수업에 참여한다.

아동을 위한 수업에서는 목표 설정하기,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 하는 법, 의사소통 기술, 책임감 있는 행동, 또래 집단 압력에 대처하는 법 등을 다루며, 또한 부모, 교사,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법,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등을 알려주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를 위한 수업에서는 목표 설정, 양육법, 아동관찰, 적절한 훈육법 등을 다루게 되며,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 발달 양태를 배우고, 부모가 긍정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는 법, 아동이 놀이를 주도하도록 하는 법, 긍정적인 아동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는 법, 긍정적인 가족 의사소통법- 등을 가르쳐 준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함께 가족단위로 하게 되는 이 수업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각각 따로 받은 수업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이 시간에는 그룹 진행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지도해 주며 고무해준다. 가정에서 하게 되는 과제들을 통해 집에서 새로이 배운 기술들을 연습하고 개선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1983년에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들의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후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인 특색에 맞게 조정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중이다(<http://strengtheningfamiliesprogram.org>)

⑨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FAST)

FAST는 여러 가정이 그룹으로 이루어져 행해지는 가족 단위 예방 프로그램으로, 만 4세에서 12세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하고, 부모가 아동의 일탈을 사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그룹을 형성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AST는 1988년에 개발되어 현재 미국의 45개주의 800개가 넘는 학교와, 5개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

FAST의 취지는 일찍 아동이 지역사회나, 가정, 학교 등에서 문제 행동-범죄, 약물 중독, 학교 중퇴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며, 특징은 부모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지원함으로써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관계의 강점을 이용해, 아동들에게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타 가족, 또래친구,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일탈 행동을 하거나 학업과 사회적 행동에 있어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의뢰하면, 전문가가 가족에게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유하게 되면서 시작되는데, 훈련된 담당자(이 프로그램을 과거에 거친 사람일 경우가 많음)는 가정을 방문해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과 학교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게 된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덟내지 열 가정이 8주에 1회씩 학교에서 두시간 반 정도 함께 모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에는 식사, 체계적인 가족단위 활동, 나눔, 상호 지지 시간,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놀이 치료등을 하게 된다. 이 그룹 활동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학교 문화와 연결고리를 가질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친다. 훈련을 거친, 부모, 학교 관계자, 사회 복지사, 약물상담사가 팀을 이루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며, 이 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가족은 8주후

에 수료식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는 가족이 주최가 되어 매달에 한번 2년간 미팅을 갖게 된다(<http://familiesandschools.org>).

⑩ 프로젝트 페이스 (PAC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Education)

PACE는 알코올, 담배, 약물 등의 노출의 위험이 있는 만 9세에서 10세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매주 한번 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하게 되는 모임과, 정기적으로 일대일로 상담사와 하게 되는 가정에서의 모임, 매달에 한번, 견학, 가족 활동, 여름 캠프, 주말 수련회, 레크레이션과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활동 등을 하게 된다.

부모는 가정 방문 상담사와의 미팅, 가족 활동, 부모 교육을 위한 그룹 미팅, 아동을 위한 캠프에의 참여, 견학과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상담사는 부모들에게 취업, 교육, 사회보장보험, 영어 클래스 등에 관련된 정보 등을 주거나, 이를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들 학부모(특히 이민자 학부모)들이 학부모회의(PTA)나 기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을 도와주고, 학부모와 학교 지역의회등과의 연결망 역할을 해 주는 동료(Buddy)를 지정해 주어 이들을 돕는다.

3) 지역기반 중심 개별 성공사례 소개

(1) 보육제도내의 아동복지 지역기반 접근

아동학대나 방치의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나 경제적 문제 등 가족 문제로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들이 보호기관 등의 시설이나 대리양육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근

거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아동복지실제에 있어 지난 몇 십년 동안 중요한 핵심과제이었다. 서비스 전달 모델에서 가족 보존 운동으로, 나아가 팀 의사결정모델과 같은 실제 모델로 전환되면서 아동의 삶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에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2003년 아동국에서는 아동복지제도 내에서 아동과 가족들의 혜택향상을 위한 복지접근 제도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9개의 시범 기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국가차원 아동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과 아동들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6개 원리, 즉, 1) 기관 간 협력, 2) 개별화된 장점기반 복지, 3) 문화적, 언어적 효능감 장려, 4) 아동, 청소년, 가족 참여, 5) 지역기반접근(Community-based Approach, CBA), 6) 책무성에 따라 설계되었다.

위의 6개의 원리 중 다섯 번째, 지역기반접근(CBA)에 근거한 미국의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의 실체를 살펴보고, 운영과 평가, 더 나아가 개선 사례 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연구의 흐름은 최근, 아동복지제도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지역사회-기반 접근은 크게 아래의 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아동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자원으로써의 지역사회
- 복지제도 향상을 위한 제 3의 역할로써의 지역사회 구성원

① 지역기반접근(CBA)의 절차 및 실제 사례

가. 아동배치와 사례 계획

타양육자에 의한 양육이 요구되는 아동의 적절한 배치와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례계획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와 지원이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사회복지정책 및 실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사회복지사를 안내하여 지지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나 방치 등으로 인해 원가족에서 양육될 수 없게 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배치 문제에 있어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 아동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California의 Contra Costa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학생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양 부모를 지역사회 내에서 선정할 수 있었다. 추후 아동양육에 대한 사례계획에서는 수양 양육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며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Contra Costa의 경우, 개별아동과 개별 가족을 위한 보호 계획을 개별적,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서비스와 지원을 세분화시켰다.

나. 지역안내자로서의 가족구성원

개별 가족구성원들은 사회복지파트너로써 가족의 지속적 지원에 타인(사회복지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자원을 분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요원이 알지 못하는 지역 내의 자원 및 정보 활용에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구성원을 활용할 경우, 가장 좋은 점은 개별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복지혜택을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점이다.

- ▶ 실제 사례: Las Vegas, Nevada의 아동복지기관 소속 아동양육자들을 대신하여 친척들을 교육시켜 대리양육자로 배치하였다. 그들은 아동들이 속한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아동복지제도 사이에 핵심적인 연결망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족과 아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친척들은 의사 전달자로, 지역사회정보 및 자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지역사회를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기

사회복지정책 협의회나 이사회에 지역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복지 제도의 개발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 모아진 정보와 지원은 실제적이고 개별적이며 즉각적 복지혜택의 수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협의내용과 자료들은 사회복지기관 내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정 및 증진에 도움을 준다.

- ▶ 실제 사례: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가족 혹은 친척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복지사는 가족이나 아동으로부터 덜 소외되며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아동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Kansas의 Reno에서는 지역 구성원과 가족들이 주최하는 지역 가족 중심 아동보호위원회를 열어 포괄적인 지역-자료집과 자료집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Colorado의 Jefferson시에서는 협의회를 거쳐 사회복지사 훈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였고, 지역서비스 공급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내부자와 외부자가 모두 지역과 학교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양육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역기반접근(CBA) 수행에 있어서 난점 및 극복사례

가. 유의미한 방식으로 아동복지에 참여할 가족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의 어려움

- ▶ 난점: 가족 및 지역사회구성원 참여에 철학적 근간을 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구성도 및 활용도가 높다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고 위원으로 활동할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참여를 해왔던 구성원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 배치 및 수정된 절차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였다.

▶ 전략:

- 뉴욕 아동서비스부에서는 학대나 방치 경험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일시적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지역구성원들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사회복지제도에서 표방하는 복지 원리에 근거하여, 지역파트너쉽안 (Cradle)을 개발하였다. 안에 따라 지역기반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의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생활환경조사원 (국가 사회복지기관 소속)과 서비스 공급자(비영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소속)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4-5시간 동안 식사를 하여 대화할 수 있는 모임을 개최하였다. 지역 내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가능한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생활환경조사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모임을 통해, 문제아동이나 가족에 관한 모든 사례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상담규정을 만들었다.
- Contra County에서는 가족 파트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가능한 가족 구성원 선발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 행정가가 아동복지사들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조사원들의 평가에 근거하여 핵심적인(invaluable assets) 가족파트너로 지명된 구성원들을 고용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직업을 개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 Jefferson시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 아동복지 지원요원, 전문 목사요원, 기부 관리요원, 대리양육 및 입양가족 지원요원, 컴퓨터 교사, 종교기반 협력요원 및 가정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을 다양화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이고 그들의 능력에 적절하게 다양한 책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지역사회구성원들과 파트너쉽을 형성을 통해 복지활동을 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정책 자체의 엄격성과 융통성 부족

- ▶ 난점: 국정평가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관이 복지제도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및 직원들로 하여금 그 원리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생활환경조사원들이 복지원리를 학습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학습 후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시간낭비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아동이나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 외 요구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 ▶ 전략: Contra Costa에서는 고문단 내 가족들을 대표할 가족 구성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선발된 구성원들은 사회복지기관의 고문단의 협의를 통해 아동이나 가족들에게 규칙적인 피드백과 문제해결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조역할을 하였다.

North Carolina에서는 고문단에 참여준비를 위해 가족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월 모임을 통해 가족 파트너의 역할, 비밀모장 및 제도적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아동복지시설 및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부정적 인식 변화시키기

- ▶ 난점: 학대나 방치, 혹은 재정적 문제와 같은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양육시설이나 타양육자에게 배치시키는 것은 가족들에게 분리불안이나 사회적 시선의식 등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 전략:

- 뉴욕의 CRADLE 프로그램은 지역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질문이나 관심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복지제도 내의 학대나 방치 혹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영속에 관한 법률과 법적 책임을 소개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료하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포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족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낮은 참여도는 서서히 개선되었다.
- Pennsylvania의 Dauphin에서는 지역적 복지제도를 개발하여 인간서비스 기관, 자원봉사자, 지역사업가들, 교회, 학교와 지역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아동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새 주거지역으로 이사한 저소득층 가족의 가구지원, 아동 멘토링, 청소년을 위한 리더쉽 개발 기회, 의복 지원 등이다. 또한 지역의 비영리 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 시설들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었다.

4) 한국의 아동가족맞춤형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

미국의 아동가족맞춤형 복지 정책 및 제도는 연방정부 아래 주로 보건 인간서비스부, 교육부, 그리고 사법부관할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인간서비스부와 사법부 관할 아동가족맞춤형 복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 첫째, 미국의 복지정책의 상당부분이 아동학대 및 방치의 경험 혹은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나 범죄 및 비행의 경험 혹은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들이 부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다양했다. 둘째, 사회복지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개별 아동과 가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위해 주요 정책들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들은 1) 네트워크 형성과 2) 파트너십 마련이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동복지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1) 기금마련을 위해 정부, 주, 지역단체 및 개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체계적 노력이 이루어진 다는 점과 2) 대학 및 사설연구기관의 의뢰를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추후 연구와 평가 및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 아동·청소년 학대 및 방치와 아동·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관련된 미국의 아동가족복지정책이 주는 시사점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미국에서는 사법부에서도 비행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단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조를 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사법부 산하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예방 사무국에서는 만5세에서

18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실행을 후원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행 및 범죄의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시켜 개별화된, 지역중심, 가족중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대학입시제도 및 과잉 조기교육 열풍으로 교육스트레스 및 사회성 결여 등 아동/가족/청소년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사후처리접근이 아닌 예방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한국의 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방과 후 학교 혹은 아동복지센터 등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왕따 문제, 낮은 자존감, 폭력성 및 반사회적 행동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문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점이다.

사법부 산하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예방 사무국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가족을 위한 중재 혹은 예방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패밀리 솔루션 프로그램, 이혼가정 아동중재 프로그램,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그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강화 프로그램, 가족 학교협력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들은 아동가족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별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의무화하여 (이혼가정의 부모와 아동이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Children in the Middle program) 시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일부 의무화된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는 가족과 아동의 문제를 가족 혹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공적 책임하에 두고 문제해결에 정부를 포함한 복지기관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숙제, 훈육방법습득 및 실제 활용, 분노관리, 의사소통법 등으로 아주 구체화, 개별화되어 있었다. 복지정책이

나 제도가 진정한 형태의 아동가족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동 복지정책의 접근 및 방향에 있어서 비판적 반성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2)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

첫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정부, 주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 공사립 기관 간의 협력체계 마련,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기금을 통해 현존하는 공/사립 복지기관들 간의 자원 및 정보 교류를 돕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의 아동가족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중 하나는 기관 간 혹은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와 자원이 쉽게 전달, 이용 될 수 있도록 실제 자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복지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공사립 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에 초점을 두어 내부 문제들을 검토하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각 기관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에는 거시적으로 주정부와 지역사회복지시설 파트너십 형성, 공사립 사회복지기관 간의 파트너십 형성, 지역 비영리 복지시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비롯하여, 미시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와 지역구성원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사회복지사와 가족구성원 간의 파트너십 형성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접근(CBA)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아동가족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국가 아동복지제도 관할 하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간의 협력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지역기반 아동가족맞춤형 복지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가족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의 재산이자 파트너로 여겨질 수 있도록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지역구성원 및 가족과 사회복지사 간 모임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전환도 요구되는데 지역사회구성원이나 가족구성원들을 단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에 있어서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핵심요원으로 보아야함을 제시하였다.

(3) 정부의 기금마련 및 보조를 위한 노력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적 평가와 증진

정부에서는 주와 지역차원으로, 지역기반, 예방중심, 가족자원 및 지원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 마련 운동을 장려하였고, 보건인간서비스부 등 정부기관 자체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기금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평가를 통해 주정부 보조금이 사립, 공립 및 비영리단체 복지기관 및 시설에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하였다. 정부보조금이나 기금융통의 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나 기금을 받은 지역이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은 복지프로그램 개발이나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과 갖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뿐 아니라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를 통해 개별화된 지역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평가/실행/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개발/평가/실행된 프로그램은 국가기술지원 및 평가센터에서 발행하는 "A Closer Look"이나 국립 아동복지자원센터에서 발행하는 "Best Practice Next Practice"와 같은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다룬 책자 및 웹사이트 등을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 및 정보를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중심 아동가족맞춤형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와 난점 및 극복 방안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평가는 국가 및 주정부 보조금 혹은 기타 사립 지원금 등에 의해 국가아동복지정책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역화 개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활용도가 높다. 즉 지역단위의 복지 재정 확보와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지역중심 아동가족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진정한 지역화와 개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Ⅳ. 아동·가족 유형별 욕구

1. 기존 욕구조사 결과 소개
2. 아동·가족 욕구조사 결과
3. 주양육자의 지원서비스 욕구조사

IV. 아동·가족 유형별 욕구

1. 기존 욕구조사 결과 소개

1) 지역사회욕구조사

사회복지사업법은 각 지역별로 지역사회욕구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욕구조사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민이 원하는 욕구, 바램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별도의 설문도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지의 척도가 지역별로 상이하여 지역사회욕구조사 결과를 지역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담당자 또한 인정하는 바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욕구조사를 국가차원의 욕구조사로 보고 분석하는 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욕구조사 분석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욕구조사

국차원에서 이루어진 욕구조사에 관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에 대상별통계(http://www.kosis.kr/themes/themes_03List.jsp) 및 이슈별통계(http://www.kosis.kr/themes/themes_04List.jsp)에 잘 정리되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각각의 다른 연구들에서 살펴본 욕구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연구시기와 연구주체, 연구의 목적이 매우 상이한 데다가 지역별, 가족유형별 비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지역특성이나 가족특성에 따른 욕구의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 또한 4-5년이상 지나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

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국가차원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총망라하여 나타냄으로서 아동, 가족 욕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국가통계포털상에 나타나는 아동, (주양육자 역할과 관련한) 여성, 가족의 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⁶⁴⁾. 단, 유사한 데이터가 연도별로 있는 경우 가장 최근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⁶⁵⁾.

(1) 대상별 통계

① 아동에 관한 국가차원의 욕구조사 결과

가. 아동

(가) 아동취학 및 학업(비용)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2008년 기준)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96,901원(저소득 39,970원, 일반 10,455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가구평균 394,800원(저소득 193,530 원, 일반 421,790 원)이며 1인당 평균은 184,090원(저소득 100,720원, 일반 222,780원)이다.

아동 분야 재정 부담의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가(중앙, 지방정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49.50%로 가장 많았으며 다

64) 기존 아동, 가족 욕구조사를 리뷰한 결과, 변화하는 아동, 가족의 욕구를 지역별, 가족유형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추가 욕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단, 추가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욕구조사에서는 국가통계상에 나타나는 욕구조사 결과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특성별 비교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문헌조사 결과 도출된 아동, 가족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치중하기로 하였다.

65) 각 통계치의 표를 모두 제시할 경우 본 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측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중요 통계만을 서술식으로 요약, 제시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음으로 가족 친지 39.70%, 비영리 민간기관 4.30%, 직장 3.80%, 민간기관(영리기관) 2.70% 순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복지 및 상담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이용만족도에 대해 2007년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한다고 한 비율이 24.00%(저소득 34.90%, 일반 16.90%), 2008년 100.00%(저소득 100.00%, 일반 100.00%)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복수응답)에 대해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43.90%(저소득 85.50%, 일반 16.90%), 기타 5.70%(저소득 14.50%, 일반 없음)였다. 2008년의 경우 공공기관 14.65%(저소득 20.38%), 사회복지관련기관 17.62%(저소득 24.51%), 학교 9.33%(저소득 12.97%), 기타 28.1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30.29%(저소득 42.14%)로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학교급식)(2006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20.4%(저소득 53.3%, 일반 14.5%)가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특히 저소득층의 요구가 과반수 이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2006년 기준)을 살펴보면 6.1%(저소득 18.2%, 3.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역시 저소득층의 응답률이 전체의 1/5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는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85.5%(저소득 86.6%, 일반 8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관련기관은 0%로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학교는 13.7%(저소득 13.0%, 일반 14.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는 0.9%(저소득 0.4%, 일반 1.3%)로 나타났다.

(다) 아동입양

아동입양에 대한 견해(15세이상 인구, 2008년 기준)를 살펴보면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 3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32.3%,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 17.4%,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희망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⁶⁶⁾

(가) 생활시간 활용

학생의 재학정도별 평균시간을 요일평균으로 살펴보면(2004년 기준) 개인유지시간 11시간 19분(수면 8시간50분, 식사 및 간식 1시간29분, 개인관리 59분, 건강관리(의료적) 1분), 학습 6시간 14분(학생의 학교학습 4시간 1분, 학생의 학교외 학습 2시간 12분, 학습관련 물품구입 1분), 가정관리 9분(음식준비 및 정리 1분, 청소 및 정리 4분, 집관리 1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3분), 가족 보살피기 3분(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1분,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2분), 교제 및 여가활동 4시간 46분(교제활동 30분, 미디어 이용 1시간 48분, 종교활동 6분,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1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17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2시간 2분,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1분, 기타 여가 관련 활동 1분), 이동 1시간 19분, 기타 9분이다. 이 중 집에 있는 재택시간은 15시간 2분이다.

② 여성에 관한 국가차원의 욕구조사 결과

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혼인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이상-시도, 2005년 기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만을 수록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15세이상 인구)는 11,292,987명, 취업자 4,452,523, 일하였음 4,406,423명, 일시 휴직 46,100명, 미취업자 6,839,085명, 일자리를 찾아보았음 618,647명, 일할 수 있었음 113,366명, 일할 수 없었음 505,281명,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음 6,220,438명, 경제활동상태 미상 1,379명이다.

사별한 경우(15세이상 인구)는 2,471,010명이며 취업자는 586,277명, 일하였음 574,950명, 일시 휴직 11,327명, 미취업자 1,884,172명, 일자리를 찾아보았음 117,612명, 일할 수 있었음 21,350명, 일할 수 없었음 96,262명,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음 1,766,560명, 경제활동상태 미상 561명이다.

이혼한 경우(15세이상 인구)는 649,993명, 취업자 367,810명, 일하였음 360,479명, 일시 휴직 7,331명, 미취업자 281,644명, 일자리를 찾아보았음 78,292명, 일할 수 있었음 28,403명, 일할 수 없었음 49,889명,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음 203,352명, 경제활동상태 미상 539명이다.

여성취업에 관한 여성의 견해(15세이상 인구, 2006년 기준)를 살펴보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가 89.0%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가정일에 관계없이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27.2%, 자녀 성장후 11.9%, 가정에만 전념 6.7%, 첫자녀 출산전까지 6.0%, 잘 모르겠다 4.3%, 결혼전까지 4.1%순이었다.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20-44세) 1,848명의 경제활동 특성(2005년 기준)을 살펴보면 직종의 경우 고위관리·(준)전문직 22.0%, 사무직 16.5%, 서비스·판매직 37.0%, 생산·단순노무직등 24.5%으로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지위는 고용주·자영업자 14.0%, 무급가족종사자 15.5%, 상용근로자 38.0%, 임시근로자 23.7%, 일용근로자 8.9%이다. 주당근로시간은 36시간미만 17.9%, 36~45시간미만 27.8%, 45~61시간미만 37.3%, 61시간이상 16.9%이다. 근로(사업)소득은 100만원미만 48.2%, 100~150만원미만 22.6%, 150~200만원미만 10.6%, 200만원이상 18.5%이다. 직장형태는 일반회사 86.4%, 공공섹터 7.4%,

정부기관(공무원, 군인포함) 3.9%, 기타 2.3%이다. 직장규모는 10인미만 62.2%, 10~50인미만 21.2%, 50~300인미만 9.5%, 300인이상 7.1%로 소규모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2/3가량을 차지하였다.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주된 응답, 2006년 기준)에 대한 15세이상 여성의 의견을 살펴보면 육아부담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 및 관행 17.4%, 불평등한 근로여건 12.6%, 가사부담 7.4%, 잘 모르겠다 6.9%,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3.2%, 여성의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2.9%,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부족 1.7%으로 나타났다.

나. 여성가구주

성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의 성별(시군구, 2005년 기준)을 살펴보면 미혼 가구주는 남자 1,220,399명, 여자 809,857명이다. 배우자 있는 경우는 남자 10,495,595명, 여자 624,815명이며 사별한 남자가구주는 284,206명, 여자가구주는 1,548,102명이다. 이혼한 남자가구주는 401,708명, 여자가구주는 502,446명이다.

다. 가사 분담 현황

가구주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08년 기준)를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복수응답)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가 63.3%,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7.8%,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55.5%, 공평하게 분담 35.8%, 남편이 주도 0.9%,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0.6%,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실태(부인, 2008년 기준)를 살펴보면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8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53.8%,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35.7%, 공평하게 분담 9.0%, 남편이 주도 1.5%,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1.2%,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0.3%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족 및 가족관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욕구조사 결과

가. 가족관계

가구주의 만성질환(2007년, 2008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39%(저소득 66%, 일반 29%)이며 2008년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45%(저소득 71%, 일반 36%)이다.

가구원이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수 비율(2007년, 2008년 기준)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27%(저소득 51%, 일반 22%)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32%(저소득 55%, 일반 27%)를 차지하였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2007년 기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하였다.

나.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2006년, 2007년, 2008년)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6.8%(저소득 61.8%, 일반 80.7),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4%(저소득 9.6%, 일반 3%)으로 저소득층의 가족관계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다. 가족간 갈등 및 현상

가족간 갈등원인을 1순위(2008년 기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저소득 18.7%, 일반 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 26.3%

(저소득 41.4%, 일반 20.7%), 가구원의 건강 20.9%(저소득 31.3%, 일반 17.1%),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3.5%(저소득 3.4%, 일반 3.5%), 자녀 교육 혹은 행동 3.0%(저소득 1.2%, 일반 3.7%), 기타 2.1%(저소득 1.6%, 일반 2.3%), 가구원간관계 1.6%(저소득 0.8%, 일반 1.9%), 주거 관련문제 1.4%(저소득 1.1%, 일반 1.5%), 가구원의알코올 0.4%(저소득 0.3%, 일반 0.5%), 가구원의 가출 0.1%(저소득 0.2%, 일반 0.0%), 가족내폭력 0.0%(저소득 0.0%, 일반 0.0%)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구원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의 어려움 응답비율이 일반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가족갈등 대처방법(가구수, 2006년, 2007년, 2008년)에 대해 2008년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경우가 60.7%이며 다음으로 우리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12.4%,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3.9%, 가족구성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2.8%,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0.7% 순이었다.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가구수, 2007년, 2008년 기준)을 2008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용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다문화 가정

다문화(혼혈인) 가구수(2008년 기준)는 도시(동부) 1.6%, 농산어촌(읍면부) 1.8%이다.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은 도시(동부)는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문화교육서비스 31.1%, 다문화가족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29.0%,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8.1%, 경제적 지원 15.0%, 혼혈인 자녀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지원 6.4%, 기타 0.4% 순이다. 농산어촌(읍면부)은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문화, 교육 서비스 39.1%, 경제적 지원 26.8%, 다문화가족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17.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3.0%, 혼혈인 자녀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지원 3.9%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슈별 통계

① 범죄·안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전반적인 범죄, 15세이상 인구, 2008년 기준)을 느낀다(약간 느낀다, 매우 느낀다)고 한 경우는 40.0%이다. 지역별로는 도시(동부) 40.8%, 농어촌(읍면부) 36.7%이며 성별로는 남자 30.5%, 여자 49.1%이다.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주된 응답, 15세이상 인구)은 범죄발생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위험 15.4%, 환경오염 13.5%, 국가안보 10.5%, 자연재해 9.3%, 신종질병 8.8%, 도덕성 부족 8.6%, 인재 6.9%,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5.5%, 자원(에너지 고갈) 3.1%,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② 사교육비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4.5만원, 중학교 26.0%, 고등학교 21.7만원 일반고 26.9만원, 전문고 6.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2009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4.2만원이며 대도시 26.9만원, 중소도시 24.5만원, 읍면지역 15.6만원이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 월평균 사교육비(2009년 기준)를 살펴보면 평균은 24.2만원이며 외벌이 24.6만원, 아버지 26.6만원, 어머니 12.2만원, 맞벌이 24.5만원, 경제활동을 안하는 경우 8.4만원으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수록, 남성가구주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③ 여가생활, 운동

여가생활 유형(2004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V 시청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12.2%, 산책 11.3%, 경로당, 노인회관 10.6%, 등산 8.9%, 동호인/가족모임 6.1%, 독서 3.8%, 봉사활동 3.0% 순이었다.

여가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2.0%가 만족(만족,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32.7%, 여자 30.5%가 도시유형별로는 대도시 32.9%, 중소도시 30.2%, 군·읍·면 34.1%가 만족하여 1/3정도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된 응답, 15세 이상 인구, 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행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기개발 8.9%, 스포츠활동 7.7%, 문화예술관람 6.8%, 휴식 5.6%, 사교관련 일 5.1%, 종교활동 4.3%, 창작적 취미 4.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레저시설 이용횟수(복수응답, 15세 이상 인구, 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관광명소가 6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욕장 35.9%, 놀이공원 31.9%, 삼림욕장(휴양림) 28.1%, 수영장 22.4%, 스키장 13.2%, 골프장 5.4% 순이었다.

④ 여행, 영화, 음악

15세이상 인구 1년간 국내 관광여행 횟수(2009년 기준)는 평균 3.3회이며 대도시(동부) 3.4회, 농산어촌(읍면부) 2.6회, 남자 3.4회, 여자 3.2회였다.

지난 1년간 15세이상 인구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2009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3.6%가 경험이 있었다. 1인당 평균 여행횟수는 1.4회였다.

음악감상(2004년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63.0%가 음악감상을 하고 있었으며 (복수응답) 오디오(CD, TAPE)로 음악감상하는 경우가 36.1%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라디오, TV 29.6%, PC온라인(무료 사이트) 20.3%, MP3(휴대용) Player 8.2%, 휴대폰 1.3%, PC 온라인(유료사이트) 1.2% 순이었다.

⑤ 이사, 주택마련

지난 1년간 이사경험 여부(2007년, 2008년 기준)를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14%(저소득층 11%, 일반 15%)를 차지하였다.

결혼후 내집 마련시까지 이사횟수(2004년 기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7회 이사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동부) 4.8회, 농산어촌(읍면부) 4.1회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4.6회, 여자 5.3회였다.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가구수, 2006년, 2007년, 2008년)을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1%(저소득 5.0%, 일반 1.1%)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⑥ 정부역할과 평가

소득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2007년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매우 동의, 동의)하고 있었다.

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56%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9%가 현재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을 살펴보면 52%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46%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59%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2007년 기준) 53%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26%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48%가 현재 수준으로 지출, 26%가 덜 지출(조금 덜 지출, 훨씬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50%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40%가 현재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75%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82%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83%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67%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55%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2007년 기준)에 대해 22%가 더 많이 지출(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27%가 덜 지출(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35%, 못하고 있다(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유지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23%, 못함(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40%로 노인 삶의 질 유지에 대한 정부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21%, 못함(잘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47%를 나타내고 있어 역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19%, 못함(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38%를 차지하였다.

빈곤 예방 및 감소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11%, 못하고 있음(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업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8%, 못함(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66%를 차지하여 부정적 의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 제고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28%, 못함(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정책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16%, 못함(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38%로 나타났다.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 평가(2007년 기준)를 살펴보면 잘함(매우 잘함, 잘하고 있음)이 18%, 못함(잘 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함)이 40%를 차지하였다.

⑦ 취업, 실업

기혼 여자의 행동분류별 평균시간(20세이상, 2009년 기준)을 요일평균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유지가 10시간 31분, 일 5시간 10분, 학습 1분, 가정관리 2시간 33분, 가족 보살피기 33분, 참여 및 봉사활동 2분, 교제 및 여가활동 3시간 12분, 이동 1시간 40분, 기타 18분이다. 재택시간은 14시간 33분이다.

2. 아동·가족 욕구조사 결과

1) 조사개요

기존의 연구로 충분한 욕구조사가 불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 욕구조사의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 학력이하 아동의 99%이상이 학교에 다니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용과 주양육자용으로 분리하여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담임선생님이 아동이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용을 작성해 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아동·가족욕구조사 세부내용은 (ㄱ) 지역사회 아동가족지원기관 이용경험, (ㄴ) 만족도, (ㄷ) 서비스에 관한 욕구, (ㄹ)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등이다. 조사대상자수는 아동 1,000명과 그 아동의 주양육자 1,000명 총 2,000명이며 전국의 아동인구비율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별 조사인원을 할당한 후 한 학교에서 최대 4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필요 학교수를 산정한 후 조사대상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 지역)이 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성별로도 각 지역별 남녀 청소년 비율이 가능한 1:1이 되도록 표집하였다. 조사시기는 2010년 10월-11월이며 통계데이터는 SPSS 1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조사대상자 수는 표와 같다.

조사내용은 아동용 설문지의 경우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 기타 분야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유형, 생활만족도 등이다.

주양육자 설문지의 경우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과 시설별 만족도, 아동이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과 시설별 만족도, 이용희망 기관, 아동에게 권하고 싶은 기관, 아동·양육 주양육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유형, 생활만족도 등이다.

아동용 설문지의 경우 1,000부를 배포하여 932부가 수거되었으며 부실 기재분을 제외하고 922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양육자 설문지의 경우 1,000부를 배포하여 823부가 수거되었으며 부실기재분을 제외하고 800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표 IV-1> 아동·가족 욕구조사 대상자

구 분	모집단 초등학교아동수 (비율)	설문지 유형별							
		아 동 용				주 양 육 자 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총 계	3,474,395 (100.0)	440	350	210	1,000	440	350	210	1,000
대도시	서울	170	0	0	170	170	0	0	170
	부산	60	0	0	60	60	0	0	60
	대구	60	0	0	60	60	0	0	60
	인천	60	0	0	60	60	0	0	60
	광주	30	0	0	30	30	0	0	30
	대전	30	0	0	30	30	0	0	30
	울산	30	0	0	30	30	0	0	30
중소도시 · 농어촌	경기	0	160	80	240	0	160	80	240
	강원	0	30	0	30	0	30	0	30
	충북	0	30	0	30	0	30	0	30
	충남	0	30	30	60	0	30	30	60
	전북	0	40	0	40	0	40	0	40
	전남	0	0	40	40	0	0	40	40
	경북	0	30	30	60	0	30	30	60
	경남	0	30	30	60	0	30	30	60
	제주	0	0	0	0	0	0	0	0
	총 계	440	350	210	1,000	440	350	210	1,00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가족 욕구조사와 관련하여 설문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48.6%, 여자가 51.4%로 대략 1:1의 비율을 나타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18.8%, 5학년이 47.6%, 6학년이 33.6%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가 47.4%, 중소도시 29.5%, 농어촌(읍, 면, 리)가 23.1%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는 경우가 93.1%,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사는 경우 3.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사는 경우 2.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사는 경우 0.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 어른과 사는 경우가 0.2%였다.

<표 IV-2> 설문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
성별	남자	447	48.6
	여자	473	51.4
	계	920	100.0
학년	4학년	173	18.8
	5학년	439	47.6
	6학년	310	33.6
	계	922	100.0
거주지역	대도시(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437	47.4
	중소도시	272	29.5
	농어촌(읍, 면, 리)	213	23.1
	계	922	100.0
가족형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7	93.1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3.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0.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0.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0.2
	계	921	100.0

3) 아동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아동에게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 기타 9개 분야의 세부지원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각 분야의 세부서비스별로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용돈, 학비 등 경제적 지원(53.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지원(44.4%), 부모님 없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사는 아동 지원(43.4%),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분만 있는 아동 지원(43.2%), 북한을 떠난 가족을 위한 아동 지원(38.8%), 심리상담(34.8%). 가족관계 개선(33.5%), 낮시간 보호(31.9%),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동지원(31.0%), 가족생활관련 정보제공(30.8%), 아동가족지원기관 프로그램 소개(26.5%), 방과후 돌봄(26.3%), 가정방문(15.9%) 순이었다.

둘째, 보건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건강검진(64.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과치료(62.4%), 영양섭취, 건강 교육(60.1%), 신체건강을 위한 지원(59.1%), 친구, 선생님 등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52.8%), 아픈 곳에 대해 치료 등 의료적 돌봄(51.7%),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48.9%), 아동학대 및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동 예방, 지원(48.2%) 순이었다.

셋째, 주거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환경 만들기(69.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집 주변 환경 마련(62.1%), 내가 사는 집을 더 좋게 고치기(54%), 새집 짓기, 집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조하기(49.6%),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경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지원(42.6%) 순이었다.

넷째, 고용 분야와 관련하여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였다.

다섯째, 문화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72.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66.2%),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64.6%), 음악,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56.5%), 문화관련 정보제공(55.2%), 문화관련 기관 소개(51.6%) 순이었다.

여섯째, 관광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81.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회 제공(79%),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6.3%), 여행 관련 정보 제공(64.5%),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1.8%), 여행 관련 기관 소개(58.6%) 순이었다.

일곱째, 체육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7.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77.7%),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75.8%),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70.6%), 운동, 체육을 할 수 있는 기관 소개(64.3%), 운동, 체육관련 정보 제공(63.9%) 순이었다.

여덟째, 교육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61.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59.6%),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51.4%), 인지, 언어교육(49.6%), 용돈기록장 쓰기, 방치우기 등 가사활동 교육(47.2%) 순이었다.

아홉째, 기타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64.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사업(52.3%),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42.8%), 동네에 있는 가족 관련시설 간에 협력(46.5%), 전문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1:1로 상담하여 관리해주는 것(사례관리)(37.5%) 순이었다.

<표 IV-3> 아동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야	구 분		빈도(명)	%
1) 복지분야	심리상담	전혀 필요 없다	319	34.6
		별로 필요 없다	282	30.6
		약간 필요하다	266	28.9
		매우 필요하다	54	5.9
		계	921	100.0
	가족관계 개선	전혀 필요 없다	366	39.7
		별로 필요 없다	247	26.8
		약간 필요하다	208	22.6
		매우 필요하다	100	10.9
		계	921	100.0
	가정방문	전혀 필요 없다	464	50.4
		별로 필요 없다	311	33.8
		약간 필요하다	116	12.6
		매우 필요하다	30	3.3
		계	921	100.0
	낮시간 보호	전혀 필요 없다	397	43.2
		별로 필요 없다	230	25.0
		약간 필요하다	213	23.2
		매우 필요하다	80	8.7
		계	920	100.0
	방과후 돌봄	전혀 필요 없다	447	48.6
		별로 필요 없다	230	25.0
		약간 필요하다	175	19.0
		매우 필요하다	67	7.3
		계	919	100.0
	가족생활관련 정보제공	전혀 필요 없다	355	38.5
		별로 필요 없다	283	30.7
		약간 필요하다	217	23.6
		매우 필요하다	66	7.2
		계	921	100.0
	아동가족지원기관 프로그램 소개	전혀 필요 없다	391	42.5
		별로 필요 없다	285	31.0

		약간 필요하다	172	18.7
		매우 필요하다	72	7.8
계		920	100.0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동지원	전혀 필요 없다	479	52.1	
	별로 필요 없다	155	16.9	
	약간 필요하다	178	19.4	
	매우 필요하다	107	11.6	
	계	919	100.0	
북한을 떠난 가족을 위한 아동지원	전혀 필요 없다	431	46.8	
	별로 필요 없다	133	14.4	
	약간 필요하다	161	17.5	
	매우 필요하다	196	21.3	
	계	921	100.0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분만 있는 아동 지원	전혀 필요 없다	397	43.2	
	별로 필요 없다	125	13.6	
	약간 필요하다	179	19.5	
	매우 필요하다	218	23.7	
	계	919	100.0	
부모님 없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사는 아동 지원	전혀 필요 없다	402	43.7	
	별로 필요 없다	119	12.9	
	약간 필요하다	162	17.6	
	매우 필요하다	237	25.8	
	계	920	100.0	
장애가 있는 아동지원	전혀 필요 없다	405	44.0	
	별로 필요 없다	106	11.5	
	약간 필요하다	152	16.5	
	매우 필요하다	257	27.9	
	계	920	100.0	
용돈, 학비 등 경제적 지원	전혀 필요 없다	259	28.2	
	별로 필요 없다	169	18.4	
	약간 필요하다	253	27.5	
	매우 필요하다	239	26.0	
	계	920	100.0	

2) 보건분야	건강검진	전혀 필요 없다	134	14.5
		별로 필요 없다	190	20.6
		약간 필요하다	305	33.1
		매우 필요하다	292	31.7
		계	921	100.0
	영양섭취, 건강 교육	전혀 필요 없다	168	18.3
		별로 필요 없다	199	21.6
		약간 필요하다	308	33.5
		매우 필요하다	245	26.6
		계	920	100.0
	신체건강을 위한 지원	전혀 필요 없다	194	21.1
		별로 필요 없다	182	19.8
		약간 필요하다	301	32.7
		매우 필요하다	243	26.4
		계	920	100.0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전혀 필요 없다	274	29.8
		별로 필요 없다	196	21.3
		약간 필요하다	226	24.6
		매우 필요하다	223	24.3
		계	919	100.0
	아동학대,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동 예방, 지원	전혀 필요 없다	345	37.6
		별로 필요 없다	130	14.2
		약간 필요하다	161	17.5
		매우 필요하다	282	30.7
		계	918	100.0
	친구, 선생님 등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전혀 필요 없다	240	26.1
		별로 필요 없다	194	21.1
		약간 필요하다	253	27.5
		매우 필요하다	233	25.3
		계	920	100.0
	아픈 곳에 대해 치료 등 의료적 돌봄	전혀 필요 없다	273	29.6
		별로 필요 없다	172	18.7
		약간 필요하다	237	25.7
		매우 필요하다	239	26.0

		계	921	100.0
	치과진료	전혀 필요 없다	171	18.6
		별로 필요 없다	175	19.0
		약간 필요하다	332	36.0
		매우 필요하다	243	26.4
		계	921	100.0
3) 주거분야	내가 사는 집을 더 좋게 고치기	전혀 필요 없다	193	20.9
		별로 필요 없다	231	25.1
		약간 필요하다	284	30.8
		매우 필요하다	214	23.2
		계	922	100.0
	쾌적하고 깨끗한 집주변 환경 마련	전혀 필요 없다	179	19.5
		별로 필요 없다	170	18.5
		약간 필요하다	284	30.9
		매우 필요하다	287	31.2
		계	920	100.0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경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지원	전혀 필요 없다	338	36.7
		별로 필요 없다	190	20.7
		약간 필요하다	188	20.4
		매우 필요하다	204	22.2
		계	920	100.0
	새집 짓기, 집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조하기	전혀 필요 없다	258	28.0
		별로 필요 없다	206	22.4
		약간 필요하다	243	26.4
		매우 필요하다	213	23.2
		계	920	100.0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환경 만들기	전혀 필요 없다	135	14.7
		별로 필요 없다	145	15.8
		약간 필요하다	260	28.3
		매우 필요하다	380	41.3
		계	920	100.0
4) 고용분야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	전혀 필요 없다	174	18.9
		별로 필요 없다	191	20.8

		약간 필요하다	309	33.6
		매우 필요하다	246	26.7
		계	920	100.0
5) 문화분야	음악,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혀 필요 없다	172	18.7
		별로 필요 없다	228	24.8
		약간 필요하다	338	36.7
		매우 필요하다	182	19.8
		계	920	100.0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전혀 필요 없다	141	15.3
		별로 필요 없다	170	18.5
		약간 필요하다	328	35.6
		매우 필요하다	282	30.6
		계	921	100.0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전혀 필요 없다	149	16.2
		별로 필요 없다	177	19.2
		약간 필요하다	338	36.7
		매우 필요하다	257	27.9
		계	921	100.0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전혀 필요 없다	108	11.7
		별로 필요 없다	143	15.5
		약간 필요하다	316	34.3
		매우 필요하다	354	38.4
		계	921	100.0
	문화관련 정보제공	전혀 필요 없다	178	19.3
		별로 필요 없다	234	25.4
		약간 필요하다	312	33.9
		매우 필요하다	196	21.3
		계	920	100.0
	문화관련 기관 소개	전혀 필요 없다	197	21.4
		별로 필요 없다	249	27.0
		약간 필요하다	301	32.7
		매우 필요하다	174	18.9
		계	921	100.0

6) 관광분야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혀 필요 없다	135	14.7
		별로 필요 없다	217	23.6
		약간 필요하다	318	34.6
		매우 필요하다	250	27.2
		계	920	100.0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전혀 필요 없다	86	9.3
		별로 필요 없다	132	14.3
		약간 필요하다	284	30.8
		매우 필요하다	419	45.5
		계	921	100.0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획 제공	전혀 필요 없다	89	9.7
		별로 필요 없다	105	11.4
		약간 필요하다	306	33.2
		매우 필요하다	422	45.8
		계	922	100.0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획 제공	전혀 필요 없다	82	8.9
		별로 필요 없다	90	9.8
		약간 필요하다	289	31.3
		매우 필요하다	461	50.0
		계	922	100.0
	여행 관련 정보 제공	전혀 필요 없다	137	14.9
		별로 필요 없다	190	20.6
		약간 필요하다	338	36.7
		매우 필요하다	256	27.8
		계	921	100.0
	여행 관련 기관 소개	전혀 필요 없다	162	17.6
		별로 필요 없다	219	23.8
		약간 필요하다	317	34.4
		매우 필요하다	223	24.2
		계	921	100.0
7) 체육분야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전혀 필요 없다	107	11.6
		별로 필요 없다	116	12.6
		약간 필요하다	321	34.9

		매우 필요하다	376	40.9
		계	920	100.0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전혀 필요 없다	103	11.2
		별로 필요 없다	101	11.0
		약간 필요하다	287	31.2
		매우 필요하다	428	46.6
		계	919	100.0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	전혀 필요 없다	91	9.9
		별로 필요 없다	114	12.4
		약간 필요하다	299	32.5
		매우 필요하다	415	45.2
		계	919	100.0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전혀 필요 없다	116	12.7
		별로 필요 없다	153	16.7
		약간 필요하다	286	31.2
		매우 필요하다	361	39.4
		계	916	100.0
	운동, 체육관련 정보 제공	전혀 필요 없다	145	15.8
		별로 필요 없다	186	20.3
		약간 필요하다	301	32.9
		매우 필요하다	284	31.0
		계	916	100.0
	운동, 체육을 할 수 있는 기관 소개	전혀 필요 없다	141	15.4
		별로 필요 없다	186	20.3
		약간 필요하다	307	33.5
		매우 필요하다	282	30.8
		계	916	100.0
8) 교육분야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	전혀 필요 없다	157	17.1
		별로 필요 없다	200	21.8
		약간 필요하다	322	35.0
		매우 필요하다	240	26.1
		계	919	100.0
	일반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전혀 필요 없다	183	19.9

		별로 필요 없다	189	20.5
		약간 필요하다	328	35.7
		매우 필요하다	220	23.9
		계	920	100.0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전혀 필요 없다	285	31.0
		별로 필요 없다	162	17.6
		약간 필요하다	181	19.7
		매우 필요하다	291	31.7
		계	919	100.0
	인지, 언어교육	전혀 필요 없다	253	27.6
		별로 필요 없다	210	22.9
		약간 필요하다	243	26.5
		매우 필요하다	212	23.1
		계	918	100.0
	용돈기록장 쓰기, 방치우기 등 가사활동 교육	전혀 필요 없다	237	25.8
		별로 필요 없다	247	26.9
		약간 필요하다	272	29.6
		매우 필요하다	162	17.6
		계	918	100.0
9) 기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 사업	전혀 필요 없다	222	24.2
		별로 필요 없다	216	23.5
		약간 필요하다	273	29.7
		매우 필요하다	208	22.6
		계	919	100.0
	동네에 있는 가족 관련시설 간에 협력	전혀 필요 없다	236	25.7
		별로 필요 없다	256	27.9
		약간 필요하다	273	29.7
		매우 필요하다	154	16.8
		계	919	100.0
	전문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1:1로 상담하여 관리해주는 것(사례관리)	전혀 필요 없다	303	33.0
		별로 필요 없다	272	29.6
		약간 필요하다	199	21.7
		매우 필요하다	145	15.8
		계	919	100.0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	전혀 필요 없다	275	30.0
		별로 필요 없다	250	27.2
		약간 필요하다	235	25.6
		매우 필요하다	158	17.2
		계	918	100.0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	전혀 필요 없다	179	19.5
		별로 필요 없다	142	15.5
		약간 필요하다	263	28.7
		매우 필요하다	332	36.2
		계	916	100.0

9개 분야(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 기타) 중 아동의 욕구가 가장 높은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각 분야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⁶⁷⁾ 체육분야(2.98점)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가장 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광분야(2.94점), 문화분야(2.70점), 고용분야(2.68점), 주거분야(2.59점), 보건분야(2.58점), 교육분야(2.53점), 기타분야(2.44점), 복지분야(2.06점) 순이었다.

<표 IV-4> 아동의 분야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서비스 분야		빈도(명)	평균	S. D
아동의 분야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복지분야	911	2.0665	0.81857
	보건분야	914	2.5877	0.94310
	주거분야	917	2.5967	0.94446
	고용분야	920	2.6815	1.06364
	문화분야	915	2.7053	0.88024
	관광분야	918	2.9468	0.85068
	체육분야	915	2.9812	0.89229
	교육분야	917	2.5398	0.95165
	기타	916	2.4410	0.91905

67) 개인별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전혀 필요없다를 1점, 별로 필요없다를 2점, 약간 필요하다를 3점, 매우 필요하다를 4점으로 부여하고 해당분야 문항 응답치를 합산한 후 해당분야 문항수로 나누었다. 이는 각 분야별로 문항수가 다르므로 문항수로 나누지 않을 경우 각 분야의 최소값, 최대값이 달라 절대치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산출된 평균값은 최소값 1, 최대값 4를 가질 수 있다.

(1)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관계개선, 치과치료,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거주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내었다.

가족관계개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대도시(2.12)가 농어촌(1.9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치과치료에 대한 욕구는 농어촌(2.86)이 중소도시(2.6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에 대한 욕구는 중소도시(2.79)가 대도시(2.5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농어촌(2.45)이 대도시(2.2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5>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

분야	서비스	거주지역	빈도(명)	평균	S. D	F	Scheffe
1) 복지분야	심리상담	대도시	436	2.01	0.933	2.603	-
		중소도시	272	2.05	0.938		
		농어촌	213	2.18	0.911		
		계	921	2.06	0.931		
	가족관계 개선	대도시	436	2.12	1.083	3.078 *	A B AB
		중소도시	272	1.92	0.936		
		농어촌	213	2.05	1.015		
		계	921	2.05	1.028		
	가정방문	대도시	436	1.71	0.874	0.661	-
		중소도시	272	1.64	0.775		
		농어촌	213	1.70	0.734		
		계	921	1.69	0.814		
	낮시간 보호	대도시	436	2.03	1.067	2.506	-
		중소도시	271	1.86	0.948		
		농어촌	213	2.01	0.937		
		계	920	1.97	1.006		
	방과후 돌봄	대도시	436	1.87	1.003	0.407	-
		중소도시	272	1.81	0.962		
		농어촌	211	1.87	0.927		
		계	919	1.85	0.973		
	가족생활관 런 정보제공	대도시	436	2.03	0.998	1.831	-
		중소도시	272	1.90	0.946		

2) 보건분야		농어촌	213	2.03	0.860		
		계	921	1.99	0.953		
	아동가족 지원기관 프로그램 소개	대도시	435	1.97	0.993	2.904	-
		중소도시	272	1.80	0.908		
		농어촌	213	1.96	0.943		
		계	920	1.92	0.959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동지원	대도시	435	1.88	1.062	0.459	-
		중소도시	272	1.96	1.139		
		농어촌	212	1.90	1.055		
		계	919	1.91	1.083		
	북한을 떠난 가족을 위한 아동지원	대도시	436	2.14	1.222	0.783	-
		중소도시	272	2.18	1.249		
		농어촌	213	2.05	1.161		
		계	921	2.13	1.216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분만 있는 아동 지원	대도시	435	2.27	1.245	1.199	-
		중소도시	272	2.28	1.252		
		농어촌	212	2.12	1.182		
		계	919	2.24	1.233		
	부모님 없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사는 아동 지원	대도시	436	2.30	1.271	1.650	-
		중소도시	271	2.29	1.277		
		농어촌	213	2.12	1.198		
		계	920	2.25	1.257		
	장애가 있는 아동지원	대도시	436	2.33	1.300	1.961	-
		중소도시	271	2.32	1.319		
		농어촌	213	2.13	1.190		
		계	920	2.28	1.282		
	용돈, 학비 등 경제적 지원	대도시	435	2.55	1.154	0.445	-
		중소도시	272	2.46	1.187		
		농어촌	213	2.51	1.119		
		계	920	2.51	1.155		
	건강검진	대도시	436	2.85	1.067	0.646	-
		중소도시	272	2.76	1.058		
		농어촌	213	2.83	0.941		
		계	921	2.82	1.036		
	영양섭취, 건강 교육	대도시	435	2.74	1.057	1.337	-
		중소도시	272	2.63	1.079		
		농어촌	213	2.63	1.022		
		계	920	2.68	1.056		
	신체건강을 위한 지원	대도시	435	2.69	1.122	0.999	-
		중소도시	272	2.58	1.094		
		농어촌	213	2.63	0.999		
		계	920	2.64	1.086		
	정신건강을	대도시	434	2.52	1.191	2.979	-

	위한 지원	중소도시	272	2.30	1.139		
		농어촌	213	2.43	1.077		
		계	919	2.43	1.153		
	아동학대,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동 예방, 지원	대도시	435	2.48	1.315	0.987	-
		중소도시	271	2.35	1.241		
		농어촌	212	2.36	1.206		
		계	918	2.41	1.269		
	친구, 선생님 등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대도시	435	2.51	1.157	0.747	-
		중소도시	272	2.47	1.130		
		농어촌	213	2.60	1.080		
		계	920	2.52	1.131		
	아픈 곳에 대해 치료 등 의료적 돌봄	대도시	436	2.48	1.214	0.900	-
		중소도시	272	2.42	1.143		
		농어촌	213	2.56	1.100		
		계	921	2.48	1.167		
	치과치료	대도시	436	2.68	1.072	3.488 *	AB A B
		중소도시	272	2.61	1.050		
		농어촌	213	2.86	1.004		
		계	921	2.70	1.053		
3) 주거분야	내가 사는 집을 더 좋게 고치기	대도시	437	2.54	1.101	1.006	-
		중소도시	272	2.53	1.031		
		농어촌	213	2.65	1.024		
		계	922	2.56	1.063		
	쾌적하고 깨끗한 집 주변 환경 마련	대도시	437	2.77	1.125	0.707	-
		중소도시	271	2.67	1.109		
		농어촌	212	2.76	1.032		
		계	920	2.74	1.099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경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지원	대도시	437	2.27	1.215	1.210	-
		중소도시	270	2.22	1.142		
		농어촌	213	2.38	1.134		
		계	920	2.28	1.175		
	새집 짓기, 집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조하기	대도시	437	2.43	1.148	1.604	-
		중소도시	270	2.39	1.127		
		농어촌	213	2.56	1.082		
		계	920	2.45	1.128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 환경 만들기	대도시	437	3.01	1.108	1.218	-
		중소도시	270	2.88	1.077		
		농어촌	213	2.96	1.004		
		계	920	2.96	1.076		
4) 고용분야	진로와 미래희망직	대도시	436	2.57	1.058	4.693	A B
		중소도시	271	2.79	1.081		

	업 상담	농어촌	213	2.78	1.034	**	AB
		계	920	2.68	1.064		
5) 문화분야	음악,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대도시	437	2.51	1.033	1.813	
		중소도시	271	2.60	0.979		
		농어촌	212	2.67	0.985		
		계	920	2.58	1.007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대도시	437	2.78	1.082	1.990	-
		중소도시	271	2.77	0.981		
		농어촌	213	2.94	0.996		
		계	921	2.82	1.035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대도시	436	2.74	1.079	0.687	-
		중소도시	272	2.75	1.001		
		농어촌	213	2.84	0.969		
		계	921	2.76	1.031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대도시	437	3.02	1.020	1.619	-
		중소도시	271	2.90	0.999		
		농어촌	213	3.05	0.977		
		계	921	2.99	1.005		
	문화관련 정보제공	대도시	437	2.55	1.056	0.633	-
		중소도시	271	2.55	1.028		
		농어촌	212	2.64	0.975		
		계	920	2.57	1.029		
	문화관련 기관 소개	대도시	437	2.47	1.063	0.524	-
		중소도시	271	2.47	0.999		
		농어촌	213	2.55	0.992		
		계	921	2.49	1.028		
6) 관광분야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대도시	437	2.68	1.046	1.673	-
		중소도시	272	2.78	1.002		
		농어촌	211	2.82	0.959		
		계	920	2.74	1.015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대도시	437	3.08	1.005	1.398	-
		중소도시	272	3.13	0.960		
		농어촌	212	3.22	0.944		
		계	921	3.12	0.978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회 제공	대도시	437	3.11	0.992	1.818	-
		중소도시	272	3.14	0.977		
		농어촌	213	3.26	0.898		
		계	922	3.15	0.967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	대도시	437	3.19	0.977	1.018	-
		중소도시	272	3.21	0.951		
		농어촌	213	3.31	0.893		
		계	922	3.22	0.951		

7) 체육분야	여행 관련 정보 제공	대도시	437	2.76	1.066	0.292	-
		중소도시	272	2.76	0.964		
		농어촌	212	2.82	0.972		
		계	921	2.77	1.015		
	여행 관련 기관 소개	대도시	437	2.63	1.075	1.849	-
		중소도시	271	2.60	1.002		
		농어촌	213	2.77	0.971		
		계	921	2.65	1.031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대도시	436	3.08	1.033	1.529	-
		중소도시	271	2.96	0.981		
		농어촌	213	3.11	0.948		
		계	920	3.05	0.999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대도시	435	3.15	1.003	1.048	-
		중소도시	271	3.06	1.028		
		농어촌	213	3.18	0.974		
		계	919	3.13	1.004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	대도시	435	3.13	1.015	0.300	-
		중소도시	271	3.10	0.947		
		농어촌	213	3.17	0.941		
		계	919	3.13	0.978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대도시	433	2.99	1.051	0.834	-
		중소도시	270	2.91	1.025		
		농어촌	213	3.02	1.009		
		계	916	2.97	1.034		
	운동, 체육관련 정보 제공	대도시	432	2.79	1.091	0.450	-
		중소도시	271	2.75	1.059		
		농어촌	213	2.84	0.953		
		계	916	2.79	1.051		
	운동, 체육을 할 수 있는 기관 소개	대도시	432	2.82	1.080	0.299	-
		중소도시	271	2.76	1.045		
		농어촌	213	2.78	0.962		
		계	916	2.80	1.042		
8) 교육분야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	대도시	436	2.69	1.066	0.176	-
		중소도시	270	2.70	1.014		
		농어촌	213	2.74	1.008		
		계	919	2.70	1.037		
	일반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대도시	436	2.63	1.089	0.018	-
		중소도시	271	2.65	1.018		
		농어촌	213	2.63	1.027		
		계	920	2.64	1.053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대도시	435	2.54	1.279	0.333	-
		중소도시	271	2.54	1.210		
		농어촌	213	2.46	1.139		

9) 기타	인지, 언어교육	계	919	2.52	1.227	0.323	-
		대도시	436	2.45	1.130		
		중소도시	269	2.49	1.155		
		농어촌	213	2.41	1.072		
	용돈기록장 쓰기, 방치우기 등 가사활동 교육	계	918	2.45	1.123	0.042	-
		대도시	436	2.40	1.083		
		중소도시	269	2.38	1.053		
		농어촌	213	2.40	0.993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 사업	계	918	2.39	1.053	0.731	-
		대도시	436	2.52	1.139		
		중소도시	272	2.44	1.075		
		농어촌	211	2.56	1.000		
	동네에 있는 가족 관련시설 간에 협력	계	919	2.51	1.090	1.276	-
		대도시	436	2.39	1.089		
		중소도시	272	2.30	1.022		
		농어촌	211	2.45	0.961		
	전문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1:1로 상담하여 관리해주는 것(사례관리)	계	919	2.38	1.041	1.494	-
		대도시	436	2.15	1.096		
		중소도시	272	2.20	1.051		
		농어촌	211	2.31	1.021		
	동네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	계	919	2.20	1.067	3.083 *	A AB B
		대도시	435	2.22	1.094		
		중소도시	272	2.31	1.070		
		농어촌	211	2.45	1.028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	계	918	2.30	1.075	0.054	-
		대도시	434	2.81	1.180		
		중소도시	271	2.81	1.122		
		농어촌	211	2.84	1.015		
		계	916	2.82	1.126		

* P<0.05, ** P<0.01, ***P<0.001

(2) 가족유형에 따른 욕구의 차이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관련 기관소개,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족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관련 기관소개에 대한 욕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는 경우(2.52)보다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사는 경우(1.65)에 유의미하게 낮았다.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가족형태별 빈도가 일부 유형(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산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수에 지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가족유형별로 나타난 지원서비스 욕구 수준의 차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6>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의 차이(아동)

분야	지원서비스	가족형태	빈도	평균	S. D	F	Scheffe
1) 복지분야	심리상담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06	0.933	1.01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17	0.923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70	0.80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1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20	2.06	0.931		
	가족관계 개선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06	1.028	1.11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94	1.056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65	0.87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20	2.05	1.028		
	가정방문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1.70	0.821	1.22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54	0.65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40	0.59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00	0.000		
		계	920	1.69	0.814		
낮시간 보호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1.99	1.011	1.741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74	0.919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60	0.883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40	0.89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19	1.97	1.006		
방과후 돌봄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1.87	0.983	2.02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51	0.781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55	0.759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0.8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18	1.85	0.973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00	0.955	1.39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11	0.993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60	0.82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0.8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20	1.99	0.953		
아동가족 지원기관 프로그램 소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1.94	0.969	1.921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71	0.75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55	0.826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5	1.40	0.548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19	1.92	0.959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동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1.92	1.086	1.315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69	0.993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50	1.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8	1.91	1.083		
북한을 떠난 가족을 위한 아동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16	1.219	1.755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66	1.056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80	1.2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20	2.13	1.216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만 있는 아동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2.21	1.232	1.49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7	1.26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70	1.08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8	2.24	1.233		
부모님 없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사는 아동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26	1.256	1.33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00	1.26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10	1.29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8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2	2.50	0.707		

2) 보건분야		할머니와 산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19	2.26	1.257		
	장애가 있는 아동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31	1.282	0.91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1.91	1.22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05	1.3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643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9	2.29	1.282		
	용돈, 학비 등 경제적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51	1.149	0.828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4	1.245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35	1.226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34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19	2.51	1.154		
	건강검진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84	1.037	0.953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66	1.056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4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0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20	2.82	1.037		
	영양섭취, 건강 교육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71	1.054	1.87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3	1.09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15	1.0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0.54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9	2.69	1.055		
신체건강을 위한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67	1.082	1.246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0	1.16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30	1.17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0.44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9	2.65	1.086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45	1.153	0.59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4	2.29	1.169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10	1.16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8	2.43	1.152		
아동학대,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동 예방,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3	2.44	1.269	0.99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09	1.245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05	1.276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6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17	2.42	1.269		
친구, 선생님 등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53	1.131	0.437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0	1.21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20	1.10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1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3) 주거분야	아픈 곳에 대해 치료 등 의료적 돌봄	계	919	2.52	1.132	1.292	-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50	1.169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20	1.15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00	1.12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8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0.000		
		계	920	2.48	1.167		
	치과진료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71	1.048	1.113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9	1.173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40	1.18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20	0.44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20	2.70	1.054		
	내가 사는 집을 더 좋게 고치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7	2.55	1.055	0.84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77	1.19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50	1.19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00	1.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21	2.56	1.062		
	쾌적하고 깨끗한 집 주변 환경 마련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73	1.101	0.88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86	1.061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60	1.18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20	0.8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19	2.74	1.100		
	부모와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29	1.169	1.454	-

	살 수 없는 경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지원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23	1.26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90	1.21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19	2.28	1.175		
	새 집 짓기, 집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조하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45	1.118	1.26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1	1.245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10	1.25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환경 만들기	계	919	2.45	1.128	0.705	-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97	1.069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3.03	1.09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60	1.23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6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4) 고용분야	진로와 미래희망직 업 상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2	3.50	0.707	1.469	
		계	919	2.96	1.074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70	1.063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4	0.98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15	0.98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643		
5) 문화분야	음악,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1.794	-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9	2.68	1.063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59	1.006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1	0.981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15	0.988		

개발과 보급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9	2.58	1.007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82	1.030	0.38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77	1.08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75	1.07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20	2.82	1.033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79	1.025	1.954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9	1.06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30	1.03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20	2.77	1.030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3.01	0.995	1.335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89	1.105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65	1.1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20	2.99	1.005		
문화관련 정보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59	1.021	1.33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3	1.09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05	1.099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342		

6) 관광분야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9	2.57	1.028		
	문화관련 기관 소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52	1.018	3.567 **	A AB B AB AB AB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20	1.106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65	0.87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34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20	2.49	1.027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75	1.007	1.07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83	1.124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30	1.03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80	1.09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9	2.74	1.013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3.14	0.974	0.75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3.06	1.02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80	1.00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00	1.22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20	3.13	0.976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7	3.17	0.956	1.99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3.11	0.993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50	1.23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20	0.8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50	0.707		

7) 체육분야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21	3.15	0.965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7	3.23	0.945	1.588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3.29	0.95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75	1.11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40	0.54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21	3.23	0.948		
	여행 관련 정보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79	1.010	0.731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66	1.02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70	1.08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20	2.78	1.013		
	여행 관련 기관 소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6	2.67	1.025	0.881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1	1.06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30	1.129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34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20	2.65	1.031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3.08	0.986	2.678 *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71	1.20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50	1.05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0.89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9	3.05	1.000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3.16	0.990	2.028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77	1.165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65	1.226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3.00	1.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8	3.13	1.004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3.15	0.968	1.864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80	1.106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70	1.03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8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8	3.13	0.978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1	3.00	1.025	2.097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66	1.16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65	1.1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0.8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15	2.97	1.034		
운동, 체육관련 정보 제공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2	2.80	1.043	1.147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7	1.22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19	2.53	1.12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60	1.1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4.00	0.000		
	계	915	2.79	1.051		

8) 교육분야	운동, 체육을 할 수 있는 기관 소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2	2.82	1.036	1.055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54	1.19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19	2.42	1.071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60	1.1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15	2.80	1.043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2.72	1.032	1.118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46	1.067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50	1.14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00	1.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18	2.70	1.036		
	일반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66	1.045	1.74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37	1.14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25	1.16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00	1.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9	2.64	1.052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2.56	1.222	2.584 *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00	1.18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00	1.25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00	1.41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8	2.52	1.226		
	인지, 언어교육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3	2.48	1.122	2.214	-

9) 기타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20	1.132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85	1.0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60	0.89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17	2.45	1.123		
	용돈기록장 쓰기, 방치우기 등 가사활동 교육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3	2.41	1.052	1.577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5	2.17	1.098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85	0.933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0.89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7	2.39	1.052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 사업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53	1.092	1.290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4	2.18	0.999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25	1.11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00	1.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8	2.51	1.090		
	동네에 있는 가족 관련시설 간에 협력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39	1.041	1.509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4	2.03	1.00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20	1.10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1.80	0.83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00	1.414		
		계	918	2.37	1.042		
	전문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1:1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5	2.22	1.064	0.81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4	2.00	1.101		

상당하여 관리해주는 것 (사례관리)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85	1.04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51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2.50	0.70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2.50	0.707		
	계	918	2.20	1.066		
동네 곳곳을 찾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4	2.32	1.077	1.582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4	2.03	0.969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1.95	1.05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20	1.30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7	2.30	1.074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852	2.84	1.123	1.221	-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34	2.50	1.080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20	2.50	1.235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5	2.40	1.34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2	3.00	0.000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과 산다	2	3.50	0.707		
	계	915	2.82	1.125		

*P<0.05, **P<0.01, ***P<0.001

4)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제시된 횟수는 해당 의견 빈도를 말한다⁶⁸⁾.

68) 주양육자, 전문가 조사 자유의견 제시 내용에서도 동일함.

□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희망(8)

“장애아동 혹은 장애가족이 있는 아동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5).”

“고아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니깐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얼굴을 자주 못 보고 어머니께서 어떤 어른에게 돈을 빌려 쓰시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어려움(16)

“저를 괴롭히는 아이를 혼내 주세요.”

“욕을 많이 쓰는 형들이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어른이 아닌 우리포래 아이가 목조르기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친구들이(남자애들) 똥똥하다고 놀려서 싫다.”

“친구들의 장난이 살짝 과하다.”

“친구들이 놀려서 힘들다.”

“학교에서 그룹으로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외국에서 살다온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나대지 말라고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한다.”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행 등 가족공동활동 필요(7)

“주말에 아빠와 있고 싶어요. ”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저희 가족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신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놀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상담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4)

“요즘에 조금 괴롭고, 외로워요. 자주 우울해요.”

“전문가와 1:1로 상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선생님 말고 내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 통학 및 이동을 위한 자전거, 도보 교통관련 체계 개선(8)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오토바이나 차가 너무 위험해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창원처럼 누비자와 같은 것이 생기면 좋겠다. 요즘 자전거를 타려면 베란다에서 다시 꺼내야 해서 누비자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 급할 때 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은 신호등이 생기면 좋겠다(2).”

“교통이 복잡한데 좀 질서 있게 정리 되었으면 좋겠다.”

□ 다양한 지역사회 체육시설, 공간 건립 희망(37)

“야구장을 지어 주세요(4).

“너무 축구 위주로 되어있는 운동장에 야구 등의 다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구나 시설 없애고 공원이나 배드민턴장을 지어 주세요.”

“무엇이든 운동을 하고 싶어요.”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

“친구들과 운동하고 놀 수 있는 깨끗한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운동장을 안전하고 넓고 더 좋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4).”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4). “

” 가족과 함께 체육 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탁구장이다.”

“어린이 스케이트장 같은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지역사회 여가공간 확충(5)

“동네에 놀 곳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적절히 마음 편히 놀 곳이 없다. 놀이터에는 불량 아이들이 싸우면서 논다. 마음 편히 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들판이 많았으면 좋겠다.”

□ 아파트단지 정비(7)

“놀이터가 재미있고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더 컸으면 좋겠다(3).”
 “아파트 놀이터 시설이 너무 안 좋다.”
 “아파트단지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형제·자매관계 개선

“동생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동생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 체험, 여행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 희망(4)

“재미 있는 체험캠프를 많이 가고 싶다.”
 “해외여행 가격이 낮아져서 원하는 사람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재해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간이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학교 및 지역사회 도서관 확대 희망(6):

“가까운 곳에 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3).”
 “학교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초등학생 자습실이 생겼으면 좋겠다.”

□ 지나친 학과 공부로 인한 어려움(9)

“학원이 너무 많다. 늦게까지 해서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5).”
 “학교에서 너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
 “공부가 너무 힘들다. 울고 싶어요.”
 “사이버 스쿨하고 독서 지원을 없었으면 좋겠다.”

□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동네)를 희망(22)

“깨끗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3).”
 “동네를 걷다가 큰 돌이 있어서 넘어졌는데 길에 유리가 있어서 유리에 손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의 집이 외곽인데 밤에 캄캄하고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주위가 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불량배들이 길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요구한다. 불량배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뉴스에 납치와 살해 등이 나와 무섭다.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이 너무 어둡고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니 환하고 안전한 마을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의료적 지원 필요

“치과치료가 필요하다.”

☐ 아동전용시설에 대한 희망

“어린이 전용 음식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 통학을 위한 교통, 서비스체계의 개선(3)

“버스 노선이 어려워서 편안하게 다니질 못 하겠다.”

“버스가 공짜였으면 좋겠다.”

☐ 진로지도 지원 희망(8)

“꿈을 이루기 위한 도움, 꿈과 관련된 직업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학원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리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

“미래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모르겠다.”

☐ 정보화 관련 희망(3)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요.”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광케이블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또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 희망(3)

“친구가 내가 잘못한다고 하고 너는 잘못 없어 너는 잘못 있어라고 하고 자기 부탁 안 들어 주면 화를 낸다.”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 또래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 시간, 프로그램, 시설 희망(9)

“친구들이랑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5)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과 놀이들이 필요하다.”

“우리 동네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경제, 일상생활관리 교육지원(4)

“돈 모으기가 힘들다.”

“용돈기입장 쓰기와 방치우기가 필요하다(3).”

□ 학습지원(2)

“공부를 잘하지만 더욱 더 잘하게 해주셔야 하는 분이 필요하다.”

“자신이 못하는 과목을 지도해주었으면 좋겠다.”

□ 학교환경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5)

“학교의 시설과 화장실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다(4).”

“학교 여자화장실에 온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흰 우유 말고 다른 맛 우유도 나오면 좋겠다.”

□ 지역사회 공중화장실 정비

“공중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화장실을 깨끗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여가시간 확보(2)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늘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학생의 수면시간이 평균 3~4시간이다. 하지만 평균학생 권장 수면시간은 7~9시간이다. 어떻게 숙제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공부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 학비 및 용돈지원(3)

“학비나 용돈을 줬으면 좋겠다.”

□ 지역사회 식생활 개선

“패스트푸드점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

□ 예·체능시간 확대 희망(3)

“체육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체육시간이나 미술, 컴퓨터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음악,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운동을 좋아 하고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을 별로 할 일이 없다.”

□ 다양한 수업방식 확대 희망

“과학시간에 실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희망

“언어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지,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2)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북한과 통일을 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 희망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우리의 문화수준을 너무 낮게 봐서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하질 못한다. 우리 세대에 맞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 취미활동 기회 제공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것 같다.”

□ 아동·가족 문화·관광 시설 확충(4)

“우리 동네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네에 교육시설만 많은데 문화시설도 생겼으면 좋겠다.”

□ 가족생활교육 필요(3)

“집에서 가끔 부모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좀 우리 부모님이 안 싸우시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부부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3. 주양육자의 지원서비스 욕구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양육자의 지원서비스 욕구조사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양육자의 아동과의 관계는 어머니인 경우가 84.8%, 아버지 12.5%, 할머니 0.9%, 할아버지 0.5%, 형제자매 0.5%, 이모·삼촌 등 친척 1.3%였다.

연령은 10대가 0.5%, 20대 1.5%, 30대 1.0%, 40대 85.6%, 50대 8.2%, 60대 2.6%, 70대 0.5%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1년미만이 4.8%, 2년 이상-5년미만 28.4%, 6년이상-10년미만 29.7%, 10년이상-15년미만 32.3%, 15년이상 4.8%를 차지하였다.

가족유형은 부부부부+미혼자녀 가족 78.3%, 아버지+미혼자녀 가족 2.0%, 어머니+미혼자녀 가족 4.5%,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형제자매 가족 1.9%, 조부모+손자녀 가족 1.4%, 부부+미혼자녀+부부의 양친 가족 2.5%,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한쪽부모 가족 7.0%, 4세대 이상 가족 1.5%, 기타 가족 0.9%였다.

거주지는 대도시(서울,인천,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52.0%, 중소도시 22.6%, 농어촌(읍,면,리) 25.5%였다.

가족생활수준은 매우 낮음 2.0%, 낮음 9.9%, 보통 72.5%, 높음 14.4%, 매우 높음 1.3%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1.4%, 만족하지 않음 9.4%, 보통 46.4%, 만족함 38.8%, 매우 만족함 4.1%였다.

학력은 중졸이하 2.5%, 고졸(중퇴포함) 42.7%, 전문대졸(중퇴포함) 20.1%, 4년제 대졸(중퇴포함) 28.2%, 대학원졸(중퇴포함) 이상 6.5%였다.

취업상황은 비취업 35.1%, 임금봉급근로자 42.1%, 고용원을 둔 사업주 5.1%,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프리랜서 포함) 12.9%, 무급가족종사자 4.8%였다.

가족생활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7.5%, 약간 만족한다 45.9%, 매우 만족한다 45.6%였다. 직장생활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8.6%, 약간 만족한다 53.3%, 매우 만족한다 26.7%였다.

취미·여가·문화생활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2.0%, 약간 만족한다 44.8%, 매우 만족한다 14.9%였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4.9%, 약간 만족한다 59.4%, 매우 만족한다 24.2%였다.

<표 IV-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	678	84.8
	아버지	100	12.5
	할머니	7	0.9
	할아버지	1	0.1
	형제자매	4	0.5
	이모, 삼촌 등 친척	10	1.3
	계	800	100.0
연령	10대	1	0.5
	20대	3	1.5
	30대	2	1.0
	40대	166	85.6
	50대	16	8.2
	60대	5	2.6
	70대	1	0.5
	계	194	100.0
거주기간	1년 미만	38	4.8
	2년이상-5년미만	226	28.4
	6년이상-10년미만	236	29.7
	10년이상-15년미만	257	32.3
	15년이상	38	4.8
	계	795	100.0

가족유형	부부+미혼자녀	623	78.3
	아버지+미혼자녀	16	2.0
	어머니+미혼자녀	36	4.5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5	1.9
	조부모+손자녀	11	1.4
	부부+미혼자녀+부부의 양친	20	2.5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한쪽부모	56	7.0
	4세대 이상	12	1.5
	기타	7	0.9
	계	796	100.0
거주지	대도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412	52.0
	중소도시	179	22.6
	농어촌(읍, 면, 리)	202	25.5
	계	793	100.0
가족생활수준	매우 낮음	16	2.0
	낮음	79	9.9
	보통	580	72.5
	높음	115	14.4
	매우 높음	10	1.3
	계	800	100.0
자신의 삶평가	전혀 만족하지 않음	11	1.4
	만족하지 않음	75	9.4
	보통	371	46.4
	만족함	310	38.8
	매우 만족함	33	4.1
	계	800	100.0
학력	중졸이하	20	2.5
	고졸(중퇴포함)	340	42.7
	전문대졸(중퇴포함)	160	20.1
	4년제 대졸(중퇴포함)	225	28.2
	대학원졸(중퇴포함) 이상	52	6.5
	계	797	100.0
취업상황	비취업	281	35.1
	임금봉급근로자	337	42.1
	고용원을 둔 사업주	41	5.1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프리랜서 포함)	103	12.9
	무급가족종사자	38	4.8
	계	800	100.0

가족생활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1.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60	7.5
	약간 만족한다	366	45.9
	매우 만족한다	364	45.6
	계	798	100.0
직장생활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1.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94	18.6
	약간 만족한다	269	53.3
	매우 만족한다	135	26.7
	계	505	100.0
취미,여가,문화 생활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5	8.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55	32.0
	약간 만족한다	357	44.8
	매우 만족한다	119	14.9
	계	796	100.0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	1.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18	14.9
	약간 만족한다	469	59.4
	매우 만족한다	191	24.2
	계	790	100.0

조사대상 주양육자 가정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있는 경우가 1.0%,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1.4%,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6%,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이주정착 가정인 경우가 5%,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가정인 경우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인 경우가 2.1%, 차상위 가정인 경우가 3.1%였다.

<표 IV-8> 주양육자의 가정에 해당하는 사항(다중응답)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		빈도	%
주양육자의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724	91.2
	장애를 가진 아동	8	1.0
	장애를 가진 아버지	11	1.4
	장애를 가진 어머니	5	6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이주정착 가정	4	5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가정	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	2.1
	차상위 가정	25	3.1
	계	796	100.3

2)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올해 들어 주양육자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
건소(29.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0.3%), 청소년수련
관(18.3%), 청소년수련원(17.7%), 유스호스텔(15.7%), 청소년야영장
(13.9%), 여성회관(11.4%), 고용지원센터(10.8%), 종합사회복지관
(10.0%),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8.8%), 청소년공부방
(5.6%), 청소년문화의집(4.8%), 국립예술기관(4.6%), 건강가정지원센터
(4.2%),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4.0%), 청소년성문화센터(3.8%), 지역
아동센터(3.8%), 방과후학교지원센터(3.6%), 직업전문학교(3.0%), 일자
리종합센터(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2.6%), 여성복지상담소(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2%), 진로정보센터(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 청소년쉼터(1.8%), 아동상담소(1.8%),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1.8%), 청소년문화존(1.8%), 아동복지관(1.6%), 성폭력상담소(1.4%),
기타(1.4%),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1.4%), 가정폭력상담소(1.4%), 청
소년자원봉사센터(1.4%), wee센터(1.2%), 여성농업인센터(1.2%), 청소
년선도보호시설(1.2%), 모부자복지상담소(1.0%), 학교폭력상담센터
(1.0%), 청소년특화시설(1.0%),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
센터(0.8%), 아동전용시설(0.8%), 정신보건센터(0.8%), 인터넷중독상담
센터(0.8%), 청소년활동진흥센터(0.6%), 한국가정법률상담소(0.6%), 초
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0.6%), 성폭력피해상담소(0.6%), 아동양
육시설(0.6%), wee스쿨(0.6%), wee 클래스(0.6%), 청소년보호종합지원
센터(0.4%), 아동보호치료시설(0.4%), 청소년교류센터(0.4%), 아동종합
시설(0.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0.4%),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0.4%), 이주여성쉼터(0.4%),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0.4%), 하나둘학교(0.4%), 식품안전정보센터(0.4%), 청소년비행예방센
터(대안교육센터) (0.4%), 아동직업훈련시설(0.2%), 아동보호종합센터
(0.2%), 아동자립지원시설(0.2%), 아동학대 예방센터(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0.2%),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0.2%), 여성아동폭력 피해중앙지원단(0.2%), 알코올중독상담센터(0.2%), 청소년지원시설(일시 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0.2%) 순이다,

<표 IV-9>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다중응답)

구 분		빈도	%
올해 들어 이용한 시설과 각 올해 들어 이용한 시설과 각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복수응답)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	4.0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9	1.8
	청소년수련관	91	18.3
	청소년수련원	88	17.7
	청소년문화의집	24	4.8
	청소년특화시설	5	1.0
	청소년야영장	69	13.9
	유스호스텔	78	15.7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44	8.8
	건강가정지원센터	21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	2.6
	성폭력상담소	7	1.4
	가정폭력상담소	7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1	2.2
	청소년공부방	28	5.6
	청소년문화존	9	1.8
	청소년교류센터	2	0.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7	1.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	0.6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	0.4
	청소년성문화센터	29	3.8
	청소년쉼터	9	1.8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2	0.41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1	0.2
	여성복지상담소	13	2.6
	모부자복지상담소	5	1.0
	성폭력피해상담소	3	0.6
	청소년선도보호시설	6	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	2.0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2	0.4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1	0.2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3	0.8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1	0.2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	0.2
여성회관	57	11.4
이주여성쉼터	2	0.4
아동학대 예방센터	1	0.2
아동상담소	9	1.8
지역아동센터	19	3.8
종합사회복지관	50	10.0
정신보건센터	4	0.8
알코올중독상담센터	1	0.2
아동양육시설	3	0.6
아동보호치료시설	2	0.4
아동직업훈련시설	1	0.2
아동자립지원시설	1	0.2
아동전용시설	4	0.8
아동복지관	8	1.6
아동종합시설	2	0.4
아동보호종합센터	1	0.2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7	1.4
학교폭력상담센터	5	1.0
wee 클래스	3	0.6
wee센터	6	1.2
wee스쿨	3	0.6
방과후학교	101	20.3
진로정보센터	11	2.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8	3.6
국립예술기관	23	4.6
일자리종합센터	15	3.0
하나둘학교	2	0.4
초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3	0.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	0.6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2	0.4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2	0.4
지역사회보건소	145	29.1
직업전문학교	15	3.0
고용지원센터	54	10.8
여성농업인센터	6	1.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4	0.8
식품안전정보센터	2	0.4
기타	7	1.4
계	1217	244.4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사회보건소(29.7%)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1.1%), 청소년수련관(18.7%), 청소년수련원(17.1%), 청소년야영장(15.9%), 고용지원센터(15.4%), 종합사회복지관(13.8%), 유스호스텔(13.4%), 여성회관(12.6%),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0.2%)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청소년수련원(19.7%)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보건소(19.0%), 유스호스텔(18.2%), 방과후학교(16.8%), 청소년야영장(13.9%), 청소년공부방(10.2%) 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지역사회보건소(40.4%)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2.0%), 청소년수련원(17.4%), 유스호스텔(17.4%), 여성회관(13.8%), 청소년수련관(13.8%), 청소년야영장(10.1%)순이었다.

<표 IV-10>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수응답)-지역별 비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 수응답) -지역별	시도청소년 상담지원센터	5	2.0	12	8.8	3	2.8	20	4.1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5	2.0	2	1.5	2	1.8	9	1.8
	청소년수련관	46	18.7	27	19.7	15	13.8	88	17.9
	청소년수련원	42	17.1	27	19.7	19	17.4	88	17.9
	청소년문화의집	4	1.6	10	7.3	10	9.2	24	4.9
	청소년특화시설	1	0.4	3	2.2	1	0.9	5	1.0
	청소년야영장	39	15.9	19	13.9	11	10.1	69	14.0
	유스호스텔	33	13.4	25	18.2	19	17.4	77	15.7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과학관)	25	10.2	11	8.0	6	5.5	42	8.5
	건강가정지원센터	10	4.1	2	1.5	9	8.3	21	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2.0	6	2.4	2	1.8	13	2.6
	성폭력상담소	2	0.8	3	2.2	2	1.8	7	1.4
	가정폭력상담소	3	1.2	2	1.5	2	1.8	7	1.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	1.6	4	2.9	3	2.8	11	2.2
	청소년공부방	10	4.1	14	10.2	3	2.8	27	5.5
	청소년문화존	6	2.4	2	1.5	1	0.9	9	1.8
	청소년교류센터	1	0.4	0	0.0	1	0.9	2	0.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	0.8	5	3.6	0	0.0	7	1.4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1	0.4	1	0.7	0	0.0	2	0.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	0.8	0	0.0	0	0.0	2	0.4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	0	0.0	1	0.7	1	0.9	2	0.4
청소년성문화센터	6	2.4	12	8.8	0	0.0	18	3.7
청소년쉼터	2	0.8	3	2.2	4	3.7	9	1.8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	2	0.8	0	0.0	0	0.0	2	0.4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0	0.0	0	0.0	1	0.9	1	0.2
여성복지상담소	7	2.8	5	3.6	1	0.9	13	2.6
모부자복지상담소	4	1.6	0	0.0	1	0.9	5	1.0
성폭력피해상담소	1	0.4	1	0.7	1	0.9	3	0.6
청소년선도보호시설	1	0.4	4	2.9	1	0.9	6	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	2.0	2	1.5	3	1.8	10	2.0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2	0.8	0	0.0	0	0.0	2	0.4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	1	0.4	0	0.0	0	0.0	1	0.2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STOP 지원센터	1	0.4	1	0.7	0	0.0	2	0.4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0	0.0	0	0.0	1	0.9	1	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0	0.0	0	0.0	1	0.9	1	0.2
여성회관	31	12.6	11	8.0	15	13.8	57	11.6
이주여성쉼터	1	0.4	1	0.7	0	0.0	2	0.4
아동학대 예방센터	1	0.4	0	0.0	0	0.0	1	0.2
아동상담소	4	1.6	2	1.5	3	2.8	9	1.8
지역아동센터	7	2.8	9	6.6	3	2.8	19	3.9
종합사회복지관	34	13.8	8	5.8	8	7.3	50	10.2
정신보건센터	2	0.8	1	0.7	1	0.9	4	0.8
알코올중독상담센터	0	0.0	0	0.0	1	0.9	1	0.2
아동양육시설	2	0.8	1	0.7	0	0.0	3	0.6
아동보호치료시설	0	0.0	2	1.5	0	0.0	2	0.4
아동직업훈련시설	0	0.0	0	0.0	1	0.9	1	0.2
아동자립지원시설	1	0.4	0	0.0	0	0.0	1	0.2
아동전용시설	2	0.8	1	0.7	1	0.9	4	0.8
아동복지관	5	2.0	1	0.7	0	0.0	6	1.2
아동종합시설	1	0.4	0	0.0	1	0.9	2	0.4
아동보호종합센터	1	0.4	0	0.0	0	0.0	1	0.2
교육청내	0	0.0	5	3.6	1	0.9	6	1.2

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상담센터	2	0.8	2	1.5	1	0.9	5	1.0
wee 클래스	1	0.4	1	0.7	1	0.9	3	0.6
wee센터	5	2.0	1	0.7	0	0.0	6	1.2
wee스쿨	2	0.8	0	0.0	1	0.9	3	0.6
방과후학교	52	21.1	23	16.8	24	22.0	99	20.1
진로정보센터	5	2.0	4	2.9	1	0.9	10	2.0
방과후학교지원센터	8	3.3	7	5.1	3	2.8	18	3.7
국립예술기관	15	6.1	5	3.6	3	2.8	23	4.7
일자리종합센터	7	2.8	2	1.5	6	5.5	15	3.0
하나둘학교	0	0.0	2	1.5	0	0.0	2	0.4
초등학교특별학급 (삼죽초등학교)	1	0.4	1	0.7	0	0.0	2	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0.8	1	0.7	0	0.0	3	0.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공구센터)	2	0.8	0	0.0	0	0.0	2	0.4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0	0.0	1	0.7	1	0.9	2	0.4
지역사회보건소	73	29.7	26	19.0	44	40.4	143	29.1
직업전문학교	8	3.3	4	2.9	3	2.8	15	3.0
고용지원센터	38	15.4	8	5.8	8	7.3	54	11.0
여성농업인센터	1	0.4	2	1.5	3	2.8	6	1.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4	1.6	0	0.0	0	0.0	4	0.8
식품안전정보센터	2	0.8	0	0.0	0	0.0	2	0.4
기타	5	2.0	1	0.7	1	0.9	7	1.4
계	246	50.0	137	27.8	109	22.2	492	100.0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가족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지역사회보건소(28.6%)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0.1%), 청소년수련원(18.3%), 청소년수련관(17.8%), 유스호스텔(15.0%), 청소년야영장(14.8%), 여성회관(13.3%), 고용지원센터(11.0%) 순이었다, 아버지+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청소년수련관(57.1%), 지역사회보건소(28.6%), 청소년수련원(14.3%), 청소년교류센터(14.3%), 방과후학교(14.3%) 순이었다. 어머니+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지역사회보건소(35.0%)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20.0%), 방과후학교(15.0%), 모부

자복지상담소(15.0%), 종합사회복지관(10.0%), 청소년수련관(10.0%), 일자리종합센터(10.0%), 건강가정지원센터(10.0%), 지역아동센터(10.0%) 순이었다.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형제자매 가족의 경우 유스호스텔(25.0%)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5.0%), 학교폭력상담센터(12.5%),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2.5%), 청소년수련원(12.5%), 정신보건센터(12.5%), 여성회관(12.5%), 아동상담소(12.5%), 청소년문화의집(12.5%), 성폭력피해상담소(12.5%), 종합사회복지관(12.5%), 청소년수련관(12.5%), 청소년선도보호시설(12.5%), 아동직업훈련시설(12.5%),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STOP 지원센터(12.5%),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12.5%), 여성농업인센터(12.5%), 지역사회보건소(12.5%), 아동복지관(12.5%), 진로정보센터(12.5%) 순이었다.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경우 직업전문학교(40.0%)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국립예술기관(40.0%), 청소년수련관(20.0%), 아동전용시설(20.0%), 유스호스텔(20.0%), 여성회관(20.0%), 청소년문화의집(20.0%), 고용지원센터(20.0%), 청소년야영장(20.0%), 이주여성쉼터(20.0%) 순이었다.

<표 IV-11> 올해 이용한 경험에 있는 시설(복수응답)-가족유형별 비교

구 분	부부+미혼자녀		아버지+미혼자녀		어머니+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부부+미혼자녀+부부의 양친		부부+미혼자녀+부모의 한 쪽 부모		4세대이상가족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복수응답)-가족유형별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9	4.8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20	4.0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7	1.8	0	0.0	0	0.0	0	0.0	0	0.0	1	7.7	1	3.1	0	0.0	0	0.0	9	1.8
	청소년수련관	71	17.8	5	57.1	2	100	1	12.5	1	20.0	1	7.7	6	18.8	4	44.4	1	33.3	91	18.3
	청소년수련원	73	18.3	1	14.3	0	0.0	1	12.5	0	0.0	3	23.1	5	15.6	4	44.4	1	33.3	88	17.7
	청소년문화의집	21	5.3	0	0.0	0	0.0	1	12.5	1	20.0	0	0.0	0	0.0	1	11.1	0	0.0	24	4.8
	청소년복지시설	4	1.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0	0.0	5	1.0
	청소년야영장	59	14.8	0	0.0	1	5.0	0	0.0	1	20.0	2	15.4	5	15.6	1	11.1	0	0.0	69	13.9
	유스호스텔	60	15.0	0	0.0	1	5.0	2	25.0	1	20.0	6	46.2	6	18.8	1	11.1	0	0.0	77	15.5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34	8.5	0	0.0	1	5.0	1	12.5	0	0.0	1	7.7	6	18.8	1	11.1	0	0.0	44	8.9
	건강가정지원센터	18	4.5	0	0.0	2	10.0	0	0.0	0	0.0	0	0.0	1	3.1	0	0.0	0	0.0	21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	2.8	0	0.0	0	0.0	0	0.0	0	0.0	0	0.0	2	6.3	0	0.0	0	0.0	13	2.6	
성폭력상담소	5	1.3	0	0.0	0	0.0	0	0.0	0	0.0	1	7.7	1	3.1	0	0.0	0	0.0	7	1.4	
가정폭력상담소	7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1	2.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	2.2	

청소년공부방	24	6.0	0	0.0	1	5.0	0	0.0	0	0.0	1	7.7	1	3.1	1	11.1	0	0.0	28	56
청소년문화존	8	2.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0	0.0	9	18
청소년교류센터	1	0.3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4
청소년자원봉사 센터	7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14
시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1	3.1	0	0.0	0	0.0	3	06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1	3.1	0	0.0	0	0.0	2	04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2	04
청소년성문화 센터	15	3.8	0	0.0	0	0.0	0	0.0	0	0.0	2	15.4	2	6.3	0	0.0	0	0.0	19	38
청소년쉼터	9	2.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8
청소년보호종합 지원센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4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여성복지상담소	12	3.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0	0.0	13	26
모부자복지 상담소	2	0.5	0	0.0	3	1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
성폭력피해 상담소	2	0.5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3	06
청소년선도보호 시설	4	1.0	0	0.0	0	0.0	1	12.5	0	0.0	0	0.0	1	3.1	0	0.0	0	0.0	6	12

여성세로일하기 센터	8	20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20
	아동성폭력전담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2	04
	여성아동폭력피해증양지원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ON-STOP 지원센터	1	0.3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센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1	02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1	02	
	여성회관	53	13.3	0	0.0	1	50	1	125	1	200	0	0.0	1	3.1	0	0.0	0	0.0	57	11.5	
	이주여성센터	1	0.3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2	04	
	아동학대 예방센터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아동상담소	6	1.5	0	0.0	1	50	1	125	0	0.0	0	0.0	0	0.0	0	0.0	1	33.3	9	18	
	지역아동센터	14	3.5	0	0.0	2	100	0	0.0	0	0.0	0	0.0	2	6.3	1	11.1	0	0.0	19	38	
	종합사회복지관	39	9.8	0	0.0	2	100	1	125	0	0.0	2	15.4	4	12.5	2	22.2	0	0.0	50	101	
	정신보건센터	2	0.5	0	0.0	0	0.0	1	125	0	0.0	0	0.0	1	3.1	0	0.0	0	0.0	4	08	
	알코올중독 상담센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1	02	
아동양육시설	3	0.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6		

3)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주양육자가 앞으로 이용해보고 싶은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회관(24.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립예술기관(21.2%),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20.7%), 건강가정지원센터(16.0%), 종합사회복지관(15.9%), 진로정보센터(15.7%), 여성복지상담소(14.9%), 청소년야영장(14.6%), 청소년문화존(14.2%), 청소년수련관(13.2%), 유스호스텔(13.1%), 식품안전정보센터(12.6%), 여성새로일하기센터(12.6%), 지역사회보건소(12.4%), 청소년수련원(11.9%), 청소년문화의집(11.7%), 직업전문학교(11.7%), 일자리종합센터(10.6%), 청소년공부방(10.6%), 청소년자원봉사센터(1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9.5%), 고용지원센터(9.4%),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8.4%), 방과후학교(8.3%), 청소년활동진흥센터(8.3%), 청소년성문화센터(7.3%), 청소년교류센터(6.6%), 방과후학교지원센터(6.3%), 청소년쉼터(5.4%), 아동복지관(5.2%), 청소년특화시설(4.7%), 모부자복지상담소(4.0%), 아동전용시설(3.9%), 인터넷중독상담센터(3.7%), 아동상담소(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3.3%), 지역아동센터(3.3%),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3.2%), wee 클래스(3.0%),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3.0%),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3.0%), 정신보건센터(2.9%), wee센터(2.8%), 초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2.6%), 여성농업인센터(2.6%), 아동종합시설(2.5%), 한국가정법률상담소(2.3%), wee스쿨(2.3%), 청소년선도보호시설(2.2%), 학교폭력상담센터(2.1%),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1%), 아동양육시설(1.9%), 아동학대 예방센터(1.9%), 공동생활가정(1.5%), 가정폭력상담소(1.4%), 아동직업훈련시설(1.2%), 성폭력상담소(1.2%),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1.1%), 성폭력피해상담소(1.1%), 아동보호종합센터(1.1%),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1.0%),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1.0%), 하나둘학교(1.0%),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0.8%),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0.8%), 기타(0.8%), 아동보

호치료시설(0.8%),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0.8%), 이주여성쉼터(0.7%),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0.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0.7%), 아동일시보호시설(0.7%), 청소년지원시설(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0.7%), 아동성폭력 전담센터(0.7%), 한국갱생보호공단(0.6%), 아동자립지원시설(0.4%),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0.3%), 북한이탈청소년지역거점센터(0.1%) 순이었다.

<표 IV-12>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구 분		빈도	%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61	8.4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22	3.0
	청소년수련관	96	13.2
	청소년수련원	86	11.9
	청소년문화의집	85	11.7
	청소년특화시설	34	4.7
	청소년야영장	106	14.6
	유스호스텔	95	13.1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150	20.7
	건강가정지원센터	116	16.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3.3
	성폭력상담소	9	1.2
	가정폭력상담소	10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9	9.5
	청소년공부방	77	10.6
	청소년문화존	103	14.2
	청소년교류센터	48	6.6
	청소년자원봉사센터	77	10.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60	8.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5	0.7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8	1.1
	청소년성문화센터	53	7.3
	청소년쉼터	39	5.4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22	3.0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5	0.7
	여성복지상담소	108	14.9

모부자복지상담소	29	4.0
성폭력피해상담소	8	1.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0.3
청소년선도보호시설	16	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1	12.6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7	1.0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5	0.7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8	1.1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E-STOP센터	7	1.0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6	0.8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5	0.7
북한이탈청소년지역거점센터	1	0.1
여성회관	174	24.0
이주여성쉼터	5	0.7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7	1.0
아동학대 예방센터	14	1.9
아동상담소	25	3.4
지역아동센터	24	3.3
종합사회복지관	115	15.9
정신보건센터	21	2.9
아동양육시설	14	1.9
아동보호치료시설	6	0.8
아동일시보호시설	5	0.7
아동직업훈련시설	9	1.2
아동자립지원시설	3	0.4
아동전용시설	28	3.9
아동복지관	38	5.2
아동종합시설	18	2.5
공동생활가정	11	1.5
아동보호종합센터	8	1.1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23	3.2
학교폭력상담센터	15	2.1
wee 클래스	22	3.0
wee센터	20	2.8
wee스쿨	17	2.3
방과후학교	60	8.3
진로정보센터	114	15.7
방과후학교지원센터	46	6.3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	0.3
국립예술기관	154	21.2
일자리종합센터	77	10.6

하나둘학교	7	1.0
초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19	2.6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6	0.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7	2.3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23	3.2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6	0.8
지역사회보건소	90	12.4
한국갱생보호공단	4	0.6
직업전문학교	85	11.7
고용지원센터	68	9.4
여성농업인센터	19	2.6
인터넷중독상담센터	27	3.7
식품안전정보센터	91	12.6
기타	6	0.8
계	3296	454.6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25.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립예술기관(24.1%), 여성회관(23.0%), 종합사회복지관(18.6%), 진로정보센터(17.2%), 청소년야영장(16.9%), 건강가정지원센터(16.1%), 지역사회보건소(16.1%), 식품안전정보센터(15.2%), 여성복지상담소(1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12.7%), 청소년문화의집(12.2%), 청소년문화존(11.9%), 직업전문학교(11.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11.6%), 청소년수련관(11.4%), 유스호스텔(11.4%), 일자리종합센터(11.1%), 청소년 자원봉사센터(10.8%)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18.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18.1%), 여성회관(18.1%), 국립예술기관(17.5%),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6.4%), 청소년공부방(15.8%), 청소년문화존(15.8%), 유스호스텔(14.6%), 청소년야영장(14.0%), 여성복지상담소(12.9%), 방과후학교(12.9%),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12.3%), 청소년 자원봉사센터(12.3%), 종합사회복지관(12.3%), 청소년수련원(11.7%), 청소년문화의집(11.1%), 식품안전정보센터(11.1%), 진로정보센터(10.5%), 직업전문학교(10.5%) 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25.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립예술기관(19.9%), 여성복지상담소(19.4%), 청소년수련원(16.7%), 진로정보센터(16.7%), 여성새로일하기센터(16.1%), 청소년공부방(16.1%), 청소년문화존(16.1%), 유스호스텔(15.6%),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과학관) (15.1%), 종합사회복지관(14.5%), 일자리종합센터(14.5%), 직업전문학교(12.9%), 청소년수련관(12.4%), 청소년문화의집(11.8%), 청소년야영장(11.3%) 순이었다.

<표 IV-13>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응답)-지역별 비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가주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24	6.6	21	12.3	15	8.1	60	8.4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10	2.8	6	3.5	6	3.2	22	3.1
	청소년수련관	41	11.4	31	18.1	23	12.4	95	13.2
	청소년수련원	34	9.7	20	11.7	31	16.7	86	12.0
	청소년문화의집	44	12.2	19	11.1	22	11.8	85	11.8
	청소년특화시설	12	3.3	12	7.0	10	5.4	34	4.7
	청소년야영장	61	16.9	24	14.0	21	11.3	106	14.8
	유스호스텔	41	11.4	25	14.6	29	15.6	95	13.2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과학관)	92	25.5	28	16.4	28	15.1	148	20.6
	건강가정지원센터	58	16.1	32	18.7	25	25.4	115	16.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2	3.3	3	1.8	9	4.8	24	3.3
	성폭력상담소	2	0.6	1	1.2	5	2.7	9	1.3
	가정폭력상담소	4	1.1	4	2.3	2	1.1	10	1.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2	11.6	15	8.8	12	6.5	69	9.6
	청소년공부방	34	9.4	27	15.8	30	16.1	76	10.6
	청소년문화존	43	11.9	27	15.8	30	16.1	100	13.9
	청소년교류센터	25	6.9	10	5.8	12	6.5	47	6.5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39	10.8	21	12.3	16	8.6	76	10.6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2	9.1	17	9.9	10	5.4	60	8.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	0.6	2	1.2	0	0.0	4	0.6
여성폭력피해자원 스톱지원센터	4	1.1	2	1.2	2	1.1	8	1.1
청소년성문화센터	22	6.1	13	7.6	16	8.6	51	7.1
청소년쉼터	13	3.6	13	7.6	12	6.5	38	5.3
청소년보호종합지 원센터	8	2.2	10	5.8	3	1.6	21	2.9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1	0.3	2	1.2	2	1.1	5	0.7
여성복지상담소	50	13.9	22	12.9	36	19.4	108	15.0
모부자복지상담소	6	1.7	9	5.3	13	7.0	28	3.9
성폭력피해상담소	2	0.6	2	1.2	4	2.2	8	1.1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0	0.0	1	0.6	1	0.5	2	0.3
청소년선도보호시설	9	2.5	6	3.5	1	0.5	16	2.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46	12.7	15	8.8	30	16.1	91	12.7
국립청소년치료 재활센터	3	0.8	2	1.2	1	0.5	6	0.8
아동성폭력전담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1	0.3	2	1.2	2	1.1	5	0.7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 중앙	2	0.6	1	0.6	4	2.2	7	1.0
여성아동폭력피해 자 ON-STOP 지원센터	1	0.3	2	1.2	3	1.6	6	0.6
성폭력피해아동청 소년 전용쉼터	2	0.6	1	0.6	2	1.1	5	0.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	0.3	2	1.2	2	1.1	5	0.7
북한이탈청소년지 역거점센터	1	0.3	0	0.0	0	0.0	1	0.1
여성회관	83	23.0	31	18.1	59	31.7	173	24.1
이주여성쉼터	3	0.8	1	0.6	1	0.5	5	0.7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2	0.6	1	0.6	2	1.1	7	1.0
아동학대예방센터	5	1.4	4	2.3	5	2.7	14	1.9
아동상담소	17	4.7	1	0.6	7	3.8	25	3.5
지역아동센터	10	2.8	11	6.4	2	1.1	23	3.2
종합사회복지관	67	18.6	21	12.3	27	14.5	115	16.0
정신보건센터	14	3.9	5	2.9	2	1.1	21	2.9

	아동양육시설	8	2.2	3	1.8	2	1.1	13	1.8
	아동보호치료시설	1	0.3	2	1.2	3	1.6	6	0.8
	아동일시보호시설	3	0.8	2	1.2	0	0.0	5	0.7
	아동직업훈련시설	5	1.4	0	0.0	3	1.6	8	1.1
	아동자립지원시설	2	0.6	0	0.0	0	0.0	2	0.3
	아동전용시설	15	4.2	5	2.9	8	4.3	28	3.9
	아동복지관	17	4.7	15	8.8	6	3.2	38	5.3
	아동종합시설	12	3.3	3	1.8	3	1.6	18	2.5
	공동생활가정	4	1.1	3	1.8	4	2.2	11	1.5
	아동보호종합센터	4	1	3	1.8	1	0.5	8	1.1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15	4.2	3	1.8	5	2.7	23	3.2
	학교폭력상담센터	5	1.4	6	3.5	4	2.2	15	2.1
	wee 클래스	11	3.0	8	4.7	3	1.6	22	3.1
	wee센터	2	0.6	5	2.9	13	7.0	20	2.8
	wee스쿨	7	1.9	2	1.2	8	4.3	17	2.4
	방과후학교	25	6.9	22	12.9	13	7.0	60	8.4
	진로정보센터	62	17.2	18	10.5	31	16.7	111	15.5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26	7.2	9	5.3	11	5.9	46	6.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1	0.3	1	0.6	0	0.0	2	0.3
	국립예술기관	87	24.1	30	17.5	37	19.9	154	21.4
	일자리종합센터	40	11.1	10	5.8	27	14.5	77	10.7
	하나둘학교	4	1.1	3	1.8	0	0.0	7	1.0
	초등학교특별학급 (삼죽초등학교)	10	2.8	7	4.1	2	1.1	19	2.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4	1.1	2	1.2	0	0.0	6	0.8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5	1.4	2	1.2	10	5.4	17	2.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센터)	9	2.5	5	2.9	8	4.3	22	3.1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2	0.6	2	1.2	2	1.1	6	0.8
	지역사회보건소	58	16.1	13	7.6	18	9.7	89	12.4
	한국갱생보호공단	3	0.8	0	0.0	0	0.0	3	0.4
	직업전문학교	43	11.9	18	10.5	24	12.9	85	11.8
	고용지원센터	33	9.1	17	9.9	18	9.7	68	9.5
	여성농업인센터	3	0.8	2	1.2	14	7.5	19	2.6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11	3.0	7	4.1	9	4.8	27	3.8
	식품안전정보센터	55	15.2	19	11.1	17	9.1	91	12.7
	기타	5	1.4	0	0.0	1	0.5	6	0.8
계		361	50.3	171	23.8	186	25.9	718	100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을 가족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미혼자녀가족의 경우 여성회관(25.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22.1%), 국립예술기관(21.1%), 종합사회복지관(16.5%), 진로정보센터(16.1%), 건강가정지원센터(15.6%), 청소년야영장(15.0%), 여성복지상담소(14.9%), 청소년수련관(14.3%), 청소년문화존(13.8%), 여성새로일하기센터(13.6%), 유스호스텔(13.3%), 지역사회보건소(12.9%), 식품안전정보센터(12.7%), 청소년문화의집(12.4%), 직업전문학교(12.4%), 청소년수련원(11.5%), 청소년자원봉사센터(10.8%), 일자리종합센터(10.3%), 청소년공부방(10.1%), 고용지원센터(10.1%) 순이었다.

아버지+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청소년수련관(3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립예술기관(28.6%), 청소년문화의집(21.4%), 청소년야영장(21.4%), 청소년수련원(21.4%), 지역사회보건소(14.3%),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4.3%), 진로정보센터(14.3%), 청소년공부방(14.3%), 청소년문화존(14.3%) 순이었다.

어머니+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21.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21.9%), 여성복지상담소(21.9%), 여성회관(21.9%), 청소년수련원(18.8%), 일자리종합센터(18.8%), 청소년야영장(15.6%), 모부자복지상담소(15.6%), 고용지원센터(15.6%),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15.6%), 진로정보센터(15.6%), 건강가정지원센터(12.5%),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12.5%),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12.5%), 청소년공부방(12.5%), 종합사회복지관(12.5%), 식품안전정보센터(12.5%), 국립예술기관(12.5%) 순이었다.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경우 유스호스텔(4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 방과후학교(20.0%), 아동학대방지센터(20.0%), 청소년야영장(20.0%), 청소년문화존(20.0%), 청소년쉼터(20.0%), 청소년문화의집(20.0%), 종합사회복지관(20.0%), 청소년교류센터(20.0%), 청소년공부방(20.0%), 진로정보센터(20.0%), 건강가정지

원센터(10.0%), wee 클래스(10.0%), 아동양육시설(10.0%), 청소년이용
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0.0%), 방과후학교지원센터(10.0%), 여성
회관(10.0%), 아동종합시설(10.0%), 청소년수련관(10.0%), 식품안전정보
센터(1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0.0%),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0%), 아동보호종합센터(10.0%), 아동복지관(10.0%), 아동전용시설
(10.0%), 지역아동센터(10.0%), 아동직업훈련시설(10.0%)순이었다.

<표 IV-14>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응답)-가족유형 비교

구 분	부부 +미혼자녀		아버지 +미혼자녀		어머니 +미혼자녀		부부+미혼자 녀+부부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부부 +미혼자녀 +부부의 양친 의 한 쪽 부모		4세대이상 가족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복수 응답)-가 족유형	시도청소년상담 지원센터	46	8.1	1	7.1	4	12.5	2	16.7	0	0.0	2	11.8	4	7.4	2	16.7	0	0.0	61	8.4
	시군구청소년지 원센터	15	2.7	7	7.1	4	12.5	0	0.0	0	0.0	0	0.0	2	3.7	0	0.0	0	0.0	22	3.0
	청소년수련관	81	14.3	5	35.7	2	6.3	1	8.3	1	10.0	0	0.0	3	5.6	3	25.0	0	0.0	96	13.3
	청소년수련원	65	11.5	3	21.4	6	18.8	2	16.7	0	0.0	2	11.8	4	7.4	3	25.0	1	16.7	86	11.9
	청소년문화의집	70	12.4	3	21.4	2	6.3	2	16.7	2	20.0	1	5.9	3	5.6	1	8.3	1	16.7	85	11.8
	청소년특화시설	28	5.0	1	7.1	1	3.1	1	8.3	0	0.0	0	0.0	1	1.9	1	8.3	1	16.7	34	4.7
	청소년야영장	85	15.0	3	21.4	5	15.6	0	0.0	2	20.0	1	5.9	8	14.8	2	16.7	0	0.0	106	14.7
	유스호스텔	75	13.3	1	7.1	3	9.4	0	0.0	4	40.0	2	11.8	7	13.0	3	25.0	0	0.0	95	13.2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과학관)	125	22.1	2	14.3	7	21.9	1	8.3	1	10.0	1	5.9	8	14.8	4	33.3	1	16.7	150	20.8
	건강가정지원센터	88	15.6	1	7.1	4	12.5	1	8.3	1	10.0	4	23.5	14	25.9	2	16.7	0	0.0	115	15.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3	4.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9	0	0.0	0	0.0	24	3.3
	성폭력상담소	5	0.9	1	7.1	0	0.0	0	0.0	0	0.0	0	0.0	3	5.6	0	0.0	0	0.0	9	1.2
	가정폭력상담소	7	1.2	0	0.0	0	0.0	0	0.0	0	0.0	1	5.9	2	3.7	0	0.0	0	0.0	10	1.4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53	9.4	0	0.0	3	9.4	0	0.0	1	10.0	3	17.6	5	9.3	4	33.3	0	0.0	69	9.6
	청소년공부방	57	10.1	2	14.3	4	12.5	1	8.3	2	20.0	3	17.6	6	11.1	1	8.3	1	16.7	77	10.7

청소년문화존	78	13.8	2	14.3	3	9.4	2	16.7	2	20.0	3	17.6	10	18.5	3	25.0	0	0.0	103	14.3
청소년교류센터	38	6.7	1	7.1	2	6.3	1	8.3	2	20.0	0	0.0	3	5.6	1	8.3	0	0.0	48	6.6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61	10.8	0	0.0	2	6.3	0	0.0	2	20.0	2	11.8	7	13.0	1	8.3	2	33.3	77	10.7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50	8.8	1	7.1	2	6.3	0	0.0	1	10.0	0	0.0	6	11.1	0	0.0	0	0.0	60	8.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	0.4	0	0.0	0	0.0	0	0.0	0	0.0	1	5.9	0	0.0	1	8.3	0	0.0	4	0.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6	1.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9	1	8.3	0	0.0	8	1.1
청소년 성문화센터	44	7.8	0	0.0	2	6.3	1	8.3	0	0.0	1	5.9	5	9.3	0	0.0	0	0.0	53	7.3
청소년쉼터	28	5.0	1	7.1	1	3.1	1	8.3	2	20.0	2	11.8	1	1.9	2	16.7	1	16.7	39	5.4
청소년보호종합 지원센터	17	3.0	0	0.0	0	0.0	0	0.0	0	0.0	2	11.8	3	5.6	0	0.0	0	0.0	22	3.0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3	0.5	1	7.1	0	0.0	1	8.3	0	0.0	0	0.0	0	0.0	0	0.0	0	0.0	5	0.7
여성복지상담소	84	14.9	1	7.1	7	21.9	3	25.0	0	0.0	3	17.6	6	11.1	3	25.0	0	0.0	107	14.8
모부자복지상담소	17	3.0	1	7.1	5	15.6	0	0.0	0	0.0	0	0.0	5	9.3	0	0.0	1	16.7	29	4.0
성폭력피해상담소	6	1.1	1	7.1	1	3.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1
성폭력피해자보 호시설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8.3	0	0.0	2	0.3
청소년선도 보호시설	13	2.3	1	7.1	0	0.0	0	0.0	0	0.0	1	5.9	0	0.0	1	8.3	0	0.0	16	2.2

여성세로 일하기센터	77	13.6	0	0.0	7	21.9	2	16.7	0	0.0	2	11.8	2	3.7	0	0.0	0	0.0	90	12.5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4	0.7	1	7.1	1	3.1	0	0.0	0	0.0	0	0.0	1	1.9	0	0.0	0	0.0	7	1.0
아동성폭력전담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3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6.7	0	0.0	5	0.7
여성아동폭력피 해증양지원	5	0.9	0	0.0	0	0.0	0	0.0	0	0.0	0	0.0	2	3.7	0	0.0	0	0.0	7	1.0
여성아동폭력피 해자 ONE-STOP 지원센터	5	0.9	0	0.0	0	0.0	1	8.3	0	0.0	0	0.0	0	0.0	0	0.0	0	0.0	6	0.8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상담	4	0.7	0	0.0	0	0.0	0	0.0	0	0.0	1	5.9	0	0.0	0	0.0	0	0.0	5	0.7
여성장애언어울 림센터	5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0.7
북한이탈청소년 지역거점센터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여성회관	143	25.1	0	0.0	7	21.9	3	25.0	1	10.0	5	29.4	10	18.5	3	25.0	1	16.7	172	23.8
이주여성상담	3	0.5	0	0.0	0	0.0	0	0.0	0	0.0	1	5.9	1	1.9	0	0.0	0	0.0	5	0.7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6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1.0
아동학대방센터	7	1.2	1	7.1	1	3.1	0	0.0	2	20.0	1	5.9	0	0.0	1	8.3	1	16.7	14	1.9
아동상담소	20	3.5	1	7.1	0	0.0	0	0.0	0	0.0	0	0.0	4	7.4	0	0.0	0	0.0	25	3.5

지역아동센터	17	3.0	0	0.0	1	3.1	0	0.0	1	10.0	1	5.9	1	1.9	2	16.7	1	16.7	24	3.3
종합사회복지관	93	16.5	0	0.0	4	12.5	2	16.7	2	20.0	3	17.6	8	14.8	3	25.0	0	.0	115	15.9
정신보건센터	13	2.3	0	0.0	0	2	6.3	0.0	0	0.0	1	5.9	4	7.4	0	0.0	1	16.7	21	2.9
아동양육시설	9	1.6	0	0.0	2	6.3	0	0.0	1	10.0	1	5.9	1	1.9	0	0.0	0	0.0	14	1.9
아동보호치료시설	5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1.9	0	0.0	0	0.0	6	0.8
아동일시보호시설	4	0.7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0.7
아동직업훈련시설	8	1.4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9	1.2
아동자립지원시설	0	0.0	0	0.0	1	3.1	0	0.0	0	0.0	1	5.9	1	1.9	0	0.0	0	0.0	3	0.4
아동전용시설	21	3.7	1	7.1	1	3.1	1	8.3	1	10.0	1	5.9	2	3.7	0	0.0	0	0.0	29	3.9
아동복지관	27	4.8	0	0.0	1	3.1	3	25.0	1	10.0	2	11.8	1	1.9	1	8.3	2	33.3	38	5.3
아동종합시설	17	3.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8	2.5
공동생활가정	9	1.6	1	7.1	1	3.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	1.5
아동보호종합센터	5	0.9	0	0.0	0	0.0	0	0.0	1	10.0	0	0.0	2	3.7	0	0.0	0	0.0	8	1.1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18	3.2	0	0.0	1	3.1	2	16.7	0	0.0	0	0.0	1	1.9	0	0.0	1	16.7	23	3.2
학교폭력상담센터	11	1.9	1	7.1	1	3.1	0	0.0	0	0.0	0	0.0	2	3.7	0	0.0	0	0.0	15	2.1
wee 클레스	17	3.0	0	0.0	0	0.0	1	8.3	1	10.0	0	0.0	1	1.9	1	8.3	1	16.7	22	3.0
wee센터	17	3.0	0	0.0	1	3.1	0	0.0	0	0.0	0	0.0	2	3.7	0	0.0	0	0.0	20	2.8
wee스쿨	12	2.1	1	7.1	1	3.1	2	16.7	0	0.0	1	5.9	0	0.0	0	0.0	0	0.0	17	2.4
방과후학교	49	8.7	1	7.1	1	3.1	1	8.3	2	20.0	1	5.9	3	5.6	2	16.7	0	0.0	60	8.3
진로정보센터	91	16.1	2	14.3	5	15.6	1	8.3	2	20.0	0	0.0	12	22.2	0	0.0	1	16.7	114	15.8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40	7.1	0	0.0	3	9.4	0	0.0	1	10.0	0	0.0	1	1.9	0	0.0	1	16.7	46	6.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2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3
국립예술기관	119	21.1	4	28.6	4	12.5	5	41.7	0	0.0	4	23.5	16	29.6	0	0.0	1	16.7	153	21.2

일자리종합센터	58	10.3	1	7.1	6	18.8	2	16.7	0	0.0	0	0.0	0	0.0	7	13.0	1	8.3	0	0.0	75	10.4
하나물학교	4	0.7	0	0.0	0	0.0	2	16.7	0	0.0	0	0.0	0	0.0	1	1.9	0	0.0	0	0.0	7	1.0
초등학교특별학급 (삼죽초등학교)	16	2.8	1	7.1	0	0.0	1	8.3	0	0.0	0	0.0	0	0.0	1	1.9	0	0.0	0	0.0	19	2.6
북한이탈주민지원 역적응-센터	5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9	0	0.0	0	0.0	6	0.8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10	1.8	0	0.0	1	3.1	0	0.0	0	0.0	1	5.9	5	9.3	0	0.0	0	0.0	0	0.0	17	2.4
청소년비행예방 센터(대안교육 센터)	12	2.1	1	7.1	5	15.6	0	0.0	0	0.0	2	11.8	3	5.6	0	0.0	0	0.0	0	0.0	23	3.2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4	0.7	0	0.0	0	0.0	0	0.0	0	0.0	0	0.0	2	3.7	0	0.0	0	0.0	0	0.0	6	0.8
지역사회보건소	73	12.9	2	14.3	3	9.4	2	16.7	0	0.0	1	5.9	7	13.0	1	8.3	1	8.3	1	16.7	90	12.5
한국갱생보호공단	3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4
직업전문학교	70	12.4	0	0.0	3	9.4	1	8.3	0	0.0	3	17.6	7	13.0	0	0.0	1	0.0	1	16.7	85	11.8
고용지원센터	57	10.1	0	0.0	5	15.6	2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8	9.4
여성농업인센터	10	1.8	0	0.0	1	3.1	0	0.0	0	0.0	2	11.8	4	7.4	0	0.0	0	0.0	0	0.0	17	2.4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22	3.9	1	7.1	3	9.4	1	8.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7	3.7
식품안전정보센터	72	12.7	0	0.0	4	12.5	1	8.3	1	10.0	2	11.8	10	18.5	1	8.3	0	0.0	0	0.0	91	12.6
기타	5	0.9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0.8
계	565	78.3	14	1.9	32	4.4	12	1.7	10	1.4	17	2.4	54	7.5	12	1.7	6	0.8	0.8	722	100	

4) 초등학교 자녀가 이용한 기관

주양육자의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살펴본 결과 방과후학교(31.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28.4%), 유스호스텔(20.0%), 지역사회보건소(19.8%), 청소년야영장(19.4%), 청소년수련관(17.4%),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9.4%), 청소년문화의집(7.8%), 지역아동센터(5.4%), 종합사회복지관(4.4%), 방과후학교지원센터(4.2%), 청소년공부방(3.6%), 국립예술기관(3.2%), wee센터(2.2%), 여성회관(2.2%), 아동복지관(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0%), 건강가정지원센터(1.8%), 청소년자원봉사센터(1.8%), 아동전용시설(1.6%), 학교폭력상담센터(1.6%), 사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1.4%), 청소년문화존(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1.2%), 기타(1.2%), wee스쿨(1.0%), wee 클래스(1.0%),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0.8%), 청소년선도보호시설(0.8%), 아동보호종합센터(0.8%), 아동종합시설(0.8%), 공동생활가정(0.8%), 정신보건센터(0.8%), 성폭력상담소(0.8%), 인터넷중독상담센터(0.8%), 아동상담소(0.8%), 청소년쉼터(0.8%), 진로정보센터(0.8%), 이주여성쉼터(0.6%), 식품안전정보센터(0.6%),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0.6%), 아동일시보호시설(0.4%),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0.4%),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0.4%), 청소년지원시설(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0.4%), 청소년특화시설(0.4%),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0.4%), 청소년활동진흥센터(0.4%), 청소년교류센터(0.4%), 직업전문학교(0.4%), 여성복지상담소(0.4%), 아동양육시설(0.4%), 가정폭력상담소(0.4%), 고용지원센터(0.2%),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0.2%),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0.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0.2%), 일자리종합센터(0.2%), 하나둘학교(0.2%),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 아동보호치료시설(0.2%), 모부자복지상담소(0.2%), 한국갱생보호공단(0.2%), 성폭력피해상담소(0.2%) 순이었다.

<표 IV-15>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기관(복수응답)

구 분		빈도	%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기관 (복수응답)	사·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7	1.4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2	0.4
	청소년수련관	87	17.4
	청소년수련원	142	28.4
	청소년문화의집	39	7.8
	청소년특화시설	2	0.4
	청소년야영장	97	19.4
	유스호스텔	100	20.0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47	9.4
	건강가정지원센터	9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1.2
	성폭력상담소	4	0.8
	가정폭력상담소	2	0.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	2.0
	청소년공부방	18	3.6
	청소년문화존	7	1.4
	청소년교류센터	2	0.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9	1.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	0.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4	0.8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2	0.4
	여성복지상담소	2	0.4
	모부자복지상담소	1	0.2
	성폭력피해상담소	1	0.2
	청소년선도보호시설	4	0.8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	0.2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2	0.4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1	0.2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1	0.2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	0.4
	여성회관	11	2.2
	이주여성쉼터	3	0.6
	아동상담소	4	0.8
	지역아동센터	27	5.4
	종합사회복지관	22	4.4

정신보건센터	4	0.8
아동양육시설	2	0.4
아동보호치료시설	1	0.2
아동일시보호시설	2	0.4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8	1.6
아동복지관	11	2.2
아동종합시설	4	0.8
공동생활가정	4	0.8
아동보호종합센터	4	0.8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4	0.8
학교폭력상담센터	8	1.6
wee 클래스	5	1.0
wee센터	11	2.2
wee스쿨	5	1.0
방과후학교	159	31.8
진로정보센터	4	0.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21	4.2
국립예술기관	16	3.2
일자리종합센터	1	0.2
하나둘학교	1	0.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0.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3	0.6
지역사회보건소	99	19.8
한국갱생보호공단	1	0.2
직업전문학교	2	0.4
고용지원센터	1	0.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4	0.8
식품안전정보센터	3	0.6
기타	6	1.2
계	1089	217.8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방과후학교(33.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27.3%), 지역사회보건소(21.5%), 청소년야영장(20.2%), 청소년수련관(18.6%), 유스호스텔(18.6%),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1.6%),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청소년수련원(30.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21.7%), 청소년야영장(19.6%), 방과후학교(17.4%), 유스호스텔(16.7%),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12.3%), 지역사회보건소(12.3%), 청소년문화의집(11.6%) 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방과후학교(47.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27.2%), 유스호스텔(27.2%), 지역사회보건소(24.6%), 청소년야영장(16.7%), 청소년문화의집(13.2%), 청소년수련관(10.5%) 순이었다.

<표 IV-16>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비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거주 지 비교	시도청소년 상담지원센터	2	1.4	4	2.9	1.	0.9	7	1.4
	시군구청소년 지원센터	1	0.4	1	0.7	0	0.0	2	0.4
	청소년수련관	46	18.6	30	21.7	12	10.5	87	17.6
	청소년수련원	66	27.3	42	30.4	31	27.2	139	28.1
	청소년문화의집	8	3.3	16	11.6	15	13.2	39	7.9
	청소년특화시설	0	0.0	1	0.7	1.	0.9	2	0.4
	청소년야영장	49	20.2	27	19.6	19	16.7	95	19.2
	유스호스텔	45	18.6	23	16.7	31	27.2	99	20.0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과학관)	28	11.6	17	12.3	2	1.8	47	9.5
	건강가정지원센터	7	2.9	1	0.7	1.	0.9	9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0.8	2	1.4	2	1.8	6	1.2
	성폭력상담소	1	0.4	1	0.7	2	1.8	4	0.8
	가정폭력상담소	1	0.4	0	0.0	1	0.9	2	0.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	1.7	5	3.6	1	0.9	10	2.0
	청소년공부방	5	2.1	10	7.2	3	2.6	18	3.6
	청소년문화존	5	2.1	1	0.7	0	0.0	6	1.2
	청소년교류센터	1	0.4	0	0.0	1	0.9	2	0.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3	1.2	5	3.6	1	0.9	9	1.8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2	0.8	0	0.0	0	0.0	2	0.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	0.8	1	0.7	0	0.0	3	0.6
청소년성문화센터	4	1.7	3	2.2	1	0.9	8	1.6
청소년쉼터	0	0.0	2	1.4	2	1.8	4	0.8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	0	0.0	1	0.7	0	0.0	1	0.2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0	0.0	1	0.7	1	0.9	2	0.4
여성복지상담소	0	0.0	1	0.7	1	0.9	2	0.4
모부자복지상담소	0	0.0	1	0.7	0	0.0	1	0.2
성폭력피해상담소	1	0.4	0	0.0	0	0.0	1	0.2
청소년선도보호시설	1	0.4	2	1.4	1	0.9	4	0.8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1	0.4	0	0.0	0	0.0	1	0.2
아동성폭력전담센 터(해바라기 아동센터)	1	0.4	1	0.7	0	0.0	2	0.4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	1	0.4	0	0.0	0	0.0	1	0.2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0	0.0	0	0.0	1	0.9	1	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0	0.0	1	0.7	0	0.0	1	0.2
여성회관	3	1.2	5	3.6	3	2.6	11	2.2
이주여성쉼터	0	0.0	3	2.2	0	0.0	3	0.6
아동상담소	0	0.0	2	1.4	1	0.9	3	0.6
지역아동센터	6	2.5	11	0.8	10	8.8	27	5.5
종합사회복지관	16	6.6	4	2.9	2	1.8	22	4.5
정신보건센터	1	0.4	3	2.2	0	0.0	4	0.8
아동양육시설	1	0.4	0	0.0	1	0.9	2	0.4
아동보호치료시설	0	0.0	0	0.0	1	0.9	1	0.2
아동일시보호시설	0	0.0	2	1.4	0	0.0	2	0.4
아동자립지원시설	1	0.4	1	0.7	0	0.0	2	0.4
아동전용시설	3	1.2	4	2.9	1	0.9	8	1.6
아동복지관	7	2.9	4	2.9	0	0.0	11	2.2
아동종합시설	1	0.4	1	0.7	2	1.8	4	0.8
공동생활가정	0	0.0	3	2.2	1	0.9	4	0.8
아동보호종합센터	2	0.8	1	0.7	1	0.9	4	0.8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1	0.4	3	2.2	0	0.0	4	0.8
학교폭력상담센터	3	1.2	1	0.7	4	3.5	8	1.6
wee 클래스	1	0.4	2	1.4	2	1.8	5	1.0
wee센터	6	2.5	5	3.6	0	0.0	11	2.2
wee스쿨	2	0.8	1	0.7	2	1.8	5	1.0
방과후학교	81	33.5	24	17.4	54	47.4	159	32.2
진로정보센터	1	0.4	1	0.7	2	1.8	4	0.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9	3.7	5	3.6	7	6.1	21	4.3
국립예술기관	9	3.7	6	4.3	1	0.9	16	3.2
일자리종합센터	0	0.0	0	0.0	1	0.9	1	0.2
하나둘학교	0	0.0	0	0.0	1	0.9	1	0.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0.4	0	0.0	0	0.0	1	0.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센터)	1	0.4	1	0.7	1	0.9	3	0.6
지역사회보건소	52	21.5	17	12.3	28	24.6	97	19.6
한국갱생보호공단	0	0.0	0	0.0	1	0.9	1	0.2
직업전문학교	1	0.4	1	0.7	0	0.0	2	0.4
고용지원센터	0	0.0	0	0.0	1	0.9	1	0.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4	1.7	0	0.0	0	0.0	4	0.8
식품안전정보센터	1	0.4	1	0.7	1	0.9	3	0.6
기타	4	1.7	1	0.7	1	0.9	6	1.2
계	242	49.0	138	27.9	114	23.1	494	100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방과후학교(30.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28.3%), 청소년야영장(19.8%), 유스호스텔(19.5%), 지역사회보건소(18.3%), 청소년수련관(18.3%) 순이었다.

아버지+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청소년수련관(40.0%)이 가장 많았으며, 방과후학교(40.0%), 청소년야영장(20.0%), 지역사회보건소(20.0%), 청소년수련원(20.0%) 순이었다.

어머니+미혼자녀 가족의 경우 방과후학교(42.9%)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수련원(23.8%), 지역아동센터(19.0%), 유스호스텔(19.0%), 지역사회보건소(14.3%), 청소년수련관(14.3%) 순이었다.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경우 유스호스텔(5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50.0%), 아동전용시설(25.0%) 순이었다.

<표 IV-17> 초등학교 자녀가 이용한 기관-가족유형

구 분	부부 +미혼자녀	아버지 +미혼자녀		어머니 +미혼자녀		부부+미혼자 녀+부부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부부 +미혼자녀 +부부의 양친		부부+미혼 자녀+부모 의 한쪽 부모		4세대이상 가족		기타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		%		%		%		%		%		%		%		%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가족 유형	수도청소년상 담지원센터	7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1.4
	시군구청소년 지원센터	1	0.3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0	0.0	2	0.4
	청소년수련관	73	18.3	2	40.0	3	14.3	2	25.0	0	0.0	1	7.7	3	8.1	2	25.0	1	33.3
	청소년수련원	113	28.3	1	20.0	5	23.8	1	12.5	0	0.0	6	46.2	11	29.7	3	37.5	2	66.7
	청소년문화의집	32	8.0	0	0.0	2	9.5	0	0.0	2	50.0	0	0.0	1	2.7	1	12.5	1	33.3
	청소년특화시설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0	0.0
	청소년야영장	79	19.8	1	20.0	1	4.8	1	12.5	0	0.0	4	30.8	8	21.6	3	37.5	0	0.0
	유스호스텔	78	19.5	0	0.0	4	19.0	1	12.5	2	50.0	5	38.5	8	21.6	1	12.5	0	0.0
	청소년이용시 설(문화체육시 설, 과학관)	38	9.5	0	0.0	2	9.5	1	12.5	0	0.0	0	0.0	6	16.2	0	0.0	0	0.0
	건강가정 지원센터	6	1.5	0	0.0	2	9.5	0	0.0	0	0.0	0	0.0	1	12.5	0	0.0	0	0.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2.7	0	0.0	0	0.0
	성폭력상담소	1	0.3	0	0.0	1	4.8	0	0.0	0	0.0	0	0.0	1	2.7	1	12.5	0	0.0
	가정폭력상담소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9	2.3	0	0.0	1	4.8	0	0.0	0	0.0	0	0.0	0	0.0	0	0.0	10	2.0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방과후학교 진로정보센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국립예술기관 일자리종합센터 하나돌학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지역사회보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직업전문학교 고용지원센터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식품안전정보센터 기타	3	0.8	0	0.0	0	0.0	0	0.0	0	0.0	0	0	0	0.0	0	0	0.0	1	2.7	1	12.5	0	0.0	0.0	5	1.0	
	8	2.0	0	0.0	0	0.0	0	0.0	0	0.0	0	0	0	0.0	0	0	0.0	2	5.4	0	0.0	1	33.3	0.0	11	2.2	
	4	1.0	0	0.0	0	0.0	0	0.0	0	0.0	0	0	0	0.0	0	0	0.0	1	2.7	0	0.0	0	0.0	0.0	5	1.0	
	121	30.3	2	40.0	9	42.9	4	50.0	0	2	15.4	19	51.4	5	25.0	0	0.0	0	0.0	5	25.0	0	0.0	0.0	159	31.9	
	3	0.8	0	0.0	1	4.8	0	0.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4	0.8	
	16	4.0	0	0.0	2	9.5	0	0.0	0	0	0.0	2	5.4	0	0.0	0	0.0	2	5.4	0	0.0	0	0.0	0.0	20	4.0	
	11	2.8	0	0.0	0	0.0	1	12.5	2	1	7.7	1	2.7	0	0.0	0	0.0	1	2.7	0	0.0	0	0.0	50.0	16	3.2	
	1	0.3	0	0.0	0	0.0	0	0.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0	0	0.0	0	0.0	1	12.5	0	0.0	0	0.0	1	12.5	0	0.0	0.0	1	0.2	
	1	0.3	0	0.0	0	0.0	0	0.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1	0.2	
	2	0.5	0	0.0	0	0.0	0	0.0	0	0	0.0	0	0.0	1	12.5	0	0.0	0	0.0	1	12.5	0	0.0	0.0	3	0.6	
	73	18.3	1	20.0	3	14.3	3	37.5	0	5	38.5	11	29.7	2	25.0	0	0.0	0	29.7	2	25.0	0	0.0	0.0	98	18.7	
	0	0.0	0	0.0	0	0.0	1	12.5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1	0.2	
	1	0.3	0	0.0	0	0.0	0	0.0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5.0	2	0.4	
	1	0.3	0	0.0	0	0.0	0	0.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1	0.2	
	2	0.5	0	0.0	0	0.0	1	12.5	0	0	0.0	1	2.7	0	0.0	0	0.0	1	2.7	0	0.0	0	0.0	0.0	4	0.8	
	3	0.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6	
	4	1.0	0	0.0	0	0.0	0	0.0	0	0	0.0	1	7.7	1	2.7	0	0.0	1	7.7	1	2.7	0	0.0	0	6	1.2	
	계	399	80.1	5	1.0	21	4.2	8	1.6	4	0.8	13	2.6	37	7.4	8	1.6	3	0.6	37	7.4	8	1.6	3	0.6	498	100

5)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으로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34.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존(23.6%), 청소년수련원(23.4%), 청소년자원봉사센터(22.8%), 청소년야영장(21.4%), 청소년수련관(20.6%), 국립예술기관(20.2%), 청소년공부방(20.2%), 청소년문화의집(19.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9.0%), 방과후학교(17.8%), 청소년교류센터(16.4%), 진로정보센터(14.5%), 청소년활동진흥센터(13.4%), 청소년성문화센터(13.3%), 유스호스텔(10.7%), 아동복지관(8.6%), 인터넷중독상담센터(8.3%), 종합사회복지관(7.1%), 방과후학교지원센터(6.8%), 청소년특화시설(6.4%), 지역사회보건소(6.3%),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5.9%), 청소년쉼터(5.6%), 건강가정지원센터(5.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5.1%), 아동전용시설(4.6%), wee스쿨(4.5%),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4.2%), 아동종합시설(4.2%),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4.0%), 아동상담소(3.8%), 지역아동센터(3.4%), 아동직업훈련시설(3.3%), 식품안전정보센터(3.1%), wee 클래스(3.1%), 초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3.0%),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2.7%), 직업전문학교(2.7%), 정신보건센터(2.0%), 여성회관(1.9%), 학교폭력상담센터(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1.6%), 아동보호종합센터(1.5%), 청소년선도보호시설(1.4%), 성폭력피해상담소(1.2%), 아동자립지원시설(1.1%), 공동생활가정(1.1%), 일자리종합센터(1.1%), 고용지원센터(1.1%), wee센터(1.0%), 가정폭력상담소(0.8%), 북한이탈청소년지역거점센터(0.7%), 청소년지원시설(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0.7%),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0.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0.7%), 아동학대 예방센터(0.7%),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5%), 아동성폭력전담센터(0.5%), 성폭력상담소(0.5%), 아동보호치료시설(0.4%), 하나들학교(0.4%), 모부자복지상담소(0.4%), 여성복지상담소(0.4%),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0.7%),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0.4%), 하나원(제2하나원) (0.3%), 이주여성자활지

원센터(0.3%),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0.3%), 한국가정
법률상담소(0.3%),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0.3%), 북한이탈주민지역
적응센터(0.3%), 이주여성쉼터(0.3%), 기타(0.3%),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
관찰소(0.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0.3%), 아동양육시설(0.3%), 알코올
중독상담센터(0.2%), 한국강생보호공단(0.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0.1%), 아동일시보호시설(0.1%) 순이었다.

<표 IV-18>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구 분		빈도	%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43	5.9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31	4.2
	청소년수련관	151	20.6
	청소년수련원	171	23.4
	청소년문화의집	143	19.5
	청소년특화시설	47	6.4
	청소년야영장	157	21.4
	유스호스텔	78	10.7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253	34.6
	건강가정지원센터	40	5.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1.6
	성폭력상담소	4	0.5
	가정폭력상담소	6	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39	19.0
	청소년공부방	148	20.2
	청소년문화존	173	23.6
	청소년교류센터	120	16.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67	22.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98	13.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4	0.5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	0.3
	청소년성문화센터	97	13.3
	청소년쉼터	41	5.6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20	2.7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5	0.7
	여성복지상담소	3	0.4
	모부자복지상담소	3	0.4

성폭력피해상담소	9	1.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0.3
청소년선도보호시설	10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0.1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0.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5	0.7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	0.3
여성아동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3	0.4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3	0.4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	0.1
북한이탈청소년지역거점센터	5	0.7
여성회관	14	1.9
이주여성쉼터	2	0.3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2	0.3
아동학대 예방센터	5	0.7
아동상담소	28	3.8
지역아동센터	25	3.4
종합사회복지관	52	7.1
정신보건센터	15	2.0
알코올중독상담센터	1	0.2
아동양육시설	2	0.3
아동보호치료시설	3	0.4
아동일시보호시설	1	0.1
아동직업훈련시설	24	3.3
아동자립지원시설	8	1.1
아동전용시설	34	4.6
아동복지관	63	8.6
아동종합시설	31	4.2
공동생활가정	8	1.1
아동보호종합센터	11	1.5
교육청내 청소년상담센터	29	4.0
학교폭력상담센터	13	1.8
wee 클래스	23	3.1
wee센터	7	1.0
wee스쿨	33	4.5
방과후학교	130	17.8
진로정보센터	106	14.5
방과후학교지원센터	50	6.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4	0.5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2	0.3
국립예술기관	148	20.2

	일자리종합센터	8	1.1
	하나원(제2하나원)	2	0.33
	하나둘학교	3	0.4
	초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22	3.0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2	0.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0.3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37	5.1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2	0.3
	지역사회보건소	46	6.3
	한국更生보호공단	1	0.1
	직업전문학교	20	2.7
	고용지원센터	8	1.1
	인터넷중독상담센터	61	8.3
	식품안전정보센터	23	3.1
	기타	2	0.3
	계	3315	452.9

6)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서비스(복수응답)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아동심리상담서비스(52.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0.1%),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49.8%),아동건강검진 서비스(46.8%),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2.1%),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39.8%),가족휴가제공서비스(39.8%),진로상담서비스(39.5%),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서비스(36.4%),지역사회 체육공간 서비스(36.2%),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5.0%),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30.9%),가족관계증진서비스(30.8%),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30.7%),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30.5%),아동조기발달검사(30.3%),가족친화문화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27.2%),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27.0%),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26.8%),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26.2%),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5.8%),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25.4%),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아버지
교육 등)(24.9%),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4.7%),관광행사 기획 제공
서비스(24.3%),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23.7%),지역사회네트
워크사업(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22.9%),체육활
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2.7%),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22.2%),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1.4%),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21.3%),일반교육서비스(21.2%),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21.0%),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1.0%),학교연계서비스(21.0%),전직지
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등)(20.8%),주양육자 건강검진 서
비스(20.2%),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20.2%),문화향유기회 제
공 서비스(19.4%),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19.0%),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18.9%),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18.9%),생활지
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18.3%),경제적 생계지
원서비스(17.5%),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16.6%),관광관련 프로그램 개
발 보급 서비스(16.6%),아동양육지원(16.0%),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
(15.0%),아동가족지원기관및프로그램연계서비스(14.9%),아동인지,언어교
육(14.5%),사회성향상서비스(14.1%),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13.9%),아동의료돌봄서비스(13.8%),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
강관리(13.8%),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13.3%),주양육
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12.9%),진로인식 증진사업(12.4%),기사 및
생활기술 교육(가계관리 정부보조 신청방법 등)(12.3%),가사지원돌봄서비
스(12.3%),가정방문서비스(11.3%),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10.5%),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10.3%),건축, 집개조(10.3%),아
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9.6%),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
원서비스(9.4%),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8.6%),관광관련 기관연계 서
비스(8.6%),장애아동 지원서비스(8.5%),특수교육서비스(8.0%),장애아 가
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7.5%),주거분야 기타(7.3%),다문화가족 주양육

자 지원서비스(7.1%),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7.0%),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6.9%),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6.6%),다문화가족아동지원서비스(5.6%),단기주간보호서비스(4.5%),사례관리서비스(4.5%),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4.0%),기타 분야 기타(3.0%),복지분야 기타(구체적으로)(2.9%),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2.5%),체육분야 기타(2.0%),북한이탈아동 지원서비스(1.6%),기타(1.1%),문화관련 기타(1.0%),보건분야 기타(0.9%),관광분야 기타(0.8%),고용분야 기타(0.8%)순이었다.

<표 IV-19>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구 분		빈도	%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 (복수응답)	1) 복지분야	아동심리상담서비스	423 52.9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168 21.0
		가족관계증진서비스	246 30.8
		가사지원돌봄서비스	98 12.3
		가정방문서비스	90 11.3
		단기주간보호서비스	36 4.5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서비스	291 36.4
		아동양육지원	128 16.0
		가족휴가제공서비스	318 39.8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170 21.3
		아동가족지원기관및프로그램연계서비스	119 14.9
		다문화가족아동지원서비스	45 5.6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57 7.1
		북한이탈아동 지원서비스	13 1.6
		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20 2.5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111 13.9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75 9.4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53 6.6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	55 6.9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68 8.5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60 7.5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	140 17.5
		복지분야 기타(구체적으로)	23 2.9
		아동조기발달검사	242 30.3
		아동건강검진 서비스	374 46.8

	2) 보건분야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		202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177	22.2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110	13.8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	151	18.9
		사회성향상서비스	113	14.1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	151	18.9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82	10.3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	77	9.6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	106	13.3
		아동의료돌봄서비스	110	13.8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	56	7.0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209	26.2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103	12.9
		보건분야 기타	7	0.9
	3) 주거분야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개보수 제공 등)	203	25.4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	152	19.0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161	20.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280	35.0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146	18.3
		건축, 집개조	82	10.3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	318	39.8
	4) 고용분야	주거분야 기타	58	7.3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등)	166	20.8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	189	23.7
		진로상담서비스	316	39.5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244	30.5
		진로인식 증진사업	99	12.4
		고용분야 기타	6	0.8
	5) 문화분야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68	21.0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133	16.6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216	27.0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171	21.4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	400	50.1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206	25.8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69	8.6
		문화관련 기타	8	1.0

6) 관광분야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33	16.6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	120	15.0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194	24.3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	398	49.8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97	24.7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69	8.6
	관광분야 기타	6	0.8
7) 체육분야	지역사회 체육공간 서비스	289	36.2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	214	26.8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155	19.4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	247	30.9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81	22.7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84	10.5
	체육분야 기타	16	2.0
8) 교육분야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	336	42.1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 등)	199	24.9
	일반교육서비스	169	21.2
	특수교육서비스	64	8.0
	아동인지,언어교육	116	14.5
	기사 및 생활기술 교육 (가계관리 정부보조 신청방법 등)	98	12.3
	기타	9	1.1
9) 기타분야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	217	27.2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자족지원네트워크 구축)	183	22.9
	사례관리서비스	36	4.5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32	4.0
	학교연계서비스	168	21.0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245	30.7
	기타 분야 기타	24	3.0
계		13067	1635.4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서비스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아동심리상담서비스(54.1%)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1.5%),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비원서비스(51.2%), 단기주간보호서비스(5.8%), 다문화가족아동지원서비스(5.3%),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46.6%),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4.7%),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42.5%), 가족휴가제공서비스(39.8%), 진로상담서비스(38.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36.2%),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36.2%), 맞벌이 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34.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3.5%), 사회적 일자리 창출(31.3%), 가족관계증진서비스(31.1%),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30.8%),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30.3%),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30.1%),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29.6%),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고 서비스(29.6%), 아동조기발달검사(29.4%),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8.2%),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26.5%),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26.2%),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사업, 아버지교육 등)(26.0%),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25.7%),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25.2%),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25.0%),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24.8%),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4.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22.6%),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21.8%), 일반교육서비스(21.8%),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21.1%), 학교연계서비스(20.4%),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0.1%),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0.1%),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20.1%),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19.9%),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19.7%),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18.9%),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18.7%),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18.7%),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

(18.4%),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18.0%), 산전, 산후도우미 파견·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17.7%), 아동양육지원(16.7%),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16.0%), 가사지원돌봄서비스(16.0%),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15.8%),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15.5%),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15.3%),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연계서비스(14.8%), 아동인지·언어교육(14.6%), 아동의료돌봄서비스(13.6%),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13.6%), 진로인식 증진사업(12.4%),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12.1%),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1.9%),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 서비스(10.7%), 가정방문서비스(10.4%), 기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10.2%)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7.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비원서비스(50.3%),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8.6%), 지역사회 체육공간지원서비스(47.5%),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45.3%), 아동심리상담서비스(44.7%), 아동 조기발달검사(42.5%),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40.8%), 진로상담서비스(40.2%),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39.1%),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9.1%), 가족휴가제공서비스(36.3%),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35.2%),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34.1%), 가족관계증진서비스(33.0%), 관광행사 기획 제공 서비스(31.8%),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30.7%), 문화행사 기획 제공 서비스(29.6%),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28.5%),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27.9%), 일반교육서비스(26.8%),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26.8%),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26.8%), 학교연계서비스(26.3%), 사회성향상서비스(26.3%), 사회적 일자리 창출(25.1%),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5.1%),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5.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22.9%),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

선)(20.7%),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20.1%),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0.1%),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20.1%),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사업, 아버지교육 등)(19.6%),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19.6%),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19.0%),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18.4%),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18.4%),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17.9%),아동인자·언어교육(17.9%),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17.9%),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17.3%),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16.8%),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14.5%),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14.5%),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14.0%),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14.0%),가정방문서비스(14.0%),아동양육지원(14.0%),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13.4%),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연계서비스(13.4%),기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12.8%),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12.3%),아동의료돌봄서비스(11.2%),진로인식 증진사업(11.2%),장애아동 지원서비스(10.6%),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10.6%),건축·집개조(10.1%)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아동심리상담서비스(58.2%)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49.3%),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비원서비스(45.8%), 가족휴가제공서비스(42.8%), 진로상담서비스(41.3%),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40.3%),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38.3%), 사회적 일자리 창출(34.3%),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3.8%),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33.3%),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30.8%),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30.0%),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9.4%), 가족관계증진서비스(28.4%),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사업, 아버지교육 등)(28.4%),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27.4%),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6.9%),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26.9%),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6.9%), 지역사회 체육공간지원서비스(26.4%),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25.9%),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25.9%),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24.9%),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24.4%),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4.4%),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23.4%), 아동 치과
 관련 의료돌봄서비스(22.4%), 아동조기발달검사(21.9%), 아동신체건강지
 원서비스(21.4%),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20.9%),아
 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20.9%),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
 알선)(20.4%),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20.4%), 문
 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19.4%),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9.4%),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19.4%), 아동정신건강지원
 서비스(17.9%),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17.9%), 학교연계서비스
 (17.4%),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연계서비스(16.9%),아동양육지원
 (16.9%),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16.9%),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16.9%),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16.4%), 아동의료돌봄서비스(16.4%),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5.9%),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15.9%),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15.4%), 주거분야 기타(15.4%),
 건축·집개조(15.4%), 기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
 법 등)(15.4%),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14.9%), 일반교육서비스
 (14.4%),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13.9%),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
 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13.4%), 사회성향상서비스(13.4%),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13.4%), 진로인식 증진사업(12.9%), 전직지원서비스(구
 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12.4%),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1.9%),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1.4%),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
 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10.9%), 아동인지·언어교육(10.9%), 가정방문서비
 스(10.9%),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0.4%),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10.4%),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10.0%), 특수교육서비스
 (10.0%)순이었다.

<표 IV-20>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지역별 비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복지분야	아동심리상담 서비스	223	54.1	80	44.7	117	58.2	420	53.0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104	25.2	26	14.5	36	17.9	166	21.0
	가족관계증진 서비스	128	31.1	29	33.0	57	28.4	244	30.8
	가사지원돌봄서비스	66	16.0	12	6.7	19	9.5	97	12.2
	가정방문서비스	43	10.4	25	14.0	22	10.9	90	11.4
	단가주간보호서비스	24	5.8	4	2.2	8	4.0	36	4.5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	141	34.2	70	39.1	77	38.3	288	36.4
	아동양육지원	69	16.7	25	14.0	34	16.9	128	16.2
	가족휴가제공서비스	164	39.8	65	36.3	88	42.8	317	40.0
	가족생활관련정보 제공	81	19.7	36	20.1	52	25.9	169	21.3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연계서비스	61	14.8	24	13.4	34	16.9	119	15.0
	다문화가족아동지원 서비스	22	5.3	10	5.6	12	6.0	44	5.6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32	7.8	12	6.7	13	6.5	57	7.2
	북한이탈아동 지원서비스	9	2.2	2	1.1	2	1.0	13	1.6
	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0	2.4	4	2.2	5	2.5	19	2.4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50	12.1	33	18.4	27	13.4	110	13.9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34	8.3	16	8.9	24	11.9	74	9.3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20	4.6	16	8.9	16	8.0	52	6.6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	28	6.8	14	7.8	13	6.5	55	6.9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37	9.0	19	10.6	12	6.0	68	8.6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	31	7.5	10	5.6	19	9.5	60	7.6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	74	18.0	32	17.9	33	16.4	139	17.6
	복지분야 기타	8	1.9	1	0.6	14	7.0	23	2.9

2) 보건분야	아동조기발달검사	121	29.4	76	42.5	44	21.9	241	30.4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	192	46.6	81	45.3	99	49.3	372	47.0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	106	25.7	34	19.0	61	30.0	201	25.4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87	21.1	48	26.8	42	20.9	177	22.3
	산전, 산후도우미 파견·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73	17.7	17	9.5	19	9.5	109	13.8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	76	18.4	30	16.8	43	21.4	149	18.8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	90	21.8	21	13.4	36	17.9	150	18.9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36	8.7	17	9.5	28	13.9	81	10.2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	44	10.7	11	6.1	22	10.9	77	9.7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	65	15.8	11	6.1	27	13.4	103	13.0
	사회성향상서비스	38	9.2	47	26.3	27	13.4	112	14.1
	아동의료돌봄 서비스	56	13.6	20	11.2	33	16.4	109	13.8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	34	8.3	2	1.1	20	10.0	56	7.1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109	26.5	55	30.7	45	22.4	209	26.4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56	13.6	15	8.4	32	15.9	103	13.0
	보건분야 기타	2	0.5	0	0.0	5	2.5	7	0.9
3) 주거분야	주택관리서비스 (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	102	24.8	51	28.5	49	24.4	202	25.5
	주거지원서비스 (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	77	18.7	33	18.4	41	20.4	151	19.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93	22.6	26	14.5	39	19.4	158	19.9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138	33.5	70	39.1	68	33.8	276	34.8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61	15.5	32	17.9	50	24.9	146	18.4
	건축·집개조	33	8.0	18	10.1	31	15.4	82	10.4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175	42.5	73	40.8	67	33.3	315	39.8
	주거분야 기타	25	6.1	2	1.1	31	15.4	58	7.3
4) 고용분야	전직지원서비스 (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78	18.9	61	34.1	25	12.4	164	20.7
	고용지원서비스 (직업설계, 취업알선)	108	26.2	37	20.7	41	20.4	186	23.5
	진로상담서비스	157	38.1	72	40.2	83	41.3	312	39.4
	사회적 일자리 창출	129	31.3	45	25.1	69	34.3	243	30.7
	진로인식 증진사업	51	12.4	20	11.2	26	12.9	97	12.2
	고용분야 기타	2	0.5	1	0.6	3	1.5	6	0.8
5) 문화관련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83	20.1	45	25.1	39	19.4	167	21.1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77	18.7	25	14.0	30	14.9	132	16.7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122	29.6	53	29.6	39	19.4	214	27.0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82	19.9	35	19.6	54	26.9	171	21.6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	212	51.5	103	57.5	81	40.3	396	50.0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25	30.3	19	10.6	59	29.4	203	25.6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34	8.3	13	7.3	21	10.4	68	8.6
	문화분야 기타	3	0.7	2	1.1	3	1.5	8	1.0
6) 관광관련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66	16.0	42	25.1	21	10.4	132	16.7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	63	15.3	22	12.3	34	16.9	119	15.0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1.3	25.0	57	31.8	31	15.4	191	24.1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비원서비스	211	51.2	90	50.3	92	45.8	393	49.6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16	28.2	31	17.3	49	24.4	196	24.7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26	6.3	10	5.6	32	15.9	68	8.6
	관광분야 기타	2	0.5	0	0.0	3	1.5	5	0.6
7) 체육관련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	149	36.2	85	47.5	53	26.4	287	36.2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고 서비스	122	29.6	36	20.1	55	27.4	213	26.9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83	20.1	36	20.1	34	16.9	153	19.3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	127	30.8	63	35.2	54	26.9	244	30.8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00	24.3	25	14.0	54	26.9	179	22.6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49	11.9	10	5.6	23	11.4	82	10.4
	체육분야 기타	9	2.2	1	0.6	6	3.0	16	2.0
8) 교육분야	교육지원서비스 (교육 순회프로그램)	184	44.7	87	48.6	62	30.8	333	42.0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 비사업, 아버지교육 등)	107	26.0	35	19.6	57	28.4	199	25.1
	일반교육서비스	90	21.8	48	26.8	29	14.4	167	21.1
	특수교육서비스	35	8.5	7	3.9	20	10.0	62	7.8
	아동인지언어교육	60	14.6	32	17.9	22	10.9	114	14.4
	기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	42	10.2	23	12.8	31	15.4	96	12.1
	교육분야 기타	2	0.5	1	0.6	6	3.0	9	1.1
9) 기타분야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사랑 캠페인 등)	124	30.1	48	26.8	42	20.9	241	27.0
	지역사회네트워크사 업(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	83	20.1	50	27.9	47	23.4	180	22.7
	사례관리서비스	15	3.6	9	5.0	12	6.0	36	4.5
	지역사회 아웃리치서비스	15	3.6	12	6.7	5	2.5	32	4.0
	학교연계서비스	84	20.4	47	26.3	35	17.4	166	21.0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149	36.2	41	22.9	52	25.9	242	30.6
	기타분야 기타	6	1.5	0	0.0	18	9.0	24	3.0
	계	412	52.0	179	22.6	201	25.4	792	1000

다음으로 주양육자 자신과 자신의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를 가족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미혼자녀의 경우 아동심리상담서비스(54.7%)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2.7%), 다문화가족아동지원서비스(50.6%),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체험 지원서비스(48.9%), 아동건강검진서비스(46.0%),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2.9%), 가족휴가제공서비스(41.3%),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업(41.2%), 진로상담서비스(39.2%),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37.5%),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37.1%),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4.9%), 가족관계증진서비스(33.4%),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31.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29.7%), 아동조기발달검사(29.7%),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29.3%),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28.5%),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27.8%),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27.0%),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25.9%),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5.6%),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25.6%),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25.2%),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25.1%),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4.6%),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 등)(24.4%),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24.0%),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23.0%),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23.0%),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2.3%),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2.2%),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2.2%), 일반교육서비스(22.0%), 학교연계서비스(21.9%),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21.4%),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21.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20.3%),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0.3%),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18.8%),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18.5%),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18.5%),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17.4%),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설치·운영(16.9%),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16.6%), 문화바우처 제공 서

비스(15.9%), 아동가족지원기관및프로그램 연계서비스(15.3%),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15.0%),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14.8%), 아동양육지원(14.3%), 아동인지·언어교육(13.7%), 가사지원돌봄 서비스(13.3%), 사회성향상서비스(13.3%), 아동의료돌봄서비스(13.3%),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12.9%),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12.4%),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12.4%), 가정방문서비스(12.2%), 주양육자 치과관련의료돌봄서비스(12.2%), 진로인식 증진사업(11.7%),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0.8%),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10.6%),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10.5%), 건축·집개조(10.0%) 순이었다.

아버지+미혼자녀의 경우 아동건강검진서비스(62.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56.3%), 아동심리상담서비스(56.3%),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체험 지원서비스(50.0%), 진로상담 서비스(50.0%),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43.8%),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43.8%),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3.8%),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37.5%),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37.5%),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37.5%),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31.3%),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1.3%), 아동조기발달검사(31.3%),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31.3%),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 등)(31.3%), 가족휴가제공서비스(31.3%),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25.0%),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25.0%),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25.0%),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5.0%),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25.0%),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25.0%),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25.0%),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25.0%), 주양육자 치과관련의료돌봄서비스(25.0%), 일반교육서비스(25.0%),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25.0%), 주택관리 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25.0%),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25.0%),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25.0%),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업(25.0%),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25.0%), 한부모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25.0%),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18.8%),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18.8%),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18.8%), 가사지원돌봄서비스(18.8%),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서비스(18.8%),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18.8%),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18.8%),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18.8%),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18.8%), 아동양육지원(18.8%),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18.8%),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12.5%), 장애아동 지원서비스(12.5%),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2.5%), 가족관계증진서비스(12.5%), 다문화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12.5%),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12.5%),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12.5%),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12.5%),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12.5%), 아동의료돌봄서비스(12.5%),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12.5%), 주거분야 기타(12.5%),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12.5%), 학교연계서비스(12.5%),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12.5%) 순이었다.

어머니+미혼자녀의 경우 아동건강검진서비스(58.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50.0%),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체험 지원서비스(44.4%),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41.7%), 진로상담서비스(41.7%), 아동심리상담서비스(41.7%), 한부모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41.7%),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41.7%),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33.3%), 가족휴가제공서비스(33.3%), 주거지원 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33.3%),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33.3%),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33.3%),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30.6%),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0.6%),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30.6%), 아동양육지원(30.6%),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30.6%),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3.8%), 안전한 지역사회

회 만들기 캠페인(27.8%),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27.8%),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27.8%), 주양육자 치과관련의료돌봄서비스(27.8%),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5.0%),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25.0%),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25.0%), 아동조기발달검사(25.0%),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 등)(22.2%), 일반교육서비스(22.2%), 다문화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20.8%),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업(19.4%),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19.4%),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19.4%),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19.4%),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19.4%),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19.4%),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19.4%),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16.7%),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16.7%), 건축·집개조(16.7%),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16.7%),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16.7%),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16.7%),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16.7%),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16.7%),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16.7%),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16.7%), 아동의료돌봄서비스(16.4%), 학교연계서비스(13.9%),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13.9%), 사회성향상서비스(13.9%),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13.9%), 아동인지·언어교육(13.9%),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11.1%),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11.1%), 아동가족지원기관및프로그램 연계서비스(11.1%), 가정방문서비스(11.1%),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11.1%), 진로인식 증진사업(11.1%), 가족관계증진서비스(11.1%) 순이었다.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63.6%)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45.5%),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5.5%),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45.5%),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체험 지원서비스(45.5%),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36.4%), 진로상

담서비스(36.4%), 아동양육지원(36.4%),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36.4%),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36.4%),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36.4%), 아동건강검진서비스(36.4%), 건축·집개조(36.4%),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36.4%),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27.3%), 다문화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27.3%),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27.3%),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27.3%),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등)(27.3%),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27.3%),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업(27.3%),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27.3%), 아동심리상담서비스(27.3%), 가족휴가제공서비스(27.3%), 아동인지·언어교육(27.3%),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26.4%),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18.2%),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18.2%), 아동조기발달검사(18.2%),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18.2%), 아동의료돌봄서비스(18.2%),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18.2%),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18.2%),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18.2%), 특수교육서비스(18.2%), 한부모가족 주양육자지원서비스(18.2%),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18.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18.2%),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18.2%),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18.2%), 사회성향상서비스(18.2%),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18.2%),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18.2%),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18.2%),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18.0%) 순이었다.

<표 IV-21> 주양육자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가족유형 비교

구 분	부부 +미혼자녀		아버지 +미혼자녀		어머니 +미혼자녀		부부+미혼자 녀+부부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부부 +미혼자녀 +부부의 양친		부부+미혼자 녀+부부의 한 쪽 부모		4세대이상 가족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복지분야	아동심리 상담서비스	340	54.7	9	56.3	15	41.7	5	33.3	3	27.3	8	40.0	32	57.1	6	50.0	4	57.1	422	53.1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133	21.4	2	12.5	5	13.9	4	26.7	1	9.1	5	25.0	15	26.8	2	16.7	1	14.3	168	21.1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08	33.4	2	12.5	4	11.1	4	26.7	1	9.1	4	20.0	15	26.8	6	50.0	0.0	0.0	244	30.7
	가사지원 돌봄서비스	83	13.3	3	18.8	3	8.3	1	6.7	0	0.0	1	5.0	5	8.9	2	16.7	0	0.0	98	12.3
	가정문서서비스	76	12.2	1	6.3	4	11.1	3	20.0	0	0.0	1	5.0	1	0.8	2	16.7	1	14.3	89	11.2
	단기주거 보호서비스	30	4.8	1	6.3	0	0.0	0	0.0	0	0.0	2	10.0	2	3.6	1	8.3	0	0.0	36	4.5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	233	37.5	3	18.8	11	30.6	2	13.3	2	18.2	10	50.0	19	33.9	6	50.0	4	57.1	290	36.5
	아동양육지원 돌봄 서비스	89	14.3	3	18.8	11	30.6	4	26.7	4	36.4	5	20.0	7	12.5	5	41.7	1	14.3	128	16.1
	가족휴가 제공서비스	257	41.3	5	31.3	12	33.3	7	46.7	3	27.3	8	40.0	18	32.1	5	41.7	2	28.6	317	39.9
	가족생활 관련정보제공	133	12.4	4	25.0	6	16.7	2	13.3	2	18.2	5	25.0	13	23.2	2	16.7	2	28.6	169	21.3
	아동가족 지원기관및프 로그램	95	15.3	1	6.3	4	11.1	3	20.0	1	9.1	3	15.0	4	12.5	4	33.3	1	14.3	119	15.0
	연계서비스																				

다문화가족아 동지원서비스	35	506	1	6.3	1	2.8	3	20.0	0	0.0	2	10.0	2	3.6	1	8.3	0	0.0	45	5.7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40	6.4	2	12.5	1	208	2	13.3	3	27.3	4	20.0	4	7.1	1	8.3	0	0.0	57	7.2
북한이탈아동 지원서비스	11	1.8	0	0.0	1	2.8	1	6.7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6
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4	2.3	0	0.0	1	2.8	1	6.7	0	0.0	1	5.0	2	3.6	1	8.3	0	0.0	20	2.5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66	10.6	9	56.3	18	50.0	3	20.0	2	18.2	1	5.0	5	8.9	3	25.0	3	42.9	110	13.8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42	6.8	4	25.0	15	41.7	2	13.3	2	18.2	2	10.0	4	7.1	1	8.3	3	42.9	75	9.4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39	6.3	0	0.0	6	16.7	0	0.0	0	0.0	0	0.0	3	5.4	1	8.3	3	42.9	52	6.5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	42	6.8	1	6.3	3	3.8	0	0.0	4	36.4	2	10.0	2	3.6	1	8.3	0	0.0	55	6.9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52	8.4	2	12.5	2	5.6	2	13.3	1	9.1	3	15.0	5	8.9	0	0.0	1	14.3	68	8.6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45	7.2	4	25.0	3	8.3	2	13.3	1	9.1	2	10.0	2	3.6	1	8.3	0	0.0	60	7.5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	103	16.6	4	25.0	7	19.4	5	33.3	4	36.4	4	20.0	9	16.1	2	16.7	1	14.3	139	17.5
복지분야 기타	15	2.4	1	6.3	2	5.6	1	6.7	1	9.1	1	5.0	1	1.8	0	0.0	1	14.3	23	2.9

2) 보건분야	아동조기 발달검사	185	29.7	5	31.3	9	25.0	4	26.7	2	18.2	9	45.0	17	30.4	4	33.3	5	71.4	240	30.2
	아동건강검진 서비스	286	46.0	10	62.5	21	58.3	4	26.7	4	36.4	8	40.0	29	51.8	5	41.7	5	71.4	372	46.8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	157	25.2	7	43.8	12	33.3	3	20.0	4	36.4	3	15.0	12	21.4	2	16.7	2	28.6	202	25.4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143	23.0	4	25.0	3	8.3	5	33.3	0	0.0	1	5.0	13	23.2	5	41.7	2	28.6	176	22.1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92	14.8	1	6.3	0	0.0	1	6.7	2	18.2	2	10.0	9	16.1	2	16.7	1	14.3	110	13.8
	지원서비스																				
	아동신체건강 지원서비스	115	18.5	3	18.8	6	16.7	2	13.3	1	9.1	2	10.0	13	23.2	6	50.0	2	28.6	150	18.9
	아동정신건강 지원서비스	117	18.8	3	18.8	10	27.8	2	13.3	0	0.0	3	15.0	11	19.6	3	25.0	2	28.6	15	19.0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65	10.5	0	0.0	4	11.1	2	13.3	1	9.1	3	15.0	4	7.1	1	8.3	2	28.6	82	10.3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 지원서비스	61	9.8	1	6.3	6	16.7	1	6.7	1	9.1	1	0.5	6	10.7	0	0.0	0	0.0	77	9.7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80	12.9	3	18.8	6	16.7	4	26.7	0	0.0	1	0.5	8	14.3	2	16.7	1	14.3	105	13.2

	사회성향상서비스	83	13.3	1	6.3	5	13.9	2	13.3	2	18.2	6	30.0	7	12.5	7	58.3	0	0.0	113	14.2
	아동의료 돌봄서비스	83	13.3	2	12.5	6	16.4	3	20.0	2	18.2	3	15.0	8	14.3	3	25.0	0	0.0	110	13.8
	주양육자 의료돌봄서비스	46	7.4	2	12.5	2	5.6	2	13.3	0	0.0	0	0.0	3	5.4	0	0.0	1	14.3	56	7.0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168	27.0	3	18.8	9	25.0	5	33.3	3	27.3	5	25.0	12	21.4	1	8.3	2	28.6	208	26.2
	주양육자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76	12.2	4	25.0	10	27.8	3	20.0	0	0.0	2	10.0	6	10.7	0	0.0	1	14.3	102	12.8
	보건분야 기타	3	0.5	0	0.0	0	0.0	0	0.0	1	9.1	1	5.0	0	0.0	1	8.3	0	0.0	6	0.8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	156	25.1	4	25.0	15	41.7	2	13.3	4	36.4	4	20.0	10	17.9	6	50.0	1	14.3	202	25.4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 설정 등)	108	17.4	4	25.0	12	33.3	4	26.7	3	27.3	2	10.0	14	25.0	2	16.7	1	14.3	150	18.9
	임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126	20.3	4	25.0	11	30.6	6	40.0	2	18.2	3	15.0	6	10.7	3	25.0	0	0.0	161	20.3
	폐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217	34.9	5	31.3	11	30.6	5	33.3	5	45.5	7	35.0	19	33.9	6	50.0	3	42.9	278	35.0

3)
주거분야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105	16.9	4	25.0	5	13.9	7	46.7	2	18.2	7	35.0	11	19.6	2	16.7	2	28.6	145	18.2
	건축집개조	63	10.0	1	6.3	6	16.7	1	6.7	4	36.4	2	10.0	2	3.6	6	25.0	0	0.0	82	10.3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업	256	41.2	4	25.0	7	19.4	3	20.0	3	27.3	7	35.0	28	50.0	8	66.7	1	14.3	317	39.9
	주거분야 기타	43	6.9	2	12.5	2	5.6	1	6.7	1	9.1	1	0.5	8	14.3	0	0.0	0	0.0	58	7.3
4) 고용분야	전략지원서비스(구안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131	21.1	2	12.5	7	19.4	2	13.3	2	18.2	4	20.0	11	19.6	4	33.3	2	28.6	165	20.8
	고용지원서비 스(직업설계 취업알선)	149	24.0	2	12.5	7	19.4	4	26.7	1	9.1	3	15.0	19	33.9	1	8.3	2	28.6	188	23.6
	진로상담서비스	244	39.2	8	50.0	15	41.7	7	46.7	4	36.4	10	50.0	21	37.5	5	41.7	1	14.3	315	39.6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185	29.7	6	37.5	15	41.7	4	26.7	2	18.2	6	30.0	16	28.6	5	41.7	3	42.9	242	30.4
	전문인식 증진사업	73	11.7	1	6.3	4	11.1	2	13.3	1	9.1	5	25.0	8	14.3	2	16.7	1	14.3	91	12.2
	고용분야 기타	5	0.8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0	0.0	0	0.0	6	0.8
5) 문화분야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38	22.2	4	25.0	2	5.6	3	20.0	1	9.1	4	20.0	12	21.4	2	16.7	2	28.6	168	21.1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99	15.9	1	6.3	7	19.4	2	13.3	2	18.2	3	15.0	13	23.2	1	8.3	4	57.1	132	16.6

	문화행사 기획 제공 서비스	177	28.5	2	12.5	12	33.3	2	13.3	0	0.0	7	35.0	11	19.6	3	25.0	2	28.6	216	27.2
	문화향유기획 제공 서비스	138	22.2	2	12.5	3	8.3	3	20.0	1	9.1	4	20.0	13	23.2	5	41.7	1	14.3	170	21.4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	328	52.7	4	25.0	11	30.6	6	40.0	7	63.6	8	40.0	25	44.6	7	58.3	4	57.1	400	50.3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53	24.6	6	37.5	9	25.0	4	26.7	4	36.4	8	40.0	15	26.8	4	33.3	1	14.3	204	25.7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52	8.4	0	0.0	1	2.8	3	20.0	0	0.0	1	5.0	8	14.3	1	8.3	2	28.6	68	8.6
	문화분야 기타	7	1.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0	0.0	0	0.0	8	1.0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15	18.5	4	25.0	1	2.8	4	26.7	0	0.0	1	5.0	4	7.1	2	16.7	1	14.3	132	16.6
	관광마우처 제공 서비스	93	15.0	3	18.8	3	8.3	2	13.3	2	18.2	2	10.0	11	19.6	0	0.0	3	42.9	119	15.0
	관광행사 기획 제공 서비스	159	25.6	2	12.5	7	19.4	2	13.3	1	9.1	8	40.0	10	17.9	3	25.0	1	14.3	193	24.3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체험 지원서비스	304	48.9	8	50.0	16	44.4	9	60.0	5	45.5	13	65.0	32	57.1	7	58.3	4	57.1	398	50.1
6) 관광분야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59	25.6	5	31.3	4	11.1	2	13.3	3	27.3	4	20.0	15	26.8	3	25.0	1	14.3	196	24.7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56	9.0	2	12.5	1	2.8	1	6.7	0	0.0	2	10.0	4	7.1	3	25.0	0	0.0	69	8.7

	관광분야 기타	2	0.3	0	0.0	1	2.8	0	0.0	0	0.0	2	0.3	0	0.0	1	2.8	0	0.0	6	0.8
7) 체육분야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	231	37.1	5	31.3	10	27.8	4	26.7	3	27.3	231	37.1	5	31.3	10	27.8	4	26.7	288	36.2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	161	25.9	7	43.8	12	33.3	3	20.0	3	27.3	161	25.9	7	43.8	12	33.3	3	20.0	212	26.7
	문화체육기회 제공 서비스	126	20.3	3	18.8	6	16.7	3	20.0	2	18.2	126	20.3	3	18.8	6	16.7	3	20.0	155	19.5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	195	31.4	3	18.8	7	19.4	7	46.7	3	27.3	195	31.4	3	18.8	7	19.4	7	46.7	246	30.9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39	22.3	3	18.8	4	11.1	3	20.0	1	9.1	139	22.3	3	18.8	4	11.1	3	20.0	180	22.6
8) 교육분야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67	10.8	1	6.3	3	8.3	2	13.3	2	18.2	67	10.8	1	6.3	3	8.3	2	13.3	83	10.4
	체육 분야 기타	11	1.8	0	0.0	0	0.0	0	0.0	0	0.0	11	1.8	0	0.0	0	0.0	0	0.0	16	2.0
	교육지원서비스 (교육, 순회프로그램)	267	42.9	7	43.8	9	25.0	4	26.7	5	45.5	267	42.9	7	43.8	9	25.0	4	26.7	335	42.1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 등)	152	24.4	5	31.3	8	22.2	1	6.7	1	9.1	152	24.4	5	31.3	8	22.2	1	6.7	198	24.9
	일반교육서비스	137	22.0	4	25.0	8	22.2	3	20.0	1	9.1	137	22.0	4	25.0	8	22.2	3	20.0	169	21.3
	특수교육서비스	44	7.1	0	0.0	2	5.6	5	33.3	2	18.2	2	10.0	74	7.1	3	25.0	1	14.3	63	7.9

	아동인자언어 교육	85	13.7	1	6.3	5	13.9	6	40.0	3	27.3	4	20.0	5	8.9	4	33.3	1	14.3	114	14.3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기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	77	12.4	2	12.5	6	16.7	1	6.7	2	18.2	3	15.0	5	8.9	0	0.0	1	14.3	97	12.2
	교육분야 기타	5	0.8	0	0.0	0	0.0	0	0.0	1	9.1	1	5.0	1	1.8	0	0.0	1	14.3	9	1.1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	173	27.8	4	25.0	6	16.7	6	40.0	5	45.5	7	35.0	13	23.2	0	0.0	1	14.3	215	27.0
9) 기타분야	지역사회 네트워킹사업	143	23.0	4	25.0	6	16.7	3	20.0	2	18.0	3	15.0	14	25.0	3	25.0	3	28.6	180	22.6
	사태관리서비스	23	3.7	1	6.3	2	5.6	0	0.0	1	9.1	3	15.0	5	8.9	0	0.0	1	14.3	36	4.5
	지역사회 이웃관리서비스	23	3.7	0	0.0	1	2.8	2	13.3	0	0.0	1	5.0	1	1.8	3	25.0	1	14.3	32	4.0
	학교연계서비스	136	21.9	2	12.5	5	13.9	4	26.7	1	9.1	2	25.0	8	14.3	3	25.0	4	57.1	168	21.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182	29.3	6	37.5	10	27.8	4	26.7	4	26.4	8	4.0	24	42.9	5	41.7	1	14.3	244	30.7
	기타분야 기타	19	3.1	0	0.0	2	5.6	0	0.0	0	0.0	0	0.0	2	3.6	0	0.0	0	0.0	23	2.9
계		622	78.2	16	2.0	36	4.5	15	1.9	11	1.4	20	2.5	56	7.0	12	1.5	7	0.9	795	1000

7)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생활만족도는 91.5%, 직장생활만족도는 80.0%, 취미·여가·문화생활만족도는 59.7%,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83.6%가 만족(약간 만족,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취미·여가·문화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2> 주양육자의 생활만족도

구 분		빈도	%
가족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1.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60	7.5
	약간 만족한다	366	45.9
	매우 만족한다	364	45.6
	계	798	100.0
직장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1.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94	18.6
	약간 만족한다	269	53.3
	매우 만족한다	135	26.7
	계	505	100.0
취미,여가, 문화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5	8.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55	32.0
	약간 만족한다	357	44.8
	매우 만족한다	119	14.9
	계	796	100.0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	1.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18	14.9
	약간 만족한다	469	59.4
	매우 만족한다	191	24.2
	계	790	100.0

8) 지역사회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할 점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역사회기관 및 서비스 이용비용 부담
-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부족: 가정 돌봄이, 맞벌이 여성 교육프로그램 확충,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다양화필요 (7)
- ☐ 체험학습기회의 부족
- ☐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 일선기관·시설 직원 불친절(8)
- ☐ 문화생활 프로그램과 공간 부족 및 비용 부담: 다양한 가족(조손가족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부족(8)
- ☐ 아동·가족 체육활동 기회 및 공간의 부족(2)
- ☐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관광 바우처 서비스 보조의 부족
- ☐ 기관과 기관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문화관련 정보제공이 약하다.
- ☐ 지원서비스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음.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부탁.
- ☐ 기관홍보 부족으로 인한 정보 부족(27)
- ☐ 지역사회기관 시설·환경의 미비: 도서관, 화장실 등의 청소상태 불량
- ☐ 공부, 성적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다양한 활동에 제한(2)
- ☐ 지역사회 아동·가족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병원의 낮은 서비스 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선생님 자질 부족, 사설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부족(7)
- ☐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부족
- ☐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지속성, 안정성, 장기성 부족(5)
- ☐ 여가활동과 학교활동의 연계체계 미흡

- ☐ 진로상담 서비스의 부족(2)
- ☐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 공간, 지역사회기관 부족: 공원, 놀이터, 보육시설의 부족과 열악성, 대기시간의 장기화(4)
- ☐ 체육시설의 부족
-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점심식사가 제시간에 이루어 지지 않는 점
- ☐ 종합정보관(도서관)이용시 도서대출 및 열람이 직원(관계)퇴근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한 점. 해당 기관이 개관되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도서대여 및 열람이 가능한 체계로 변경 요망.
-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식생활 개선
- ☐ 모자가족상담소 방문시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점. 사적인 상담은 별도 상담실 필요.
- ☐ 모자가족 상담시 생부의 재산사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부당함.
- ☐ 아동 개개인의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틀에 맞춘 프로그램.
- ☐ 학부모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시간이 학부모가 참여하기 어려운 때에 자주 배치됨.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평일 낮 시간에만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2)
- ☐ 프로그램 내용 부족(2)
- ☐ 체계성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방과후 프로그램
- ☐ 아동을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기관이나 시설, 지역사회 부족.
- ☐ 서비스지원기관의 위치, 교통편 등 이용용이성 미비: 수련관이 외곽지에 있어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점, 집에서 먼 곳에 시설·기관이 위치한 점, 아동자녀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모의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점 등(4)
- ☐ 농어촌 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부족: 도시 위주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농촌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등(2)

- ☐ 아동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어른 입장에서 관리하는 학교규율: 다양한 아동·가족 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음.
- ☐ 무료 이용서비스의 부족(2)
- ☐ 실제 기관 이용도 제고
- ☐ 자원봉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 ☐ 지역사회 안전도 미비: 아동을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마련 필요
- ☐ 취약한 아동·가족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족: 수급자 가족, 한부모 가족, 정신장애아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충(4)
- ☐ 기관에 쉴 수 있는 공간 부족
- ☐ 중소도시 아동·가족 체험학습 기회 부족
- ☐ 중소도시 진로체험 기회 부족
- ☐ 지역사회지원시설 자원 부족: 보건소 예방접종 수량 부족 등
- ☐ 여가시간의 부족: 아동자녀가 있는 부모의 여가시간 부족 등
- ☐ 프로그램 다양성 미비: 심리치료, 스피치학원, 지역도서관 운영 등 다양성 확보 필요(3)
- ☐ 시설 수준의 미비
-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제한: 지역아동센터 등의 이용조건이 제한되어 원하는 아동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 ☐ 학교폭력, 성폭력 단속 미비
- ☐ 지역사회시설의 가시성 확보 미비: 지역 도서관이 간판이 없어서 찾기 힘든 점 등
- ☐ 다자녀 가족 또는 대가족에 대한 지원, 고려 부족
- ☐ 아동·가족 지원시설 주변 환경 미비: 차가 많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

9)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주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주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기재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 ☐ 평상시 지켜야할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유해물질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2)
- ☐ 지역사회에서 도서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
- ☐ 아동·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행사 및 체험활동·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장소 확충(13)
- ☐ 아동·가족 신체건강 지원서비스(2)
- ☐ 청소년 수련원의 활성화
-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갈 수 있는 곳, 쉼터,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 마련(5)
- ☐ 많은 홍보 부탁
- ☐ 자녀들과의 대화법이나 가족 상담 등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확충
- ☐ 총 한 달에 한번이라도 꾸준히 진행되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 마련
- ☐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시급. 특히 종일 돌봄 정책이 시급(5)
- ☐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는 아동·가족지원기관을 설립해서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함
- ☐ 기초 수급자들에게 사교육비 지원
- ☐ 프로그램의 다양화
-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 기초생활자나 장애인, 혼자 지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지원

-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 발굴·보급
- ☐ 실질적 생활 도움을 위한 물품할인 및 정보에 관한 서비스
- ☐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사회민을 위한 대처와 방안을 모색
- ☐ 스쿨버스 운행을 낙후된 지역까지 확대
- ☐ 쉽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2)
- ☐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상담, 활동 등 프로그램 강화(2)
- ☐ 지역 공공서비스 기관의 1회 이상 지역사회 모든 가정 방문 의무화 희망
- ☐ 농어촌 아동·가족을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도서관끼리 네트워크 확충으로 어디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어디에라도 반납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홍보를 위해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
- ☐ 저소득 모자가정위해서 주택 저리 임대. 아동의 학원비나 교육비 감면혜택
- ☐ 별도의 방과 후 시설 건립 등을 통해 방과후 지원 강화.
- ☐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공원 및 문화공간 확충
- ☐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정책 확대 필요
- ☐ 학교폭력상담 관련 프로그램 필요
- ☐ 연령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 공연 등 프로그램 지원(3)
- ☐ 방학을 이용한 여행프로그램 확대
- ☐ 학교근처에 청소년 자기개발시설 마련.
- ☐ 아이들과 함께 할 만한 실내·외 체육공간 및 문화공간(실내체육센터, 등산코스 등) 및 시설 마련(3)
- ☐ 저렴한 금액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활성화해야 함
- ☐ 기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 무료로 제공(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정보제공 어플 개발)

- ☐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보습득 방법 및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
- ☐ 문화센터, 체육시설 개설
- ☐ 보다 많은 아이들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홍보
- ☐ 학습지원을 위해 동네마다 방과후 공부방 확충(2)
- ☐ 학교마다 아동 전문 상담요원배치
- ☐ 복지서비스 확대
- ☐ 문화체험과 다양한 문화연계
- ☐ 공공장소에 청소년 흡연 단속, 청소년 선도사업
- ☐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 밖에 나가기 힘든 사람을 위한 방문 책대여 서비스
- ☐ 감시카메라 설치, 보호시설 설치
-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학시기 아동 식사 지원 프로그램 마련
- ☐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의 장 필요
- ☐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제공 필요
- ☐ 아동·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 지원

V. 우리나라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및 사업 실태
4. 기관종사자의 욕구 및 개선을 위한 바램

V. 우리나라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분석

1. 조사개요

아동·가족 지원기관의 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 및 사업실태, 욕구와 개선을 위한 바램을 듣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기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고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1차 선정된 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회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wee 클래스,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이다.

기관별 전문가 조사의 상세설문표집(안)은 다음 표와 같다. 조사대상기관수는 총 250개소이며 지역별 안배를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안배하였다.

대상전문가는 아동(초등학생 연령 기준) 혹은 아동의 주양육자(주로 어머니, 할머니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업무경력 3년 이상의 실무책임자급 전문가이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조사지역은 전국(제주도 포함 16개 시도)이며 대부분의 기관은 16개 시도별로 각 1개 기관씩 무작위 추출하였다. 단, 아동인구비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율을 대략 4: 4: 2로 추출⁶⁹⁾하였다. 즉, 16개소를 표집할 경우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각 1곳씩 총 7 곳)), 중소도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각 1곳씩 총 6곳)), 농어촌, 도서벽지(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읍·면·리” 각 1곳씩 총 3곳))를 표집하였다. 가능한 농어촌 지역이 특정 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하였으며 기관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없는 경우 중소도시에 대신 할당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단, 조사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와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설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아 제외하였다. 당초 예상 배포 설문지는 250부였으나 직업전문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배포 설문지수는 228부이며 이 중 128부가 수거되어 부실기재분 2부를 제외하고 총 126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회수율은 55.3%이다.

69) 전체 초등학생수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42.13%이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41.44%, 읍·면·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16.43%. 단순화하여 대략 4:4:2로 표집함.

<표 V-1> 전문가 조사 상세설문표집(안)

구분	기관명	모집단(전국 ⁷⁰⁾)	기관전문가 조사대상자수	지역별 안배 ⁷¹⁾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1	청소년수련관	156	16	7	6	3
2	청소년 문화의 집	219	16	7	6	3
3	건강가정지원센터	135	16	7	6	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1	16	7	6	3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4	16	7	6	3
6	청소년공부방	300	16	7	6	3
7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10	10 (전수)	5	5	0
8	여성회관	126	16	7	6	3
9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45	16	7	6	3
10	지역아동센터	350	16	7	6	3
11	종합사회복지관	420	16	7	6	3
12	아동양육시설 ⁷²⁾	280	16	7	6	3
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74	16	7	6	3
14	wee 클래스	140	16	7	6	3
15	직업전문학교	21	16	7	6	3
16	고용안정센터	50	16	7	6	3
계		2,801	250	7	6	3

주된 조사내용은 기관 사업현황, 기관간 연계 및 협력 현황,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수행사업현황 파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 국가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연계·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다.

70) 주소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대략 한정된 것으로 전국 기관의 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71) 전수조사를 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한 시·도에 1 곳씩 무작위선정하도록 하였다.

72) 아동복지시설 주소록 중 아동양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2> 기관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소속기관	청소년수련관	14	11.1
	청소년 문화의 집	11	8.7
	건강가정지원센터	7	5.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	8.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	7.1
	청소년공부방	4	3.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10	7.9
	여성회관	5	4.0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8	6.3
	지역아동센터	11	8.7
	종합사회복지관	8	6.3
	아동양육시설	12	9.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9	7.1
	wee 클래스	7	5.6
	계	126	100.0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57	46.3
	중소도시	45	36.6
	농어촌(읍면리)	21	17.1
	계	123	100.0

전체 기관수는 총 126개소이며 청소년수련관이 11.1%, 청소년 문화의 집 8.7%, 건강가정지원센터 5.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1%, 청소년공부방 3.2%,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7.9%, 여성회관 4.0%,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6.3%, 지역아동센터 8.7%, 종합사회복지관 6.3%, 아동양육시설 9.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7.1%, wee 클래스 5.6% 이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대도시가 46.3%, 중소도시 36.6%, 농어촌 17.1%를 차지한다.

조사대상자인 기관전문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24.6%, 여자 75.4%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5.5%, 30대 38.3%, 40대 27%, 50대 8.9%를 차지한다. 아동가족 업무수행 총기간을 살펴보면 3년미만이 15.7%, 3년이상 6년미만이 46%, 6년이상 12년미만이 14%, 12년이상 15년미만이 2.7%, 15년이상 18년미만이 4.4%를 차지하였다.

<표 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성별	남자	30	24.6
	여자	92	75.4
	계	122	100.0
연령대	20대	31	25.5
	30대	47	38.3
	40대	33	27
	50대	11	8.9
	계	122	100.0
아동가족 업무수행 총기간	3년미만	18	15.7
	3년이상 6년미만	53	46
	6년이상 9년미만	20	17.4
	9년이상 12년미만	16	14
	12년이상 15년미만	3	2.7
	15년이상 18년미만	5	4.4
	계	115	100.0

3.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및 사업 실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및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기관이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

아동·가족관련기관이 현재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들이 업무를 위해 가장 많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41.3%)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40.5%)으로 대상 기관의 40% 이상이 연계, 협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34.7%),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33.9%), 아동보호전문기관(29.8%), 건강가정지원센터(28.9%), 청소년문화의 집(2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4.8%), 청소년수련관(24.0%), 정신보건센터(24.0%), 청소년자원봉사센터(24.0%), 청소년성문화센터(23.1%), 성폭력상담소(23.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22.8%), 청소년문화존(19.8%), 고용지원센터(17.4%),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 업무를 위한 연계, 협력 기관(복수 응답)

구 분	빈도(%)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49(40.5)
시군구청청소년지원센터	41(33.9)
청소년수련관	29(24.0)
청소년수련원	18(14.9)
청소년문화의집	31(25.6)
청소년특화시설	3(2.5)
청소년야영장	3(2.5)
유스호스텔	3(2.5)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과학관)	17(14.0)
건강가정지원센터	35(28.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20.7)
성폭력상담소	28(23.1)
가정폭력상담소	25(2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24.8)
청소년공부방	12(9.9)
청소년문화존	24(19.8)
청소년교류센터	2(1.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9(24.0)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7(22.3)
아동성폭력전담센터	10(8.3)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2(9.9)
청소년성문화센터	28(23.1)
청소년쉼터	13(10.7)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3(2.5)
청소년지원시설(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8(6.6)
여성복지상담소	1(0.8)
모부자복지상담소	2(1.7)
성폭력피해상담소	13(10.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7(5.8)
청소년선도보호시설	3(2.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5.8)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3(2.5)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5(4.1)
여성아동폭력피해자ONE-STOP센터	10(8.3)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6(5.0)

구 분(계속)	빈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0.8)
여성회관	7(5.8)
이주여성쉼터(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	11(9.1)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2(1.7)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36(29.8)
아동상담소	6(5.0)
지역아동센터	50(41.3)
종합사회복지관	42(34.7)
정신보건센터	29(24.0)
알코올중독상담센터	9(7.4)
아동양육시설	12(9.9)
아동보호치료시설	6(5.0)
아동일시보호시설	11(9.1)
아동직업훈련시설	2(1.7)
아동자립지원시설	3(2.5)
아동복지관	2(1.7)
아동종합시설	1(0.8)
공동생활가정	11(9.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19(15.7)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5(4.1)
학교폭력상담센터	3(2.5)
wee 클래스	6(5.0)
wee센터	30(24.8)
wee스쿨	5(4.1)
방과후학교	12(9.9)
진로정보센터	4(3.3)
방과후학교지원센터	9(7.4)
국립예술기관	1(0.8)
일자리종합센터	3(2.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2.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4(3.3)
소년원,소년교도소,보호관찰소	11(9.1)
지역사회보건소	31(25.6)
직업전문학교	6(5.0)
고용지원센터	21(17.4)
인터넷중독상담센터	5(4.1)
식품안전정보센터	1(0.8)
기타	6(5.0)
계	988(816.5)

2)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없는 경우가 27.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5.4%, 주민생활통합지원서비스(OK 주민서비스) 19.7%, 기타 14.8%, 위민넷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2.5% 순이었다. 전체 %가 122.1%로 2개이상의 통합관리체계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5>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 분		빈도(%)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	없음	34(27.9)
	주민생활통합지원서비스(OK주민서비스)	24(19.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31(25.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34(27.9)
	위민넷	5(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3(2.5)
	기타	18(14.8)
	계	149(122.1)

기타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으로는 NEIS(교무업무시스템) 1건, 방과후아카데미 인트라넷 2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6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1건, 여성, 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전산화시스템 3건, 해바라기 원스톱통합관리전산시스템 1건 등이 있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 행정부처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관련 국가 행정부처(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7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54.8%, 교육과학기술부 21.0%, 기타 12.1%, 고용노동부 8.1%, 행정안전부 7.3%, 문화체육관광부 4.0%, 법무부 3.2% 순이었다.

<표 V-6>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행정부처

구 분		빈도(%)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가 행정부처	없음	2(1.6)
	여성가족부	89(71.8)
	보건복지부	68(54.8)
	교육과학기술부	26(21.0)
	문화체육관광부	5(4.0)
	국토해양부	1(0.8)
	행정안전부	9(7.3)
	법무부	4(3.2)
	고용노동부	10(8.1)
	기획재정부	2(1.6)
	기타	15(12.1)
	계	231(186.3)

기타의견으로는 관련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를 지적하였다.

4)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18.0%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중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9.5%를 차지하였다. ‘지역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원한다’는 경우는 7.4%이고 ‘지역사회에 모든 일반가정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경우는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V-7> 아동과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구 분		빈도(%)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22(18.0)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42(34.4)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중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36(29.5)
	지역사회에 모든 일반가정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4(3.3)
	지역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9(7.4)
	기타	11(9.0)
	계	124(101.6)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 무료 임대, 생활지도와 교육을 통한 서비스 지원, 설문지와 1:1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 서비스 지원 방향 마련,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을 방문하여 사례조사, 내방상담을 통해 지원, 함께 생활하면서 상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 등이 있었다.

5)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업은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으로 29.4%가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25.2%),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23.5%, 아동급식지원(21.8%),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21.0%),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사업(21.0%),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19.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16.8%),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16.0%), 디딤씨앗통장(CDA)사업(15.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13.4%), 아이돌보지 사업(11.8%),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사업(11.8%), 기타(11.8%), 드림스타트 사업(10.9%) 사업 등이다.

기타 의견으로 나온 사업으로는 좋은 학교 자원학교 사업,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거한 시행사업(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사업(이주여성 교육. 상담 .문화제공 등),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문화적 감성 및 여가선용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놀토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상담 지원 관련 사업, 취약계층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모자가정 수강료 면제 사업 등이 있다.

<표 V-8>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2010년 중앙행정부처 사업

구 분	빈도(%)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28(23.5)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5(4.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레드존’ 운영사업	2(1.7)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35(29.4)
거리아웃리치 활동 사업	5(4.2)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4(3.4)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8(6.7)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7(5.9)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확대사업	2(1.7)
청소년한부모 양육 조기자립 지원	1(0.8)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10(8.4)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	3(2.5)
아이돌보미 사업	14(11.8)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2(1.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19(16.0)
청소년유해매체감시단	5(4.2)
청소년증 사업	3(2.5)
드림스타트사업	13(10.9)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9(7.6)
가정입양지원	3(2.5)
가정위탁보호	4(3.4)
소년·소녀가정지원	11(9.2)
디딤씨앗 통장(CDA) 사업	18(15.1)
아동급식지원	26(21.8)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2(1.7)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내 CCTV 설치사업	5(4.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20(16.8)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30(25.2)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5(4.2)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5(4.2)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23(19.3)
긴급학비지원체제 구축·운영	3(2.5)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25(21.0)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사업	25(21.0)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	14(11.8)
초·중·고교 예술강사 파견 지원	3(2.5)

구 분	빈도(%)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	6(5.0)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확	6(5.0)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 조성	3(2.5)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5(4.2)
주택바우처사업	1(0.8)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사업	1(0.8)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1.7)
희망 근로 사업	9(7.6)
희망마을프로젝트	2(1.7)
농어촌 집수리 사업	2(1.7)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7(5.9)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4(3.4)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16(13.4)
해피스쿨 법질서체험 학교 사업	1(0.8)
빈일자리 기업 DB구축	1(0.8)
실업급여 등을 통한 실직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3(2.5)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2(1.7)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활성화	1(0.8)
농산촌 저소득층 난방연료 무상 제공 및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	2(1.7)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6(5.0)
나눔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6(5.0)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6(5.0)
스쿨존캠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도	7(5.9)
희망키움통장제	1(0.8)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1(0.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3(2.5)
초등학교 주변의 저가식품 집중관리	1(0.8)
어린이 위해가능 영양성분 등 섭취 저감화	7(5.9)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2(1.7)
기타	14(11.8)
계	525(441.2)

6) 아동·가족(주양육자) 지원서비스 실시여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교육, 기타 영역의 아동·가족(주양육자)지원서비스 실시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분야의 경우, 아동심리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증진서비스 44.4%,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43.7%, 아동양육지원 31.7%,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31.0%,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27.0%, 가정방문 서비스 25.4%, 다문화가족아동 지원서비스 24.6%, 맞벌이 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 23.0%,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19.8% 경제적 생계지원 서비스 15.1%,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5.1%, 가사지원돌봄서비스 12.7% 순이었다.

둘째 보건 분야의 경우,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36.5%)와 사회성 지원 서비스(36.5%)가 가장 많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 32.5%,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29.4%,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 29.4%,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28.6%,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 25.4%, 아동의료돌봄서비스 25.4%, 아동초기발달검사 21.4%,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15.7% 순이었다.

셋째 주거 분야의 경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14.3%로 가장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 13.5%,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12.7% 순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9> 아동·가족(주양육자) 지원서비스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시여부(%)	
		예	아니오
1) 복지	(1) 아동심리상담서비스	61.9	38.1
	(2)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43.7	56.3
	(3) 가족관계증진서비스	44.4	55.6
	(4) 가사지원돌봄서비스	12.7	87.3
	(5) 가정방문서비스(home visit)	25.4	74.6
	(6) 단기주간보호서비스	7.9	92.1
	(7)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	23.0	77.0
	(8) 아동양육지원	31.7	68.3
	(9) 가족휴가(respite)제공서비스	11.1	88.9
	(10)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19.0	81.0
	(11)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31.0	69.0
	(12) 다문화가족아동 지원서비스	24.6	75.4
	(13)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5.1	84.9
	(14) 북한이탈 아동 지원서비스	2.4	97.6
	(15) 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4.0	96.0
	(16)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27.0	73.0
	(17)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4.3	85.7
	(18)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22.2	77.8
	(19)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	13.5	86.5
	(20)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19.8	80.2
	(21)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1.9	88.1
	(22)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	15.1	84.9
	(23) 기타	4.0	96.0
2) 보건	(24) 아동초기발달검사	21.4	78.6
	(25) 아동건강검진 서비스	32.5	67.5
	(26)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	11.1	88.9
	(27)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28.6	71.4
	(28) 산전산후도우미파견, 건강관리지원서비스	7.1	92.9
	(29)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	25.4	74.6
	(30)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	36.5	63.5
	(31)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29.4	70.6
	(32)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	11.1	88.9
	(33)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	29.4	70.6
	(33) 사회성 지원서비스	36.5	63.5
	(34) 아동의료돌봄서비스	25.4	74.6
	(35)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	7.1	92.9
	(36)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15.9	84.1
	(37)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4.0	96.0
	(38) 기타	0.8	99.2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시 빈도(%)	
		예	아니오
3) 주거	(39) 주택관리서비스	6.3	93.7
	(40) 주거지원서비스	6.3	93.7
	(4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3.2	96.8
	(4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12.7	87.3
	(43)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설치·운영	14.3	85.7
	(44) 건축·집개조	4.8	95.2
	(45)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	13.5	86.5
	(46) 기타	0.0	100.0
4) 고용	(47) 전직지원서비스	11.9	88.1
	(48) 고용지원서비스	18.3	81.7
	(49) 진로상담서비스	36.5	63.5
	(5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13.5	86.5
	(51) 진로인식 증진사업	22.2	77.8
	(52) 기타	0.8	99.2
5) 문화	(53)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41.3	58.7
	(54)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33.3	66.7
	(55)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59.5	40.5
	(56)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49.2	50.8
	(57)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	50.0	50.0
	(58)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43.7	56.3
	(59)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36.5	63.5
	(60) 기타	3.2	96.8
6) 관광	(61)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0.3	89.7
	(62)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	1.6	98.4
	(63)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15.9	84.1
	(64)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	17.5	82.5
	(65)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6.7	83.3
	(66)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13.5	86.5
	(67) 기타	2.4	97.6
7) 체육	(68)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	24.6	75.4
	(69)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	9.5	90.5
	(70)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24.6	75.4
	(71)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	17.5	82.5
	(72)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23.0	77.0
	(73)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20.6	79.4
	(74) 기타	1.6	98.4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시빈도(%)	
		예	아니오
8) 교육	(75) 교육지원서비스	35.7	64.3
	(76)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16.7	83.3
	(77) 일반교육서비스	42.1	57.9
	(78) 특수교육서비스	13.5	86.5
	(79) 아동인지·언어교육	34.1	65.9
	(80)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	11.9	88.1
	(81) 기타	4.0	96.0
9) 기타	(82)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22.2	77.8
	(83)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27.0	73.0
	(84) 사례관리서비스	41.3	58.7
	(85)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14.3	85.7
	(86) 학교연계서비스	36.5	63.5
	(87)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 등 인식개선서비스	27.0	73.0
	(88) 기타	1.6	98.4

넷째 고용 분야의 경우, 진로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인식 증진사업 22.2%, 고용지원서비스 18.3%, 전직지원서비스 11.9%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경험 50.0%, 문화향유 기회 제공 서비스 49.2%,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43.7%,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41.3%,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36.5%,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33.3%로 비교적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여섯째 관광 분야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 17.5%,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16.7%,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15.9%,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13.5%,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10.3%순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곱째 체육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24.6%)와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2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20.6%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교육 분야의 경우, 일반교육서비스가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교육지원서비스 35.7%, 아동인지·언어교육 34.1%,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16.7%, 특수교육서비스 13.5%,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 11.9%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기타 분야의 경우 사례관리서비스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연계서비스 36.5%,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27.0%.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 등 인식개선서비스 27.0%,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22.2% 순으로 나타났다.

4. 기관종사자의 욕구 및 개선을 위한 바램

다음으로 기관종사자의 욕구 및 개선을 위한 바램을 기관별 혹은 기관 공통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기관별)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부모·아동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 현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움. 직원4명, 청소년동반자 4명으로 아동과 청소년, 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10회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사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에 반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례수는 전체 대상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음. 정직원 및 청소년 동반자와 같은 파트타임 상담원

을 고용해서라도 인력이 보장되었으면 함. 가정방문상담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 비슷한 서비스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 지원 아동을 모집하는 데 경쟁을 하게 되는 듯 함.
- ☐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료서비스 제공 기관이 중복됨. 반면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의지가 부족함.
- ☐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기관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 ☐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계망 형성이 어려움. 저소득층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 많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정기적인 부모 교육을 실시해도 참여도가 낮아 효과를 보기 어려움. 중복되는 복잡한 서류들로 인해 청소년들의 생활관리 부분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음(서류로 인해 청소년들 관리가 우선이 될 수 없음).
- ☐ 저소득 또는 한부모, 조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부모 상담이 어려움.
- ☐ 예산 및 인력문제가 어려움.

(2)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이 보급되었으면 하는데 쉽지 않음.
- ☐ 모집을 위해 충분한 홍보(학교, 지역기관, 아파트 등)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다소 어려움(2). 기존에 참여를 한 청소년 또는 가족들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 ☐ 예산부족으로 인해 아동가족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서비스 수혜자들의 기대 욕구가 증가하여 이에 부합하여야 함.
- ☐ 홍보부족, 예산부족, 인력부족
- ☐ 해당 아동의 부모님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부모의 무관심(2).
- ☐ 자녀에 대한 관심에 있어 가정별 편차가 심함.
-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도와주려 할 때 연계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연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음.
- ☐ 학부모상담 및 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학부모의 참여도가 낮고, 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 또한 낮음. 또한 학부모님과 관계형성이 어려우며인식을 변화시키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 ☐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이 필요함.

(3)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자녀출산 생활자금과 균등한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건강한 가정 예방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움.
- ☐ 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홍보부족으로 대상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음(2).
- ☐ 이주 여성과 실제 서비스 제공자인 지도사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각 기관별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남발하고 있음,
- ☐ 인원 분산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
- ☐ 가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빈약함.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아동양육지도사의 보수가 적으며 유류비 지원이 없어서 1:1 개별 방문 교육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연계기관의 부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특수 아동에 대한 전문적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도심지역으로 연계하거나 멀리 찾아가서 교육이나 치료·지원을 받아야 했음. 시골 농촌 지역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에도 많은 편의 시설 및 교육 치료 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경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부모의 동기부여 결여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자녀에게 차별화시키려 하지 않음.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 중요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 유사기관 및 타기관과의 사업 중복, 이중지원(봉사단체) 문제.
- 한국말이 서투른 이민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
- 대상의 한정과 예산부족
- 업무수행시 목표 집단을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어려움.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점.
- 다문화센터에서는 아동중심보다는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중심 프로그램이 중심으로 되었으나 앞으로 2011년에는 아동 중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추진할 계획이어서 아동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함.
- 업무수행시 목표집단을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어려움.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점.

- 비슷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중복되어 있어 지원을 받는 아이들만 계속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잘살거나 또는 못살 거나로 나누어져인지 중간 계층을 위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주 양육자(부모)가 아동(자녀)의 학교 성적에만 관심이 높고, 올바른 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 학교와의 연계(폐쇄적인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 사례 개입에 강제력이 없음.
- 중소도시의 경우 아동복지가 생겨날시 지역의 유지(돈 있고 여유 있는 분)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었음. 신고제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경력과 자격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어디든지 건립할수 있었던 부분임. 그런데 같은 의미의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국가에서는 지자체마다 드림스타트, 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권유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되고 있으나 같은 아이들을 두고 싸우게 되는 형상 밖에 되지 않게 되어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점이있음.
- 지역연계, 부모인식개선. 소외아동들의 부모교육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움.

- 업무연계와 협조체제 등 지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음.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확실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럴 기회도 없음.
- 해마다 달라지는 예산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불가능함.
-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주양육자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점(저희 기관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무엇인지 몰라 학부 모들이 처음에 이곳을 보내기 꺼려하기도 함.)
- 매해 바뀌는 평가기준과 체계가 사업의 일관성을 구축하는데 방해되기도 함. 또한 이 때문에 일선 지도자의 심적 부담감이 가중되기도 함.
- 저임금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자주 이직을 함.
- 아동가족의 인식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로 양육하는 가정이 많음. 생계에 대한 최우선적인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생계문제가 첫째, 자녀양육문제는 뒷 전인 것이 현실임.
- 서비스지원을 위해 정확한 가정환경 파악의 필요의 경우 당사자들의 가정환경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아동·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하여 서비스 지원을 거부당하는 상황.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 할 때. 지역 내 연계가 필요한 기관이 부재하거나 한계가 있을 때에 어려움.

(6)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과 지역 내에서 아동을 위한 시설 부족
- ☐ 재정 상황의 문제→한정된 지원으로 여러 대상자 관리 및 지원이 힘들.
- ☐ 시골지역이라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어 서비스 대상을 찾기 어려움.

(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가정 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많음. 양육자 부재의 경우가 많아 아동을 위한 상담이나 고민을 함께 할 의사소통 통로가 없음.
- ☐ 지원가정 양육자의 의식 부재. 유사한 자원을 하는 서비스 기관이 지역사회에 다수 존재하며 서비스 지원 받는 아동, 가족도 혼란스럽고 서비스 지원하는 기관도 곤란할 때가 있음.
- ☐ 실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주 대상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지원 사업에 동참할 심리적 시간

적 여력이나 동기가 부족함. 이는 형식적인 지원 사업. 즉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을 낳고 있음. 즉 지원사업 대의 사정이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한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음. 지원대상자들의 실정과 상황.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현장실무자 간담회의를 통하여 현 체제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연합하여 정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센터 위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장 실무자들이 문제점과 보안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

□ 성폭력 피해라는 외상을 경험한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여타 다른 서비스 지원과 달리 개인과 가족이 예민해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성폭력 범죄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니며 사고이며 피해자로서 보호 받고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는 이들을 선입견을 갖고 대해서는 안됨. 아동기에 겪게 되는 수많은 외상 중에 아주 심한 충격적인 경험이므로 개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요구되는 사안임.

□ 기관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함. 대상이 성폭력 피해의 아동이고 가족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의 아동, 가족 전반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음(예: 부모 양육기술, 경제적 인 것 등). 그렇기 때문에 아동 가족 전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차상위 계층, 병리적인 가족들은 연결과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움. 차상위 계층들. 그리고 병리적인 가족들은 연

결이 어려움. 그리고 각 기관들에서 사업들은 많이 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해서인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음.

☐ 아동이나 부모 치료를 하도록 권유해도 시간적 부족, 인력 지원의 부족으로 직접치료 및 연계가 어려움.

☐ 적절한 서비스 기관이 지역사회 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8)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관공서에서는 예산 지원, 센터에서는 서비스 실시로 이원화되어 있음. 예산 부족/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겹돌고 있는 측면이 있음,

(9)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문제 아동을 돕다 보면 문제 가족과 매번 부딪히는데 이런 문제 가족을 돕는데 많은 한계를 느낌. 문제 가족을 상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마땅한 전문기관이 없어(대부분 전문기관은 유료라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음) 아동 지도의 효과가 없이 늘 원점에서 머무는 느낌이고 인맥도 많이 부족한 상태임.

- ☐ 아동의보호자가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것.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부족한 점이 어려움.
- ☐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부족(아동학대관련 지식 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 ☐ 아동·가족의 업무는 가족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개입 및 해결이 많이 어려움.
-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강제성 결여(부모교육, 학대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거부), 대상자들의 개입 거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지도 저하가 문제가 됨.
- ☐ 지역 내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형성되지 않음.
- ☐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예: 아동학대 가해자 등)
- ☐ 서비스 지원 대상 발생 시 서비스 연계협력 및 협조가 어려움.

(10)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어르신 말씀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며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우.

- ☐ 급식지원 필요
- ☐ 아동이 필요한 것이 경제적 도움이다 싶으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와 연계 시켜 줄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등록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시 바로 연결하여 해결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음.
- ☐ 아동과 가족을 한자리 모이기 위해 연결하고 연락하는 것이 어려움.
- ☐ 부족한 경비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 ☐ 아동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 보호자들의 무관심
- ☐ 경제적인 어려움(자원의 부족, 인력·시간·금전적 어려움). 아동가족과의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 ☐ 아동에 대한 낙인
- ☐ 아이들이 각각 원하는 서비스가 너무 다를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강사 초빙이 힘들 때.
- ☐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힘들.

(11)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아동관련시설이 매우 부족함. 대부분의 아동기관이 청주에 있으나 거리, 시간상으로 문제가 되어 이용에 한계가 있음.
- ☐ 예산부족, 일반 저소득층에 있는 사각지대 계층의 서비스 지원 제한 등
- ☐ 인력이 부족하고 차량운행에 별도의 인력 필요
- ☐ 다양한 욕구를 위한 지원은 많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어려움. 충분함의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의 긍정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등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움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과 가족이 많은데 이들의 욕구와 지원 등을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
- ☐ 저소득가정의 경우 양육자의 생업 문제로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부족함. 경제적 자원만 원하는 경우가 많음.
- ☐ 경제적 문제(예산)

(12)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함.
- ☐ 안전하지 못한 가정과 아동에 대한 동시 개입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움.
- ☐ 유아에 비해 영아 시설 부족
-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연고자와 아동이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 및 단체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소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심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초기 적응 서비스를 실행하기 어려움.
- ☐ 위탁 부모의 관심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후 관리가 어려움.
- ☐ 지원서비스기관 부재.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 등
- ☐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 심리·인성프로그램 서비스가 열악함.
- ☐ 시대가 변화되면서 아이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다가가기 힘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임. 거칠고 예의 없고 즉흥적인 청소년기 아동들을 케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전문 자원봉사자 부족함.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이 도시에 비해 취약함.

☐ 피해아동에 인권관련 문제와 더불어 나쁜 일을 하고난 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될 때가 있음.

(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공무원 자체의 까다로운 마인드와 행정절차

☐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 감독기관의 공무원조차 관련 행정에 대해 무지, 재정적 소외 등.

☐ 지원이 필요할 때 마다 지원하는 곳을 찾고 프로포절을 따내는 것이 가장 어려움.

☐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 빈곤으로 인해 저희 그룹홈에 오는 데, 가정에서는 기초수급이나 지원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모르게 도와주길 바라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예산 지원 부족이 가장 어려움.

☐ 재정적인 후원 및 후원자 조성 사업이 힘들.

(14) wee 클래스

wee 클래스에서 아동·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실질적인 도움을 학교 청소년들에게 주기 위해 부적응학생을 위한 기관이 마련되어야 함. 부모교육 역시 자발적 참여가 부족함. 부적응 학생의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
-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지원이 어려움).
- ☐ 학생들의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로부터의 협조가 어려움. 따라서 이와 같은 행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1:1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 아동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스스로 해결할테니 내버려 두라는 등의 비협조적 자세로 대응하는 경우 아동을 더 이상 배려해줄 수 없는 점.
- ☐ 성적위주의 학교분위기와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프로그램 및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학교에 재직하는 전문상담교사인 경우에도 학부모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음. 본인이 재직하는 학교는 시이기는 하나 사실상 농어촌 학교 형태인데 학부모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바쁘고 여러 문제들이 얹혀 학생들 지도에 효과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족의 연계가 시급한데 이를 적극 지원할 연계기관이 부족하며 그 절차의 복잡함도 아쉬움. 근본적으로 시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문제인 것 같음. 또한 학생들을 기관 상담 사업을 진행하려해도 예산이 너무 작고 서류가 복잡하고 힘든 면이 있음.

- 협조가 불가피함에도 초기기관에서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아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의 협조조차 잘 되고 있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음. 지역 연계된 봉사 미흡으로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있음.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기관별)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아동가족 서비스의 종류가 무척 많음. 각 기관끼리 중복되는 서비스, 실시 한다고 해서 연락해 보면 실제로는 예산, 인력 등의 이유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또 어느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매뉴얼이든 책자든 정리되어서 각 기관에 배부되었으면 함. 농어촌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도 대도시가 아닌란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허브기관을 두되 중소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위기관이 있었으면 함.
- 복지부, 교과부, 여가부, 문체부 등 비슷한 프로그램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몇

몇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반아동에게도 원하면 참여할 수(더 많은 할인 등)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비슷한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해서 확보한 인원수로 실적을 만드는데 급급해하는 것 같음.

□ 지역사회중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 교실 등 중복지원으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람.

□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주무부처가 다르고 예산 규모 등이 달라 효율적이지 못함. 부처 한 곳에서 기준을 잡고 통합 운영 될 때 효과적일 것 같음.

□ 사업의 잦은 예산 변동과 단기적인 사업계획으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부서와 프로그램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안정화가 더딤. 사업 진행의 중복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중복수혜를 받음. 이중서비스의 혜택. 예산의 낭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함.

□ 지역 시·군별로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가 너무 상이함. 지자체 정책이 다르니 그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이동하게 됨.

□ 체계적인 예산지원, 전문적인 인력확보

(2)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시설 환경 개선비, 체험비 등 확보(예산지원)
- ☐ 홍보가 시급한 상황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단위협의회를 통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함(정기적인 모임, 회의 필수).
- ☐ 일정 규모 이상의 탁아 시설 설치의 법제화
-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의 필요성(예: 수련활동인증, 포상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상담부분에 많이 치중된 것으로 보여짐. 아동과 그 외 가족이 속한 가정이 더욱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임(예: 학습지원, 먹거리 지원 등)
-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이 약함.
- ☐ 아동가족지원 정부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2010년 국가 사업 중에서 알고 있는 사업이 별로 없으며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공공시설에 발송하는 것이 필요함.
- ☐ 좁은 지역에 비슷한 대상자를 둔 서비스가 많음.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 학교 방과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이 지원되다 보니 중복수혜자도 간혹 발생하며 프로그램도 비슷하여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움. 관계 부처간 통합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넓은 의미의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겠음.

(3)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센터가 소속된 정부 부처의 잦은 이동.
- ☐ 다양한 기간이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한 중심 센터에서 원스탑으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겠음.
- ☐ 도시권과 농어촌의 구분을 두지 않는 데에서 오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함.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는 다양한 서비스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문제 발생시 대처능력이 뛰어나지만, 농촌지역에는 연계기관 및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우리지역에는 가족 관련 복지 기관이나 상담소가 없어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나 관련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지 못하고 담당 지도사가 해결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음.
- ☐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육비 지원 필요+현재 저소득층만 영유아 보육비 지원 중

- 자녀의 심리치료와 학습인지 발달교육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대두되어 센터 뿐 아니라 관내 교육기관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 교육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임.
- 국제결혼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함.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가정파탄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달체계의 애매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재로 인해 사업이 획일화, 통제화되는 단점이 있음.
- 지역사회중심이라서 지역에 특징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대부분 본인에 교육보다는 자녀만 교육시켜주면 된다고 표현하는데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에 대한 기준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판단됨. 대한민국은 정말 서류상으로 어려워야 어려운 가정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가정으로 보지 않음.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제의 법제화
- 같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너무 팽배하여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은 복지병에 걸려 있고 그 사업을 담당

하는 실무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인원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실임. 과연 아동·청소년들이 인원에만 맞춰져 있는 활동이 실질적인 것인지 의문임. 정말 사업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서류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자들은 일이 아닌 아이들의 인원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힘들.

- ☐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가정별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함.
- ☐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 ☐ 저임금, 불합리한 대우 등 잦은 이직으로 한 사업에 대해 오래 고민하여 실현해 낼 인력이 적음→실무자들의 처우개선 필요.
- ☐ 각 지역의 강사관리망, 프로그램관리망이 하나의 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는 사이트 운영·보급(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점이 많음)
- ☐ 방과후 교육이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함. 다양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 이혼 가정의 급증으로 한부모 가정지원 확대가 필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경우 대다수 항목이 실효성이 낮음. 우선 순위에서도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들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임. 복지자금대여 조건의 완화 필요, 보호대상-지원대상 아동연령 문제 등.

-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과 상담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또한 아동·가족분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기관증설,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함.

(6)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소년보호 및 일탈청소년 지원사업→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종류가 너무 많아 숙지하고 알려 주는데 어려움. 통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본다고 봄

(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요보호 가정. 위험군의 가정을 항상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실함.
- 지역사회 연대 캠페인이나 사업전반이 일회적이고 큰 효과 없이 일시적으로만 하고 끝나는 경향이 있음. 연대 사업이 이벤트 사업처럼 되 버리는 경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고민의 흔적들이 결과물로 보여져야 한다고 봄.

- 서로 비슷한 기능과 역할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통합하고,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원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 더 많은 센터의 운영으로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아동기에 겪게 되는(특히13세미만에서 16세미만 아동) 외상경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동청소년치료센터와 같은 아동의 복지를 증대시키고 어려움(신체적, 정신적)을 겪은 아동에게 국가가 적절한 비용(혹은무료)으로 치료해주는 소아정신보건센터가 건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임. 또한 범죄성이 강한 아동의 학대(성학대, 신체학대, 유기,방임)을 장기간당하거나 가족 내에서 장기간 학대를 받는 아동을 분리하여 국가가 일정기간 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법적인 효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동의 친권은 부모(보호자)에게 있으나 아동이 심한 정도로 방치 되거나 범죄에 노출 되어 있는 수준이라면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은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현대 사회에 가정은 무너지고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에 자녀들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게함으로서 그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아동·청소년관할부서거나 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그 지원 연령대는 중복되어 있음.
- 각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통합된 체계나 지시 부족.

- ☐ 아동안전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형식적이거나 캠페인성 사업이 많고, 사업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8)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정부정책이 무엇인가의 정보가 너무 없음.
-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확대 요망(수급자 아동들이 이용하는 센터에 평가 제도를 도입해 경쟁하게 하고 내용보다는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 복지사 등의 재정비 필요. 기관(센터, 시설)에 인력 집중배치.

(9)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전문 인력의 확보와 운영비, 인건비 현실화가 시급.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회 복지사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 주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여러 사회복지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서비스가 중복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

☐ 가족 구성원 중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이 심각한 경우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경우로 확대될 수 있으나 인권 문제와 대립되거나 보호자의 동의 문제로 인해 강제성이 결여되기도 함. 이에 아동이나 가족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이러한 특수문제(알코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음(제도적 보완).

☐ 대상자 선별의 신중성. 이중적 지원금지등

☐ 시·도별 예산 천차 만별.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이드라인 마련 .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입소시 수급자 책정 어려움이 발생함.

☐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임금수준도 맞추어 주길. 사회복지 재정을 민간재원으로 더 넓혀가는 노력도 필요함.

☐ 급식지원

-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이 수급자 아동일 경우 점수도 높고 급식비로 청구하여 하루 한 끼 식사도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아동일 경우 센터 이용도 안 되며 학원에 갈 돈도 없어 집에 방치되어 있음. 이러한 중간 아동 가정들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지역아동센터는 보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이 이용하고 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음.
-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중복되는 서비스(예: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야 함. 정해진 아이들을 두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만 같아 너무 답답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형식적인 것이 많고 법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람.
- 운영비 개선과 다양한 방면의 지원
- 차상위, 수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위기 가족, 실질적 빈곤, 서비스 필요 대상에게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 했으면 함.
- 타 기관에서의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한 센터에서 일정한 재원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안정된 정책이 필요함.

(11)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아동·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대상의 선정범위→ 수급이나 차상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반 세대인 사각지대 계층으로 긴급지원 범위 확대.
-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홍보하지 않아 사업들이 개별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움.
- 정부정책 사업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복지단체나 기관에 배분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함.
-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구축, 보육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다문화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12)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미혼모 지원제도 확충,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제도 확충, 입양 홍보.
- 내방 조사를 통한 욕구사정(assessment)으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꾸준한 사후관리로 자립도 향상 기여.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는 지역의 사회 환경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아동의 인권보호가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호의 강조는 우리 아동들이 간혹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는 빌미로 활용되기도 함. 때때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주양육자의 당연한 권리나 의무가 무시되기도 함. 주양육자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함. 어쩌면 지나친 아동인권보호가 우리 아이들을 더욱 기고만장으로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함.

□ 청소년 관련 체험, 특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안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 마다 단기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문제성이 있음.

(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시설과 서비스정책의 연계와 홍보가 절실함.

□ 예를 들어 같은 아동 그룹홈 인데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군인 경우 시에 비해 각종 지원이 너무나도 열악하며 지역사회 연계가 너무나도 어려움. 동급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재정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함(도 아래에 시와 군은 동급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많은 부분에서 시와는 달리 지원 열외상태임.)

☐ 종사자 2인 지원에서 3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생활하며 양육아동 또한 연령층이 다양하여 2인 종사자의 손길은 한계가 있음.

☐ 아동 및 가족의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14) wee 클래스

wee 클래스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행정. 실제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연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겉 훑기식으로 끝나고 있음. 사실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도 안된 상태임.

☐ 정신보건 부분의 지원사업이 늘었으면 좋겠음(예: 치료비 지원).

☐ 각 구청별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지원. 복지. 문화 등의 지원을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의 복지사가 직접 계획하여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협조자가 되었으면 좋겠음.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고려해주는 정책이었으면 함.

☐ 아동 및 가족지원 각 사업처간 교류가 없어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고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 형식적 실적 위주가 아닌 질적인 개선이 필요(서류절차 등 간소화)

☐ 아동에 비해 가족지원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아동·가족 모두에게 한 가족으로 환경적인 지원과 심리적인 지원이 구체적,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3)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기관별)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CYS 예산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등이 가능한 항목이 있음.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려고 하면 제한사항이 많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현 정신과 진료 1 회의 비용이 거의 10만원임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장기적 진료가 필요한데 3회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그 외 치과치료, 학원비 지원도 현실에 맞지 않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단위 캠프 및 교육 지원

☐ 청소년 및 학부모교육 서비스(불안정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의 꾸준한 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과 필수교육 지원 서비스(어린이 한글교육 등).

☐ 장학금 및 생활정착비.

(2)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의 물품(즉 필요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

☐ 상담센터가 아니라 상담사 1인 채용하고 싶으나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함.

☐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야간 케어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부족함.

☐ 문화와 관광에 관한 서비스 필요.

☐ 인터넷 위기채팅상담 사업, 소외 계층 찾아가는 문화 예능 프로그램

☐ 가족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서 사실상 학부모 교육 및 캠프, 간담회를 자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아이돌보미

(3)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취약 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
- ☐ 직장을 다니는 주 양육자의 경우 주말 또는 평일 늦게 교육을 받을 원하지만 임금 등의 문제로 지원이 되기 쉽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 아동, 주 양육자 문화 예술 지원
- ☐ 주양육자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등이 필요함.

(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가족 상담 서비스 및 법률에 관한 서비스.
- ☐ 사례관리, 찾아가는 아동·주양육자 상담 사업.
- ☐ 자녀의 언어 미술 심리치료와 문화생활 프로그램. 현재는 캠프 형식이나 타 외부기관의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이 확보되어 자녀의 학습, 이중언어, 미술치료, 심리상담, 문화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체험, 사례관리(인적, 물적 자원 부족)

☐ 다문화자녀, 자녀학습지도.

☐ 농촌지역이라서 문화 또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도시보다 적기에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함.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물론 그교육적인 도움은 반강제적으로라도 듣게 해야 하는 부분임.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거의 유일한 꿈이기에 자녀들에게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수준 높은 교육지원이 필요함.

☐ 가정에서 방치된 사각지대 초등학생이 있는데 정부정책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계를 느낌(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등).

☐ 건강지원(건강검진, 구강검진, 신체발육체크, 영양상태 체크 등 지역보건소에서 보급 시행하는 것도 많지도 않고 잘 협조를 하지도 않음

- ☐ 각종 심리 검사(성격검사, 인성검사, 진로측정 등)
- ☐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비싼 장비를 구입해야한다거나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스포츠(인라인, 테니스 등)
- ☐ 저명한 인사의 특강
- ☐ 장기적인 인성프로그램
- ☐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 지원 서비스가 예산 때문에 매우 어려움. 고가의 상담 금액과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상담 및 치료, 청소년 상담 침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 ☐ 청소년의 경우 방과후 서비스(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2까지 지원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3의 경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예산확보의 부담을 안고 있음).

(6)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한부모일 경우 아동 저녁 급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저녁 급식 지원도 필요하다고 봄(예: 엄마가 암이라 암 치료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의 저녁이 어려움).

(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이용권 확보. 자원 봉사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이동을 시도해 보았으나 지속적인 이동권 확보가 안되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 ☐ 아동과 주양육자 대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 ☐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그룹홈)
- ☐ 기초 생계비지원. 교통비. 식비지원 등
- ☐ 성폭력 피해자 가족 중 친부나 양부가 가해자인 경우 남은 피해자 가족의 생계 및 심리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 성폭력 피해로 센터를 찾아 오는 아동과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대체로 힘든 사람이 많은 경향이 있음. 현재로서 치료비를 복권기금으로 여성부와 시가 부담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부모의 경우도 심한 충격으로 인해 지원이 시급한 사례도 있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함.
- ☐ 경제적 지원→예산이없음

- ☐ 아동전문서비스기관이기때문에 주로 아동전문가 중심으로 인력구성이 되어 있어 주양육자의 집중치료 문제가 있는 경우 인력부족으로 개입이 어려움이 있음
- ☐ 『법적인문제』 이혼 소송(주로 피해 장소인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소송시)에 관한 도움

(8)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아동 방과후 교육확대
- ☐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부모대상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의무화(유치원 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목의 일환으로 년4회 이상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함)
- ☐ 환경개선사업. 문화, 관광시설 견학 제공

(9)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아동, 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매번 느끼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단 2명의 인력이 정해진 업무처리와 30명이 넘는 아

동 돌보기에 벽찬 상황이고 2명 직원의 월급이 사회복지사 중에서 제일 열악하여 최저생계비수준인데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운영비를 현실화해주지 못하고 있음.

- ☐ 주거환경개선, 병원치료비 지원(수술비, 비급여 검사비 등).
- ☐ 심리 정서적 지원에 수반되는 치료적 서비스(심리치료 및 병원 치료에) 동반되는 예산 지원(양육자의 알코올, 정신질환 문제가 발생될 때 치료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 주양육자 알콜치료
- ☐ 심리치료 가족치료, 부모교육, 성교육 등 대상자는 많으나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제한적 실시되고 있음.
- ☐ 경제적 지원비(건강, 의료, 생계비 등)
- ☐ 의료·건강·생계비 지원
- ☐ 주양육자 의료서비스

(10)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아이 돌보미 무료지원이 필요함. 한 부모 가정에 자녀가 세 명인데 아버지의 늦은 귀가로 고2, 중2는 늦고 초2는 혼자서 한 두시간은 있게 됨.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급식지원

☐ 지역 사회에 많은 기관들이 더 있어 정신·심리적인 문제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비밀 보장이 되는 상담센터와 치료기관이 위험에서 보호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연계 되는 기관목록이 가정에 전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례관리

☐ 생활개선의 도움

☐ 학습지와 도서 등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가족여행 등).

☐ 심리치료/예방 서비스(해체된 가족 세우기)

☐ 상담치료서비스

☐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너무 미비하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음.

(11)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한부모 가정 아동, 조손가정아동 학비지원.
- ☐ 주양육자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아동심리발달 프로그램
- ☐ 특기 적성을 가진 아이들의 교육(예: 체육, 음악 등)
- ☐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 부모 교육(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이 어려움), 재취업의 기회제공
- ☐ 야간아동보호 서비스
- ☐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사업

(12)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방과 후 학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했으면 함.
- ☐ 치료 서비스, 주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삶을 개선.
- ☐ 심리 검사 및 치료.
- ☐ 정기적인 가족 연계 캠프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 의료혜택. 수급자들도 적용 안 되는 것이 많음.

☐ 시설 입소 아동들에 대한 심리 검사 및 기타 서비스.

☐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의 퇴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을 시켜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 아무런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우리 주양육자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상태라고 봄.

☐ 아동과 주양육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행. 테마 체험프로그램 개발

☐ 아동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서비스(예산과 시간차이로 힘이 들고 하지 못하고 있음).

(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교육비(예체능및 학습학원지원)

☐ 전문치료서비스. 예를 들어 상담이나 사례관리의 후속조치로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 정서치료를 전부 자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심지어 지역에 유관기관 조차 없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함. 관련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해주던지 아니면 유관기관 연계가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의 특징이나 행동 발달 등의 특성 등을 알아야 하고 꼭 필요한데 알려고 조차 하지 않으려 들고 아이의 문제점이 아이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부모교육을 통해 바뀌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아동의 교육에 관한 아동 학습, 학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또래 아동들에 비해서 아동들 학습이 많이 뒤쳐져서 학습에 대한 욕구 및 열의가 없는 게 안타까움.
- 종사자 2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주 양육자 전세주택 마련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위한 문화관광 서비스가 부재하다고 봄. 그리고 진학하는 아동들을 위한 교복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봄. 연장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개인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음.

(14) wee 클래스

wee 클래스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손가정인 경우 밥할수 있는 사람이 없음. 다른 지원 보다는 양육, 훈육 방법을 교육시키고 쌀이 없어 밥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주양육자에 대한 부모 교육

☐ 학비, 교통비, 용돈 지원 사업

☐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고 싶은 아동과 가족들이 있음.
고가의 비용이라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아동 청소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학교내 상담서비스" 인 듯함.
학생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많아지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1:1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시급하고 특히 초등교육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봄. 기관 연계상담은 한계가
있다고 봄.

4)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기관별)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
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각 기관 안내를 보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
상이 청소년이면 저희 기관으로 거의 다 연계가 됨. 한부모지원, 건
강가정, 정신보건, wee클래스 등 상담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사례 관리의 개념일 뿐, 저희 기관으로 상담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각 기관에서 연계를 하지 않고 바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있는 상담원들이 배치되었으면 함.

-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실이 시간당 비용(5천원 정도)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 비용 부담을 갖게 되면, 상담을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음. 청소년상담서비스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편하게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원으로 비용 없이 무료화 했으면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 양육자 홍보 안내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운영기반에도 국가차원에서의 수혜자 정보제공 필요.
- 지역현장에서는 아동·가족·청소년 등 서비스 대상자 지원에 대한 지원 업무는 거의 비슷한 실정임. 그러나 중앙부처에서의 전달 체계가 달라 업무운영 지침상 연계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중앙부처의 평가라는 중요성 속에서 지역 연계보다는 개별 기관의 실적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향도 있음.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의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강화는 더욱이 절실하다고 사료됨.
-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타 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지만 소극적임. 정보(대상자/지역자원)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 지역 네트워크 구축망 마련.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및 아동·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 정보부족. 구 자체 행사나 동 자체 행사에 대한 일정표를 집으로 받아보고 이용할 수 있길 바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결체계가 구축 안 되어 있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2)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는 기관을 설립해 지역내에 있는 기관 연계에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부족 및 사업의 독점화가 어려움. 특화 사업 공표를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 및 벤치마킹의 기회 제공이 필요함.

☐ 기관연계·협력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되려면 전문적인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지원이 필요.

☐ 연계하고자 할 때 절차나 방법에 있어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한계 상황을 느낄 때가 있음. 원활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함.

☐ 연계기관이 추구하는 사업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협조. 지역별 시설 간의 그룹을 조성하여 아동·가족 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부족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아동·가족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큼. 레크리에이션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음.

(3)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센터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
-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이 많이 분포. 기관들을 주관하는 주 부처가 달라 같은 업무를 중복하여 실시함.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연계 협력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음. 자율적이므로 기관 사정 등으로 인해 연계협력이 어려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실적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꺼려지는 상황. 유사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합해주었으면 함(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중복 되는 서비스가 있을 때 연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다문화 관련되는 사업을 일원화 하였으면 좋겠음. 각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다문화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센터에 인원 및 사업 연계하여 진행되는 서비스는 피했으면 좋겠음.
- ☐ 정보 공유 및 예산의 자유로운 집행 등.
- ☐ 센터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이슈가 되어 여러 기관에서 문의 및 지원 요청이 들어와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지만 일회적 행사로 그치거나 무리한 요구 및 방향성을 가지거나 내용의 전달이 숙지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연계에 있어 비교적 큰 어려움은 따르지 않음.
- ☐ 아동가족시설 아동놀이방 설치. 교육용 교재 개발 및 교재 지원. 사례관리 인원 확보.
- ☐ 각 기관의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연계가 소극적임.
- ☐ 국가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서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함께 일괄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서로 도와 주면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으면 함.

- 관계부처가 틀려 서로 자기들의 실적이 우선되어 어려움이 많이 따름.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단위별(시.군.구) 지역 사회자원 통합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회의비/ 실무자 간 교류비
- 지역사회자원, 기관을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은 실적 위주의 평가임. 그리고 그 평가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 생각함.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은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만들지 말고 있는 사업에 내실화를 꾀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함.
- 연계협력의 기본은 내어줌인데 무언가를 거쳐가야 한다는 기관이 기주의가 연계협력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이유임.
- 전부 어려움. 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함. 단,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타기관과의 협력 사업 중 어려운 점은 업무 비중의 불균형, 협력사업 외의 업무의 과중화임.

☐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지원사례를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세세한 정보제공,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연계망 형성.

(6)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직 경력이 짧아 기관 연계가 어려움 현재 기관에선 연계요청에만 응해주는 실정

(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호소문제에 따른 기관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서비스 중복. 기관 간에 중복되는 서비스 지원을 지양하는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각 기관별로 비슷한 지원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기관이 실적이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과감하게 없애지 못하는 것 같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서로 관리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역할을 나누어 특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 비밀보장임. 사법처리를 하고 나서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사례가 공개 되었을 때, 피해자와 가족이 받을 충격과 사회적 잣대에 대하여 책임의 소재가 없어 난감함.

□ 현재 아동의 학대(성학대포함)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성폭력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음.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위한 정책(일반아동, 부모교육, 가족지원)과 실제 현 상황에서 문제상황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여 개입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진행되어 향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이슈가 되는 시기에 조직이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예방하고 발견 시 적절한 개입과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권리나 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예견하고 정책을 세우고 기관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임. 아동교육복지, 아동권리복지 현재 아동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을 목록화하고 기관의 성격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데 누락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임.

□ 시스템 통합관리. 각 기관의 전문성 재고.

□ 지역사회 내에 적절한 서비스자원이 부재할 경우 연계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본 기관은 아동성폭력피해자 치료전담기관인데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분리보호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음. 아동 성폭력피해자 전용쉼터 등이 필요함.

(8)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회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양성되는 어린이 성교육 전문 강사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비 부분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각종 센터의 통합 필요

(9)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 서비스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현재 운영되더라도 역할 미미

☐ 긴급지원제도 확대

☐ 기한별 예산지원

☐ 연계할기관의 부족(그룹홈, 장기시설등) 시설및인력증대

☐ 기관에 충분한 인원 배치로 인해 업무 과중을 덜어 효율성을 높였으면 함

☐ 어려움 없다

☐ 서비스 지원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의 기준 등에 대한 법령 또는 지침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0)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복지 인력의 전문화 필요. 종교계, 학계, 기업계, 의료계로 조직된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망을 맺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양쪽을 연계해주는 연결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홍보가 안 되어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음. 수혜 가정에 매년 프린터물이 전달되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전달이 잘 되어야 하겠음.

☐ 더 많은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상호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 연계기관과의 연락체계가 불확실
- ☐ 자원의 부족(인력, 시간, 경제적), 실질적인 지원(인력, 비용 등), 전문적인 교육 부족.
- ☐ 네트워크 형성 부족
- ☐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서비스나 다자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습지 등) 교육지원 서비스
- ☐ 지역 기관장 업무 협약 및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
이 필요함

(11)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아동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 ☐ 네트워크를 주장하지만 실제 기관이 영향력이 없으면 연계하지 않는 게 현실, 기관 평가나 연계사업을 늘려 기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 별도의 인력이 필요

- ☐ 한 가정을 바라보는 기관들의 시각 차이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음.
- ☐ 가정의 문제점 발견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나 잘 이루어지지 못함. 각 지역의 문제해결 전문가 기관이 있었으면 함.
- ☐ 연계하는 방법과 내용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대상자 및 서비스에 대한 공동체 구축(네트워크 활성화)을 해 주셨으면 함.

(12)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아동들의 회복 및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했으면 함.
- ☐ 각 기관의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 미해결 되었을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함.
- ☐ 장기봉사자의 부족→혜택 등의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함.
- ☐ 기본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쉽지 않음.
- ☐ 지역사회네트워크라는 컨소시엄 체계의 협조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개인 업무의 과중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함. 인원 충원이 필요함.

- ☐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 ☐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 지역의 위치로 인해 전문 기관과 연계 하기 어려움.
- ☐ 예산과 인력이 부족(전문가)

(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홍보와 적극적인 연계 지속적인 협력
- ☐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이다 보니 지역사회 후원부터 시작해서 유관기관 연계, 협력 등에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음. 법인이 아니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대조차 하려 하지 않음. 개인시설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정 감사를 받고 있음. 그런데 왜 공공연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음.
- ☐ 공무원들의 인식인 것 같음. 좀더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한 아동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자기들의 일꺼리가 하나 더 늘어 힘들어 질 것 같다는 태도는 개선이 필요함.

☐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제공을 귀찮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공동생활가장은 24시간 생활시설임. 때로는 야간 시간에 급하게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었으면 함.

(14) wee 클래스

wee 클래스에서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협력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국가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의 허락 없이 연계하기도 힘들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역시 힘들. 몸집을 부풀리기보다 내실 있는 서비스 기관이 있었으면 함.

☐ 우울증 학생이 많은데 연계해서 치료까지 가능한 국립병원이 생겼으면 함. 경제적 조건, 진단 기준이 맞으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임.

☐ 지원해야 할 학생을 데이터 베이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주로 Wee센터와 연계하여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동과 치료에 따른 해당학생의 수업결손이 잦아서 아쉬움. 휴일서비스라는걸 생각해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음.

☐ 각 기관도 국가나 지자체들이 예산을 받아 운영하므로 형식적인 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듯함. 아동 청소년 지도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학교내 전문 상담교사와의 연

계를 활발히 하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했으면 함. 또한 국가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확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함.

5)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견(기관공통)

기관에서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cys-net은 구축이 되어 있음. 이를 더 보강 하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할 때 바로 검색 할 수 있거나 한 사례자에게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는지, 혹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함.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위기지원 뿐 아니라 부모의 취업, 주거환경, 의료서비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대한 정보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CYS-Net과 OK 주민서비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이 통합되어, 좀 더 넓은 범주의 관리체계가 있으면 어떨까 함.
-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임. 의지나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음.
- 복지의 큰 틀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소수 대상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대상을 위한-특히 아동·청소년-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길 원함. 너무 돌봄 중심의 정책만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점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가 확장되길 희망함.

- 교과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한 부처 중심의 지원체계구축이 필요함.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식 개선운동 및 홍보가 필요. 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교육 필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과 위기가정에 대한 개입. 지원되는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의 편의에 따른 아동양육서비스.
- 가족맞춤형 지원서비스 말그대로 그 가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가정 사람마다 특성을 살려 1:1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방향과 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지원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바우처 사업의 다양한 분야 개발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육성화가 필요함.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사업 실시. 지역의 하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교육서비스 할인이 제공되어야 함.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멘토 서비스 실시.
- 동네마다 이웃상담원이 있으면 좋겠음. 아동 및 각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함.
- 지속적인 지역 기관들의 연결 필요.

☐ 원스톱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 필요. 방학 중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 식사 제공 등이 필요.

☐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중복되는 지원은 피했으면 좋겠음.

☐ 1:1 맞춤 지원 서비스 구축 필요

☐ 관련 기관의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실행이 부족할 경우 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각 기관에서 꼭 필요한 아동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실시하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으면 함. 교육기관에서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강화시키도록 정보제공도 필요할 것 같음.

☐ 지원부처 통합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

☐ 복지관 시스템이 접근성도 높고 이용하기 편할 것 같음. 중복 되는 서비스가 많기에 기관들에 연계가 잘되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사용할수 있게 함.

☐ 한 방향으로 지원되는 원스톱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함.

- 통합적인 아동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필요.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등과 같이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두고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업을 하는 곳은 통합의 의미를 두어 교육부, 혹은 복지부에서 맡아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밥그릇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연령별로 나누던지 아니면 시간별로 나누던지 확실히 구분짓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각 부처별로 비슷한 성격의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통합 및 조정 필요함.
- 비슷한 성격의 사업의 공유체제 의무화.
- 서비스지원 대상자들 확대 필요.
- 한 학생에 대한 똑같은 서비스 중복 지원 문제 해결 방안제시.
- 농어촌의 실정을 파악한 유동적인 육아시설 운용이 필요.
- 세분화전문화 사업보다는 통합 지원사업이 필요함.
-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장애 등록 되지 않은 지적장애자의 가정에 대해 상시적으로 돌봄 제공하고 폭력예방 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 기관의 다이어트가 필요함. 특색별로 특화시키고 이에 따른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함.
- 현장실무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보장과 보상이 함께 이루어 지지 않으면 급한 실무만 익히고 하게 됨. 행정 시스템 지원서비스 전문가 보장을 함께 했으면 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있

어 서비스제공자가 부족함. 실제 피해자 치료와 가족치료 경제적 지원등 전문가가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 ☐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설문조사, 모니터링이 활성화 되었으면 함.
-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지원체계의 구축보다는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점이 되지 않도록 직장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한 여성에 대한 경력관리가 원스톱체계를 통해 평생 동안 관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 지원 행정 간소화, 지원은 5단계 등급화. 보호서비스 현장 위주로 실시.
-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의 공급. 전달체계 구축.
- ☐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함.
-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필요. 시·군·구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형태가 확대되면 좋겠음. 전남 지역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센터가 없는 곳이 많음.
- ☐ 네트워크의 목적을 기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하는것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민관이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

- ☐ 빈곤을 해결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음.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어떤 정부 자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이 정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함.
- ☐ 가장 중요한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함. 모든 문제의 근원은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 같음.
- ☐ 홍보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모르는 가정이 없도록 가정에 우편으로 소식지를 보내 어려움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음.
- ☐ 서류를 갖추는 테두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의 생활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위의 설문을 받고 또는 추천으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 ☐ 국가와 지역, 그리고 보호기관의 친밀한 연계 구축이 필요
- ☐ 각각의 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 정기적으로 기관모임과 간담회가 필요함.
- ☐ 노인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매우 적음. 또한 맞벌이 가정(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주말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대상의 범위를 수급, 차상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영역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 예산지원이 필요.
- ☐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람.
- ☐ 안전한 환경 조성과 분위기 쇄신.
- ☐ 입양가정의 인식개선 한부모 가정/미혼모 가정의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충.
- ☐ 지역 환경에 맞추어 지원함.
- ☐ 도시에 비해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회복지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함. 전문가, 예산 지원 필요.
- ☐ 모든 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연계가 힘이 듦.
- ☐ 다 함께 라는 의미에서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아동·가족 관련 서비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나 재정관련 사항을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연계 가능한 기관이나 기업이 많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군단위의 농·어촌 중심지역 간에 지금보다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임. 도시보다 농어촌이 아동·가족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근거는 없음. 오히려 가정해체로 조부모의 손에 맡겨진 아

동이 늘면서 조손가정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증대 등 군단위의 농
어촌지역의 아동, 가족 맞춤형 서비스는 더 절실한 형편임. 한마
디로 군소재 기관이 시 소재 기관보다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임.

- 그룹홈의 목적은 해체된 가정의 부모를 교육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바람직하게 보호
하여 사회 자립에 이바지 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의 시설 종사자
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모범이 되고 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동생활가정에는 양육아동의 특성에 따라 가정의 고유문화가 있
음. 가정마다 갖고 있는 진실한 생활의 문화보다는 동일한 행정 업
무에 고유의 가정 문화가 획일시 되는 것 보다 가정의 특색과 문
화를 잘 살려나가는 정책이 있었으면 함.
- 멘토링도 대학생 일자리 창출이라 아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멘토
자체의 인성교육 자질도 필요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홍
보도 필요하고 복지와 상담의 부분을 구별했으면 함. 복지와 상담
은 다른데 같은 부류로 나누는 것은 전문적인 상담을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임.
- 해당관청의 지원과 관심
-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돌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것이 되기를.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 관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 진행되길 바람.

- 아동과 가족의 지원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을 목표로 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사업계획에 있어 1년, 2년 단기의 계획으로 성과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전문인력(예: 상담자, 학교사회사업가 등)의 고정적인 근무여건과 환경이 절실하다 하겠음. 아이들과 만남에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음이 안타까움.
- 초등·중등학교 최소 1인 1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시급함. 더 나아가 학교 내 상담센터 추진도 시급함. 학교에서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 못한다면 기관 연계도 피상적으로 끝날 것임. 전문상담교사들의 역할이 절실함.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아동·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현황은 어떠하며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맞춤형) 지원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넷째, 우리나라 아동·가족 유형별 욕구는 어떠한가?

다섯째, 우리나라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은 어떠한가?

여섯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개선 방안은 어떠한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국가통계자료, 논문, 신문기사, 학술보고서 등을 통해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가족 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선진 외국(미국, 일본, 독일)의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의 방향 수립, 아동·가족 유형화, 아동·가족 욕구 사정, 아동·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범위 규정 등에 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차로 기존의 욕구조사결과를 재분석하였다. 전국의 18세미만 아동 혹은 그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

로 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욕구조사 결과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동·가족 욕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재분석하여 가능한 최근의 아동·가족의 욕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로 충분한 욕구조사가 불가능한 영역, 특히 국가차원의 욕구조사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추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있어 “맞춤형”이란 “아동·가족이 그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차별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혹은 민간의 체계적 사례관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가적 도움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이 스스로의 선호와 필요, 특성,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계획·선택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요약컨대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의 구조 및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별 과업, 가족의 자원, 가족의 강·약점, 가족의 심리적,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욕구와 필요, 주거와 여가, 건강과 위생 등 삶의 질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필요들을 지원하며, 지원이 정상적으로 미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때 야기될 수 있는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예방적, 치료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의 아동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0-19세⁷³⁾ 아동의 수는 2005년 현재 총 12,086,651명이며 이 중 6,334,225명(52.41%)이 남자, 5,752,426명(47.59%)이 여자이다. 전체인구는 47,041,434명이며 전체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69%(남자 26.99%, 24.40%)으로 1/4정도를 차지하였다.

73)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18세까지이나 5세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통계 자료의 특성상 부득이 만 19세까지 연령을 제시하게 되었다.

2005년 총 가구수는 약 15,887,000가구이다. 이들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가족 16.2%, 2세대 가족 55.4%, 3세대가족 6.9%, 4세대이상 0.1%, 1인가구 20.0%를 차지한다. 비혈연가구는 1.4%이며 비정형가구(한부모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는 30.4%를 차지한다. 1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가족 14.2 %, 기타 2.0 %이다. 2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미혼자녀 42.2 %, 한부모가구(편부가구) 1.8 %, 한부모가구(편모가구) 6.8 %, 부부+양친 0.1 %, 부부+편부모 0.8 %,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0.5 %, 조부모+손자녀 0.4 %, 기타 2.8 %이다. 3세대 가족의 경우 부부+자녀+양친 0.9 %, 부부+자녀+편부모 3.6 %, 기타2.4 %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대이상 0.1 %, 1인가구 20.0 %이다.

셋째, 다양한 선행연구(김미숙, 2006; 김승권, 2009; 김혜영, 2008;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 2009)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조적 · 사회 · 인구학적 변화(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빈곤가족의 증대), (나) 다양한 가족의 증가(이혼 ·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구,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다) 가족 기능의 변화(여성취업 증가와 돌봄 기능의 약화,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가계부담의 증가)가 그것이다.

넷째, 아동 · 주양육자 욕구조사결과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81.3%)이었으며 다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회 제공(79%),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7.8%),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77.7%),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6.3%),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75.8%),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72.7%),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70.6%)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체육분야(2.98점)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분야(2.94점), 문화분야(2.70점), 고용분야(2.68점), 주거분야(2.59점), 보건분야(2.58점), 교육분야(2.53점), 기타분야(2.44점), 복지분야(2.06점) 순이었다.

다섯째,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개선, 치과치료,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거주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개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대도시(2.12)가 농어촌(1.9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치과치료에 대한 욕구는 농어촌(2.86)이 중소도시(2.6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에 대한 욕구는 중소도시(2.79)가 대도시(2.5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농어촌(2.45)이 대도시(2.2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섯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관련 기관소개,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족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관련 기관소개에 대한 욕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는 경우(2.52)보다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사는 경우(1.65)에 유의미하게 낮았다.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수가 한정되어 일부 가족유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를 확보하지 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가족유형별로 나타난 지원서비스 욕구 수준의 차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올해 들어 주양육자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보건소(29.1%)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20.3%), 청소년수련관(18.3%), 청소년수련원(17.7%), 유스호스텔(15.7%), 청소년야영장(13.9%), 여성회관(11.4%), 고용지원센터(10.8%), 종합사회복지관(10.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주양육자의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살펴본 결과 방과후학교(31.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28.4%), 유스호스텔(20.0%), 지역사회보건소(19.8%), 청소년야영장(19.4%), 청소년수련관(17.4%)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아홉째, 주양육자는 자신과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위해 아동심리상담서비스(52.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0.1%),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49.8%), 아동건강검진 서비스(46.8%),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2.1%),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39.8%), 가족휴가제공서비스(39.8%), 진로상담서비스(39.5%),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서비스(36.4%), 지역사회 체육공간 서비스(36.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5.0%),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30.9%), 가족관계증진서비스(30.8%),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30.7%),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30.5%), 아동조기발달검사(30.3%) 순이었다.

열번째,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및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가족관련기관이 현재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업무를 위해 가장 많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41.3%)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40.5%)로 대상 기관의 40%이상이 연계, 협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종합사회복지과(34.7%),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33.9%), 아동보호전문기관(29.8%), 건강가정지원센터(28.9%), 청소년문화의 집(2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4.8%), 청소년수련관(24.0%), 정신보건센터(24.0%), 청소년자원봉사센터(24.0%), 청소년성문화센터(23.1%), 성폭력상담소(23.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22.8%), 청소년문화존(19.8%), 고용지원센터(17.4%),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15.7%) 순으로 나타났다.

열한번째,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없는 경우가 27.9%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5.4%, 주민생활통합지원서비스(OK 주민서비스) 19.7%, 기타 14.8%, 위민넷 4.1%, 여성취업

지원통합전산망 2.5% 순이었다. 전체 %가 122.1%로 2개이상의 통합관리체계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열두번째,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예산을 받거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관련 국가 행정부처(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7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54.8%, 교육과학기술부 21.0%, 기타 12.1%, 고용노동부 8.1%, 행정안전부 7.3%, 문화체육관광부 4.0%, 법무부 3.2% 순이었다.

열세번째,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18.0%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중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9.5%를 차지하였다. ‘지역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원한다’는 경우는 7.4%이고 ‘지역사회에 모든 일반가정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경우는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적 측면, 전달체계적 측면, 법·제도·정책적 측면에서 제언을 실시하였다.

2. 제언

1) 서비스 내용적 측면

(1)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행 등 가족 공동 활동의 적극적 확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 아동의 상당한 비율이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가족과의 시간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 활동, 특히 여행활동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칫 성취지상주의와 경쟁적 사회로 인해 개인화, 파편화되기 쉬운 현시대에서 가족과 함께 공동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바이다. 아동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공동 활동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에 대한 다양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들은 학교내에서의 교우관계, 괴롭힘, 폭력, 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교관계개선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함을 제시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3) 통학 및 이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전거, 도보 교통관련 체계 개선

아동의 상당부분이 지역사회의 도로, 통학환경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도로, 자전거, 도보, 교통관련 체계는 이제까지 아동·가

족 지원에 있어 상당부분 간과된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영위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구체적 사례로 창원 지역사회의 예(개인의 자전거를 지역사회 일정장소에서 공동으로 보관해 주는 사례)는 타 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복잡한 교통 체계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지역사회 체육시설, 공간 건립 희망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체육시설, 공간 건립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으로 보아 기존에 유휴지나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 혹은 성인 위주의 축구 등의 활동만을 위해 할당된 공간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거나 활용목적에 따라 전천후로 변경,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야구장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성인의 입장에서 체육시설, 공간을 건립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의 욕구에 기반하여 활용가능한 체육분야, 관련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사회 공원, 하천변 등에 기구나 시설설치 대신 아동들이 선호하는 공원, 배드민턴장 등을 보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 외에도 기존의 학교 운동장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동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족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체육활동 또한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 마련에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5) 지역사회 중요 시설로서 아파트단지 재정비

현재 도시 아동의 많은 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놀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들은 이러한 놀이터가 그다지 안전하지 않으며 그들이 활동하기에 턱없이 좁으며,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고 내버려졌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아동들의 욕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놀이터를 선정하고 이를 다른 놀이터가 벤치마킹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6)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의 전국적 시행

많은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지역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희망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 개선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학교생활과 많은 과외학습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의외로 자신의 지역사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많은 관심과 개선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결강화, 지역사회 위험 시설 및 환경 개선(바닥 고르기, 바닥에 위험물 제거하기 등) 운동과 지역사회 치안 환경 개선(또래 혹은 나이 많은 청소년의 비행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환하게 밝히기, 납치와 살해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지역사회 성인들의 자율방법활동 강화)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된 추진기관을 선정하여 해당기관을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함께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 학부모 교육을 통한 아동, 아동지원서비스 관심 제고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사항 중 하나는 가족공동활동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협력 지원 요청 등을 실시할 때 학부모 등 주양육자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것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업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로 인해 심적,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정기적인 부모 교육이나 의뢰하는 부모 상담, 면담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부모가 국가차원의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이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년, 혹은 1달에 일정횟수, 시간에 한 해 서라도 부모가 국가적 자격에 맞는 아동·가족공동지원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국가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전달체계적 측면

(1) 유사 서비스의 단계적 통합 및 주무부처 선정

지역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관들이 기존의 아동·가족 서비스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으며 추후 서비스 지속 여부 및 예산증원 여부를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수에 기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서비스 대상 아동을 확보하려는 불필요한 경쟁과 불합리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재 정책이 아동수에 기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부 아동의 경우 기관의 서비스 대상 아동수를 늘리기 위한 기관 차원의 유치로 인해 서비스를 중복수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

수혜로 인해 정작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제적 차이, 혹은 자격 미비로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2) 아동·가족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기존의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지원망들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원스톱 체계로 활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처간 통합지원망 조정 TF를 만들고 다야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학술적, 미래사회적 고려를 통해 체계화된 단일한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2010년 현재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체계 중 아동·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체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 주민서비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민넷,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등이며 관련 부처와 아동·가족 대표가 협의하여 아동·가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중심으로 중복부분과 누락부분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가장 넓은 의미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서비스제공 분야로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 주민정보서비스)이 아동·가족·정책전문가·현장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기준으로 삼기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민넷, 여성취업지원통합지원체계, CYS-Net을 추가하여 관련영역을 추가하고 그 후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신규 보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어떠한 체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아동·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분류화, 조정 하느냐는 국가가 생각하는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방향성과도 면밀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해당 통합지원체계의 풍부한 계획이나 포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체계들이 잘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 등이 있다면 이를 면밀

히 검토하여 일원화된 통합지원체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아동·가족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완성된 통합지원원스톱지원체계를 활발하게 홍보하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의 사각 지대에 대한 고려의 확대

연구결과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한 기준에 약간의 차이로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일부 중복수혜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상당한 부분에 달하는) 보다도 더 열악한 학습, 복지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혼한 모자녀가정의 자녀의 경우 실제로 이혼한 생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혼한 생부가 일정수준의 소득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동·가족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을 저하와 직업생활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과 직업생활유지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역시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연구와 욕구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가족을 밝혀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홍보방안 모색

연구결과 아동, 주양육자는 물론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가조차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실제 있는 서비스조차 잘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별도보고서로 편찬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편람’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기초적 노력

으로서 최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망라하여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와 조사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이러한 편람 조차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서비스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부처 합동으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접 학교, 직장, 지역사회 반사회, 교회·성당 등을 방문하여 국가가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아동·가족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본 보고서의 편람과 기존의 업무계획 등이 공무원, 정책입안자,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접하기 어려운 성격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식의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아동·가족지원서비스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 시민이 이러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아동·가족이 자주 접속하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증권·경제관련 사이트에 이러한 정보를 일정 주기로 알리는 팝업창, 혹은 광고 배너를 설치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나 기관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부정책 홍보에 함께 하는 기업, 사이트 등에 세제 혜택이나 “올해의 건강한 아동·가족 지원 도우미” 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3부족의 해소

아동·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3부족은 홍보부족, 예산부족, 인력부족이다. 아무리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예산이나 업무량에 맞는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그 서비스는 아동·가족에게 최적의 상태로 전달되지 못한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명확히 대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 사례 중 다양한 재단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에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기업은 원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국가차원의 기관과 연계하여 함께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인력이나 사업예산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국가가 기업과 지역사회, 아동·가족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정책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물론이다. 가장 대표적 예로 모범적 기업, 지역사회, 일정 유형 혹은 특성의 아동·가족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 지역사회, 기업, 해당 아동·가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6) 농어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중요하고 다양한 아동·가족 서비스가 밀집되어 있는데에 반해 농어촌은 중요기관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성 있는 전문가 또한 근무를 꺼려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심지역으로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아동·가족 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에 특히 많은 아동·가족 유형(손자녀와 조부모만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특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과 농어촌 지역 인구부족 등으로 인해 별도의 기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도심 지역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전문 인력 등이 지역사회 경로당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회의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에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규모의 전문기관을 점차 늘리는 방안 또한 함께 고

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특수 아동에 대한 전문적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많은 편의 시설 및 교육 치료 기관을 설치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여 오히려 도시 아동·청소년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역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지원 아동·가족 서비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누출 엄금

특히 민감한 아동·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동·가족이 자신의 비밀을 유지해 주기를 매우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나 언론사 등의 지나친 흥미위주의 보도로 인해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수혜사항은 물론 심한 경우 서비스를 받는 피해 아동·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취약하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가족은 물론 일반 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또한 아동·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화, 통합화, 기록화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지원서비스 체계 개선방향과는 일견 상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동·가족 감시단 등을 통해 전문가가 활용가능한 정보를 스크리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점검, 보완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정보화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하되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8)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실무자 협의체 구성

현재 제공되는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장실무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장실무자

간 의사소통 채널이 단절되어 각 기관의 노하우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계 협력 또한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중복영역과 공백영역, 각 기관의 전문성 함양정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요청가능한 기관과 기관 전문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개선 및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확대를 위한 간담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아동·가족 체계를 1원화, 체계화하고 각각의 영역에 전문가를 가장 잘 서비스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법·제도·정책적 측면

(1) 기관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연계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과다로 별도 기관의 요청을 수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와 더불어 업무를 받을 경우 업무량이 확대될 수 있어 굳이 이러한 연계지원에 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가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국가차원의 중앙행정기관 조차 기관간 업무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점도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동·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현대사회는 전문화, 특성화의 시대로 한 전문가가 많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전문가의 연계, 협력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는 합리적인 연계요청에 대해 타기관이 응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체계도 없으며 이에 응할 경우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다. 즉, 기관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하루빨리 해당부처간의 연계협력, 더 나아가 지역사회, 지역사회 연계협력 의무를 일차적으로는 선언적 측면에서라도 법적 기준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업무량의 과다로 혹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특정 전문가의 집중으로 일정 기관 혹은 전문가가 업무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과 한계를 책정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연계 협력은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쌍방향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한계로 인해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전문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동·가족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여 정책전문가와 전문가들의 의식변화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2) 아동·가족 지원체계 평가기준의 장기화, 다원화

현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예산배분 혹은 사업선정 및 우선권 배분의 기준은 상당부분 단기적, 단방향적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으로 아동이 몇 번 서비스에 참가하였으며 몇 명의 아동이 서비스에 참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정한 아동·가족서비스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업을 공모·예산 지원하는 기업 등은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 혜안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단시일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효과를 파악하는 데 급급하여 현재 눈에 띄는 서비스 효과 없다고 하여 서비스내용을 종결하거나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아동, 주양육자, 그리고 그들 가족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지원여부 및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의의 및 방향성, 그리고 장기적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학술적으로 뒷받침하여 해당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세부적 내용에 관한 국가 차원의 배려

아동·가족 서비스는 단순히 찾아오는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정해진 운영비로 정해진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관을 찾아오는 아동·가족보다 직접 찾아가서 1:1 개별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농어촌과 같이 별도의 이동수단이 없으면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담당자가 사비를 털어 유류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다 세심하고 포괄적인 세부 예산 지원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아동·가족의 궁극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4) 국가차원의 연간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매뉴얼 개발, 보급

전문가들은 아동가족 서비스의 종류가 무척 많고 각 기관끼리 중복되는 서비스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인력, 예산 상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기존의 기관별 서비스 또한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 서비스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편람을 각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백서, 업무계획 등을 기반으로 구성,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일부의 경우 계획했음에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차원에서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아동·가족에게는 제대로 충분히 전달될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각 중앙행정기관별 업무결과는 해당 기관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계획이 아닌 실제 실시

내용에 관해 해마다 행정부처 합동 매뉴얼 개발팀을 구성,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지역방송, 반사회, 교회 등 종교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국가차원에서 해당부처가 실시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기관의 연락처는 무엇이며, 홈페이지는 어떠한고 담당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매뉴얼이 실질적인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수집 및 서비스 찾아가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중앙행정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단위)-지역사회(군·구 단위)가 각각의 정책, 추진 체계 선에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함으로서(예: 아동양육지원의 경우 국가 매뉴얼에서는 국가차원의 아동양육지원시설·단체를 수록하고, 시·도의 경우 시·도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체계를 수록하고, 군·구 단위의 경우 군·구에서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 지원기관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등) 체계적인 매뉴얼 구성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은 해당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목마른 정책입안자, 학자, 현장 전문가, 아동·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아동·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재조정 하기 위해 기초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재조정

본 연구는 물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많은 학자, 정책가 등을 통해 지적되어 온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는 많은 중앙행정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그 예산의 출처와 주된 행정부처가 다를 뿐 사실상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업외 학습 등

관련내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빈곤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지원”라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부처가 이름만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의 국가차원의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한 후 관련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를 1-2군데로 축소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관련기관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되 주 업무 추진은 할당된 중앙행정부처에 일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A라는 사업을 가, 나, 다 중앙행정 부처가 이름만 다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가, 나, 다 중앙행정 부처가 수행하는 A라는 업무를 이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리드하는 기관으로 그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은 이에 대한 자문, 협의, 관련 사항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부처간 전문성은 함양될 것이며 서비스의 중복이나 사각지대의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기존의 부처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부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 또한 기존에 수립되었던 예산 수준을 유지하되 해당 사업에 보다 결집하여 활용케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단, 해당업무의 중점추진기관이 한 부처로 선정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해이나 경쟁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컨소시엄을 이룬 관련부처가 수시로 자문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 단계적 확대 및 선택모듈의 다양화·선택성 확대

현재 아동·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는 대부분 빈곤 아동·가족이나 특수한 어려움을 가진 아동·가족, 혹은 기관에 직접 찾아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가족에게만 한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아동·가족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예방이나 사전 지원 등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아동·가족에 대한 사례관리가 단계적으로는 점차,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5년마다 하는 인구센서스와 같이 전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을 실시하는데 있어 예산, 인력 등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려움이 더 많은 아동·가족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움이 적은 아동·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가족이 스스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빈곤 아동·가족의 서비스와 일반 아동·가족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지정하기 보다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여 필요한 영역을 아동·가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가 개입하여 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한 해 필수지원사항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나머지 서비스는 아동·가족의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라는 서비스는 빈곤 아동·가족만, A'라는 서비스는 일반 아동·가족만 지원받게 하는 경우 낙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현물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요한 아동·가족 누구나 원하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2. 보도자료
3. 인터넷 자료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 김원식·권병구 편(2003),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이해: 21세기 근로복지의 방향. 서울: 도서출판 흥.
- 강우진(2009).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길자(2008). 장애아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미숙(2006). 한국가족 어디까지 왔나?: 가족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보건복지포럼, 2006. 5월호, 5-19.
- 김성천 등(2009). 가족중심의 장애아동 통합지원체계구축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승권(2009). 통합·예방·맞춤형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5-17.
- 김영주(2009). 충청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사업: 자녀양육사업을 중심으로. 공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혜영(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55-94.
- 박소담(2009).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연구 보고.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영주·장서영·이보민(2009). 서울시 전문직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심재민(2007).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성남시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옥경(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69-99.
- 여성가족부(200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0). 20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오해섭·이민화·김영호(2007).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혜령·백은령(2007).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원성환(2010). 맞춤형 복지제도가 군인의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군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포근(200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석용(2009).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201세기를 위한 긴급제안. 서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 이문택(2008).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주 · 곽금주 · 박현선 · 양수 · 김남희 · 서정민 · 김연우 · 한지선(2009).
유망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아동분유 유망사회서비스 시장조
사 중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 이성 · 정지웅(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
으로. 서울: 학지사.
- 이연(2006). 지역사회 청소년보호체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2008). 아동·청소
년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이택면(2009). 경력단절여성의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서울: 여성부.
- 이혜윤(2008). 학령기 저소득층 가정의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에 관한 질적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을 중심으
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순금(2010).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경기도 수원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대학
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2009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서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선경(2006). 성인 정신지체인 가족의 부양부담과 가족지원서비스 연구:
소비자와 제공자의 종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최종숙(20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대상 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 영향요
인.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일부(2009) 2010년 업무보고.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09). 2009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한경혜 · 이정화 · 진미정(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
학회지, 30(2), 1-14.

한국교육개발원(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경북, 울산 탈북학생 지도 담당교원 연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영양관리대책 개발. 서
 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행정안전부(2010).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0). 2010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홍선주·김태은·황은영(2009). 초등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서
 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승아·김혜영·조순주·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상남(2009). 농촌지역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경상
 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Kinder-und Jugendhilfe.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Berlin: Druck Vogt GmbH.
 Downs, S. W., Moore, E. & McFadden, E. J. (2009).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 (8th ed.). Boston:
 Pearson. Grossman, J. B. & Garry, E. M. (1997). Mentoring
 — A Proven Delinquency Prevention Strateg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Gries, J. & Ringler, D.(2005).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The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and Evaluation Center for
 Systems of Care. (2009). A Close Look: Community-based
 Resources: Keynotes to the System of Care.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8). Child Maltreatment.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2003). 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and Support Grant.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0). Resource Guide: Strengthening Families and Communities.
- Voydanoff, P.(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and Family, 4(2), 133-156.

2. 보도자료

가족·청소년업무 3월까지 여성부로 이관. 메디컬투데이. 2010년 1월 7일자.
위 스타트는 아동 밀착형 맞춤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복지 새 패러다임 제시. 중앙일보 2009년 5월 29일자.

3. 인터넷 자료

□ 한국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archives.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국회법률지식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http://tmfc.familynet.go.kr>.

▣ 미국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http://www.childwelfare.gov/supporting/support_services/introduction.cfm.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www.ojjdp.gov/mpg/prevention.aspx?continuum=prevention>

▣ 독일

<http://www.esf-regiestelle.eu>

<http://www.lokale-buendnisse-fuer-familie.de>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

<http://www.bmfsfj.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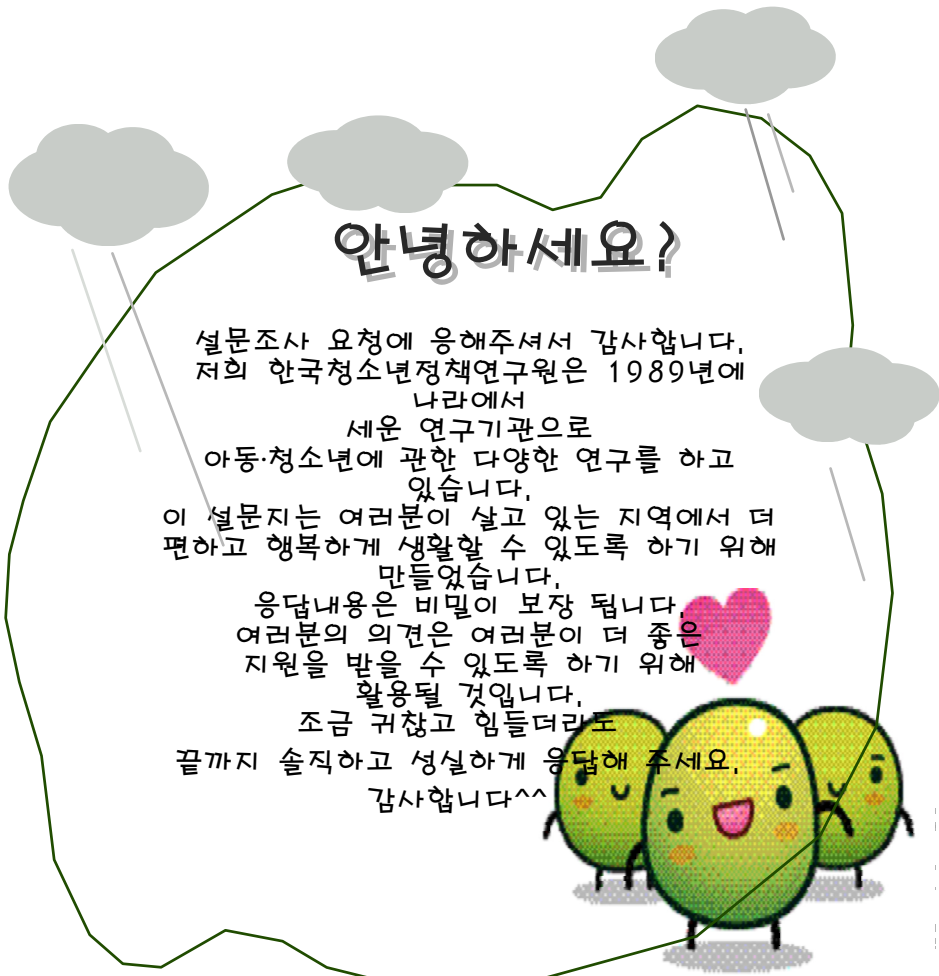
<http://www.erfolgsfaktor-familie.de>

<http://www.handbuch-kindertagespflege.de>

부 록

1. 아동용 설문지
2. 주양육자용 설문지
3. 기관 전문가용 설문지

[부록 1] 아동용 설문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태봉로 114(137-715)

2010.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설문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다음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1.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1) 복지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심리상담	1	2	3	4
(2)	가족관계개선	1	2	3	4
(3)	가정방문	1	2	3	4
(4)	낮시간 보호	1	2	3	4
(5)	방과후 돌봄	1	2	3	4
(6)	가족생활관련 정보제공	1	2	3	4
(7)	아동가족지원기관 프로그램 소개	1	2	3	4
(8)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동지원	1	2	3	4
(9)	북한을 떠난 가족을 위한 아동지원	1	2	3	4
(10)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분만 있는 아동 지원	1	2	3	4
(11)	부모님 없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사는 아동 지원	1	2	3	4
(12)	장애가 있는 아동지원	1	2	3	4
(13)	용돈, 학비 등 경제적 지원	1	2	3	4

2)보건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건강검진	1	2	3	4
(2)	영양섭취, 건강 교육	1	2	3	4
(3)	신체건강을 위한 지원	1	2	3	4
(4)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1	2	3	4
(5)	아동학대,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동 예방, 지원	1	2	3	4
(6)	친구, 선생님 등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1	2	3	4
(7)	아픈 곳에 대해 치료 등 의료적 돌봄	1	2	3	4
(8)	치과치료	1	2	3	4

3)주거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내가 사는 집을 더 좋게 고치기	1	2	3	4
(2)	쾌적하고 깨끗한 집주변 환경 마련	1	2	3	4
(3)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기숙사 지원	1	2	3	4
(4)	새집 짓기, 집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조하기	1	2	3	4
(5)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환경 만들기	1	2	3	4

4) 고용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진로와 미래희망직업 상담	1	2	3	4

5)문화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음악,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	2	3	4
(2)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1	2	3	4
(3)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1	2	3	4
(4)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1	2	3	4
(5)	문화관련 정보제공	1	2	3	4
(6)	문화관련 기관 소개	1	2	3	4

6) 관광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	2	3	4
(2)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1	2	3	4
(3)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기회 제공	1	2	3	4
(4)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	1	2	3	4
(5)	여행 관련 정보 제공	1	2	3	4
(6)	여행 관련 기관 소개	1	2	3	4

7) 체육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1	2	3	4
(2)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	1	2	3	4
(3)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	1	2	3	4
(4)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1	2	3	4
(5)	운동, 체육관련 정보 제공	1	2	3	4
(6)	운동, 체육을 할 수 있는 기관 소개	1	2	3	4

8) 교육분야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	1	2	3	4
(2)	일반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1	2	3	4
(3)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1	2	3	4
(4)	인지, 언어교육	1	2	3	4
(5)	용돈기록장 쓰기, 방치우기 등 가사활동 교육	1	2	3	4

9) 기타

구 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 사업	1	2	3	4
(2)	동네에 있는 가족 관련시설 간에 협력	1	2	3	4
(3)	전문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1:1로 상담하여 관리해 주는 것(사례관리)	1	2	3	4
(4)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서비스	1	2	3	4
(5)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	1	2	3	4

2. 위에 나온 것 외에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다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5.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① 대도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읍, 면, 리)

6.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① 아버지와 어머니와 산다.	☞ 어머니께 설문부탁
②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산다.	☞ 어머니께 설문부탁
③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와 산다.	☞ 아버지께 설문부탁
④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산다.	☞ 할머니께 설문부탁
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아버지와 산다.	☞ 할아버지께 설문부탁
⑥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할머니와 산다.	☞ 할머니께 설문부탁
⑦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고 친척어른(이모, 삼촌,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과 산다.	
⑧ 친척은 아니지만 돌보아 주시는 어른과 산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⑦, ⑧, ⑨ 번으로 응답한 경우, 자신을 주로 돌보아 주시는 어른께 설문부탁

7.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가족생활	1	2	3	4
(2)	학교생활	1	2	3	4
(3)	취미, 여가, 문화생활	1	2	3	4

♣ 설문이 끝났습니다. ♣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집에 가지고 가서 어른이 작성하시도록 한 후 다시 학교로 가지고 와서 담임선생님께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해주실 어른이 없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이나 설문지 담당 선생님께 말씀 드려주세요.

[부록 2] 주양육자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더 편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을 위해 국가정책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소중한게 활용될
것입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아동과 가족이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태봉로 114(137-715)

2010.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설문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
에서 아동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합
니다.

※ 다음은 아동과 주양육자를 위한 지역사회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를 보고 뒷 장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1)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3) 청소년수련관
(4) 청소년수련원	(5) 청소년문화의집	(6) 청소년특화시설
(7) 청소년야영장	(8) 유스호스텔	(9)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과학관)
(10) 건강가정지원센터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성폭력상담소
(13) 가정폭력상담소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 청소년공부방
(16) 청소년문화존	(17) 청소년교류센터	(18)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1)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2) 청소년성문화센터	(23) 청소년쉼터	(24)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25) 청소년지원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26) 여성복지상담소	(27) 모·부자복지상담소
(28) 성폭력피해상담소	(2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청소년선도보호시설
(31) 여성세로일하기센터	(3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33)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34) 여성·아동성폭력피해중앙지원	(35)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36)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3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38) 북한이탈 청소년 지역거점센터	(39) 여성회관
(40) 이주여성 쉼터	(41)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42) 아동학대 예방센터
(43) 아동상담소	(44) 지역아동센터	(45) 종합사회복지관
(46) 정신보건센터	(47) 알코올중독상담센터	(48) 아동양육시설
(49) 아동보호치료시설	(50) 아동일시보호시설	(51) 아동직업훈련시설
(52) 아동자립지원시설	(53) 아동전용시설	(54) 아동복지관
(55) 아동종합시설	(56) 공동생활가정	(57) 아동보호종합센터
(58)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59) 학교폭력상담센터	(60) Wee 클래스
(61) Wee 센터	(62) Wee 스쿨	(63) 방과후학교
(64) 진로정보센터	(65) 방과후학교지원센터	(6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67)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68) 국립예술기관	(69) 일자리종합센터
(70) 하나원(제2하나원)	(71) 하나들학교	(72) 초등학교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7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7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센터)
(76)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77) 지역사회 보건소	(78) 한국갱생보호공단
(79) 직업전문학교	(80) 고용지원센터	(81) 여성농업인센터
(8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83) 식품안전정보센터	
(84)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1. 앞 장에서 귀하가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 번호를 아래 이용 프로그램 관에 적고, 각각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표시해 주세요.

이용 프로그램 (번호로 기입)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2. 앞 장의 보기에서 귀하가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기관이 있으면 중요한 순서대로 5가지만 적어주세요.

(, , , ,)

3. 앞 장의 기관 예시에서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들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 (번호)을 모두 적고 주(자녀의 반응을 돌이켜 보고) 자녀가 각각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 한 것 같은지 표시해 주세요.

이용 프로그램 (번호로 기입)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4. 앞 장의 보기에서 귀하가 앞으로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용을 권하고 싶은 기관이 있으면 중요한 순서대로 5가지만 적어주세요.

(, , , ,)

※ 다음은 아동과 주양육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5. 다음은 대표적인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주양육자인 자신과 초등학교연령 아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서비스를 중요한 것 15개 이내로 선택하여 V표 해 주세요(뒷 장도에 계속됩니다).

1) 복지

구분	세부 프로그램	
1)복지	(1) 아동심리상담서비스	(2)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3) 가족관계증진서비스	(4) 가사지원돌봄서비스
	(5) 가정방문서비스	(6) 단기주거보호서비스
	(7)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	(8) 아동양육지원
	(9) 가족휴가(respite)제공서비스	(10)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11)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12) 다문화가족아동 지원서비스
	(13)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4) 북한이탈 아동 지원서비스
	(15) 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6)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16)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17)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18)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19)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
	(20)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21)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22)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	(2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보건

구분	세부 프로그램	
2)보건	(24) 아동초기발달검사	(25) 아동건강검진 서비스
	(26)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	(27) 아동 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28)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29)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
	(30)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	(31)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32) 아동의 주양육자 신체건강지원서비스	(33) 아동의 주양육자 정신건강지원서비스
	(33) 사회성향상서비스	(34) 아동의료돌봄서비스
	(35)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	(36)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37)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3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주거

구분	세부 프로그램	
3)주거	(39)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등)	(40)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 설정 등)
	(4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4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43)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44) 건축·집개조
	(45)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	(4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고용

구분	세부 프로그램	
4)고용	(47)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48) 고용지원서비스(직업설계, 취업알선)
	(49) 진로상담서비스	(5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51) 진로인식 증진사업	(52)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문화

구분	세부 프로그램	
5)문화	(53)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54)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55)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56)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57)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	(58)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59)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6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관광

구분	세부 프로그램	
6)관광	(61)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62)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
	(63)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64)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
	(65)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66)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6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체육

구분	세부 프로그램	
7)체육	(68)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	(69)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
	(70)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71)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
	(72)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73)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7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구분	세부 프로그램
8)교육	(75)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 (76)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 등) (77) 일반교육서비스 (78) 특수교육서비스 (79) 아동인지·언어교육 (80)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 (가계관리,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 (81) 기타(구체적으로)

구분	세부 프로그램	
9)기타	(82)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사랑 캠페인 등)	(83)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가족생활향상 정보제공, 가족자원네트워크 구축)
	(84) 사례관리서비스	(85)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86) 학교연계서비스	(87)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88) 기타(구체적으로)	

6. 귀하와 (설문지를 가지고 온) 아동과의 관계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형제·자매 ⑥ 이모, 삼촌 등 친척
⑦ 쉼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양육책임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8. 현재 (설문지를 가지고 온) 아동이 지역(구)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 44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9. 귀하의 가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부부+미혼자녀	② 아버지+미혼자녀
③ 어머니+미혼자녀	④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형제자매
⑤ 조부모+손자녀	⑥ 부부+미혼자녀+부부의 양친
⑦ 부부+미혼자녀+부부의 한 쪽 부모	⑧ 4세대이상 가족
⑨ 비혈연가족	⑩ 기타(구체적_____)

10. 현재 귀하가 사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 ② 중소도시
- ③ 농어촌(읍·면·리)

11. 가족의 생활수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2.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13. 다음 중 귀하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해당사항 없음
- ① 장애를 가진 아동 ② 장애를 가진 아버지 ③ 장애를 가진 어머니
 - ④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이주정착 가정 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가정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⑦ 차상위 가정

14. 귀하의 교육 수준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전문대졸(중퇴포함)
- ④ 4년제 대졸(중퇴포함) ⑤ 대학원졸(중퇴 포함) 이상

15. 귀하의 현재 취업 상황은?

- ☐ 비취업 ① 임금·봉급근로자 ②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프리랜서 포함) ④ 무급가족종사자

16.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가족생활	1	2	3	4
(2)	직장생활	1	2	3	4
(3)	취미, 여가, 문화생활	1	2	3	4
(4)	전반적 삶	1	2	3	4

17. 아동과 주양육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었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느낀 사항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18.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주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

설문결과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관 전문가 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설문조사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가족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 및 사업과 정부정책의 실태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입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아동, 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교충빌딩) (우 137-715)

연구진: 서정아·조흥식

2010.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 전문가 의견조사는 현재 지역사회 아동·가족지원기관에서 아동·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업무경력 3년 이상의 실무책임자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은 아동·가족 지원 기관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 다음은 아동·가족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보기를 보고 뒷 장의 질문 (1번, 2번, 3번)에 응답해 주세요.

(1)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3) 청소년수련관
(4) 청소년수련원	(5) 청소년문화의집	(6) 청소년특화시설
(7) 청소년야영장	(8) 유스호스텔	(9) 청소년이용시설(문화체육시설, 과학관)
(10) 건강가정지원센터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성폭력상담소
(13) 가정폭력상담소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 청소년공부방
(16) 청소년문화존	(17) 청소년교류센터	(18)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9) 시·도(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21)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2) 청소년성문화센터	
(23) 청소년쉼터	(24)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25) 청소년지원시설(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26) 여성복지상담소	
(27) 모·부자복지상담소	(28) 성폭력피해상담소	
(2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청소년선도보호시설	
(3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33)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34)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35)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36)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3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38) 북한이탈 청소년 지역거점센터	
(39) 여성회관	(40)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1)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42)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43) 아동상담소	(44) 지역아동센터	
(45) 종합사회복지관	(46) 정신보건센터	(47) 알코올중독상담센터
(48) 아동양육시설	(49) 아동보호치료시설	(50) 아동일시보호시설
(51) 아동직업훈련시설	(52) 아동자립지원시설	(53) 아동전용시설
(54) 아동복지관	(55) 아동종합시설	(56) 공동생활가정
(57)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58)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	
(59) 학교폭력상담센터	(60) Wee 클래스	(61) Wee 센터
(62) Wee 스쿨	(63) 방과후학교	(64) 진로정보센터
(65) 방과후학교지원센터	(6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67)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68) 국립예술기관	
(69) 일자리종합센터	(70) 하나원(제2하나원)	
(71) 하나들학교	(72)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초중등학교)	
(7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7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76)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77) 지역사회 보건소	(78) 한국광생보호공단	
(79) 직업전문학교	(80) 고용지원센터	
(81) 여성농업인센터	(8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83) 식품안전정보센터	(84)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부록 447

8. 다음은 2010년에 국가자원(중앙행정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입니다. 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2)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3)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레드존’ 운영사업	(4)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5) 거리아웃리치 활동 사업	(6)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7)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8)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9)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확대사업	(10) 청소년한부모 양육 조기자립 지원
(1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12)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
(13) 아이돌보미 사업	(14)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16) 청소년유해매체감시단
(17) 청소년중 사업	(18) 드림스타트사업
(19)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20) 가정임양지원
(21) 가정위탁보호	(22) 소년·소녀가정지원
(23) 디딤씨앗 통장(CDA) 사업	(24) 아동급식지원
(25)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26)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내 CCTV 설치사업
(27)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28)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29)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30)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31)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32) 긴급학비지원체계 구축·운영
(33)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34)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사업
(35)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	
(36) 초·중·고교 예술강사 파견 지원	
(37)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	(38)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
(39)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 조성	(40)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41) 주택바우처사업	(42)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사업	(44) 도심 주거환경 정비 사업
(45) 단독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등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해피하우스 제도	
(4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7) 희망 근로 사업
(48) 희망마을프로젝트	(49) 농어촌 집수리 사업
(50)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51)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52)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53)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마련
(54) 조동법교육 시범학교 사업	(55) 해피스쿨 범질서체험 학교 사업
(56) 빈민자리 기업 DB구축	(5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58) 실업급여 등을 통한 실직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59)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60)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활성화
(61) 농산촌 저소득층 난방연료 무상 제공 및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	
(62)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63) 나눔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64)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65)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
(66) 스쿨존캠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도·단속	(67) 희망키움통장제
(68) 안심 슈퍼마켓 운영	(69)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7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71) 초등학교 주변의 저가식품 집중관리
(72) 어린이 위해가능 영양성분 등 섭취 저감화 및 비만예방	(73) 안전한어린이유품사용환경 조성
(7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9. 다음은 대표적인 아동·가족(주양육자)지원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각각의 세부프로그램 별로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서 “주양육자”는 초등학교 연령 아동이 있는 가족에서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주로 “어머니”를 조손가족에서는 “조부모 중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시여부
1) 복지	(1) 아동심리상담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 주양육자 심리상담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 가족관계증진서비스(부모교육, 부부·자녀교육이혼전후재혼상담 등)	①예 ②아니오
	(4) 가사지원돌봄서비스(식사제공·청소·세탁·쇼핑·집안일 등)	①예 ②아니오
	(5) 가정방문서비스(home visit)	①예 ②아니오
	(6) 단기주관보호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8) 아동양육지원	①예 ②아니오
	(9) 가족휴가(respite)제공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0)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1) 아동가족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2) 다문화가족아동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3) 다문화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4) 북한이탈 아동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5) 북한이탈가족의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6)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7) 한부모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8) 조손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19) 조손가족 조부모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0)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1) 장애아 가족 주양육자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2) 경제적 생계지원서비스(현금보조, 아동수당지원, 세금 및 생활요금 감면)	①예 ②아니오
	(2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예 ②아니오
2) 보건	(24) 아동초기발달검사	①예 ②아니오
	(25) 아동건강검진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6) 주양육자 건강검진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7) 아동·가족의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①예 ②아니오
	(28)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29) 아동신체건강지원서비스(영양, 최적의 신체발달조건 등)	①예 ②아니오
	(30) 아동정신건강지원서비스(ADHD, 학습장애, 우울, 등 조기진단 및 개입)	①예 ②아니오
	(31) 아동학대·방임 발견·예방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2)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신체건강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3) 아동의 주양육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3) 사회성(안정적인 또래관계, 학교적응, 규칙과 질서 준수 등)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4) 아동의료돌봄서비스(처방, 치료, 재활 및 치료케어)	①예 ②아니오
	(35) 주양육자의료돌봄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6) 아동 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보철장치제공서비스 등)	①예 ②아니오
	(37) 주양육자치과관련 의료돌봄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3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예 ②아니오
3) 주거	(39) 주택관리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40)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임차관계설정, 유지 지원 등)	①예 ②아니오
	(41) 임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①예 ②아니오
	(4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①예 ②아니오
	(43)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기숙사 설치·운영	①예 ②아니오
	(44) 건축·집개조	①예 ②아니오
	(45)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	①예 ②아니오
	(4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예 ②아니오
4) 고용	(47)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교육훈련)	①예 ②아니오
	(48) 고용지원서비스(심층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등)	①예 ②아니오
	(49) 진로상담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5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①예 ②아니오
	(51) 진로인식(삶의 문제와 방식에 대한 인식) 증진사업	①예 ②아니오
	(52)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예 ②아니오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시여부
5) 문화	(53) 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54) 문화바우처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55) 문화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56)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57)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	①예 ②아니오
	(58) 문화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59) 문화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0) 기타(구체적으로_____)	①예 ②아니오
6) 관광	(61) 관광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2) 관광바우처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3) 관광행사 기회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4)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5)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6) 관광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7) 기타(구체적으로_____)	①예 ②아니오
7) 체육	(68) 지역사회 체육공간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69) 체육시설 이용바우처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0) 문화향유기회 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1)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2)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3) 체육활동 관련 기관연계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4) 기타(구체적으로_____)	①예 ②아니오
8) 교육	(75)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재택 및 순회프로그램)	①예 ②아니오
	(76)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아버지교육 등)	①예 ②아니오
	(77) 일반교육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8) 특수교육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79) 아동인지·언어교육(기초학습능력의 습득, 창의성, 학습책임발달지원 등)	①예 ②아니오
	(80)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가계관리 및 공고부조 등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등)	①예 ②아니오
	(81) 기타(구체적으로_____)	①예 ②아니오
9) 기타	(82)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 캠페인,)	①예 ②아니오
	(83)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가족생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	①예 ②아니오
	(84) 사례관리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85)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86) 학교연계서비스(school-linked services)	①예 ②아니오
	(87)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 등 인식개선 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88) 기타(구체적으로_____)	①예 ②아니오

※ 다음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하는 란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용지가 부족하신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10.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1.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지원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2. 지역사회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13. 지역사회자원 혹은 기관을 연계 또는 협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4.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사회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가나다. 순)

성진아 美 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이민희 평택대학교 · 교수

황성하 대구한의대학교 · 교수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해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운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견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кви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
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인 쇄 2010년 12월 24일

발 행 201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72-4

978-89-7816-871-7(세트)